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2016 - 2023 KISO 자율규제 백서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VOL. 3

www.kiso.or.kr

KISO 자율규제 백서

「KISO 자율규제 백서 VOL. 3」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본 백서는 인터넷 자율규제를 위한 KISO의 노력과 성과 등을 소개하고자 제작되었으며, 관련 자료들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 KISO의 활동은 2009년과 2015년에 「KISO 자율규제 백서 VOL. 1」과 「KISO 자율규제 백서 VOL. 2」를 간행하여 소개하였다.

2016 - 2023 KISO 자율규제 백서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VOL. 3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이사회 의장 이인호입니다.

KISO는 2009년에 인터넷의 포털 사업자들이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자율규제기구입니다. KISO는 한국의 대표적인 포털인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를 비롯해서 16개의 인터넷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습니다.

KISO는 인터넷 공간이 자율과 책임의 원리에 따른 건강한 정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KISO는 회원사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용자들의 권익과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통의 판단기준을 자율정책으로 개발하고 회원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ISO의 자율규제 모델은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의 독립성 및 정책 집행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KISO가 한국형 자율규제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요인은 자율규제에 적용하는 규범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그 규범을 대내외 투명하게 공유하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 KISO 설립 15주년을 맞이하여 2016년부터 2023년까지 KISO 자율규제 활동을 담은 『KISO 자율규제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의 발달로 급격한 IT 환경의 변화를 경험해왔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새로운 이슈와 갈등들이 등장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ISO도 자율규제기구로서 그 노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ISO 정책위원회는 인터넷의 게시물과 검색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활동을 통해 각 회원사들이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었고,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세분화된 분과와 소위 체계로 전환하여 그 역할을 계속하고 있

습니다. 또한 새로이 이슈로 떠오른 혐오표현이나 AI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대응을 위해 소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여 연구와 토론을 통한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인 사업자들도 관련 소위원회에 참여하여 자율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여러 자율정책과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KISO와 회원사들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에 대한 기준들을 만들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KISO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정책규정들을 만듦과 동시에 새로이 제정되고 수정된 정책 규정들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기준과 해설을 담은 정책규정 해설서를 2018년 발간하여 내부 및 외부에서 KISO의 자율규제 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회원사의 욕설 DB를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API를 통해 욕설을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언론사에서도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ISO의 지금까지의 노력과 그 결과가 담긴 『KISO 자율규제 백서』가 IT 관련 실무자와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일반 이용자들께도 유의미한 자료가 되어 정책 발전 및 자율규제의 정착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KISO는 이후로도 업계의 자율적 노력을 통해 인터넷의 자율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아나가기 위해 여러 목소리를 들으며 상호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이사회 의장 겸 정책위원장
이 인 호

8년간 눈에 띄는 성과

정책결정 및 심의결정 연도별 건수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누적
정책결정	1	5	2	-	-	1	2	3	14
심의결정	18(1)	25(1)	19(1)	12(1)	7	5	1	2	89(4)

※ 괄호 안은 비공개된 심의결정 건수

KISO 서비스운영소위원회 인물정보 직업명 신설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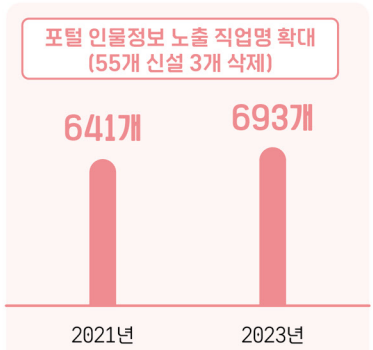

부동산 매물 신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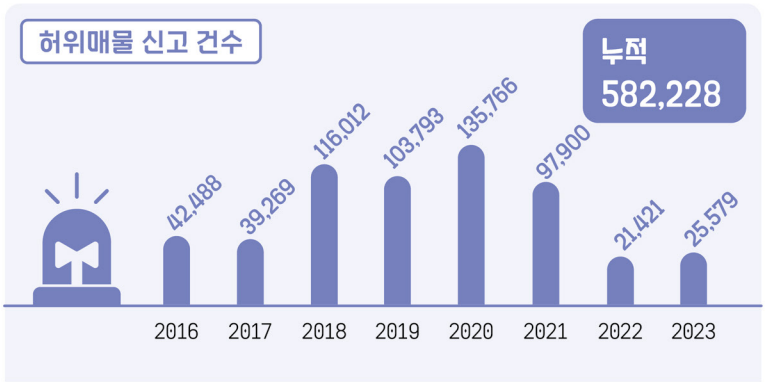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참여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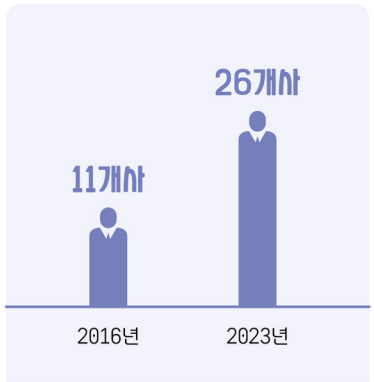

각종 DB 수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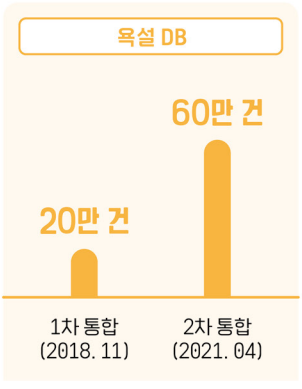

KISO 이용자보호시스템 가입자 수

KISO저널 : 2016년(제22호)~2023년(제53호)

총 원고 수
419개

총 저자 수
205명

DBPIA 총 이용 수
112,196건

KISO저널 홈페이지 PV 수
582,480건

※구글 애널리틱스는 2018년 중반부터 도입

언론에 노출된 보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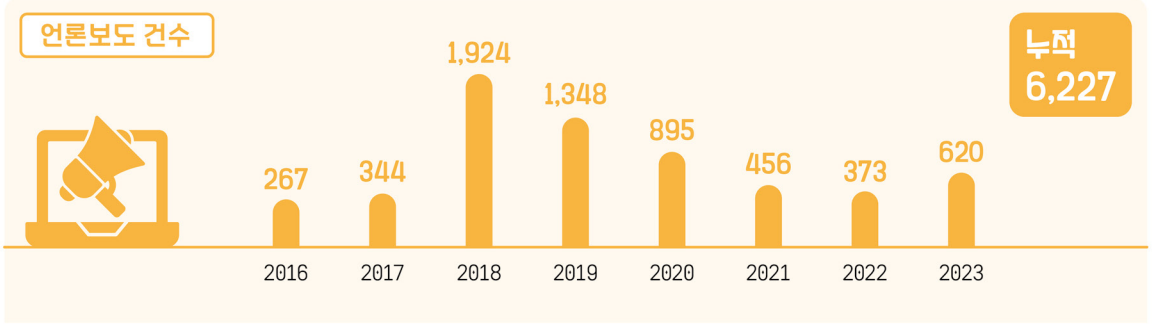

KISO포럼 주요 키워드

2015. 07 소비자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2017. 03 페이크 뉴스와 인터넷
2017. 06 포털의 검색어 정책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17. 08 임시조치 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2017. 12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재설계
2019. 10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 것인가
2020. 07 온라인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
2021. 03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2022. 05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
2022. 12 자율규제 모델, KISO에서 답을 찾다

목 차

제 1 장

KISO 현황

제1절 설립 목적 002
제2절 연혁 003
제3절 조직 구성 005
제4절 회원사 006
제5절 수상 실적 007
제6절 사진으로 보는 KISO 발자취 009
제7절 KISO JOURNAL 발간 020
제8절 언론에서 본 KISO 022

제 2 장

KISO 자율규제 활동

1. 정책위원회 024
2. 이용자콘텐츠분과 031
   2.1. 게시물정책소위원회/검색어정책소위원회
   2.2. 혐오표현심의위원회
3. 서비스운영분과 034
   3.1. 서비스운영소위원회
   3.2. 어학사전워킹그룹
4. 온라인광고분과 040
   4.1. 부동산광고소위원회
5. 특별분과 042
   5.1. 자율규제DB소위원회
   5.2. 신기술소위원회
6. 네이버검색어검증위원회 048
7. KISO JOURNAL 051
8.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059
9. 부동산매물검증센터 062
10. KISO 종합신고센터 064
11. UGC협의체 067
12. 대외협력 069
    12.1. MOU
    12.2. KISO 개최 행사
    12.3. 유관기관 협력
    12.4. 연구 및 조사
13.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 078

제 3 장

KISO 자율규제 활동의 평가

제1절 정책위원회 080

제2절 게시물·검색어 082
1. 게시물·검색어 정책
2. 혐오표현 정책
3. 코로나 대응 게시물 정책

제3절 서비스 운영 089
1. 인물정보 정책
2. 어학사전 서비스 정책

제4절 청소년 보호 정책 093
1. 청소년보호검색어 관리
2. KISO 이용자보호시스템(KSS)

제5절 부동산 허위매물 검증 096

제6절 챗봇 윤리 정책 098

제 4 장

부록

정책규정 및 운영규정 102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가이드라인 118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리 가이드라인

심의결정문 140

KISO JOURNAL 전체 목차 256

목 차

표 목차

<표1-1> KISO 연혁 004
<표1-2> KISO 회원사 006
<표1-3> 회원사 현황 007
<표1-4> KISO 수상 실적 008
<표2-1> 현직 정책위원 024
<표2-2> 전직 정책위원 025
<표2-3> 정책위원회 주요 정책결정 027
<표2-4>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특별정책 028
<표2-5> 정책위원회 심의결정 029
<표2-6> 게시물정책소위원회 위원 031
<표2-7> 검색어정책소위원회 위원 031
<표2-8> 게시물정책소위원회 참여사 031
<표2-9> 검색어정책소위원회 참여사 031
<표2-10> 게시물정책소위원회/검색어정책소위원회 심의결정 032
<표2-11>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위원 032
<표2-12>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참여사 033
<표2-13>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목차 034
<표2-14> 서비스운영소위원회 위원 034
<표2-15> 서비스운영소위원회 참여사 035
<표2-16> 인물정보서비스자문위원회 참여사 035
<표2-17> 인물정보서비스자문위원회 활동 내역 035
<표2-18> 서비스운영소위원회 주요 성과 037
<표2-19> 어학사전워킹그룹 참여사 038
<표2-20>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목차 039
<표2-21> 부동산광고소위원회 위원 040
<표2-22> 부동산광고소위원회 참여사 040
<표2-23> 부동산광고소위원회 주요 성과 041
<표2-24> 자율규제DB소위원회 위원 042
<표2-25> 자율규제DB소위원회 참여사 042
<표2-26> 청소년보호검색어 데이터베이스 통합 현황 043
<표2-27> 욕설·비속어 데이터베이스 통합 현황 044
<표2-28>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리 가이드라인 목차 044
<표2-29> KISO 이용자보호시스템 이용사 045
<표2-30> KISO 이용자보호시스템 연혁 045
<표2-31> KISO 이용자보호시스템 현황 046
<표2-32> 신기술소위원회 위원 047
<표2-33> 신기술소위원회 참여사 047
<표2-34>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목차 048
<표2-35> 제3기 네이버검색어검증위원회 위원 050
<표2-36> KISO JOURNAL 편집위원회 전·현직 위원 051
<표2-37> KISO JOURNAL 주요 통계 053
<표2-38> KISO JOURNAL 주요 섹션별 현황 054
<표2-39>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참여사 059
<표2-40>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허위매물 검증 현황 061

<표2-41>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규정 재정비 성과 061
<표2-42> 부동산매물검증센터 참여사 062
<표2-43> 부동산매물검증센터 검증 통계 063
<표2-44> 코로나19 특별정책에 따라 처리된 허위조작정보 통계 065
<표2-45> KISO 종합신고센터 유해 게시물 신고 통계 066
<표2-46> KISO 종합신고센터 가짜뉴스 신고 통계 066
<표2-47> UGC협의체 참여사 067
<표2-48> UGC협의체 활동 현황 067
<표2-49> 서울시 MOU 관련 불법·유해 게시물 신고 처리 통계 069
<표2-50>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광고 등 불법 유해 게시물 신고 처리 통계 070
<표2-51> 자살 시도자 구호조치 통계 070
<표2-52> KISO 개최 행사 071
<표2-53> 유관기관 협력 활동 073
<표2-54> 연구 및 조사 활동 074
<표3-1> 정부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추진 체계 086
<표3-2> 언론 및 시민사회의 허위조작뉴스 팩트체크 결과 086
<표3-3>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098

그림 목차

<그림1-1> KISO 조직도 005
<그림1-2> KISO JOURNAL 표지 020
<그림2-1> 차별표현 바로알기 캠페인 페이지 039
<그림2-2>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신고 처리 절차 060
<그림2-3>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형별 분석 결과 065
<그림2-4> KISO 종합신고센터 신고 처리 절차 067
<그림2-5> KISO 발간물 표지 모음 076
<그림3-1> 어학사전워킹그룹의 개별 표제어 검토 과정 092

제 1 장

KISO 현황

제1절 설립 목적
제2절 연혁
제3절 조직 구성
제4절 회원사
제5절 수상 실적
제6절 사진으로 보는 KISO 발자취
제7절 KISO JOURNAL 발간
제8절 언론에서 본 KISO

제 1 장

KISO 현황

제1절 설립 목적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이하 KISO라 함)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신장과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목적으로 2009년 3월 발족한 자율규제기구이다. 국가의 개입 없이 민간이 주도하여 설립한 자발적 자율규제기구로 온라인 영역의 자율규제를 수행해왔다.

KISO는 인터넷 게시글과 관련한 법·제도적 문제 제기가 지속되면서 제한적 본인확인제, 임시조치 제도 등으로 이용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임시조치 제도 이후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기술적·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 사업자들이 대응할 필요성에서 설립되었다.

KISO의 강령은 표현의 자유 옹호, 이용자 책임 제고, 이용자 보호 등 디지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KISO는 강령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재정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을 강조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는 정부기관의 요청에만 응한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KISO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행동규약(code of conduct)을 제정하는 것이다. KISO 회원사들은 선제적으로 공동의 자율규제 기준을 만들고 해당 결정 사항을 함께 이행하고 있다.

심의결정은 회원사의 요청이나 위원의 상정이 있을 때 이루어지며,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책결정을 바탕으로 논의·의결하는 것이다.

KISO 강령

제1조 표현의 자유 옹호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보장한다.

제2조 이용자 책임 제고
우리는 이용자가 표현의 자유에 따른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제3조 이용자 보호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개인과 집단을 모두 이용자로 보고 이용자의 권리와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4조 공익의 수호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불법 정보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공익 실현을 위한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인권과 공적 이익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

제5조 독립적 운영
우리는 이해관계, 부당한 외압 등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운영하며, 정부기관의 조치 및 협조 요청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검토한다.

제6조 공정한 운영
우리는 특정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입장으로 편향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불편부당하고 일관된 기준을 지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운영한다.

제7조 사회적 책무 기반
우리는 법적 책임을 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수행 시스템 구성에 기여한다.

제8조 소통과 협력 지향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방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공조의 정신으로 협의해 나간다.

제2절 연혁

KISO는 2020년 10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개방과 확대를 통한 온라인 자율규제 선도'를 캐치프레이즈로 정하고, 이사회 결정에 따라 분과·소위원회 체제로 조직구조를 개편하였다. 인터넷 게시물과 검색어 정책 중심의 자율규제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로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고, 회원사의 수요에 맞춘 자율규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위원회 산하에 분과·소위원회를 구성해 확대·개편한 것이다. KISO 이사회는 다양한 자율규제 이슈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대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조직 개편은 KISO 설립 이후 10여 년간 심의 사례가 축적되고 개별 회원사가 이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심의 건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고, AI의 등장으로 온라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따라 개방과 확대로 온라인 자율규제를 선도하기 위한 배경에서 마련되었다.

분과·소위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정책위원회는 정책 및 심의결정 중심에서 최종 정책을 승인하고 대외적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바뀌었다. 정책위원회는 컨트롤타워로서 자율규제 방향을 정하고 전략을 마련한다. KISO의 대외 활동과 관련된 최종적 판단은 정책위원회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일관적인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분과·소위원회는 회원사의 서비스에 대한 세부 운영 정책을 검토하고 회원사 요청 시 자문, 검증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회원사는 KISO가 시행하는 모든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영역에 한해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분과장은 정책위원이 맡아 사무를 총괄하며, 소위원회와 정책위원회 간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다. 소위원회의 구성은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외부위원 3인 이상과 회원사로 구성해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분과·소위원회 체제 개편 이후 소위별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KISO 회원사는 기존 10개사에서 16개사로 늘어났으며 AI 챗봇 서비스나 메타버스 서비스 사업자가 가입하여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기존 온라인 커뮤니티 성격의 UGC협의체 회원사와 더불어 신기술 관련 회원사가 KISO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2021년 8월 KISO는 이인호 정책위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외부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전까

지 이사회 의장은 이사사의 대표이사 가운데 1인을 총회의 의결로 선임했으나 자율규제 영역 다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책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의장으로 선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KISO는 그에 앞선 2021년 3월 정관을 개정해 인터넷 관련 외부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1-1> KISO 연혁

2008년 12월	포털 자율규제 협의회 발족 공동 발표	
2009년 3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출범**	김창희 위원장
2009년 7월	이사회 의장 선임	주형철 의장
2010년 3월	이사회 의장 변경	김상헌 의장
2011년 9월	제2대 정책위원장 선출	이해완 위원장
2012년 11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설치	
2013년 3월	이사회 의장 선임	최세훈 의장
2014년 4월	부동산매물검증센터 설치	
2015년 8월	이사회 의장 변경	이석우 의장
2015년 11월	이사회 의장 변경	임지훈 의장
2018년 5월	이사회 의장 변경	여민수 의장
2018년 9월	제3대 정책위원장 선출	이인호 위원장
2020년 10월	**내부 구조 개편을 통한 분과 · 소위원회 체제 도입**	
2021년 8월	이사회 의장 변경	이인호 의장

제3절 조직 구성

<그림1-1> KISO 조직도

KISO 이사회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회원사 대표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징계에 관련된 사항, 정책위원 및 정책위원장의 임명, 정책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센터·분과 등 법인 내 조직 설립 승인 등을 담당한다. 이사회는 기구의 자율규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원회에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회를 보좌하고 기구 운영을 협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책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성을 필수 요소로 하기 때문에 이사회는 실질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운영에만 관여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였다.

정책위원회는 기구 강령 및 정책규정, 가이드라인 제정안 및 개정안을 마련하며 정책위원회 분과로부터 요청받은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한 정책 결정, 정책위원회 분과 내 소위원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정책위원회 산하 4개 분과는 △이용자콘텐츠분과 △서비스운영분과 △온라인광고분과 △특별분과이다. 각 분과 하부에 7개의 소위원회(△게시물정책소위원회 △검색어정책소위원회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서비스운영소위원회 △부동산광고소위원회 △자율규제DB소위원회 △신기술소위원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심의 결정을 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사 필요에 따라 임시(또는 수시)로 공동의 안건을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창설할 수 있다.

이 외 부설기구로서 KISO저널편집위원회, 네이버검색어검증위원회, 그리고 온라인 부동산 매물 자율규제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물검증센터와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조직되어 있다. 사무처는 신고센터 등 실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와 정책위원회를 지원한다. 사무처는 자율규제 정책 수립·심의·연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정책팀과 온라인 부동산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와 KISO 저널 발간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획팀 등 2개 팀을 두고 있다. KISO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 수는 2023년 말 기준 총 26명이며, 사무처에는 10명의 인원이 있다.

제4절 회원사

<표1-2> KISO 회원사

NAVER	kakao	SK communications	CLIEN.net
네이버(주)	(주)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주)	(주)씨엘커뮤니케이션즈
ESTAID	PPOMPPU	kt alpha	SCATTER LAB
(주)이스트에이드	(주)뽐뿌커뮤니케이션	(주)케이티알파	(주)스캐터랩
softly.ai	오늘의유머 todayhumor.com	INVEN	REDHolics
(주)소프트리에이아이	씨나인	(주)인벤	(주)나인팩토리커뮤니케이션
SLR	SimSimi	bibimble	TUNiB
(주)인비전커뮤니티	심심이(주)	(주)비빔블	(주)튜닙

KISO는 2009년 3월 출범 당시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KT하이텔,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7개 포털을 회원사로 출범하였다. 2023년 말 기준 네이버(네이버), 카카오(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이스트에이드(구 줌인터넷) 등 국내 주요 포털과 뽐뿌커뮤니케이션(뽐뿌), 씨나인(오늘의유머), 인비전커뮤니티(SLR클럽), 씨엘커뮤니케이션즈(클리앙)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심심이, 스캐터랩, 튜닙, 소프트리에이아이, 비빔블 등 인공지능(AI),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 관련 사업자를 포함하여 총 16개 회원사가 있다.

<표1-3> 회원사 현황

회사명	주요 서비스명	주요 사업
네이버(주)	네이버(www.naver.com)	종합포털
(주)카카오	다음(https://www.daum.net), 카카오톡	종합포털, 모바일 서비스
SK커뮤니케이션즈(주)	네이트(https://www.nate.com), 네이트온	종합포털
(주)이스트에이드	줌(https://zum.com)	종합포털
(주)뽐뿌커뮤니케이션	뽐뿌(https://www.ppomppu.co.kr)	온라인 커뮤니티
(주)씨엘커뮤니케이션즈	클리앙(https://www.clien.net)	온라인 커뮤니티
(주)인비전커뮤니티	SLR클럽(https://www.slrclub.com)	온라인 커뮤니티
씨나인	오늘의유머(https://www.todayhumor.co.kr)	온라인 커뮤니티
(주)인벤	인벤(https://www.inven.co.kr)	온라인 커뮤니티
(주)KT알파	KT알파(https://www.ktalpha.com)	커머스 플랫폼
(주)나인팩토리커뮤니케이션	레드홀릭스(http://www.redholics.com)	콘텐츠 플랫폼
심심이(주)	심심이(https://www.simsimi.com)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
(주)소프트리에이아이	소프트리에이아이(https://softly.ai)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
(주)스캐터랩	제타(https://scatterlab.co.kr)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
(주)튜닙	디어메이트(http://tunib.ai)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
(주)비빔블	비커스(https://www.bibimble.com)	메타버스 서비스

제5절 수상 실적

KISO는 2012년 9월 서울특별시와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온라인상의 불법 성매매 알선 광고 게시물을 처리해왔다. KISO와 회원사는 인터넷 공간의 성폭력, 성매매 등 불법·유해 게시물로부터 여성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인터넷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성매매 알선 광고, 음란물 등 불법 정보를 모니터링해 KISO를 통해 신고하면 KISO와 회원사가 이를 조치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KISO는 2022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는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에 대한 정부 포상으로, KISO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자율규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KISO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서 욕설·비속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한 KISO 이용자보호시스템(KSS, KISO Safeguard System)이 제8회 휴먼테크놀로지어워드에서 최고의 상인 대상을 받아 가장 인간친화적인 디지털 기술로 인정받았다.

휴먼테크놀로지어워드는 디지털 기술이 사용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도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담아 뛰어난 기술을 선정하는 상이다. 휴먼테크놀로지어워드 평가위원회는 KSS가 '사람친화적 기술'로서 온라인 공간에서 욕설·비속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과 그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표1-4> KISO 수상 실적

2016년 4월	서울특별시장 표창	KISO, 네이버, 카카오 3인
2016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 선거 관리 관련 표창	KISO 1인
2017년 2월	서울특별시장 표창	KISO, 카카오, 줌인터넷 3인
2018년 12월	서울특별시장 표창	KISO 1인
2020년 2월	서울특별시장 표창	KISO, 네이버, 카카오 3인
2022년 3월	서울특별시장 표창	KISO 1인
2022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	KISO 1인
2023년 6월	제8회 휴먼테크놀로지어워드(HTA) 대상 수상	KISO 이용자보호시스템

제6절 사진으로 보는 KISO 발자취

2016~2023

2016. 2. KISO 워크숍

2016. 3. 공정한 선거를 위한 인터넷 사업자 실무 세미나

2016. 9. KISO-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 개최

2016. 11. KISO 사업자 실무 세미나

2017. 3. KISO포럼 '페이크 뉴스와 인터넷' 토론회 개최

2017. 3. 공정선거를 위한 사업자 실무 세미나 개최

2017. 6. KISO포럼 '포털의 검색어 정책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7. 8. KISO포럼 '임시조치 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개최

2017. 12. KISO포럼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재설계' 토론회 개최

2018. 2. KISO 워크숍

2018. 3. KISO-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공동 세미나 '인터넷 댓글에서의 정치행동주의 : 여론공간의 규제는 필요한가?' 토론회

2018. 4. KISO-선관위, 공정선거를 위한 간담회 개최

2018. 9. 이해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 퇴임식

2018. 4. 검색어검증위원회, '검색어 추천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기업의 영업의 자유는 양립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2018. 11. KISO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 한국에서의 가짜뉴스' 시상식 개최

2019. 2.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9기) 교육

2019. 2.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 참석

2019. 2. 네이버검색어검증위원회, 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2019. 6. KISO 제주 워크숍

2019. 3. KISO 저널 10주년 특집호 위원장 대담 취재 현장

2019. 10. KISO포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9. 11. KISO 저널 편집위원회 문화의 날 행사

2020. 7.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서버 구축 참여사 대상 설명회

2020. 7. KISO포럼 '온라인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2021. 3.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MOU 체결

2021. 3. KISO포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토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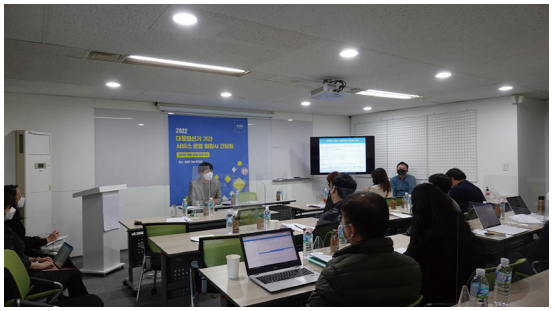

2021. 10. 2022년 대통령 선거 기간 서비스 운영 회원사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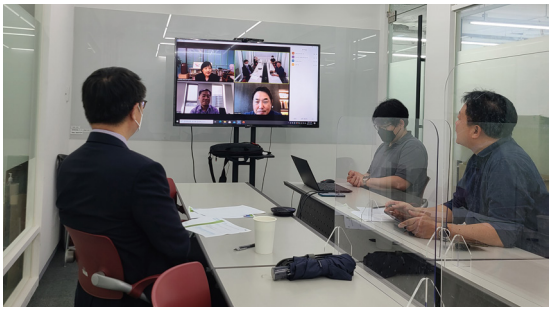

2022. 4. 화상회의를 통해 이사회를 개최한 모습

2022. 5. KISO포럼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22. 6. 2022 KISO 워크숍

2022. 9. '포털 국어사전 내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보고서' 발표 간담회

2022. 12. KISO포럼 '자율규제 모델, KISO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 개최

2022. 8.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열린 신기술소위원회 회의 모습

2022. 11. UGC협의체 회원사 간담회 개최

2023. 5. UN 안보리 산하 대테러사무국(CTED) 간담회 참석

2023. 6. 한국공법학자대회 참여

2023. 6. 휴먼테크놀로지어워드 대상 수상 기념 촬영

2023. 8. KISO-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MOU)' 체결

2023. 11. KISO-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기간 서비스 운영 회원사 세미나 개최

2023. 6. 2023 KISO 워크숍 개최

2023. 8. 'AI가 선거에 미칠 영향' 선관위 세미나 참여

2023. 11.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술대회 KISO 세션 개최

2023. 8.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협오표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

제7절 KISO JOURNAL 발간

<그림1-2> KISO JOURNAL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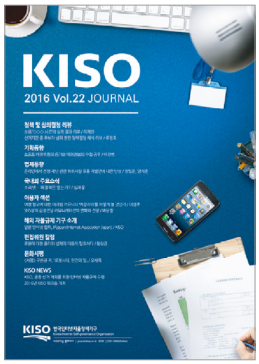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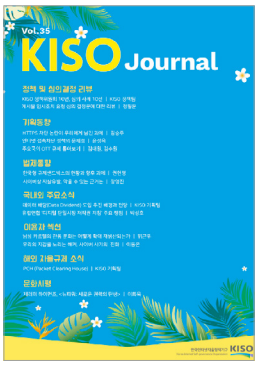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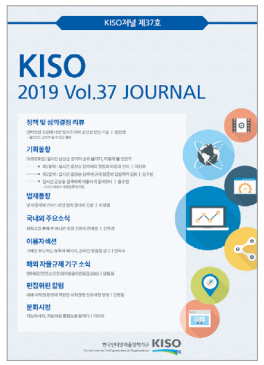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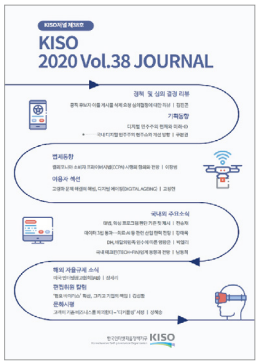
KISO 2020 Vol.38 JOURNAL

KISO JOURNAL VOL.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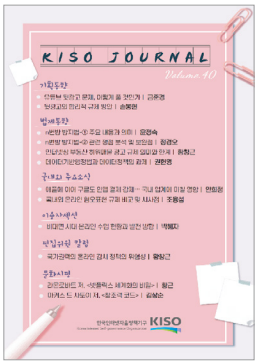
KISO JOUR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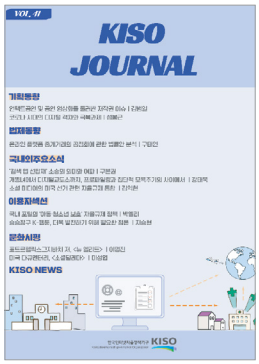
KISO JOUR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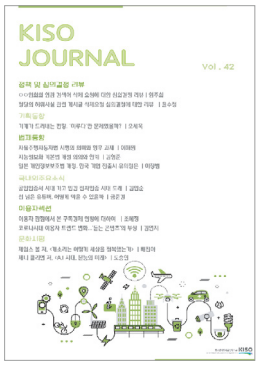
KISO JOURNAL Vol.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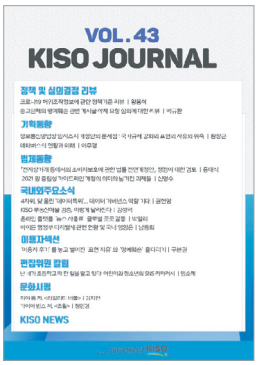
VOL. 43 KISO JOUR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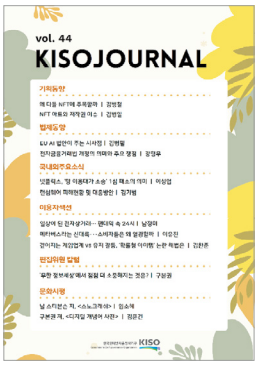
vol. 44 KISOJOURNAL

KISO JOUR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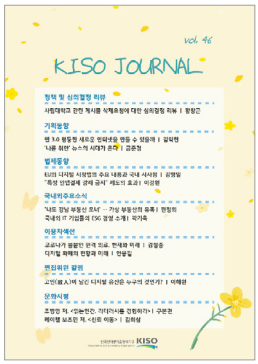
KISO JOURNAL

Vol.47 KISO JOUR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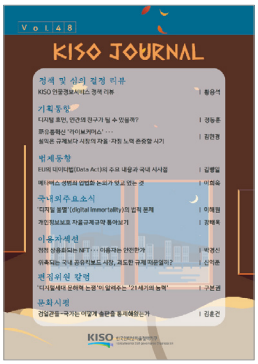
KISO JOURNAL

KISO JOURNAL 특집호
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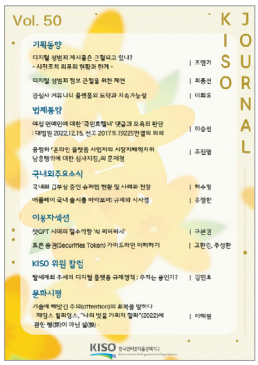
Vol. 50 KISO JOUR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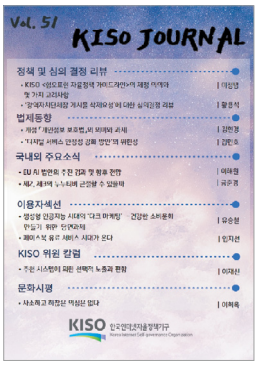
Vol. 51 KISO JOUR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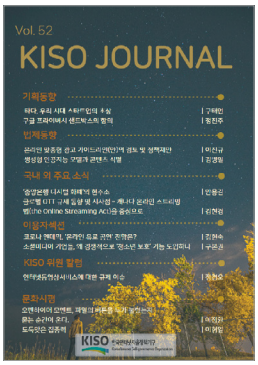
Vol. 52 KISO JOUR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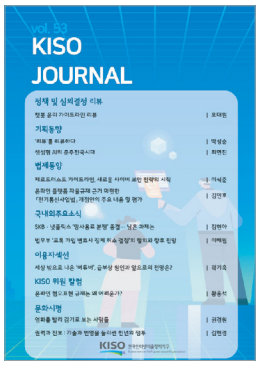
KISO JOURNAL

제8절 언론에서 본 KISO

아이뉴스24

KISO, 정책규정 해설서 개정 발간

민혜정 기자

| 올해 전면 개정된 검색어 정책도 수록

연합뉴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5월부터 '가짜뉴스' 포털서 삭제

| 풍자 · 오보는 제외

연합뉴스

포털 이용자 63% "검색어 서비스 유지해야"

| KISO 검증위 설문조사…
"74%는 정치인·고위공직자 명예훼손 검색어 삭제 반대"

ZDNET Korea

오해 가능한 '권리침해성 검색어' 삭제 기준 마련

안희정 기자

| KISO, 연관 및 자동완성검색어 제외와 관련된 정책규정 전면 개정

연합뉴스

포털·커뮤니티에 뜬 코로나 가짜뉴스, 사업자가 직접 삭제한다

홍지인 기자

| KISO, 코로나 허위·조작 정보 자율 규제 확대… 네이버·카카오·클리앙 등 적용

뉴스웍스

인물정보 검색에 '1인사업자·소상공인'도 뜬다… KISO, 인물정보 서비스 문턱 낮춰

이숙영 기자

공감언론 뉴시스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5건 중 4건은 '백신 괴담'

| KISO,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 조치 결과 발표

ZDNET Korea

포털, 어학사전 내 '차별표현' 인식개선 나선다

| KISO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차별표현 바로알기 캠페인' 시작

서울경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 대응기구 신설

김윤수 기자

| 내년 상반기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 네이버·카카오에 적용

전자신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욕설 필터링 인터페이스 공개

동아일보

업계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나왔다… "심리 상담땐 챗봇 사용 안밝혀도 돼"

| KISO, 인간 존엄성 등 5원칙 담아
| "회원사들 약관에 반영 계속 권고"

한겨레

60만개 욕설DB로 혐오 차단… 이용자 인권 보호

한귀영 기자

| HTA2023 대상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용자보호 시스템

제 2 장

KISO 자율규제 활동

1. 정책위원회

2. 이용자콘텐츠분과
   2.1. 게시물정책소위원회/검색어정책소위원회
   2.2. 혐오표현심의위원회

3. 서비스운영분과
   3.1. 서비스운영소위원회
   3.2. 어학사전워킹그룹

4. 온라인광고분과
   4.1. 부동산광고소위원회

5. 특별분과
   5.1. 자율규제DB소위원회
   5.2. 신기술소위원회

6. 네이버검색어검증위원회

7. KISO JOURNAL

8.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9. 부동산매물검증센터

10. KISO 종합신고센터

11. UGC협의체

12. 대외협력
    12.1. MOU
    12.2. KISO 개최 행사
    12.3. 유관기관 협력
    12.4. 연구 및 조사

13.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

제 2 장

KISO 자율규제 활동

1. 정책위원회

<표2-1> 현직 정책위원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인호 정책위원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현) 국회사무처 입법지원위원(현 8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연구관보(현)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전)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2018. 9. 1. ~ 현재
	김현경 정책위원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현)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전문위 위원(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법제도TF 위원(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전)	2020. 9. 1. ~ 현재
	이승선 정책위원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현)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위원(현)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전)	2021. 4. 1. ~ 현재
	김민호 정책위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현) 국가기준데이터위원회 위원장(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전)	2021. 9. 1. ~ 현재
	황용석 정책위원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랫폼정책포럼 위원(현) 법무부 인권정책 자문위원회 위원(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학회장(전)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전)	2023. 9. 1. ~ 현재

	김대기 정책위원	카카오 정책협력 수석	2014. 3. 3. ~ 현재
	김훈건 정책위원	SK커뮤니케이션즈 법무팀 팀장	2018. 3. 3. ~ 현재
	이상식 정책위원	네이버 서비스정책실 실장	2020. 3. 3. ~ 현재

<표2-2> 전직 정책위원

성명	주요 경력	임기
이해완 전 정책위원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 9. 1. ~ 2018. 8. 31.
정경오 전 정책위원	법무법인 린 변호사	2010. 9. 1. ~ 2020. 8. 30.
배영 전 정책위원	포항공과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2011. 9. 1. ~ 2019. 8. 31.
황창근 전 정책위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2016. 9. 1. ~ 2021. 8. 31.
윤성옥 전 정책위원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2018. 3. 3. ~ 2021. 3. 31.
이재신 전 정책위원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2019. 9. 1. ~ 2023. 8. 31.
김성욱 전 정책위원	네이버	2015. 9. 1. ~ 2020. 2. 28.
김태열 전 정책위원	SK커뮤니케이션즈	2014. 3. 3. ~ 2016. 8. 31.
허정일 전 정책위원	SK커뮤니케이션즈	2016. 9. 1. ~ 2017. 3. 2.
서승원 전 정책위원	SK커뮤니케이션즈	2017. 3. 3. ~ 2018. 3. 2.

가. 개요

정책위원회는 KISO 정관 제6장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KISO 자율규제 활동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정책위원회는 정책결정과 심의결정을 주요 업무로 한다. 정책결정은 회원사 게시물 자율규제의 기준이 되는 공동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며, 심의결정은 회원사의 요청에 따라 상정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책의 적용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위원회는 5인의 외부위원과 3명의 회원사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책위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명된다. 정책위원은 2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원사 소속이 아닌 위원은 1회, 정책위원장은 2회 연임이 가능하다.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과 심의결정 등의 의결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분과 체제 개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분과 체제 개편 이전의 정책위원회는 공통된 정책규정을 수립하고 회원사에서 상정하는 심의 안건들을 직접 심의하였다. 분과 체제 이후의 정책위원회는 각 소위에서 결정된 규정과 심의내용들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대외적인 업무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나. 현황

정책위원회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82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분과 소위 체제 변경으로 2021년 12월부터는 격월로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KISO 회원사의 서비스 운영정책을 공동으로 정하는 정책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상정한 사례를 검토하는 심의결정을 주요 업무로 한다.

정책결정은 각 회원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기준 가운데 최소한의 기준 설정으로, KISO 정책이 최대한의 기준을 목표로 할 경우에 인터넷 공간의 다양한 의견 표출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각 회원사의 서비스가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회원은 KISO의 정책결정을 최소한의 가이드로 하여 다양한 자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해왔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주요 기준은 이용자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이용자 책임의식 제고라는 양 측면을 조화하는 데 있다. 특정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보호할 경우 자칫 다른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되는 게시물을 타인의 권리침해라는 이유로 삭제할 경우 이용자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불러올 수도 있어, 정책위원회는 공익적 관점에서 양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 운영하였다.

정책결정은 정책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데 자율규제의 특성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로 인해 각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책위원회는 분과 체제 개편 이전부터 설치 운영된 위원회로 현재에도 이전과 같이 정책결정과 심의결정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체제 개편 이후 1차적으로 심의 기능은 각 소위원회에 이전되었으나 심의에 대한 재심 권한이 유지되어 최종적인 심의 결정 기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체제 개편 이후 정책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게 되어 기구의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정책위원회는 1차적 심의 기능을 소위원회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정책결정과 대외업무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다. 체제 개편 이후에도 정책결정을 통하여 사회적인 이슈에 대응했고 대외협력을 통해 게시물 등을 통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지난 2021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KISO는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였고, KISO 정책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KISO의 심의 노하우를 담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 개정 관련 KISO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권리구제 측면에 큰 무게를 뒀던 현행 임시조치 제도를 수정해 신속한 분쟁 해결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1) 정책결정

<표2-3> 정책위원회 주요 정책결정

2016. 04.	선거 관련 정책규정 개정(적용기간 신설)
2017. 01.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 개정(공인 관련 검색어 삭제요건 변경)
2017. 02.	정책규정 제17조 제2항 개정(후보자의 범위 확대 및 적용시점 명확화)
2017. 0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정책 신설
2017. 04.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11호 신설(부정경쟁행위 해당 검색어 삭제요건 추가)
2017. 06.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12호 신설(이슈된 사건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공개되지 않은 지역, 기관 등에 대한 삭제요건 추가)
2018. 03.	정책규정 제3장 전면 개정(규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 및 일부 내용 명확화)
2018. 04.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 신설
2021. 04.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23.03.31 종료)
2022. 03.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의결
2022. 04.	선거 관련 정책규정 개정(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추가 및 판단 주체의 명확화)
2023. 04.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의결
2023. 08.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의결
2023. 10.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리 가이드라인 의결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정책결정은 공적 영역에서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는 사업자가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부터 출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이후에는 기존의 공인 관련 결정을 다듬는 동시에, 인터넷에 주요 문제로 떠오른 집단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정교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망자의 계정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그 계정 및 게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자율규제 차원에서 최초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2013년부터 정책위원회는 기존 정책결정이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왔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일반 이용자가 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책규정 통합 및 체계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14년 6월 17일 총 5개 장 29개 조로 구성된 정책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또한 이후에 내려진 정책결정은 정책규정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2015년 이후 정책위원회는 제정된 정책규정을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사회적인 요구에 맞춰 새로운 정책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추어 개정된 정책규정들의 적용과 관련하여 2015년 발간한 정책규정 해설서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2018년 정책규정 해설서의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해당 해설서는 회원사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이 정책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해석을 제시하여 주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정책을 마련하여 검색어 및 검색 결과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 회원사가 청소년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청소년보호체계구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분과 체제로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자율규제DB소위원회에서 해당 업무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을 신설하였다. 해당 규정은 형식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다.

기존 정책규정에 관하여도 공인 관련 검색어 삭제 요건을 변경하여 공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

분과 체제 개편 이후에도 정책위원회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결정을 신설하고 사회적 변화에 따른 기존 정책규정의 수정 보완을 하였다.

코로나19의 유행부터 백신 관련한 이슈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급증하여 인터넷 공간의 신뢰를 떨어뜨림에 따라 한시적으로 해당 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책위원회는 2021년 4월 15일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게시물 제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KISO 회원사는 이번 정책 결정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 질병관리청의 공식 발표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코로나19의 존재, 치료, 예방 및 진단, 전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 격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게시물'에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뿐만이 아닌 가족 등에 대한 이슈가 후보자 검증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선거 관련 정책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유권자들이 선거에 앞서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2-4>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특별정책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책기준을 마련하였다.

- 다 음 -

① 회원사는 코로나19에 관한 정보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이 정책은 코로나19 관련 게시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중요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코로나19의 존재, 치료, 예방 및 진단, 감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와 관련한 내용의 게시물인 경우

2. 세계보건기구(WHO) 또는 질병관리청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② 회원사는 제1항의 요건의 적용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원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규정 제2장 및 제4장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심의결정

<표2-5> 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연도	건수	심의결정 내용
2016	18(1)건	· '게시물 재게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정책규정 제17조 해석' 관련의 건 · '○○○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결정문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저널 제23호에서 리뷰〉 · '○○○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결정문 · '○○○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결정문 · '○○○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결정문 〈저널 제24호에서 리뷰〉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저널 제24호에서 리뷰〉 · '○○○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결정문 · '○○○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연관검색어 심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연관검색어 심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저널 제25호에서 리뷰〉 · '○○○의 연관검색어 심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저널 제26호에서 리뷰〉 · '○○○의 연관검색어 심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저널 제26호에서 리뷰〉 · '○○○의 연관검색어 심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2017	25(1)건	· '○○○의 연관검색어 심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저널 제27호에서 리뷰〉 · '○○○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저널 제28호에서 리뷰〉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저널 제29호에서 리뷰〉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저널 제30호에서 리뷰〉 · '○○○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2018	19(1)건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게시물 임시조치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저널 제32호에서 리뷰〉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저널 제35호에서 리뷰〉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저널 제33호에서 리뷰〉 · '○○○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저널 제33호에서 리뷰〉 ·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 '○○○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저널 제 34호에서 리뷰〉 · '○○○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저널 제 34호에서 리뷰〉
2019	12(1)건	· '○○○의 명예훼손 사유 자동완성검색어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 '제품의 이물질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 '지방자치단체의 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 '○○○의 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 '○○○의 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저널 제36호에서 리뷰〉 · '○○○의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저널 제36호에서 리뷰〉 · '정무직 공무원 가족의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 결정문 · '데이터 복구업체 이용후기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의 건 · '공직 후보자 자녀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저널 제38호에서 리뷰〉 · '병원 의료사고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 '이용자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심의의 건
2020	7건	· '기업의 명예훼손 관련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 '의료기관의 명예훼손 관련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저널 제39호에서 리뷰〉 · '언론기관 대표의 명예훼손에 의한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저널 제39호에서 리뷰〉 · '종교단체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 '기업의 명예훼손 관련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재심의의 건 · '특정 직업의 비하 관련 자동완성검색어 및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저널 제42호에서 리뷰〉 · '정당의 허위사실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저널 제42호에서 리뷰〉
계	81(4)건	

※ 정책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비공개 처리된 심의결정문은 총 4건이다.

정책위원회는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의 형식으로 논의·의결하였다. KISO 정책위원회의 심의결정은 당해 심의사건은 물론이고 이후 회원사의 판단 기준으로 적극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심의결정은 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회원사 소속이 아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심의결정의 경우 회원사 소속 정책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사회는 2018년 정책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심의 과정에 회원사 위원의 표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자 하였다.

또한 심의결정 후에는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KISO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심의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중요 심의결정 사례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통한 리뷰를 작성케 하고 KISO 저널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다(표2-5 참조). 심의는 회원사의 요청에 의해 개시되며, 논의와 관련하여 정책 관련 사항, 기타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할 만한 신규 사안 등을 상정하여 회의를 통해 추가 정책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심의결정 과정은 일정한 양식에 따라 시스템 혹은 서면으로 심의안건을 상정함으로써 시작된다. 이후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사안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의결 혹은 오프라인 회의를 통한 의결로 진행되었다.

2. 이용자콘텐츠분과

2.1. 게시물정책소위원회/검색어정책소위원회

<표2-6> 게시물정책소위원회 위원

성 명	소 속
이승선 위원장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민정 위원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해원 위원	목포대 법학과 교수

성 명	소 속
윤성옥 전 위원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2021년 3월 정책위원회 및 소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위원장 교체.

<표2-7> 검색어정책소위원회 위원

성 명	소 속
이재신 위원장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승환 위원	대구대 DU인재학부 교수
윤여진 위원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최항섭 위원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표2-8> 게시물정책소위원회 참여사

참여사 현황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이스트에이드, 뽐뿌커뮤니케이션, 씨엘커뮤니케이션즈, 인비전커뮤니티, 씨나인, 인벤

<표2-9> 검색어정책소위원회 참여사

참여사 현황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이스트에이드

가. 개요

게시물정책소위원회와 검색어정책소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로, 각각 체제 개편 이전 정책위원회가 담당하였던 게시물과 검색어에 대한 정책결정 및 심의결정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각 소위원회는 3~4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결정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심의결정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면 정책위원회에 보고하고 정책위원 및 분과장의 재심의 요청이 없는 이상 확정되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게시물정책소위원회는 KISO 회원사의 게시판 등에 작성되는 이용자들의 게시물 가운데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등을 통해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정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할 경우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권리침해라는 이유만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위축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양자 간의 균형을 맞추어 심의하고 있다.

검색어정책소위원회는 회원사의 검색 서비스에 있어 검색어 자체 및 그 검색 결과 나타나는 게시물들에 의해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훼손 내지 사생활 침해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검색어의 자동완성 및 추천검색어에의 노출이 적절한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다만 검색어의 사회적 기능 및 이용자의 알 권리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검색어에 대한 노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나. 현황

<표2-10> 게시물정책소위원회/검색어정책소위원회 심의결정

연도	건수	심의결정
2021	5건	·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의 건 · '종교단체가 허위 등을 이유로 삭제 요청한 게시물' 심의의 건 〈저널 제43호에서 리뷰〉 · '전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의 건 · '종교단체의 종교 관련 비방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의 건 · '종교 단체의 명예훼손에 의한 게시물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2022	1건	· '사립대학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저널 제46호에서 리뷰〉
2023	2건	· '광역자치단체장의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저널 제51호에서 리뷰〉 · '종교 단체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총합	8건	

게시물정책소위원회와 검색어정책소위원회의 경우 정책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심의결정들을 토대로 정책규정의 실제에 있어서의 적용 사례가 축적되어 회원사에서 자체적인 규정 적용과 처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심의 상정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다. 게시물정책소위원회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8차례, 검색어정책소위원회의 경우 같은 기간 3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위원회는 사회적 환경 및 인식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이용자가 KISO에서의 중립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일관된 게시물과 검색어의 정책 적용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게시물의 경우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게시물들에 대한 심의, 그리고 법인에 해당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게시물들에 대한 심의가 다수 이루어졌고, 검색어 또한 종교단체에 대한 검색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2.2. 혐오표현심의위원회

<표2-11>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위원

성 명	소 속
이승선 위원장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민호 위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위원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유현경 위원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윤성옥 위원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정필운 위원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최항섭 위원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표2-12>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참여사

참여사 현황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가. 개요

KISO는 혐오·차별표현에 대한 법적 공백 속에서 2014년에 도입한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을 시작으로 꾸준히 혐오·차별표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2022년에는 국어사전 속 차별·비하표현을 검토하여 네이버와 카카오 어학사전에 이용자 주의 표시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상 혐오·차별표현에 대한 대중들의 인지 수준과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어 그 규제의 필요성은 감지되고 있었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혐오표현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규정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적규제가 활발히 논의되었다.

이에 KISO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혐오·차별표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위를 구성하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공동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슈에 대응하고자 2022년 8월 혐오표현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KISO는 혐오표현심의위원회를 통해 혐오표현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다양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미디어·국어학·사회학·법학 등 관련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발족 이후부터 2023년까지 총 17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나. 현황

1) 가이드라인 수립

2022년 8월에 출범한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8개월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2023년 4월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부터 적용범위, 회원사와 이용자의 의무, 판단과 조치 등을 담았다.

우선,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대해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혐오표현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이상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세 요건 중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이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혐오표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해 판단한다.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인 업무 관련된 표현 △공직자, 언론사 등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기타 표현은 혐오표현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영역에 대해 적용되며, 혐오표현으로 판단될 경우 삭제,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때 작성자는 혐오표현이 아님을 소명하며 재게시를 요구하는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KISO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돼야 하며,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밝히고 있다. 다만,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며,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함께 가져간다.

<표2-13>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회원사의 의무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제7조 피해예방 조치
제8조 혐오표현의 신고 등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제10조 적용의 제외
제11조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
제12조 이의제기 등
제13조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2) 이용자 인식 조사 실시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2023년 온라인 혐오댓글에 대한 이용자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총 1,000개의 표본으로 진행하였고 조사문항은 접미사, 접두사에 해당하는 표현, 성 관련 표현, 성적지향 관련 표현, 그외 일상적 표현, 빈곤 관련 표현, 종교 관련 표현들에 대해 그것을 어느 정도로 혐오표현으로 인식하는지를 알기 위해 실시되었다. 혐오표현 인식과 더불어 혐오표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물어보았다.

전체 표현들 중에 70%가 넘는 대부분의 표현들이 국민들로부터 '혐오표현에 가깝거나 명백한 혐오표현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특히 노인의 육체적 노화에 대한 부정적 표현, 지역에 대한 부정적 표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은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혐오표현에 가깝거나 명백한 혐오표현이다'라고 인식되고 있었다.

본 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 결과가 어떤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데, 이는 응답자가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언론기사의 내용과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을 했기 때문이다.

3. 서비스운영분과

3.1. 서비스운영소위원회

<표2-14> 서비스운영소위원회 위원

성 명	소 속
김민호 위원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창근 위원 (전위원장)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권헌영 위원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배진아 위원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

※ 2021년 8월 정책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위원장 교체

<표2-15> 서비스운영소위원회 참여사

참여사 현황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이스트에이드, 뽐뿌커뮤니케이션, 씨엘커뮤니케이션즈, 인비전커뮤니티, 씨나인, 인벤

가. 개요

서비스운영소위원회는 기존 인물정보서비스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이어받아 2020년 12월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분과 업무를 시작하였다. 서비스운영소위원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산업 환경, 직업별 인구, 이용자들의 직업 인지도 등을 반영하여 KISO 직업목록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신규 직업명 추가 △등재기준 변경 △가이드라인 개정 △인물 등재 관련 개별 사안에 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주요하게 다룬다.

서비스운영소위원회는 최근 검색 수요의 변화와 인물정보 서비스의 성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직업군을 늘리고 등재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수행해오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직업 분류 기준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상 등록이 가능한 인물의 구체적인 기준을 직업별로 검토하고, 해당 직업에서의 경력 및 조건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검증 및 보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나. 인물정보서비스자문위원회[1](~2020년)

<표2-16> 인물정보서비스자문위원회 참여사

참여사 현황	네이버, 카카오

<표2-17> 인물정보서비스자문위원회 활동 내역

2016	6월	· 제3자 권리침해 가이드라인
	7월	· 인물정보 서비스 평가 및 설문조사(숭실대)
	12월	· 직업별 인물정보 등록 기준 개선 보고서
2017	3~5월	· 문화예술계 등재기준 마련을 위한 외부 전문가 인터뷰(미술인, 문학인, 문화예술인 등)
	7월	· 직업별 인물정보 등재 기준 개선 보고서
2018	4월	· 카카오 참여 · 명칭 변경(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 → 인물정보서비스자문위원회) · 인물정보 등재 기본 원칙 수립
2019	6월	·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 공개 · 회원사 간 신규 직업목록 통합 및 직업별 공동 등재기준 마련
2020	2월	· 통합 직업목록 및 직업별 등재기준 공개 · 위원회 활동 종료

인물정보서비스자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강화 및 네이버 인물정보 서비스 체계 정비 등의 배경 하에 네이버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 인물정보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후 2018년 4월 카카오가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였고, 이에 따라 인물정보 등록의 기본 원칙과 기재 기준에 대해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인물정보서비스자문위원회는 배영 교수(포항공과대 인문사회학부)를 위원장으로 박희진 교수(한성대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1 직업목록 수정·보완 업무는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2013~2017), '인물정보서비스자문위원회'(2018~2020)를 거쳐 KISO 구조 개편에 따라 '서비스운영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조인혜 사무처장(한국프롭테크포럼) 등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어 2020년 2월까지 운영되었으며 2016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37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인물정보서비스자문위원회는 각 회원사의 인물정보에 등재되는 인물에 대한 등재기준을 결정하고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이용자에게 인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인물정보서비스자문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인물정보 서비스에 있어 회원사 간 직업목록을 통합하여 이용자들이 정확한 인물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각 직업의 등재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필요에 맞춘 등록 가능한 인물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였고,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물정보 등재에 관한 체계적·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2017년에는 등재기준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미술인, 문학인, 문화예술인 등)를 심층 인터뷰하였고, 수차례의 보완과 재검토가 이루어진 직업별 등록 기준은 2017년 상반기 '인물정보 등재기준 개선 보고서'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였다.

2018년 4월 회원사 카카오의 참여와 더불어 위원회 명칭을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에서 인물정보서비스자문위원회로 변경하였다.

2019년 6월 인물정보서비스자문위원회는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개했다. 본 가이드라인은 네이버 및 카카오의 인물정보 서비스가 동시대 주요 인물들에 대한 프로필 정보의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 주목하여 관련 정보의 수집을 비롯한 등재, 수정, 노출, 그리고 삭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인물정보 서비스 전 과정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원칙은 인물정보 주체의 권리보호와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용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인물에 대한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합리적인 서비스 운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주었다. 또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물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사회적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인물정보 서비스의 세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 등재와 수정, 노출, 삭제 등 전 과정에 걸쳐 합리성, 중립성, 정확성, 차별금지, 과잉수집금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등의 세부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자 하였다.

다. 현황

1) 다양한 직업군 반영

서비스운영소위원회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총 55건의 직업을 신설하고, 60건의 직업 등재기준을 수정하였다. 2021년 8차례, 2022년 7차례, 2023년 10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직업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등재기준을 완화하는 기조를 가져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군의 트렌드 변화와 이용자들의 검색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직업인 수가 많고 인지도는 높으나 그동안 등재 기준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직업을 신설하여 해당 직업인들의 자긍심 향상에 기여하였다.

2021년 8월 1인 사업자나 소상공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물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직업군을 추가하였다. 이에 앞서 '프로포커플레이어', '팝페라가수', '크리에이티브디렉터', '캘리그라퍼' 등도 새로운 직업명으로 추가했다. 서비스운영소위원회는 산업 트렌드의 변화, 이용자들의 검색 수요, 직업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직업명을 추가하고 있으며 해당 직업인들의 정체성, 업무 성격 등을 분석해 기존 분류 체계로 편입시키고 있다.

2021년 10월 서비스운영소위원회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축산인 등 4개 직업명을 신설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결정이다.

같은 해 12월 '댄서' 관련 직업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등 사회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직업분류 체계를 개정했다. 또한, 기존에 '무용인' 하위로 분류되어 있던 '안무가'를 상위 항목으로 조정하고, 그 하위에 △안무가 △댄스안무가 △무용안무가 등 유형별로 세분화한 직업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에는 이용자 직업 수요가 많은 '래퍼'를 신규 직업명으로 추가했다. 2023년에는 세일즈매니저, 보험컨설턴트, 웨딩플래너, 등물미용사, 데이터분석가, 드론조종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새롭게 직업 목록에 반영하였다.

2) 인물정보 등재·삭제에 대한 심의 및 가이드라인 수정

회원사는 KISO의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물정보 신청인의 등재 요청을 처리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 해석 등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운영소위에서 개별 안건에 대한 판단을 실시하고 있다. 회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위는 인물정보 등재 거부 또는 삭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여 실무에서 명확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비스운영소위원회에서는 3회에 걸쳐 가상인물이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였다. 이는 생성형 AI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일반 이용자도 가상인물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사 서비스 운영에 참고가 되었다.

2022년 1월에는 학력 기재 시 대학과 학과명의 공개 단위를 검토하고 기준을 마련했다.

2022년 2월과 5월에는 부정적 이슈 인물에 대한 등재 유예기간과 삭제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인물정보의 등재 기본 원칙은 이용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많이 찾고 있거나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인물정보에 등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나, 이용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해당 인물의 불법행위, 범죄행위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부정적인 이슈에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인의 인물정보가 필요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등재 여부에 대하여 KISO 서비스운영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표2-18> 서비스운영소위원회 주요 성과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규 직업명 신설	프로포커플레이어, 팝페라가수, 크리에이티브디렉터, 캘리그라퍼 , 출판인, 개인사업자, 타악기 연주가, 제과제빵사,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축산인, 댄서, 댄스안무가, 무용안무가	래퍼, 대통령당선인, 그림책작가, 홍보수석, 안경사, 작업치료사, 객실승무원, 항공기객실승무원, 선박객실승무원, 열차객실승무원, 국정기획수석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영양사,헤드헌터, 정보통신전문가, 데이터분석가, 정보보안전문가, 동물관리종사자, 동물미용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드론조종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마케터, 상품기획자, 장례지도사, 가맹거래사, 웨딩플래너,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보험컨설턴트, 보석감정가, 청소년지도사, 세일즈매니저, 강사, 공인중개사, 안마사

직업 등재 기준 개정	미술인, 공예가 등 총 17개 직업,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총 4개 직업, 쇼핑호스트, 출판편집자 직업명 수정 및 등재기준 개정, 군인, 공군, 육군, 해군 등 총 4개 직업, 온라인콘텐츠창작자, 문학인 하위 직군, 비걸 등 3개 직업	연구인, 학술인, 학자, 만화가, 만화스토리작가, 소설가	물리치료사, 수의사, 안경사, 약사, 작업치료사, 한약사, 감정평가사, 건축가, 건축사, 관세사, 손해사정사, 외국공인회계사, 외국세무사, 행정사, 골프선수, 배우, 대학교수, 대학총장, 대학부총장, 대학학장, 명예교수, 대학강사, 모델
기타	– 가이드라인 개정 : 개편에 따라 활동주체를 'KISO 서비스운영분과 서비스운영소위원회'로 변경 – 학력 등재 기준 보강 – 전문자격인 직군을 삭제하고 기존 전문자격인 하위 직군을 전문직업인 하위 직군으로 개정	– '작품' 기준 재검토 – 학력 기재 기준 검토 – 가이드라인 개정 : 인물정보 삭제의 절차 중 '요청에 의하지 않은 삭제' 수정. 부정적 이슈 인물에 대한 등재 유예기간 논의 등을 반영함	– 가이드라인 개정: '인물정보 등재의 기본원칙'과 '인물정보 삭제의 원칙'의 '필요성의 원칙'에서 동일하게 '불법행위, 범죄행위, 또는 기타 부정적 이슈'를 삭제함 – '단체' 등재 기준 검토 – 특례 시 반영 여부 심의

3.2. 어학사전워킹그룹(2021~2022년)

<표2-19> 어학사전워킹그룹 참여사

참여사 현황	네이버, 카카오

가. 개요

어학사전 표현 가운데 과거에는 흔히 쓰였던 표현이나 오늘날에는 차별·비하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에 KISO는 포털이 제공하는 어학사전 서비스 내 '차별·비하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8월 어학사전워킹그룹을 신설하였다. 이는 회원사인 네이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카카오도 그 취지에 공감하여 동참하였다. 워킹그룹에는 위원장으로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과대학)를 비롯해 위원으로 강재형 아나운서(MBC),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유현경 교수(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윤석희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법무법인 우창),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등 학계, 법조계, 방송계 등에서 폭넓게 참여하였다.

워킹그룹은 2021년 5차례, 2022년 6차례 회의를 통해 포털 어학사전 서비스에 적용될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차별표현 바로알기 캠페인'을 통해 국어사전 내 차별·비하적 표현에 대해 이용자들이 주의를 환기하는 작업을 했다. 워킹그룹은 2022년 10월 한글날에 맞춰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간담회를 가지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하였다. 워킹그룹에서 실시한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연구는 혐오표현심의위원회로 이어지게 되었다.

나. 주요 성과

1)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KISO는 2022년 3월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언어생활 보호', '인격 존중과 동등 대우', '어학사전 편찬 전문성 존중과 저작권 보호' 등 세 가지 원칙을 수립하고, 표제어나 용례 등에 차별·비하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주의 알림'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삭제 등의 조치를 통해 규제하기보다는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건강한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표2-20>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원칙
제3조 차별·비하표현 등에 대한 조치

2) '차별표현 바로알기 캠페인' 진행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국어사전에서 특정 표제어를 검색하면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차별표현 바로알기 캠페인' 페이지로 연결된다. 무심코 해당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지 않도록 생각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그림2-1> 차별표현 바로알기 캠페인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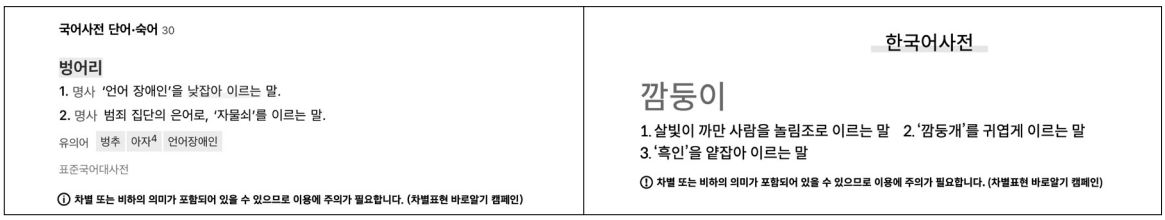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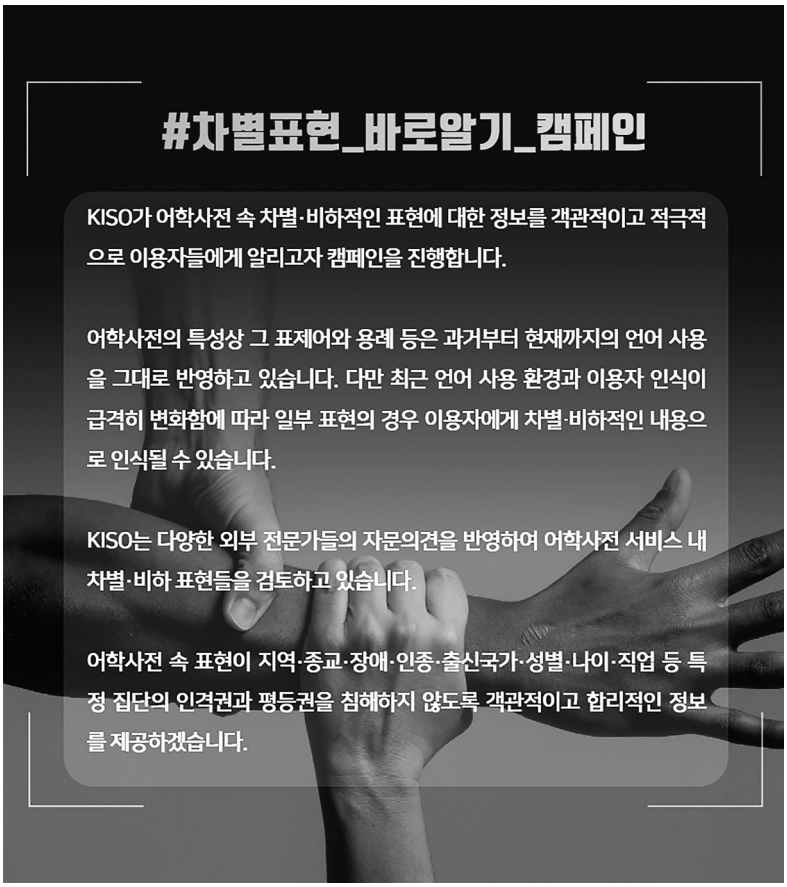

이는 어학사전워킹그룹의 활동 결과이다. 워킹그룹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학사전 서비스 내 표제어 등이 특정 집단에 대해 모욕적이거나 차별·비하적인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 이용자 주의를 표시하였다. 2022년 3월 1차적으로 '인종·출신국가' 관련 차별표현에 대해 이용자 주의 표시를 적용하였고, 9월에는 690여 개 단어에 대해 적용을 완료하였다. 해당 작업을 위해 워킹그룹은 어학사전 서비스 내 1만여 개 표제어를 개별 검토하는 작업을 거쳤다.

3) '국어사전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평정보고서' 발간

워킹그룹은 어학사전 내 1만여 개 표제어를 검토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구팀(팀장 김상민)과 협업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였다. 모든 개별 단어에 대해 말뭉치 혹은 빅데이터 자료를 조사하여 차별·비하 예문 비율을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판단을 더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표준국어대사전』 등에서 차별·비하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패턴을 가진 단어들을 선별하였다. '낮잡는 뜻으로, 얕잡아 이르는, 속된 말로...' 등의 뜻풀이를 가진 단어 1만여 개 가운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면서 고빈도 단어인 표준어를 추출했다. 현대 국어 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는 중요도가 낮다고 보고 고빈도 단어만을 추출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 검토 대상 단어를 확정하였고 '지역, 종교, 장애...' 등 KISO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상 명시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말뭉치에서의 쓰임을 확인했다. 검토 대상 단어가 차별·비하적 표현으로 쓰이는지 실제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블로그, 뉴스 등에 나타난 해당 언어의 연어(連語) 관계의 긍정, 부정, 중립 비율을 확인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워킹그룹은 차별·비하의 정도에 대해 네 등급으로 구분하였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국어사전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평정보고서'로 발표되었다. 이는 개별 표제어 수준에서 차별·비하적 쓰임을 검토하고 계량적 판단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유례없는 작업으로 평가되었다.

4. 온라인광고분과

4.1. 부동산광고소위원회

<표2-21> 부동산광고소위원회 위원

성 명	소 속
정경오 위원장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현경 위원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유선종 위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표2-22> 부동산광고소위원회 참여사

참여사 현황	네이버, 카카오, 공실클럽, 다방, 더비즈, 데일리팜, 두꺼비세상, 렛츠, 매경부동산,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부동산포스, 산업부동산, 선방, 아실, 알터부동산, 우리집, 울산교차로, 인터넷교차로, 천안교차로, 텐컴즈, 한경닷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B리브, LH

가. 개요

온라인광고분과는 2021년 2월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역할로 각 사업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검증 가이드라인 및 기준을 정립하여 공적규제의 빈 부분을 메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이전에 있던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온라인광고분과는 포괄적인 자율규제 측면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부동산광고소위원회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행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의 한계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자율규약, 운영규정, 가이드라인 등 현행 규정을 재정비하여 처리 근거와 기준을 체계화시키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참여사들이 준수하고 있다.

나날이 변화하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롭게 등장하는 매물 광고 유형을 다루고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23년까지 15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나. 현황

<표2-23> 부동산광고소위원회 주요 성과

1차, 4차, 5차	개인정보 이용 동의 관련 절차 보완
1차	클린관리센터 내 경고 및 페널티 통합 관리 결정
1차~5차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개정
5차~7차	방치매물 관련 자율규제 대응 → 실거래 기반 허위매물 모니터링 시행
7차	네이버 부동산 내 주상복합아파트 표기 심의
9차	거래완료 매물의 세부 정의 구체화
9차	만 14세 미만, 만 14~19세 미만 미성년자 소유 매물 광고 등록 절차 심의(법률행위,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12차	등기부등본 유효기간 정립(2개월 → 3개월)
13차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표시 광고 적절성에 대한 검토
14차~15차	네이버 부동산 내 건축물 카테고리 개편안 논의

부동산광고소위원회는 출범부터 현재까지 16차례 회의를 거쳐 온라인 부동산 광고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고 심의하였다.

2021년에는 거듭된 회의를 통해 부동산매물검증센터와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내 개인정보 이용 동의와 관련하여 절차를 보완하였다. 또한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내 경고 및 페널티를 참여사별 관리가 아닌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도 현실에 맞게 최신화하여 개정하였다.

2022년에는 거래완료되어 방치된 매물(소위 방치매물)에 대해 어떻게 자율규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는 네이버페이 부동산과 한국부동산원이 진행하고 있는 '실거래 기반 허위매물 모니터링' 시행에 발판이 되었다.

이외에도 '네이버 부동산 내 주상복합아파트 표기 심의',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표시 광고 적절성에 대한 검토', '거래완료

매물의 세부 정의 구체화', '등기부등본 유효기간 정립' 등 굵직한 심의를 통해 부동산매물검증센터와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행해지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 허위매물 자율규제가 보다 잘 이뤄질 수 있는 큰 발판이 되었다.

5. 특별분과

5.1. 자율규제DB소위원회

<표2-24> 자율규제DB소위원회 위원

성 명	소 속
황용석 위원장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재신 위원 (전 위원장)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차미영 위원	KAIST 전산학부 교수
박희진 위원	한성대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 2023년 8월 정책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위원장 교체

<표2-25> 자율규제DB소위원회 참여사

참여사 현황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가. 개요

조직구조 개편에 따라 제4분과인 특별분과가 출범하였다. 특별분과는 자율규제DB소위원회와 신기술소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게시물, 검색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IT 영역의 자율규제로 외연을 확대하고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율규제DB소위원회는 분과 체계 개편 이후 기존의 온라인청소년보호체계구축위원회의 활동을 이어받아 2021년 6월 정책위원회 안건 통과 후 같은 해 7월에 정식 활동을 시작하였다. 회원사가 KISO에 공여한 욕설·비속어 및 청소년보호검색어 데이터베이스(DB)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식 출범 이후 2023년까지 자율규제DB소위원회는 18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나. 온라인청소년보호체계구축위원회[2]

온라인청소년보호체계구축위원회(이하 온청위)는 청소년 유해물이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7월 설립된 정책위원회 산하 위원회이다.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 3사와 함께 음란물 및 청소년 유해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검색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주요 사업으로 하였다. 2014년 2월 이해완 당시 정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미디어 전문가인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데이터 전문가인 차미영 교수(KAIST 전산학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식 출범하였다. 이후 2018년 9월 이해완 위원장의 사임으로 황용석 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면서 김학웅 변호사(법무법인 시화)와 박희진 교수(한성대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를 위원으로 초빙하여 운영되었다.

온청위는 2016년 이후 검색어 및 검색 결과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 그 결과의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청소년유해검색어의

[2] 온라인청소년보호체계구축위원회는 2013년 7월 설립된 정책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조직구조 개편 이후 자율규제DB소위원회에서 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정에 관한 기준 및 DB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회원사의 요청에 따라 청소년유해검색어 등에 대한 추가 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청소년유해검색어 협력을 위해 각 사의 청소년유해검색어를 KISO에 제공하였고, 중복 제거 후 KISO 사무처에서 이를 분석, 1차 통합 DB를 구축하였다. 온청위는 2017년 8월 청소년유해검색어 분류 및 검토 작업을 완료하였고, 2018년 5월 약 6만 단어를 분류하여 DB를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DB의 분류 기준 및 업데이트에 관한 심의를 진행해왔다.

이어 2018년 7월 욕설 통합 논의를 시작하여 같은 해 11월 네이버와 카카오의 욕설 DB를 수령해 이를 통합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욕설 스코어링 기준을 마련하여 2019년 11월 KISO 사무처에서 코딩 작업을 수행 완료하였고, 온청위 최종 검토 및 데이터 공개 방안을 협의하여 2019년 12월 욕설 DB 20만 건을 회원사 대상으로 공개하였다. 이후 자체적으로 API 방식으로 욕설 DB에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9년 12월 회원사인 뽐뿌커뮤니케이션의 협조로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당시 코딩된 DB와 API는 적용에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실제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다. 현황

자율규제DB소위원회는 2017년 온청위에서 수립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정책'에 따라 2018년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회원사가 공동으로 지정한 청소년보호검색어 DB를 통합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회원사 서비스에 적용해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청소년보호검색어 DB 회원사 간 일치 작업 진행 및 회원사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 3사는 KISO와 공동으로 청소년보호검색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다. 현재 약 5만 1,000개의 청소년보호검색어 DB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및 조정을 통해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KISO 자율규제DB소위원회에서는 과거에 청소년보호검색어로 지정됐다가 검색어가 더 이상 유해한 검색 결과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제외하는 심의도 동시에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검색어로 지정되면, 해당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검색 결과의 노출이 제한된다. 일반 이용자는 연령 확인 절차를 통해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KISO는 양사의 DB를 제공받아 청소년보호검색어, 욕설·비속어 등으로 분류해 해당 DB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청소년보호검색어의 경우 양사의 DB 일치 작업 중 사무처 검토 결과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키워드에 대해서는 회원사 위원과 사전 검토를 거쳐 자율규제DB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

<표2-26> 청소년보호검색어 데이터베이스 통합 현황

- 통합 건수 : 10,108건
- 통합 기간 : 2018 .8. ~ 2023. 12.

일치	포함	예외일치	예외포함
9,005건	126건	892건	77건

3 기존에는 '청소년유해검색어'로 통상적으로 사용했지만, 2023년 11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청소년보호검색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표2-27> 욕설·비속어 데이터베이스 통합 현황

통합 회차	보유 DB 개수
1차 통합	20만 건(욕설 기본형 3,917개)
2차 통합	60만 건

KISO는 2017년 2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후 2018년 5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회원사가 공동으로 청소년보호검색어 DB를 통합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처리 절차는 네이버와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3사가 공동으로 협의한 청소년보호검색어에 대해 사무처가 검토 후 자율규제DB소위원회에 보고하여 이를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가·제거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판단이 어려운 것들은 자율규제DB소위원회에서 심의해 판단하고 있다.

자율규제DB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자율규제 원칙과 배경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공개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세이프넷(SafeNet) 등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KISO 청소년보호검색어와 같이 언어를 대상으로 적용하기에 간극이 있다고 판단해 자체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2023년 11월 청소년보호검색어 관련 업무 처리 절차, 실행 방안 등 세부적인 실무 지침을 담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개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청소년보호검색어의 정의, 처리 절차와 유형 등을 구체화해 명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보호 검색의 분류는 크게 '불법정보 검색 결과 노출 검색어', '선정적 검색 결과 노출 검색어', '기타 유해 검색 결과 노출 검색어'로 구분해 작성하였다.

<표2-28>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리 가이드라인 목차

제1조 목적과 취지
제2조 정의
제3조 청소년 보호 조치의 적용
제4조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처리 절차
제5조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처리

2021년 9월에는 자율규제DB소위원회에서 '강간' 관련 키워드의 처리 기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강간' 관련 키워드는 모두 청소년보호검색어로 하되, 그 의미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성 키워드의 경우 제외 처리해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항목을 구성해 해당되는 검색어를 예외로 처리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2022년 2월 자율규제DB소위원회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으로 구축한 청소년보호검색어 및 욕설·비속어 DB 관련 분류 체계를 재검토하고 분류 기준 및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말뭉치 DB 구축 관련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였다.

유희정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가 '비윤리적 표현 말뭉치 사업 추진 배경 및 현황'을 발표하고 비윤리적 표현 말뭉치 시범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했다.

회원사에서는 정연주 네이버 과장이 'NAVER 청유어 및 욕설 DB 운영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김대기 카카오 수석이 '카카오 자율규제 DB 현황'을 소개했다. 회원사들은 현재 회원사에 적용 중인 댓글 욕설 치환 시스템과 청소년보호검색어 현황 등에 대

해 발표했다.

2022년 4월 자율규제DB소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향후 운영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향후 고도화된 DB 형태로 가기 위해 기술적으로 자동화된 머신러닝을 고려한 형태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KISO가 보유한 욕설 DB에 대해 이용자에게 선택 옵션을 주는 기능, 욕설 강도에 따라 레벨을 나누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자율규제DB소위원회에서는 2022년 8월 회의에서 2018년 1차 통합 작업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가 추가한 청소년보호검색어 DB 약 1만 5,000건을 승인하였다.

2022년 9월 회의에서는 2022년 출시한 욕설·비속어 필터링 시스템의 명칭을 'KISO Safeguard System(KSS)'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한글 명칭은 'KISO 이용자보호시스템'으로 정하였다. 아울러 자율규제DB소위원회에서는 KSS 이용사에 적용되는 서비스 이용 약관을 논의하여 마련하였다.

자율규제DB소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 이슈 중 하나인 딥페이크 관련 일부 검색어를 청소년보호검색어로 지정하였다. 이같은 조치는 지인 합성 등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기타 형법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고, 성적 착취나 폭력으로의 연결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수행한 것이다.

자율규제DB소위원회에서는 2023년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110개를 새로 추가했다.

라. KISO 이용자보호시스템(KSS, KISO Safeguard System)

<표2-29> KISO 이용자보호시스템 이용사

이용사 현황	뽐뿌커뮤니케이션, 비빔블, 번개장터, 현대글로비스, 비씨카드, 라이프페스타, 동아닷컴, 스모어톡, 한국방송공사(KBS), 이든앤앨리스마케팅,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글과컴퓨터, 화성시 환경사업소, 멋쟁이사자처럼, 이팝소프트, 개념원리, 온누리스토어, 제네시스랩, 테바소프트

<표2-30> KISO 이용자보호시스템 연혁

2018년 3월	네이버, 카카오 욕설 DB 통합 논의 시작
2018년 11월	1차 통합 완료
2019년 5월	DB 제외 키워드 및 분류방식 논의
2021년 6월	자율규제DB소위원회 출범
2021년 11월~12월	자율규제DB소위 KSS 개발 결정 및 정책위원회 보고
2022년 5월	KSS 기술 검토 및 개발 착수
2022년 9월	KSS 개발 완료
2022년 12월	DB 공개 및 베타테스트 시작 (약 40여 개 업체 참여)
2023년 3월	KSS 한글 명칭 'KISO 이용자보호시스템' 확정
2023년 5월	베타테스트 종료
2023년 6월	정식 서비스 출시
2023년 6월	제8회 휴먼테크놀로지어워드 2023 대상 수상

<표2-31> KISO 이용자보호시스템 현황

정식 출시일	2023년 6월 19일
보유 DB	욕설/비속어 약 60만 건
주요 기능	- 욕설/비속어 DB를 API 형태로 전달. 플랫폼 내 게시물과 댓글 등 필터링 기능 수행 - 변형 욕설/비속어 및 특수문자 등이 포함된 혼합 형태 단어 치환 가능
사용 업체	IT 스타트업, 커뮤니티, 언론사 등 19개 업체 가입(2023년 12월)

KISO 회원사인 국내 주요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는 수년간 자체 구축한 욕설·비속어 데이터베이스(DB) 약 60만 건을 KISO에 무상으로 공여했다. KISO가 보유한 욕설·비속어 DB를 자체 DB 수집이 어려운 중소 규모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API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후 약 5개월간의 개발 작업 및 검수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다. KISO는 2022년 12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KSS(KISO Safeguard System)'로 명명하였다.

KSS는 약 60만 개의 욕설·비속어 DB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장 중에 사전에 포함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빠르게 검사하고 그 결과를 되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API 서비스이다.

DB를 직접 제공할 경우 회원사 공통의 정책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치환이 필요한 단어를 안내해주는 API 방식을 통해 제공하기로 하였다.

KSS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욕설 여부를 판단하며 DB에 포함된 단어의 경우 변형 욕설도 필터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속적인 DB 제공으로 인터넷상 빠르게 전파되는 신종 욕설을 신속하게 추가해 대응할 수 있다. KSS는 2023년 가장 인간친화적인 기술로 인정받아 제8회 휴먼테크놀로지어워드 2023(HTA)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속적인 개발 비용 및 서버 유지 보수 비용 등은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사·준회원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해당 시스템이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초기에 많은 회원사가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공공기관 및 언론사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현재 IT 스타트업, 온라인 커뮤니티, 언론사 등 19개 업체가 KSS를 사용하고 있다.

KSS는 2023년 12월까지 총 786만 694건의 호출 수를 기록했으며 그 중 욕설·비속어 15만 1,825건(1.93%)이 필터링되었다.

향후 KISO는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 있는 욕설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욕설을 분류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세분화 작업을 통해 보다 넓은 범위의 이용자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5.2. 신기술소위원회

<표2-32> 신기술소위원회 위원

성 명	소 속
이재신 위원장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현경 위원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윤혜선 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호 위원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표2-33> 신기술소위원회 참여사

참여사 현황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심심이, 소프트리에이아이, 스캐터랩, 튜닙

가. 개요

신기술소위원회는 2021년 6월 인공지능(AI) 등 IT 신기술과 관련된 공동의 행위규범을 마련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출범 이후 2023년 12월 기준 18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IT 플랫폼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영향력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프라이버시, 혐오·차별 등 기술의 안전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KISO는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예상되는 이슈에 대해 자율규제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동 기준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현황

신기술소위원회는 출범회의에서 자율규제를 통한 인공지능 이슈 공동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관련 윤리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공동 규범 제정 및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신기술소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정부규제나 입법에 앞서 회원사가 자율규제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윤리강령 및 가이드라인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기술소위원회에서는 2022년 1월 국내외 AI 규제 정책과 AI 관련 규제법에 대한 연구 차원에서 윤혜선 교수가 'EU의 AI 리스크 관리 및 대응 전략 - EU AI 법안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2022년 5월 회의에서 챗봇 서비스에 대한 규제 이슈가 있어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황을 탐색하기 위해 신기술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챗봇 회원사의 서비스를 살펴보았다.

최정회 심심이 대표가 '심심이, 나쁜 말 그리고 AI 윤리'를, 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는 '이루다 서비스의 현황'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신기술소위원회는 문제된 사례를 탐색해 활동 방향 및 안건을 논의하였다.

2022년 7월 신기술소위원회는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관련 자율규제 공동 기준 마련에 합의하고 챗봇 서비스 윤리에 대한 자율규제 공동 원칙을 제정, 향후 정책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한 윤리 원칙을 정립하기로 했다. 문자와 음성을 구분하지 않고 대화형 AI 챗봇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 위해 2022년 9월 이대호 교수가 '인공지능 챗봇의 현황 및 유형'에 대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신기술소위원회는 법령, 인공지능 윤리, 기업 내부 윤리규칙 등을 고려해 총 7회 이상 전문가 위원 및 회원사 실무자가 참여한 집단 토론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업계 최초 공통의 인공지능 자율규제 공동 윤리 원칙을 마련하였다. 김현경 교수가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기본구조(안)'를 설계하고, 가이드라인에 규정될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집단토론회를 3차례 개최했다. 다양한 논의 끝에 그 결과물로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을 2023년 9월 발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활용 등의 과정에서 챗봇이 인간과 공존하며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생성형 AI와 같은 신기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 및 적용 범위를 구성하였다. 시장 참여자들(개발자, 운영자, 이용자)이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갈등 사안 발생 시 대응 노력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예측 불가능한 인공지능 특성을 고려하여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도출한 것이다.

법학, 미디어, 공학 전문가 그룹이 주도해 마련하고 신기술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 주요 챗봇 서비스 회사의 실무진이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고 내용을 검토하였다. 방향성 확정 이후 7회 이상 전문가 위원 및 회원사 실무자 참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민간기구를 통해 챗봇에 특화된 민간 주도형 자율적 가이드라인이 최초로 발표된 것은 자율규제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연성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사의 출시 예정 신규 서비스 등에 적용되었다.

<표2-34>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목차

1. 배경 및 목적
2. 기본원칙
3. 용어의 정의
4. 개발자 준수사항
5. 운영자 준수사항
6. 이용자 준수사항

6. 네이버검색어검증위원회

6.1. 제2기 네이버검색어검증위원회 (2016~2020년)

가. 개요

2016년 초 네이버의 실시간급상승검색어 등의 노출에서 제외되는 검색어에 대해 일상적인 점검활동을 할 수 있는 네이버검색어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가 구성되었다.

KISO는 검증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이전 검증위원회의 구성원이었던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양재)와 이재신 교수(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를 검증위원장 및 검증위원으로 위촉하고, 새로이 황성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성옥 교수(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이승환 교수(대구대학교 DU인재학부)를 위촉하여, 2016년 5월 제2기 검증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제2기 검증위원회는 그 활동 목표를 네이버의 '노출 제외 검색어'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으로 설정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한 활동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검증위원회는 2015년 1차 검증부터 2018년 6차 검증까지 각 차수별 6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나. 주요 성과

1) 1차 검증 (검증대상 기간 : 2015.12.~2016.5.)

제2기 1차 검증위원회에서는 네이버의 선거운동 기간 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후보자명 자동완성·연관검색 노출 중단 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였다.

검증위원회는 후보자 이름과 결합한 일부 자동완성어 및 연관검색어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사기업인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legal risk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기간 중 '후보자명 자동완성·연관검색 노출 중단 정책'이 일면 이해되며, 네이버에게 재량권이 있는 정책적 선택사항이라 판단하였다. 다만, 검색 서비스의 본질과 특성, 자동완성어·연관검색어 서비스가 갖는 순기능, 선거의 의미, 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의 최대한 보장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선거기간 중 '후보자명 자동완성·연관검색 노출'을 전면적이고 일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2) 2차 검증 (검증대상 기간 : 2016.6.~2016.11.)

제2기 검증위원회는 2차 검증보고서에서 일상 점검 외에 특히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슈'에 관한 제외검색어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또한 검증위원회는 2016년 연합뉴스에 보도된 "네이버·다음 실시간 검색어 '정부 요청 시 삭제' 조항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 보도 이후 네이버가 검색어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진 것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다.

검증위원회는 2차 보고서에서 투명한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네이버의 내부 운영기준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에 앞서 네이버의 실시간급상승검색어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제안하였으며, 실시간급상승검색어에 대한 일반 운영기준에 관한 내용을 2차 검증보고서에 제시하였다.

3) 3차 검증 (검증대상 기간 : 2016.12.~2017.5.)

2기 검증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이용자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윤여진 위원(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과 김가연 위원(전 오픈넷 변호사)을 추가로 위촉하였다.

검증위원회는 3차 검증에서 역시 일반인과 공인의 구별 기준 문제, 언론보도를 기준으로 공적 관심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의 타당성, 연예인 관련 검색어, 기업 관련 검색어의 문제는 이전 검증과 동일한 상황이고 쉽게 그 방향을 수립하기 어려운 쟁점이라고 판단하고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검증위원회는 3차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운영기준과 함께 자동완성·연관검색어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이러한 운영기준을 바탕으로 하위의 운영가이드를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개인정보, 명예훼손, 성인·음란성, 불법·범죄성 4개의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4) 4차 검증 (검증대상 기간 : 2017.6.~2017.11.)

위원회는 4차 검증에서 전반적으로 처리 건수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검증 대상 기간에 대형의 정치적·사회적 사안이 없었던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로 보이며 바람직한 변화로 평가하였다.

개인 신상정보 캐기성 연관·자동완성검색어는 피해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이를 배제하기 위한 신고에 의한 절차가 요구되므로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검수에 의한 배제 처리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언론보도가 있었던 사건에서의 범죄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자에 대한 연관·자동완성검색어의 경우, 단순한 개인 신상정보 캐기성과는 다른 측면을 가지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 이익과 알 권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5) 5차 검증 (검증대상 기간 : 2017.11.~2018.5.)

5차 검증에는 미투(MeToo) 등 사회적 이슈가 검색어를 통해 노출되면서 예년에 비해 명예훼손 관련 노출 제외가 많았다. 전체적으로 미투 관련 피해자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명예훼손 등으로 노출이 제외되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여지나, 미투의 명백한 가해자라고 언론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시간 검색어 생성, 노출 제외, 노출 제외 철회가 이루어졌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실시간 검색어 생성 및 노출 제외, 그리고 노출 제외 철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예인, 유명인들의 불법 및 특혜 관련 명예훼손에 의한 검색어 노출 제외에 대해서는 불법성이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 노출 제외 철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한편 연예인의 루머성 검색어는 악의적 의도로 생성되었을 수 있어 제외 처리는 적절했다고 평가하였다.

6) 6차 검증 (검증대상 기간 : 2018.6.~2018.12.)

네이버는 2018년 10월 실시간급상승검색어의 노출 및 노출 제외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이에 대해 검증위원회는 노출 제외 처리절차의 개편은 통계의 연속성 측면에서 일관되지 않게 되었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서비스 개편 이후 검색어의 노출 제외와 관련된 이력뿐만 아니라 노출 제외 이후의 만료나 삭제의 취소와 같은 검토사항이 모두 이력으로 남아 제외 사유 및 현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검증위원회는 그동안 분명한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쟁점 중 유명인(연예인 포함) 이름과 부정적 인상을 주는 단어가 결합된 검색어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리하였다.

6.2. 제3기 네이버검색어검증위원회

<표2-35> 제3기 네이버검색어검증위원회 위원

성 명	소 속
이재신 위원장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윤여진 위원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이승환 위원	대구대 DU인재학부 교수
이주은 위원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가. 개요

제3기 네이버검색어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는 인공지능(AI) 시스템 등 새롭게 변화한 시스템에서의 검색어 검증을 목표로 2021년 5월 출범하였다. 제3기 검증위원회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제외검색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하반기 연관·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한 집중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검증위원회는 각 검증 차수별 6회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나. 주요 성과

1) 1차 검증 (검증대상 기간 : 2020.1~2020.12.)

네이버는 2021년 초 KISO에 변화된 검색어 서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였다. 다만, 제3기 검증위원회는 네이버의 정책 변화로 2021년 폐지된 급상승검색어는 검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1차 보고서에서는 네이버의 2021년 2월 급상승검색어 서비스 종료 공지 및 서비스 중단 조치가 이뤄진 현실을 반영하였다. 즉, 종료된 서비스에 대한 검증은 네이버의 제외검색어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 활동을 목표로 서비스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활동방향과는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검증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검증위원회는 급상승검색어 검증을 제외하는 대신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 검증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2차 검증 (검증대상 기간 : 2021.1.~2021.12.)

2차 보고서는 딥페이크(deepfake) 등 유명인의 실물 얼굴 사진을 사진으로 합성한 이미지와 허위 스토리를 입힌 음란 영상 관련 내용을 중점 검토사항 중 하나로 살펴보았다. 위원회는 실물과의 사진 합성이 허구라고 해도, 온라인에서 사용자들이 실존 인물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인식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인공지능 관련 윤리적 검수 내용으로 판단, 음란성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는 검증위원회 최초로 '가상 인간과 관련된 검색어 처리에 대한 향후 고려 사항'을 검토·수록하였다. 위원회는 만약 가상 인간과 관련한 부적절한 검색어가 등장할 경우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이를 제외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평가하고 관련 내용을 제언 및 서술하였다.

3) 3차 검증 (검증대상 기간 : 2022.1.~2022.12.)

검증위원회는 3차 보고서에서 2022년 상·하반기 연관·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특히, 네이버의 서비스 개편사항에 대한 검토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네이버는 2018년 10월 급상승검색어 노출 제외 처리 시스템 개편, 2020년 2월 인물명 연관검색어 서비스에 대한 개선 조치, 2021년 2월에는 급상승검색어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네이버 검색어 서비스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피기 위해 급상승검색어 종료 시점을 전후로 검증 결과를 검토 · 분석해 제3차 보고서 부록에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서비스 중단과 검색어 서비스의 변화'라는 주제로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7. KISO JOURNAL

<표2-36> KISO JOURNAL 편집위원회 전·현직 위원

성 명	소 속
김현경 위원장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구본권 위원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김병일 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해원 위원	목포대 법학과 교수
박성순 위원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김훈건 위원	SK커뮤니케이션즈 법무팀 팀장

이희옥 위원	네이버 서비스정책실 부장
권경원 위원	카카오 대외협력팀 부장

성 명	소 속
황용석 전 위원장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황창근 전 위원장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권헌영 전 위원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유향 전 위원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이원태 전 위원	KISDI ICT전략연구실 박사
윤혜선 전 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학웅 전 위원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
임소혜 전 위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김효섭 전 위원	네이버
양현서 전 위원	카카오
허정일 전 위원	SK커뮤니케이션즈
서승원 전 위원	SK커뮤니케이션즈
최창근 전 위원	카카오
김성환 전 위원	카카오
전수민 전 위원	카카오

가. 개요

KISO 저널은 인터넷 산업 동향 및 관련 규제에 대한 국내외 소식을 전하고, KISO의 자율규제 활동을 소개하는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율규제 정보 제공을 목표로 창간되었다. 2009년 10월 저널 제1호를 시작으로 2023년 12월까지 총 53호의 저널이 발간되었으며, 2013년 3월 발간된 제10호부터는 시의성 있는 논의의 실시간 게재 등 보다 유연한 운영을 위해 KISO 저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KISO 저널은 뉴스레터를 통해 학계, 유관기관 및 관련 사업자, 일반 이용자, 기자 등 다양한 구독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문화시평>, <KISO위원 칼럼> 섹션 등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며 자율규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KISO 저널은 인터넷 자율규제 전문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저널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언론학, 법학 등의 학계, 언론계, 회원사, 유관기관 등의 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의성 있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인터넷 자율규제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KISO 자율규제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 현황

1) KISO JOURNAL 통계

<표2-37> KISO JOURNAL 주요 통계 기간 : 2016년(제22호)~2023년(제53호)

총 원고 419개, 저자 205명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38개
	기획동향 53개
	법제동향 59개
	국내외 주요 소식 54개
	이용자 섹션 49개
	문화시평 43개
	편집위원 칼럼(KISO위원 칼럼) 20개
	해외 자율규제 기구 소개 등 기타 원고 102개
해당 기간 DBpia 이용 수 총 112,196건, 최근 3년간 피인용 건수 82건	
해당 기간 KISO 저널 홈페이지 PV 총 582,480건(구글 애널리틱스)	

※ 제33호(2018년 12월)부터 DBpia와 제휴 시작
※ 구글 애널리틱스는 2018년 중반부터 도입
※ 편집위원 칼럼은 제50호(2023년 3월)부터 KISO위원 칼럼으로 개편됨

2) KISO JOURNAL 주요 성과

(1) 체계화

KISO 저널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하였다. 2016년 원고료 지급세칙을 제정하여 각 섹션마다 원고료 지급기준을 만들었다. 2020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원고료를 현실화시켰다. 이를 통해 양질의 집필진 섭외가 원활히 진행되어 원고의 품질이 향상되었다. 또한 KISO 저널 전문가 저자 Pool을 관리하기 위해 2022년 기존 저자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 홍보 및 소통 채널 강화

KISO 저널은 보다 다양한 루트로 홍보될 수 있게 홍보 채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2017년에는 전자서점 5곳(리디북스, 북큐브, 알라딘, 예스24, 반디)과 제휴하였고, 2018년에는 DBpia와, 2019년에는 전자서점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와 제휴를 완료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여러 통로로 손쉽게 콘텐츠를 검색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DBpia 서비스는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자들의 이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KISO 저널 온라인 납본을 하였고 2022년 국회도서관에도 납본을 진행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네이버 포스트와 카카오 브런치 계정을 신설하여 현재까지도 꾸준히 원고를 게재하고 있다.

(3) 전문가 인터뷰 및 특집호 발간

2017년 자율규제 관련 전문가를 5인 선정하여 릴레이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게재하였다. 2019년에는 저널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여 10주년 특집호(제34호)를 발간하였다. 10주년 특집호에서는 자율규제 10년 발전방향 모색에 관해 특별대담을 진행하였고 법적 환경의 변화 양상을 다루는 등 저널 10주년에 초점을 맞춰 발간하였다. 2022년에는 자율규제 특집호(제49호)를 발간하여 KISO 자율규제의 역사, 자율규제의 미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표2-38> KISO JOURNAL 주요 섹션별 현황

***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구분	제목	저자
제22호	소위 '◇◇◇ 사건'의 심의 결과 리뷰	이재진
제22호	선거기간 중 후보자 범위 관련 정책결정 해석 리뷰	류정호
제23호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황성기
제24호	사립대학 총장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결정 리뷰	장철준
제24호	○○○협회장의 자동완성검색어 '오진'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김학웅
제25호	기업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결정 리뷰	김보라미
제26호	'연예인 ○○○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의 건' 및 '○○ 그룹 회장 아내 검색어 삭제 요청의 건' 심의결정 리뷰	윤수정
제27호	주식회사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의 심의결정 리뷰	조정욱
제28호	㈜○○○ 성매매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윤성옥
제29호	연예인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황성기
제29호	비실명 보도 관련 검색어 삭제기준 정책규정 리뷰	이승환
제30호	온라인 공간의 가상 정체성과 현실 공간의 실제 정체성	최항섭
제30호	닉네임 언급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 심의결정 리뷰	조소영
제31호	연관검색어 관련 정책규정 개정의 건	손지원
제31호	가짜뉴스 관련 정책규정 개정의 건	구본권
제32호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심의의 건	김민정
제33호	소비자 리뷰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정경오
제33호	연예인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김학웅
제34호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정필운
제34호	식품회사 A의 관련 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결정문에 대한 리뷰	이병준
제35호	KISO 정책위원회 10년, 심의 사례 10선	KISO 정책팀
제35호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정필운
제36호	종교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 심의결정 리뷰	최종선
제36호	○○학원의 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김상순
제37호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임시조치와 공인성 판단 기준 – 일반인도 공인이 될 수 있는 예외	권헌영
제38호	공직 후보자 아들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김진곤
제39호	언론기관 대표의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황용석
제39호	의료기관 명칭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김학웅
제42호	○○협회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엄주희
제42호	정당의 허위사실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윤수정
제43호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기준 리뷰	황용석
제43호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에 대한 리뷰	박규환
제46호	사립대학교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황창근
제47호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리뷰	김민정
제48호	KISO 인물정보 서비스 정책 리뷰	황용석
제51호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제정 의의와 몇 가지 고려사항	이정념
제51호	'광역자치단체장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황용석
제53호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리뷰	오태원

*** 기획동향**

구분	제목	저자
제22호	소프트 테러 위험의 증가와 테러 정보의 수집 · 공유	이창범
제23호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관한 일고찰	전응준
제23호	인터넷방송 플랫폼 서비스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 사업자 · 기업 · BJ의 사회적 책무 등 현황 및 개선방안	강장묵
제24호	온라인 혐오 발언의 규율에 관한 유럽의 행동기준 및 KISO 정책규정에 대하여	이정념
제25호	〈기획특집①〉 검색엔진 알고리즘의 변천의 역사	박세용
제25호	〈기획특집②〉 검색 알고리즘과 권리침해 :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명과 암	김익현
제26호	한국 온라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와 영향력 – 일상의 촛불집회, 온라인 참여	조희정
제27호	2017년 '인터넷 이용 환경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나현수
제28호	인터넷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돼야 할까… '3종 세트'를 둘러싼 법 개정 논쟁	김현아
제29호	온라인 혐오 발언과 사회적 차별	이승현
제30호	'뉴노멀 시대', 방송 통신 규제의 올바른 방향	이대호
제32호	북한의 통신 · 인터넷 현황과 전망	김유향
제33호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주소 및 향후 전망	정규환
제34호	자율규제 10년 발전 방향 모색 특별 대담	KISO
제34호	최근 10년간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법적 환경의 변화 양상	황창근
제34호	정책규정 제5조와 제13조에 대한 리뷰 : 그 의의와 나아갈 길	황용석
제34호	국내 인터넷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배영
제34호	국가는 인터넷을 어디까지 규율해야 할까… 자율규제 시스템에 거는 기대	김현아
제34호	자율규제 최전방, KISO 사무처 직원 인터뷰	KISO
제35호	HTTPS 차단 논란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김승주
제35호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의 문제점	윤성옥
제35호	주요국의 OTT 규제 톺아보기	김대원, 김수원
제36호	질병으로 규정된 게임중독	김양중
제36호	국내 AI 정책 현황	최경준
제37호	[KISO포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 것인가 제1발제 :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의 쟁점과 이용자 인식	이상우
제37호	제2발제 :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규제 담론의 입법학적 검토	심우민
제37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이용자가 돌아왔다 – 기자가 바라본 종합토론의 현장	윤수현
제38호	디지털 민주주의 현재와 미래-① 국내 디지털 민주주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구본권
제39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사회 디지털 대전환	박원재
제39호	디지털 민주주의 현재와 미래-② 디지털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는가	김유향
제40호	유튜브 뒷광고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금준경
제40호	뒷광고의 합리적 규제 방안	손봉현
제41호	언택트 공연 및 공연 영상화를 둘러싼 저작권 이슈	김병일
제41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격차와 극복 과제	성봉근
제42호	기계가 드러내는 편향, '이루다'만 문제였을까?	오세욱
제43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개정안의 문제점 : 국가규제 강화와 표현의 자유의 위축	황창근
제43호	메타버스의 현황과 미래	이주행
제44호	왜 다들 NFT에 주목할까	김병철

제44호	NFT 아트와 저작권 이슈	김병일
제45호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바란다] 디지털 생태계, 두 가지 이정표를 놓치지 말기를	박성호
제45호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바란다] 표현의 자유 :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권리	홍성수
제46호	웹 3.0 평등한 새로운 인터넷을 만들 수 있을까	김익현
제46호	'나를 위한' 뉴스의 시대가 온다	금준경
제47호	윤석열 정부의 ICT 자율규제 의미와 전망	김민호
제48호	디지털 휴먼,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정동훈
제48호	新유통혁신 '라이브 커머스'… 설익은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 · 자정 노력 존중할 시기	김현경
제50호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은 근절되고 있나? – 사전조치 의무의 현황과 한계 –	조영기
제50호	디지털 성범죄 정보 근절을 위한 제언	최종선
제50호	관심사 커뮤니티 플랫폼의 도약과 지속가능성	이희옥
제52호	타다, 우리 시대 스타트업의 초상	구태언
제52호	구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의 함의	정진주
제53호	'리뷰'를 리뷰하다	박성순
제53호	생성형 AI의 춘추전국시대	최연진

＊법제동향

구분	제목	저자
제22호	온라인에서 전쟁 · 재난 관련 허위사실 유통 처벌안에 대한 단상	정필운, 양지훈
제23호	회피연아 사건에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재검토(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다105482)	손형섭
제23호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의 관심과 그 지향점에 관한 일고 – 미국의 인공지능과 법에 관한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윤혜선
제23호	유럽연합(EU)의 로봇법(RoboLaw) 프로젝트	이원태
제24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 5 : 온라인 음란물 유통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박아란
제24호	게임SW산업의 진흥과 자율규제 –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의 규제 개선	김윤명
제25호	〈청소년보호특집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청소년 음란물 차단 책임' 위헌 심판 제청 결정	박규홍
제25호	〈청소년보호특집②〉 커뮤니티상의 적의적(차별/비하) 발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논란	조소영
제26호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란의 시시비비	김도승
제26호	〈원문〉 Bill for a Digital Republic : a surprising name for an ambitious law	Pierre-Jean Benghozi
제26호	〈번역〉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 : 야심만만한 법률을 위한 놀라운 이름	윤혜선
제27호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입법 동향	정준화
제27호	박근혜 정부가 남긴 ICT정책과 앞으로의 과제	한세희
제29호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최근 규제 이슈와 해외 사례	윤주호
제29호	국내 게임 산업의 미래와 법적 규제 개선 방안 –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 완화 및 웹보드 자율규제 필요성	이정훈
제30호	EU GDPR의 주요 내용의 검토	이진규
제30호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동향과 입법적 검토	최진응
제31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자율규제 도입의 의미	김학웅
제31호	미디어 · 콘텐츠 자율적 분쟁 해결을 위한 ADR제도의 발전방향	이재진

제32호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 데이터 주도 혁신에 대한 제한인가?	Youssef Fouad
제33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의 「방송법」 편입 관련 법제 동향 및 주요 쟁점	김여라
제33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와 은산 분리 시사점	조대형
제34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에 대한 검토	홍대식
제34호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삭제의무 관련 개정	김학웅
제35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권헌영
제35호	사이버상 자살 유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장영진
제36호	방송법 전부개정안의 함의와 전망	최세경
제36호	데이터 규제 3법 개정 전망과 과제	권헌영
제37호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법적 함의와 전망	이성엽
제38호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시행의 함의와 전망	이창범
제39호	'넷플릭스법' 함의와 과제	김현경
제40호	n번방 방지법-① 주요 내용과 의미	윤정숙
제40호	n번방 방지법-② 관련 쟁점 분석 및 보완점	정경오
제40호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 규제 의미와 한계	황창근
제40호	데이터기반행정법과 데이터정책의 과제	권헌영
제41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분석	구태언
제42호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해원
제42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의의와 한계	김형준
제42호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한국 기업 진출 시 유의점은	이창범
제4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 쟁점에 대한 검토	홍대식
제43호	2021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의 의미와 남겨진 과제들	신영수
제44호	EU AI 법안이 주는 시사점	김병필
제44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의미와 주요 쟁점	강형우
제45호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시사점	이상우
제45호	데이터산업법의 의미와 주요 쟁점	구태언
제46호	EU의 디지털 시장법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김병일
제46호	"특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도의 효과	이경원
제47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개요 및 향후 과제	이해원
제47호	민법 일부개정안에 신설된 인격권 조항에 대한 검토	서종희
제48호	EU의 데이터법(Data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김병일
제48호	메타버스 성범죄 입법화 논의가 잊고 있는 것	이희옥
제50호	여성 연예인에 대한 '국민호텔녀' 댓글과 모욕죄 판단 : 대법원 2022.12.15. 선고 2017도19229 판결의 의의	이승선
제50호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의 문제점	주진열
제51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미와 과제	김현경
제51호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의 위헌성	김민호
제52호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안)의 검토 및 정책제안	이진규
제52호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과 콘텐츠 식별	김병일
제53호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전략의 시작	이석준
제53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근거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김민호

＊문화시평

구분	제목	저자
제22호	〈로봇시대, 인간의 일(구본권 저)〉	오세욱
제23호	데이터와 골리앗〈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브루스 슈나이어 저)〉	김민정
제24호	평화로운 기술 : 미담 그리고 미화〈기술 중독 사회(켄타로 토야마 저)〉	김예란
제25호	인류의 미래는 괜찮아 vs 아니 계속 우울할거야〈사피엔스의 미래(알랭 드 보통 저)〉	정혜승
제26호	정보사회의 통제에 대한 용기 있는 물음〈스노든(올리버 스톤 감독)〉	강성률
제27호	미래의 정체, 정말 보여준다〈인에비터블 미래의 정체(케빈 켈리 저)〉	김연지
제28호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비즈니스 기회〈비즈니스 블록체인(윌리엄 무가야 저)〉	윤은상
제29호	호모 사피엔스라는 정류장을 떠나 미지의 미래로 향하는 인류〈호모데우스(유발 하라리 저)〉	구본권
제30호	〈다빈치에서 인터넷까지(토머스 J. 미사 저)〉	김훈건
제31호	세계시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인간성의 구현을 위하여〈인간성 수업(마사 누스바움 저)〉	도승연
제32호	고독이 없는 시대에는 대화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진다〈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셰리 터클 저)〉	전숙경
제33호	〈유튜브 컬처(케빈 알로카 저)〉	구범준
제34호	〈4차 산업혁명과 남북관계(김상배 저)〉	구갑우
제34호	〈포스트 프라이버시 경제(안드레아스 와이겐드 저)〉	구본권
제35호	연결사회, 신권력 주인으로서의 초대〈뉴파워 : 새로운 권력의 탄생(제러미 하이먼즈 저)〉	이희옥
제36호	탈진실 시대에 팩트를 논하다〈팩트풀니스(한스 로슬링 저), 팩트의 감각(바비 더피 저), 포스트 트루스(리 매킨타이어 저)〉	김유향
제37호	지능화사회, 자동화된 불평등을 말하다〈스마트 시티, 유토피아의 시작(정동훈 저), 계획된 불평등(마리 힉스 저)〉	이희옥
제38호	고객이 기존 비즈니스를 파괴한다〈디커플링(탈레스 S. 테이셰이라 저)〉	정혜승
제39호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국회입법조사처)〉 리뷰	김병일
제39호	〈코로나 이후의 세계(제이슨 셍커 저)〉	김국현
제40호	〈넷플릭스 세계화의 비밀(라몬 로바토 저)〉	황근
제40호	〈창조력 코드(마커스 드 사토이 저)〉	김상순
제41호	〈뉴 엘리트(표트르 펠릭스 그지바치 저)〉	이명진
제41호	다큐멘터리, 〈소셜딜레마(제프 올롭스키 감독)〉	이성엽
제42호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진실보다 강한 탈진실의 힘(제임스 볼 저)〉	배진아
제42호	기술의 돌격 시대, 우리가 자유로운 소비자를 넘어서야 하는 이유〈AI 시대, 본능의 미래(제니 클리먼 저)〉	도승연
제43호	거품을 현실로 만드는 우리 삶의 체계, 전환적 과학을 기대하며〈리얼리티 버블(지야 통 저)〉	김지연
제43호	인간은 어떻게 모든 종을 초월한 존재가 되었는가?〈초월(가이아 빈스 저)〉	정인경
제44호	메타버스,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스노크래시(닐 스티븐슨 저)〉	임소혜
제44호	격변하는 기술, 사유하는 인간〈디지털 개념어 사전(구본권 저)〉	김훈건
제45호	'AI 교과서' 저자가 말하는 인공지능과 공존의 길〈어떻게 인간과 공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스튜어트 러셀 저)〉	구본권
제45호	한국사회의 '경로의존성'에 주는 일침〈눈떠보니 선진국(박태웅 저)〉	이희옥
제46호	디지털에서 왜 문해력이 핵심능력이 되는가〈읽는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조병영 저)〉	구본권
제46호	분열된 사회에서 신뢰의 미래를 고민하며〈신뢰 이동(레이첼 보츠먼 저)〉	김희삼
제47호	〈노동의 미래(라이언 아벤트 저)〉	구본권
제47호	'고독'의 시간에서 '고립'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하여〈고립의 시대(노리나 허츠 저)〉	김찬호

제48호	〈검열관들-국가는 어떻게 출판을 통제해왔는가(로버트 단턴 저)〉	김훈건
제50호	기술에 빼앗긴 주의(attention)의 회복을 말하다-"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2022)에 관한 평(評)이 아닌 설(說)〈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제임스 윌리엄스 저)〉	이해원
제51호	사소하고 하찮은 의심은 없다〈싱크 어게인(애덤 그랜트 저)〉	이희옥
제52호	오펜하이머 모멘트, 파멸의 버튼을 누가 눌렀는지 묻는 순간이 온다〈AI 이후의 세계(헨리 키신저 저)〉	이정환
제52호	〈도둑맞은 집중력(요한 하리 저)〉	이형열
제53호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이나다 도요시 저)〉	권경원
제53호	〈권력과 진보 : 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쟁투(대런 아세모글루, 사이먼 존슨 저)〉	김현경

8.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가. 개요

온라인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온라인에 게재되는 부동산 매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KISO는 이용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2012년 11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신설하였다. 이후 소개할 부동산매물검증센터가 부동산 매물 광고를 온라인에 게재하기 전 단계의 사전 확인을 거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관리센터는 매물 광고가 진행 중인 매물에 대해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 사후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를 거쳐 효력이 발효되었다. 2012년 관리센터 설립 당시에는 네이버, 부동산114, 다음, 팍스넷 등 4개 참여사로 출발하여 2023년 12월 기준 아래 표와 같이 네이버, 다방, 부동산써브, 매경부동산 등 26개 국내 주요 부동산 정보 서비스 사업자가 참여사로 가입하여 자율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표2-39>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참여사

참여사 현황	공실클럽, 네이버, 다방, 더비즈, 데일리팜, 두꺼비세상, 렛츠, 매경부동산,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부동산포스, 산업부동산, 선방, 아실, 알터부동산, 우리집, 울산교차로, 인터넷교차로, 천안교차로, 카카오, 텐컴즈, 한경닷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B리브, LH 등 26개

나. 현황

관리센터 참여사는 자율규약에 따라 각 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허위매물 신고 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는 허위매물로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이 신고 창구를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매물은 중개사무소의 자율처리를 우선으로 하는데, 중개사무소가 신고 매물에 대해 거래 가능한 매물로 처리하는 경우, 관리센터는 2차 유선 검증 및 3차 현장 검증 프로세스를 거쳐 허위매물 여부를 확인한다. 지속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여 해당 사실을 공유하며, 월별 허위매물 신고 및 검증 현황은 KISO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에 근거한 세부 처리 절차를 규정한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운영규정은 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운영사항과 중개사무소 이의신청 프로세스, 매물 등록 제한 규정 및 재검증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그림2-2>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신고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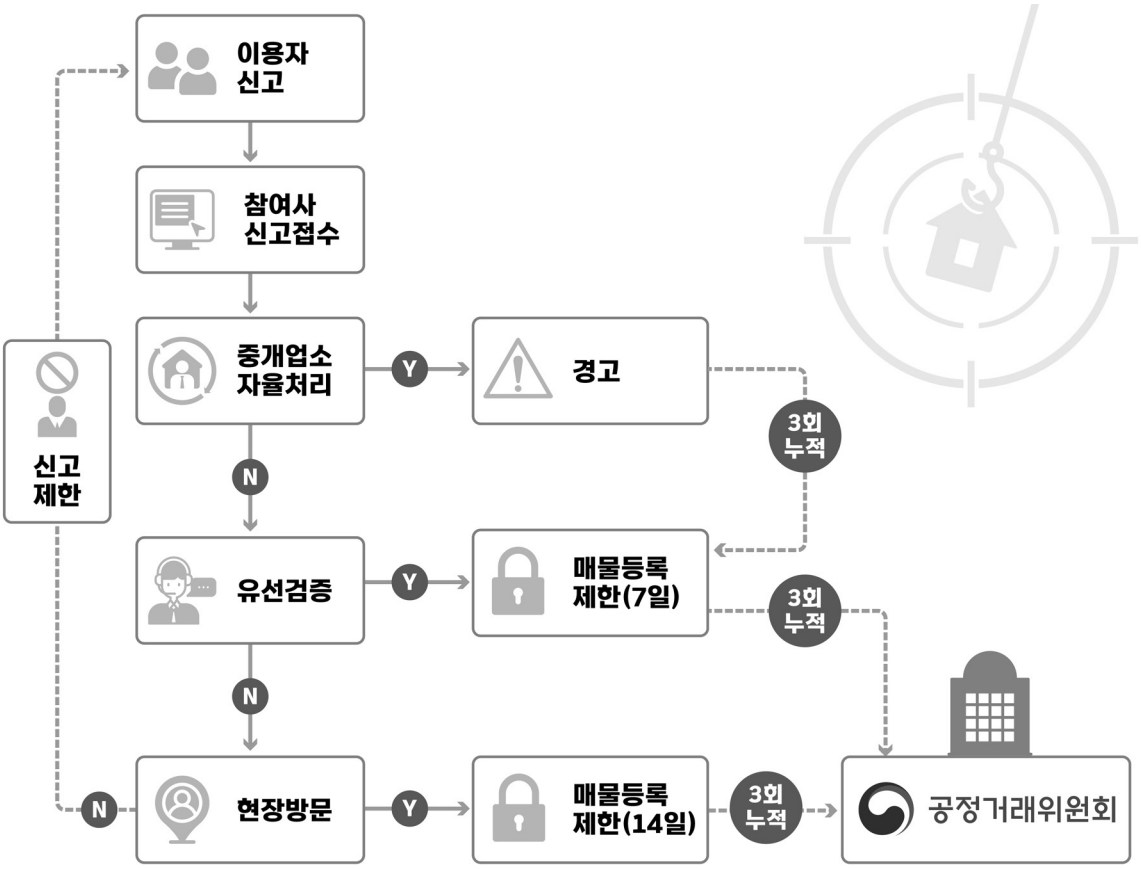

1. 이용자 신고
관리센터 참여사는 이용자가 게재 금지 매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메뉴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2. 중개사무소 자율 처리
중개사무소가 신고 매물을 처리(신고일 다음날부터 48시간 이내)하기 전까지 참여사는 해당 매물의 노출과 중개사무소의 신규 매물 등록을 중단한다.
3. 참여사 유선 확인
중개사무소가 신고 매물을 정상 매물로 처리한 경우, 참여사는 해당 중개업소에 유선 확인을 실시한다. ▶ 유선 확인은 참여사 또는 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전화하여 신고 매물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소비자가 매물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전화하는 방법을 포함
4. 거짓매물 검증
참여사의 유선 확인에도 해당 중개사무소가 정상 매물로 응답하는 경우, 관리센터는 현장을 방문하여 정상 매물 여부를 확인한다. ▶ [허위가격/허위매물/거래완료] 신고 :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의뢰받은 매물 여부 확인, 소유주 연락처 및 관련 정보 확인, 매물가격 및 정상 거래 가능 여부, 거래완료 확인 등 ▶ [경매매물] 신고 : 경매 사이트, 주변 시세 확인, 매물 장소 직접 방문 등 ▶ 현장 검증 관련, 허위로 검증을 시도(검증 거부)하는 경우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 재검증 요청 시 재방문을 통한 검증(재검증 시에는 매물 장소 직접 방문)

<표2-40>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허위매물 검증 현황

(단위=건, 개)

구분	매물 신고	자율 처리	현장 검증	규약 위반 중개사무소
2016년	42,488	38,937	3,551	26
2017년	39,269	34,278	4,991	21
2018년	116,012	112,035	3,977	91
2019년	103,793	53,900	3,402	66
2020년	135,766	69,208	2,929	53
2021년	97,900	49,600	3,161	19
2022년	21,421	13,056	1,770	1
2023년	25,579	16,183	2,264	10
계	582,228	387,197	26,045	287

※ 자율 처리, 현장 검증: 각 단계로 넘어간 매물 수
※ 규약 위반 중개사무소: 월 3회 이상 광고 등록 제한 이상의 페널티를 받은 중개업소

1) 성과

(1) 대외협력

관리센터는 부동산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대외 관계기관과 협력해왔다. 2016년에는 공정거래위원장과 온라인 광고 자율규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2018년에는 집값 담합 사태가 발생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과 협력하였다. 2019~2020년에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기존 자율규제 영역이 축소되지 않도록 의견을 전달하였다.

(2) 규정 재정비 등 체계화

<표2-41>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규정 재정비 성과

구분	내용
2016년	한 계정당 1개월 신고 건 제한(5건)
2020년	자율규약 개정(상습적 허위매물 등록 중개사무소 및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
2020년	관리센터 서버 신설 ⇒ 관리센터 참여사 신고 창 및 시스템 KISO로 이관 전체 참여사 경고 · 페널티 통합 관리
2021년	신고 시 증빙자료 첨부 의무화
2022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2022년	처리 불가 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경고 · 페널티 취소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관리센터는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정책을 강화하였다. 2016년 한 계정당 1개월에 신고를 최대 5번 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하였고, 2021년에는 신고 시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하였다.

2020년에는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을 개정하였다. 지난 8년간 KISO에 접수되는 허위매물 등록 건수 및 허위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습적 허위매물 등록 중개사무소 및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2020년에는 관리센터 서버를 신설하여 관리센터 참여사 신고 창 및 신고 시스템을 KISO로 이관하였고 전체 참여사의 경고·페널티를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2022년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또한 처리 불가 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경고·페널티 취소 관련 가이드라인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신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자문활동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 인터뷰와 학계 자문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8년에는 2차례 전문가 자문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2019년에는 학계 자문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참여사 확대

2012년 4개를 시작으로 2014년 11개, 2017년 21개, 2020년 25개, 2023년 말 기준 26개로 참여사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5) 법과 자율규제의 공존

2020년 온라인 부동산 광고 허위매물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온전히 자율규제의 영역이었던 온라인 부동산 광고 분야에 법적 규제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KISO에서 자율규제 영역 축소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우려를 표한 끝에 정부는 이미 뿌리를 잡은 자율규제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흡수시키려 하지 않았고 현재 온라인 부동산 광고 영역은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가 공존하는 형태가 되었다. KISO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맡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통계를 연동하며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9. 부동산매물검증센터

<표2-42> 부동산매물검증센터 참여사

참여사 현황	공실클럽, 네이버, 다방, 더비즈, 두꺼비세상, 렛츠, 매경부동산,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부동산포스, 산업부동산, 선방, 아실, 알터부동산, 우리집, 울산교차로, 인터넷교차로, 천안교차로, 텐컴즈, 한경닷컴 등 21개

가. 개요

부동산매물검증센터는 KISO의 부설기구로 2014년 4월 닥터아파트, 매경부동산,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조인스랜드 등 6개 부동산 정보회사의 참여로 출범하였다. 검증센터는 매물 광고 게재에 앞서 매물의 존재 및 거래 가능 여부 등 매물정보에 대한 사전 확인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신뢰도 높은 인터넷 부동산 매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검증센터는 검증 가이드를 바탕으로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온라인 부동산 정보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검증이 완료된 매물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 현황

검증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정보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광고 예정인 매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크게 홍보 확인서 확인, 전화 확인, 모바일 확인, 현장 확인 등의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홍보확인서 확인은 의뢰인이 거래를 원하는 매물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개사무소에 제출하고 중개사무소는 이를 검증센터에 제출하여 검증센터가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전화 확인은 의뢰인의 유선 확인을 거쳐 광고 예정 매물의 관련 정보 및 거래 의사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모바일 확인은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매물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신뢰성이 높은 검증방식이다. 현장 확인은 신뢰성이 가장 높은 검증방식으로 매물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사진, 동영상 촬영 등을 실시하고 각 증빙자료를 통해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1) 통계자료

<표2-43> 부동산매물검증센터 검증 통계 (단위=건)

구분	총 검증량
2016년	11,370,779
2017년	15,726,161
2018년	17,808,241
2019년	22,444,909
2020년	22,050,722
2021년	23,191,642
2022년	31,073,700
2023년	35,506,777
계	179,172,931건

(1) 신규 검증방식 도입 및 기존 검증방식 강화

검증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 플랫폼에 보다 진성도가 높은 광고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신규 검증방식을 도입하고 기존 검증방식을 강화하였다. 2018년 공인중개사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올리는 모바일 확인 2 검증방식을 개시하였고, 2021년에는 위임장 양식의 서류를 통해 검증하는 신홍보확인서 검증방식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가장 진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현장 확인이 가능한 지역도 확대 실시하였다.(대구, 경산 지역 추가) 진성도가 높은 검증방식인 모바일 확인 역시 분양권도 검증 가능하게 확대하였다.

(2) 검증업체 관리

부동산 광고 검증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증업체 관리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검증 소요시간을 매주 체크하여 속도와 관련한 민원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이 지방에서도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대구, 부산)를 출장 점검하였다.

사고로 인해 검증업체 서버가 마비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2022~2023년 전산 장애 발생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서버 이중화를 도입하고 점검하였다.

(3) 어뷰징 중개사무소 관리

2021년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등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조작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중개사무소에게 경고 공문을 발송하거나 매물 광고 검증 기회를 특정 기간 박탈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중개사무소에서 욕설, 폭언 등으로 검증센터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해당 중개사무소에게 매물 광고 검증 기회를 특정 기간 박탈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4) 비용 절감

2019년부터 매물 확인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발급에 있어서 리얼탑 서비스를 도입하여 절감률 약 75%로, 연간 약 1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10. KISO 종합신고센터

가. 개요

KISO는 종합신고센터(https://report.kiso.or.kr/)를 통해 일반인 이용자의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종합신고센터는 언론 기사 형식을 도용 또는 사칭한 허위 게시물과 불법·유해 게시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8년 5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KISO 종합신고센터는 KISO가 각 회원사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신고 처리 기능을 종합한 플랫폼으로 가짜뉴스 신고센터, 유해 게시물 신고센터를 통해 이용자의 신고를 직접 받고 있으며 명예훼손 게시물 신고센터, 검색어 신고센터, 부동산 클린매물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KISO 회원사의 사이트에서 언론보도 형식을 도용 또는 사칭한 허위 게시물이나 불법·유해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이용자는 KISO 종합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게시물에 대하여 KISO는 게시물의 신고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회원사에 자율규제를 요청하고, 해당 게시물은 규정에 따라 삭제 등의 조치에 취해진다.

KISO 가짜뉴스 신고센터 처리 대상은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에 따라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로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로 판단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합신고센터를 통해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로 삭제 처리된 경우는 총 13건이다.

나. 현황

1) 코로나19 특별정책(2021년 4월~2023년 3월)의 제정[4]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KISO 종합신고센터에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 신고 건이 폭증하게 된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당시 KISO는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었으나 기사 형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여 실제로 처리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는 극히 드문 상황이었다.

KISO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상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팩트체크 기능을 할 수 없는 KISO 혹은 개별 회원사가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거듭했다. 자율규제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책규정 제·개정이 아닌 특별정책으로서 자율정책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KISO는 2021년 4월,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을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했다. 기존의 KISO 정책규정만으로는 언론사를 도용·사칭한 형식 외의 허위조작정보를 심의·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의성 있는 선제적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4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특별정책 전문 참고

해당 정책은 국내외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변화와 '위드코로나'로 인한 일상 복귀 시점에 발맞춰 2023년 3월 종료되었다.

2) 코로나19 특별정책(2021년 4월~2023년 3월)에 따른 조치 결과 및 허위조작정보 유형 분석

<표2-44> 코로나19 특별정책에 따라 처리된 허위조작정보 통계

구분	질병청 협조 요청에 따른 처리 건수	KISO 종합신고센터 이용자 신고에 따른 처리 건수
2021년	2,072건	34건
2022년	3,230건	67건
2023년	363건	0건
계	5,665건	101건
	5,766건	

KISO는 코로나19 특별정책에 따라 질병청과의 민관 협력 대응을 구성했고, '코로나19의 존재, 치료, 예방 및 진단, 감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와 관련한 내용의 게시물'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 또는 질병관리청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는 자율규제 처리했다. 해당 정책에 따라 질병관리청 협조 요청을 통해 5,665건, KISO 종합신고센터를 통해 101건, 총 5,766건의 게시물을 처리했다.

KISO가 2021년 4월~10월 사이 처리한 허위조작정보 1,538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예방(백신)'과 관련한 내용이 1,210건(7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료' 관련 168건(10.9%), '존재' 관련 139건(9%), '전염' 관련 21건(1.4%)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할수 있다' △'백신 접종 부위에 자석이 붙는다' 등 잘못된 정보로 백신의 유해성을 주장하거나 △'바닷물 가습기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 △'PCR 검사 시 유전자 증폭 횟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확진자 수를 조작한다'는 등 치료법이나 전염성 등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한 내용 등이다.

<그림2-3>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형별 분석 결과(2021.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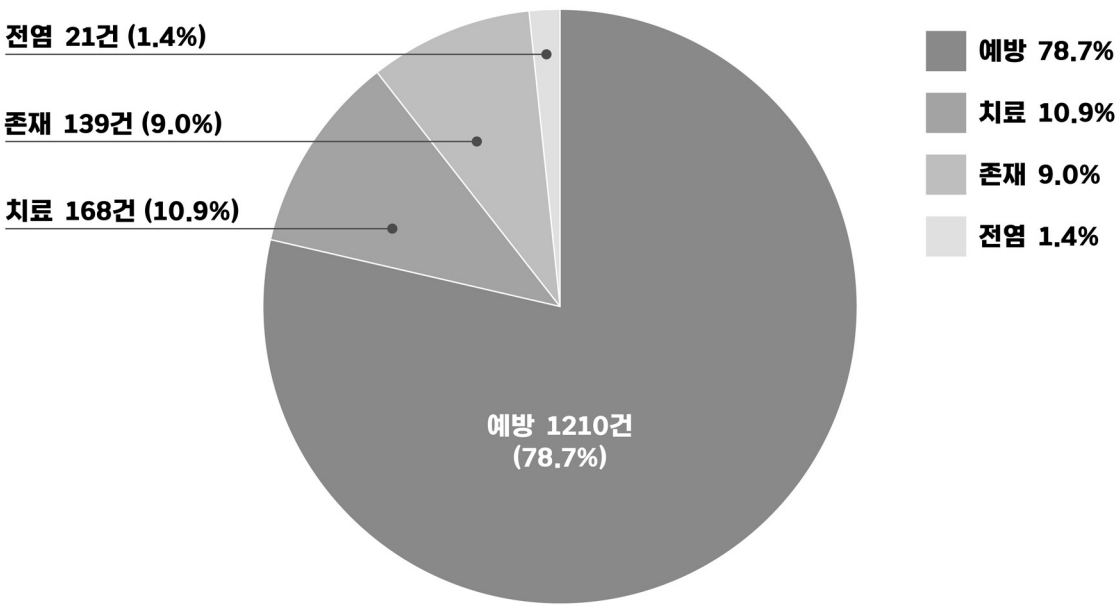

3) KISO 종합신고센터 유해 게시물·가짜뉴스 조치 결과 및 처리 절차

<표2-45> KISO 종합신고센터 유해 게시물 신고 통계 (단위=건)

구분	신고 건수	접수 처리 건수
2018년	195	0
2019년	444	0
2020년	450	0
2021년	317	0
2022년	155	0
2023년	37,966[5]	0
계	39,527	0

<표2-46> KISO 종합신고센터 가짜뉴스 신고 통계 (단위=건)

구분	신고 건수	KISO 정책에 따른 접수 처리 건수	코로나19 특별정책에 따른 처리 건수
2018년	115	0	–
2019년	168	0	–
2020년	3,883	5	–
2021년	708	8	34
2022년	494	0	67
2023년	180	0	0
계	5,548	13	101

KISO 종합신고센터는 2018년 개설 이래 유해 게시물과 가짜뉴스가 각각 390건(비정상 경로 접속을 통한 악성 허위 제보 제외), 5,548건 접수되었고 각각 0건, 114건이 처리되었다. 유해 게시물의 경우 KISO 회원사가 아닌 온라인 사이트 게시글에 대한 신고가 대부분이며 신고 요건(URL 등)이 미비하여 반려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KISO 회원사는 개별적으로 유해 게시물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KISO를 통한 처리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가짜뉴스의 경우 코로나19 범유행 초창기였던 2020년 신고 건수(3,883건)가 폭증하였고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KISO 종합신고센터를 통한 이용자 신고의 건 처리 절차는 우선 KISO에서 해당 게시물이 정책규정상 가짜뉴스 요건에 해당하는지, 게시글 URL이 기입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회원사에 전달한다. 회원사는 신고 내용과 KISO의 검토 내용을 참고해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진행한다. 최종 판단이 어려울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하여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다.

5 2023년도 유해 게시물 신고 건수 폭증은 9월 27일~10월 6일 사이 발생한 비정상 경로 접속을 통한 악성 허위 제보의 대량 접수(37,576건)에 따른 결과이다.

<그림2-4> KISO 종합신고센터 신고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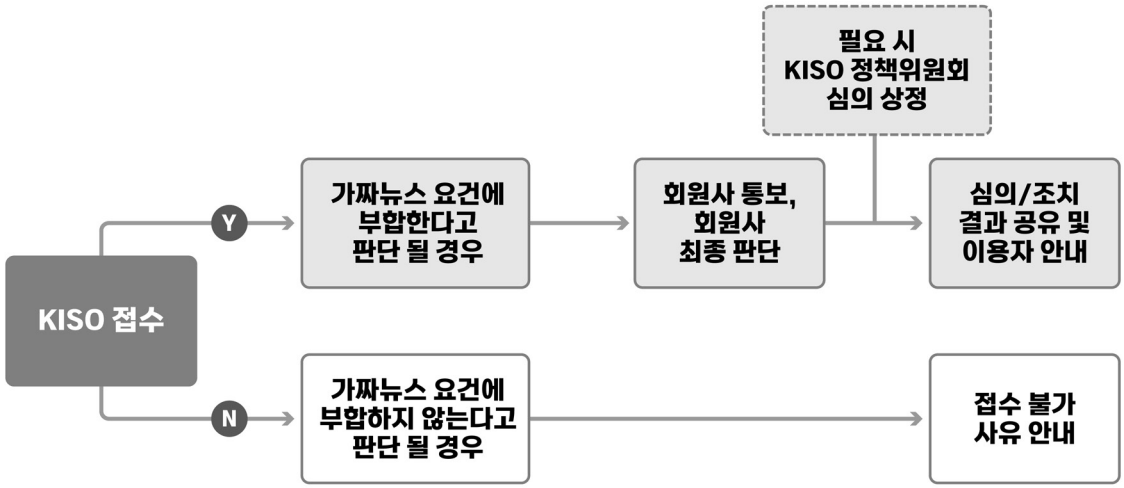

11. UGC협의체

가. 개요

<표2-47> UGC협의체 참여사

참여사 현황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이스트에이드, 뽐뿌커뮤니케이션, 씨엘커뮤니케이션즈, 인비전커뮤니티, 씨나인, 인벤

KISO는 포털 및 커뮤니티 회원사를 주축으로 한 UGC(User Generated Contents)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UGC협의체는 사업자·실무자 대상 세미나를 개최해 자율규제 활동을 독려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개별 사업자가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이용자 관리, 게시물·서비스 운영 기준 마련 등)에 공동 대응하며 정보와 자문을 제공한다. UGC협의체에는 KISO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사인 뽐뿌, 클리앙, 오늘의유머, SLR클럽, 인벤 등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UGC협의체는 중소 규모 회원사들의 보다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활발한 자율규제 활동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정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슈가 있을 때 회원사들의 상황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운영된다.

나. 현황

<표2-48> UGC협의체 활동 현황

2016년 3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인터넷 사업자 실무 세미나 개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과 인터넷 사업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
2016년 11월	2016년 KISO 사업자 실무 세미나 개최	2016년 주요 심의 결정 소개 및 운영 경험 관련 의견 교류

2017년 3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인터넷 사업자 실무 세미나 개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과 인터넷 사업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
2017년 12월	UGC협의체 회원사 간담회 개최	회원사 공동 이슈 발굴 토론 및 네트워킹
2018년 4월	KISO-선관위, 공정선거를 위한 간담회 개최	선거 관련 인터넷 서비스 운영 관련 사항 논의
2018년 7월	UGC협의체 회원사 실무자 간담회 개최	커뮤니티 운영 실무진 고충 상담 및 온라인 커뮤니티 양극화 이슈 발표 · 토론
2018년 10월	UGC협의체 회원사 간담회 개최	가짜뉴스 관련 KISO 정책 소개 및 커뮤니티 운영 이슈 공유
2019년 1월	UGC협의체 회원사 간담회 개최	신규 KISO 심의 결정 및 사업 소개 등 의견 청취
2019년 11월	UGC협의체 회원사 간담회 개최	국내 입법 동향에 대한 브리핑 및 악플 정책 동향 및 입법안에 대한 의견 교환
2020년 12월	UGC협의체 회원사 간담회 개최	KISO 조직 개편 현황 공유, 소위 위원 구성의 건 논의, '회원관리 표준' 및 '스팸 대응' 등 안건 논의
2021년 10월	2022년 대통령 선거 기간 서비스 운영 회원사 간담회 개최	KISO 자율정책 소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및 인터넷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설명
2022년 11월	UGC협의체 회원사 간담회 개최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출범 안내 및 참여 방법 소개, 이태원 참사 관련 자율규제 협조 요청 전달, KSS API 시스템 출시 안내
2023년 11월	KISO-선관위,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서비스 운영 회원사 세미나 개최	딥페이크 및 생성형 AI 등 신기술 관련 선거법 규정 해석 안내

KISO는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에 인터넷 사업자들이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사업자 및 인터넷 선거 운동 관련 법 조항을 설명하고 관련 판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이 자리에서 인터넷 업계의 회원사 실무자들은 선거 관련 게시물 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과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KISO 사무처에서 주요 정책과 심의 사례를 소개하고, 각 커뮤니티 사업자들이 서비스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KISO는 회원사 대상 'KISO UGC 뉴스레터'를 격주로 발송하여 IT 이슈·입법 동향·KISO 자율규제 활동 등을 공유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KISO는 자체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공유해 커뮤니티 사업자들에게 코로나19 관련 게시글을 처리하는 기준과 근거를 제공하였다.

현재는 회원사 대상 'Monthly 서비스 운영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KISO 저널 원고 중 회원사들이 주목해야 할 IT 이슈, 입법 동향을 다룬 내용을 전달하고, KISO 자율규제 활동을 소개해 자율규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분과 체제 개편 이후 UGC협의체는 KISO 서비스운영소위원회에서 관할하여 중소 인터넷 커뮤니티 사업자들이 당면한 공동의 자율규제 이슈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회원사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를 발굴하고, 입법 동향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12. 대외협력

12.1. MOU

KISO는 유관기관과의 MOU를 통해 KISO의 자율규제 범위를 확장하고, 이용자들의 권익과 표현의 자유를 함께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 KISO-서울시 여성폭력 방지 업무협약(2012년 9월~현재)

KISO와 서울시는 지난 2012년 9월 여성폭력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폭력 방지 업무협약(MOU)'을 맺고 온라인상의 불법 성매매 알선·광고 게시물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ISO와 서울시 MOU의 일환으로,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성매매 알선·광고, 음란물 등 불법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KISO 회원사 내에서 발견된 불법 성매매 알선·광고 게시물을 KISO를 통해 신고하고 있다. 인터넷 시민감시단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인터넷 시민감시단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이 진행되는데 KISO는 사전교육 강사로 참여하여 '기관 소개 및 심의 기준'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표2-49> 서울시 MOU 관련 불법·유해 게시물 신고 처리 통계 (단위=건)

구분	신고 접수	처리 완료	반려
2016	27,029	27,003	26
2017	12,155	12,153	2
2018	28,708	28,697	11
2019	21,135	20,389	746
2020	1,417	1,399	18
2021	1,184	1,176	8
2022	12,485	12,351	134
2023	110	110	
계	104,223	103,278	945

2016년에는 카카오톡 ID를 통한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카카오와 협의 끝에 여성폭력에 활용되고 있는 카카오톡 계정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여 조치하고 있다.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KISO 및 회원사의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5차례(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2022년)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2) KISO-(사)한국모바일결제산업협회 업무협약(2012년 9월~현재)

KISO와 모바일결제산업협회는 2012년 9월부터 불법 소액결제 이용 대출(소위 '소액결제깡')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피해 예방에 힘써오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동법 제72조(벌칙) 제1항 제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5항이다.

모바일결제산업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평균적으로 약 1천 건의 불법 소액결제 이용 대출을 예방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2-50>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광고 등 불법 유해 게시물 신고 처리 통계 (단위=건)

구분	계	처리 완료	미처리	반려
2016년	897	896	–	1
2017년	705	702	3	–
2018년	850	850	–	–
2019년	1,014	1,014	–	–
2020년	1,345	1,345	–	–
2021년	1,602	1,602	–	–
2022년	549	549	–	–
2023년	1697	998	694	5
누계	8,659	7,956	697	6

3) KISO-경찰청 간 업무협약(2014년 11월~2019년 7월)

KISO는 2012년 6월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가 실현되는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자살 예방에 관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인터넷상의 자살 정보 차단을 위한 규정을 시행해왔다.

KISO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경찰청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자살 시도자의 구호 조치를 위해 협력해왔다. 반기별로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자살정보 게시자 구호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였다.

다만, 2019년 1월 15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7. 16. 시행)으로 긴급구조기관에서 자살 위험자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제19조의3) 2019년 7월부로 업무협약을 종료하였다.

<표2-51> 자살 시도자 구호조치 통계 – 기간 : '15.01.~'19.07. (단위 = 건)

구분	계	회원사	비회원사
2015년	71	70	1
2016년	168	167	1
2017년	93	92	1
2018년	119	116	3
2019년	38	37	1
누계	489	482	7

4) KISO-GSOK, IT산업에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1년 2월~현재)

KISO는 게임 분야에서 자율규제 역할을 하는 GSOK(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2021년 2월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자율규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IT산업 전반의 자율규제 외연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었고, △자율규제를 위한 업무 공조 및 공동 정책 개발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지속적인 인적 교류와 미팅을 통해 자율규제 활성화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자율규제 연구를 위한 '자율규제 연구회'를 지원하고 연구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5) KISO-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협약(2023년 8월~현재)

온라인에 게시되는 화학물질 관련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하게 조치해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공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 중인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통해 인터넷상의 화학물질 불법 유통, 사제 폭발물 등에 대한 신고를 공유하고 KISO 회원사가 보다 신속하게 조치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MOU에 따라 2023년 8월~12월 5개월 동안 KISO 회원사 게시물 71건 삭제 등의 조치를 했다.

12.2. KISO 개최 행사

<표2-52> KISO 개최 행사

구분		제목 및 참가자	장소
2015	7월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개최	KISO 회의실
		사회: 이해완 교수(성균관대) 발표: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양재), 황용석 교수(건국대), 나현수 책임연구원 · 고아라 선임연구원(KISO) 토론: 안정민 교수(한림대), 이승선 교수(충남대), 이경아 팀장(한국소비자원), 김호진 대표(산타크루즈 캐스팅컴퍼니), 이봉희 대표(클리앙), 최성진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10월	'정책규정 해설서 발간' 기념 세미나	KISO 회의실
		사회: 이해완 교수(성균관대) 발표: 황용석 교수(건국대) 토론: 구본권(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오영환 팀장(한국인터넷진흥원), 윤여진 사무처장(언론인권센터), 이민영 교수(가톨릭대)	
2016	2월	2016 KISO 워크숍 -동영상 콘텐츠 및 중소 커뮤니티 게시물에 대한 자율규제 현황 발표 및 토론(SLR클럽, 카카오)	제주 카카오 본사
2017	3월	[KISO포럼] '페이크 뉴스와 인터넷' 토론회 개최	한국프레스센터
		사회: 이해완 교수(성균관대) 발표: 배영 교수(숭실대), 황창근 교수(홍익대), 황용석 교수(건국대) 토론: 김대원 박사(카카오), 김수연 센터장(중앙선관위), 이수종 팀장(언론중재위원회), 이준웅 교수(서울대)	
	6월	[KISO포럼] 포털의 검색어 정책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프레스센터
		사회: 이해완 교수(성균관대) 발표: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팀) 토론: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윤여진 상임이사(언론인권센터), 황성기 교수(한양대), 황용석 교수(건국대)	

	7월	검색어 정책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정책위원회-검증위원회 간담회' 개최	KISO 회의실
	8월	[KISO포럼] '임시조치 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개최	한국프레스센터
		사회: 이해완 교수(성균관대) 발표: 황창근 교수(홍익대) 토론: 강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오수진 선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 한지혜 사무관(방송통신위원회), 황성기 교수(한양대)	
	12월	[KISO포럼]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재설계' 토론회 개최	한국프레스센터
		사회: 이해완 교수(성균관대) 발표: 이준웅 교수(서울대), 이정훈 교수(중앙대) 토론: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윤성옥 교수(경기대), 장철준 교수(단국대), 황용석 교수(건국대)	
2018	2월	2018 KISO 워크숍 개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KISO', '이용자를 보호하는 KISO',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KISO'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 진행	제주 카카오 본사
	4월	검색어검증위원회, '검색어 추천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기업의 영업의 자유는 양립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3차 보고서 공개 전 토론회 개최, 소비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한국프레스센터
		사회: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양재) 발표: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나현수 정책팀장(KISO) 토론: 박희주 선임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김민정 교수(한국외대), 박아란 박사(한국언론진흥재단), 황용석 교수(건국대)	
2019	6월	2019 KISO 워크숍 개최 - KISO 10주년을 맞아 향후 KISO 방향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함	제주 카카오 본사
	10월	[KISO포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향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마련의 기초로 삼기 위해 개최함	광화문 S타워
		사회: 이인호 교수(중앙대) 발표: 이상우 교수(연세대),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토론: 박종성 논설위원(경향신문), 성동규 교수(중앙대), 윤성옥 교수(경기대), 윤여진 상임이사(언론인권센터), 이석우 대표(미디어연대)	
2020	7월	[KISO포럼] '온라인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혐오표현에 대응하고 있는 유럽, 미국, 일본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혐오표현 관련 규제 필요성에 대해 토론함	광화문 S타워
		사회: 이인호 교수(중앙대) 발표: 장철준 교수(단국대), 이승현 법학박사(연세대), 손형섭 교수(경성대), 김수아 교수(서울대) 토론: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오영택 사무관(국가인권위), 홍주현 교수(국민대), 홍지아 교수(경희대)	

2021	3월	[KISO포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토론회 개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기존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올바른 개정 방향을 모색함	KISO 회의실
		사회: 이인호 교수(중앙대) 발표: 황창근 교수(홍익대) 토론: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선지원 교수(광운대),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김재환 정책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22	5월	[KISO포럼]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언론학회와 공동 주최	공주대학교
		사회: 이재신 교수(중앙대) 발표: 임소혜 교수(이화여대), 심홍진 연구위원(KISDI), 박아란 교수(성신여대) 토론: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윤성옥 교수(경기대), 이희옥 박사(네이버), 정사강 연구위원(이화여대)	
	6월	2022 KISO 워크숍 개최 -KISO 조직구조 개편 이후 성과 점검,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논의	델피노리조트
	12월	[KISO포럼] '자율규제 모델, KISO에서 답을 찾다' 개최	광화문 S타워
		사회: 이인호 교수(중앙대) 발표: 이승선 교수(충남대) 토론: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계인국 교수(고려대),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김준모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선경 과장(방송통신위원회)	
2023	6월	2023 KISO 워크숍 개최 -KISO의 지난 1년간 성과를 공유하고, '회원사 다양화에 따른 KISO의 과제'를 주제로 논의함	제주 카카오 본사

12.3. 유관기관 협력

<표2-53> 유관기관 협력 활동

2016	6월	고려대 사이버보안정책센터와 MOU 체결 -인터넷 규제 및 이용자 표현의 자유 등 협동연구 협정
	7월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방안' 토론회 참여〈한국여성정책연구원〉
	9월	KISO-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 개최 -온라인상의 각종 부당 광고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한 예방책 논의
	11월	'디지털 성폭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국회 아동 · 여성 · 인권정책포럼〉
2017	3월	가짜뉴스 등 비방 · 흑색선전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 참석〈중앙선관위〉
		이용자 게시물 관리정책협의회 참석〈오픈넷〉
	4월	'랜덤채팅앱' 규제 관련 간담회 참석〈국회 정춘숙 의원실〉
		'가짜뉴스' 관련 토론회 참석〈방송문화진흥회〉
	6월	'가짜뉴스 연구반' 회의 참석〈방송통신위원회〉

2018	4월	사이버조사정책 자문위 회의 참석〈중앙선관위〉
2019	2~3월	KISO,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대상 강의 진행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9기 사전교육에서 시민감시단 대상으로 3차례 강의 진행
	2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 참석〈국회 박홍근 의원실 주최〉
	9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규제 개선 공론화 협의회' 발표 -제4차 전체회의에서 KISO는 민간 자율심의체계 현황을 소개
2020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및 확산에 대한 대응방안' 국제 컨퍼런스 참여 -KISO,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현황 소개
2021	8월~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 위원 위촉 및 활동
2023	5월	UN 안보리 산하 대테러사무국(CTED) 간담회 참석 -KISO의 자율규제 활동을 UN에 우수 사례로 소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미디어특위 간담회 참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정책간담회 참석〈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회의 참석〈방송통신위원회〉
	8월	'AI가 선거에 미칠 영향' 세미나 참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허위정보 등이 선거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법 · 제도적 대응 방안 모색
	9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자율규제 의미와 과제' 발표〈KISDI〉

12.4. 연구 및 조사

<표2-54> 연구 및 조사 활동

2016	1~6월	자율규제 환경개선 워킹그룹 운영
	2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 자율규제 기준 및 자율심의 활성화 방안' 연구 인터뷰 참여
	4월	『KISO 자율규제 백서』 (Vol.2) 발간(2013~2015)
	6월	'2016년 총선과 인터넷 자율규제' 보고서 발간 -총선에서 KISO와 회원사가 법령을 준수하며 취한 여러 가지 조치와 내용을 정리해 공개함
		인물정보검증자문위원회 '인물등재 기준 개선 보고서'
	12월	제2기 1차 네이버 '노출 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

2017	4월	인터넷 개인방송인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 -인터넷 개인방송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보다 쉽게 안내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11월	제2기 2차 네이버 '노출 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
	12월	All Things in Moderation 2017 학회(미국 UCLA) 발표 및 토론 - 네이버검색어검증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검색어 자율규제 노력과 현황에 대한 발표 및 토론, 해외 동향 파악 발표: 박연규 책임연구원(KISO)
2018	3월	〈KISO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공동 주최 토론회 '인터넷 댓글에서의 정치행동주의 : 여론공간의 규제는 필요한가?' 개최 사회: 조화순 교수(연세대) 발제: 나은영 교수(서강대),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 토론: 김민정 교수(한국외국어대), 정일권 교수(광운대), 조소영 교수(부산대), 황창근 교수(홍익대)
	6월	제2기 3차 네이버 '노출 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
	11월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 '한국에서의 가짜뉴스' 개최
2019	1월	제2기 4차 네이버 '노출 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
	2월	검색어 서비스 이용과 정책에 관한 조사 및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10월	제2기 5차 네이버 '노출 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
2020	2월	제2기 6차 네이버 '노출 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
	9월	국어사전 차별 · 비하표현에 대한 평정보고서
2021	12월	제3기 1차 네이버 '노출 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
2022	11월	제3기 2차 네이버 '노출 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
2023	4월	〈한국언론법학회〉 봄철 학술대회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 토론 참여 기조연설: 이인호 교수(중앙대) 토론: 이승선 교수(충남대), 이희옥 박사(네이버), 박연규 책임연구원(KISO)
	6월	〈한국공법학자대회〉 'KISO의 성과와 한계', '자율규제와 정부규제의 관계' 발표 사회: 이인호 교수(중앙대) 발표: 이승선 교수(충남대), 계인국 교수(고려대)
	7월	KISO 온라인 혐오댓글 인식 조사 2023
	11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추계학술대회 KISO 후원 세션 '사이버 혐오, 해결지향적 접근' 개최 -한국 사회의 증오와 혐오에 대해 심층 진단하고, 자율규제 방향에 대해 모색 사회: 이재신 교수(중앙대) 발표: 김이선 박사(서울대), 최항섭 교수(국민대) 토론: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김예란(광운대)
	12월	제3기 3차 네이버 '노출 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

<그림2-5> KISO 발간물 표지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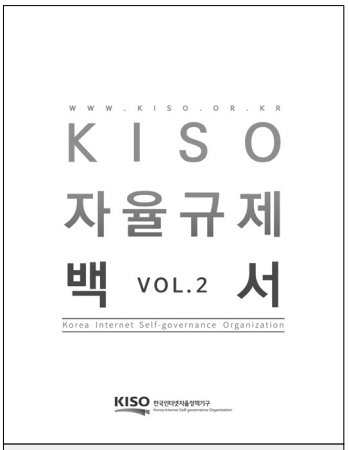

자율규제 백서 Vol.2 (20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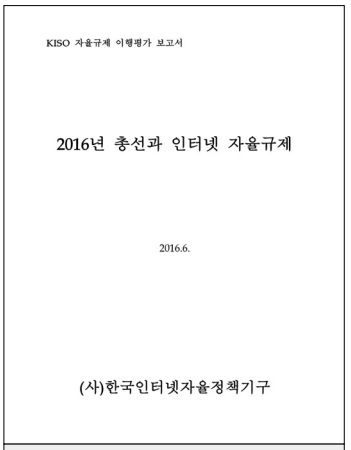

'2016년 총선과 인터넷 자율규제' 보고서 발간(20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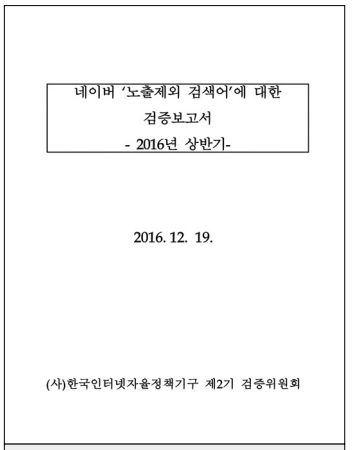

2016년 상반기 네이버 검색어 검증보고서(20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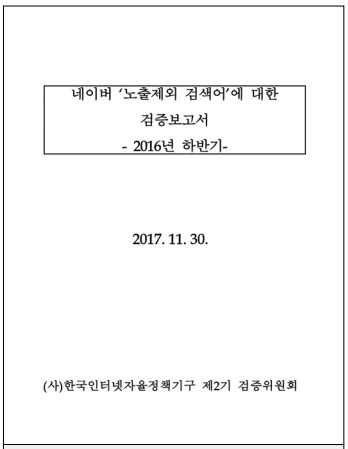

2016년 하반기 네이버 검색어 검증보고서(201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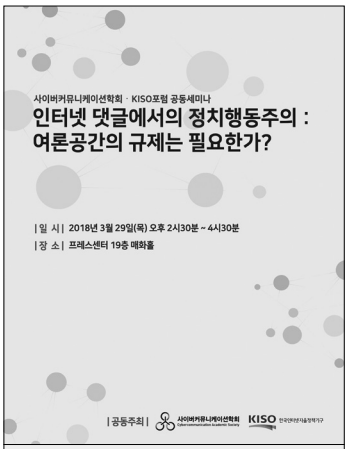

〈KISO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공동 주최 토론회 '인터넷 댓글에서의 정치행동주의 : 여론공간의 규제는 필요한가?' 개최(2018.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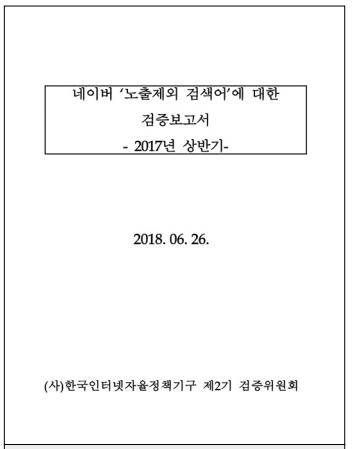

2017년 상반기 네이버 검색어 검증보고서(2018.6.)

KISO 정책규정 해설서 발간 (2018.8.)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 '한국에서의 가짜뉴스' 개최(201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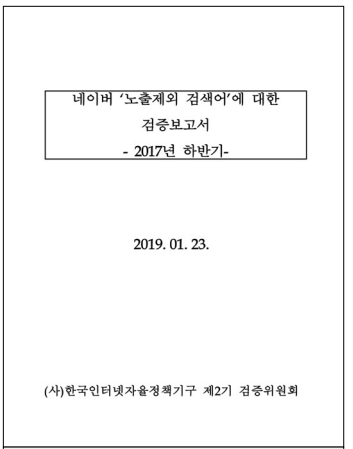

2017년 하반기 네이버 검색어 검증보고서(2019.1.)

검색어 서비스 이용과 정책에 관한 조사

2019. 2. 19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네이버 검색어 검증위원회

검색어 서비스 이용과 정책에 관한 조사 및 결과 발표(20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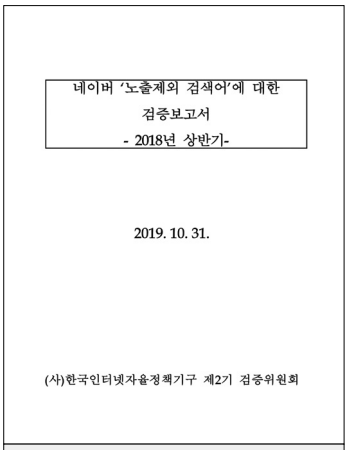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
- 2018년 상반기-

2019. 10. 31.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제2기 검증위원회

2018년 상반기 네이버 검색어 검증보고서(20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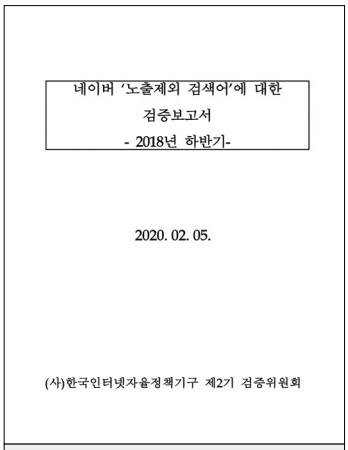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
- 2018년 하반기-

2020. 02. 05.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제2기 검증위원회

2018년 하반기 네이버 검색어 검증보고서(20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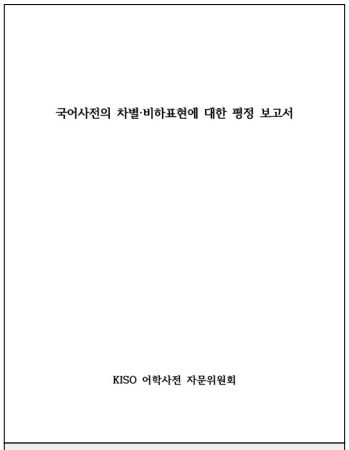
국어사전의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평정 보고서

KISO 어학사전 자문위원회

국어사전 차별 · 비하표현에 대한 평정보고서(20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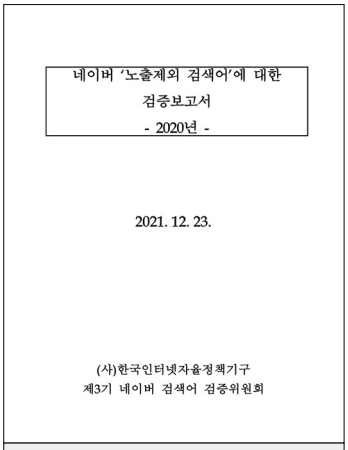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
- 2020년 -

2021. 12. 23.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제3기 네이버 검색어 검증위원회

2020년 네이버 검색어 검증보고서(202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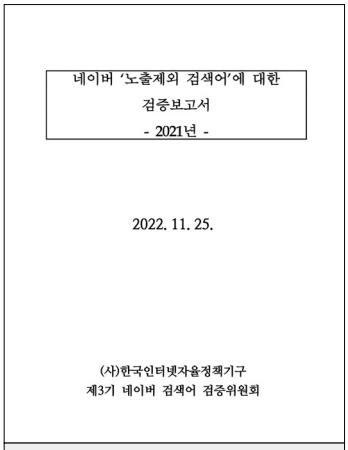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
- 2021년 -

2022. 11. 25.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제3기 네이버 검색어 검증위원회

2021년 네이버 검색어 검증보고서(202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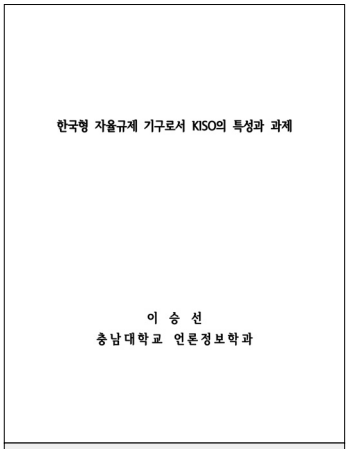
한국형 자율규제 기구로서 KISO의 특성과 과제

이 승 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한국공법학자대회〉 'KISO의 성과와 한계', '자율규제와 정부규제의 관계' 발표(20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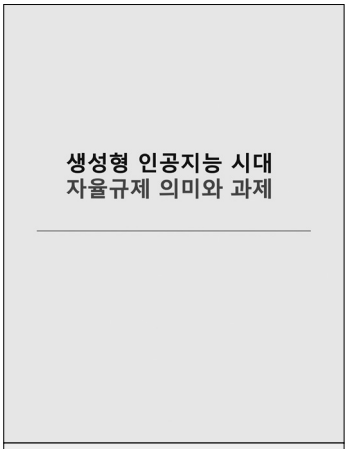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자율규제 의미와 과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자율규제 의미와 과제' 발표(20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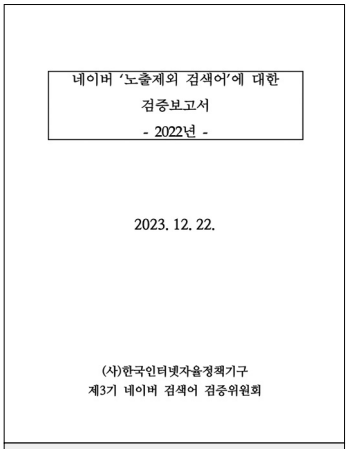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
- 2022년 -

2023. 12. 22.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제3기 네이버 검색어 검증위원회

2022년 네이버 검색어 검증보고서(2023.12.)

13.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

가. 개요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는 2013년 2월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심의범위 등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사업자가 겪는 판단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정 사전·사후심의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의 광고심의를 시행하고자 출범하였다.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를 위원장으로 김학웅 변호사(법무법인 시화),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등 외부 법학 전문가 3인과 회원사의 광고 담당자 3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하였다.

나. 주요 성과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는 매체사와 광고주의 자율적인 광고 집행을 돕기 위해 광고심의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사전 광고심의를 하였다. 심의 과정과 광고 집행 여부의 판단 근거 및 적합 여부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유사사례에 대해 여타의 광고주가 참고하여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 4월 회원사 DA광고 공통 심의 기준을 취합·분류하여 회원사 광고심의 가이드 유형화 및 분석을 통한 기본 지침서 제작 기반을 마련하였다. 위와 관련, 이용자 및 중소 규모 광고주가 활용할 수 있는 DA광고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광고주 편의성 제고 및 허위·과장 광고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 2017년 네이티브 광고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논의하고 온라인 광고 심의 지침서 제작을 추진하였다.

상정되는 심의 안건이 없고 온라인 광고 심의 관련 업무가 다양한 기관에 분포되어 있어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2018년 활동을 종료하였다.

제 3 장

KISO 자율규제 활동의 평가

제1절 정책위원회

제2절 게시물·검색어
1. 게시물·검색어 정책
2. 혐오표현 정책
3. 코로나 대응 게시물 정책

제3절 서비스 운영
1. 인물정보 정책
2. 어학사전 서비스 정책

제4절 청소년보호 정책
1. 청소년보호검색어 관리
2. KISO 이용자보호시스템(KSS)

제5절 부동산 허위매물 검증

제6절 챗봇 윤리 정책

제 3 장

KISO 자율규제 활동의 평가

제1절 정책위원회[6]

1. 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정책위원회는 KISO의 자율규제 거버넌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KISO는 자발적 자율규제 모델로 정부로부터 운영과 재정이 독립된 기구이며, 사업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율규제 규범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기구이다.

자율규제기구의 내적 정당성과 외적 정당성은 기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내적 정당성은 기구 내부의 운영 절차와 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이어야 하고, 외적 정당성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기구의 규범과 활동이 신뢰를 얻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한국형 자율규제의 대표 거버넌스 모델이다. 내적 정당성 차원에서 보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책위원회는 외부 및 내부(회원사) 위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모두 참여해 정기적인 회의와 투표 절차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요한 결정은 전원합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무엇보다 긴 토론을 통해 주요 결정사항을 위원들 간 합의로 도출하려는 '합의 기반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이해적 토론을 전제로 결론이 산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결정과정이 '정책결정문'을 통해 모두 공개되고 있어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외적 정당성은 △외부 이해관계자 또는 신청인 등과의 소통, △운영 및 의사결정의 독립성, △명확한 규칙에 기반한 비차별적이고 공정한 규범 체계, △법률 체계의 준수 등이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정책위원회는 외부와 내부 이원의 균형있는 긴장구조와 정책결정과 심의결정 등의 의결사항이 이사회와 독립적으로 의결된다는 점에서 독립성의 요소를 충족한다. 또한 정책 및 심의결정문을 공개함에 있어 그 판단 기준을 현행 법률 및 판례에 기반해 '법률 체계와의 조응성'을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다. 정책위원회의 운영규정과 운영세칙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논쟁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규범 체계의 공정성과 차별성의 문제를 제기받은 바가 없다는 점도 높게 평가할 요소이다.

KISO 설립 단계에서부터 정책위원회는 자율규제의 핵심인 규범 체계의 형성 기능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자율규제 모델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6 황용석 정책위원 집필

2. 정책결정

정책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은 정책결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이라 함은 '자율규제기구의 실천규범'을 의미한다. 정책결정이 규범 체계로서 가장 높게 평가될 부분은 '입법 보충성'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점이다.

자율규제 규범 체계에서 '입법 보충성(principle of subsidiarity)'이란 국가의 법적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자율규제기구가 보완하여 보다 유연하고 세밀한 규제를 실현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기존의 법률적 규제의 보안적 역할을 함은 물론,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적응해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유연성'을 갖추고, 내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정책위원회의가 발표한 주요 정책결정들을 보면, '공인의 임시조치 예외조항', '온라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정책',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 등은 기존 법률로 처리할 수 없지만 시급하게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들을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결정은 관련 업계가 스스로 참여해서 만든 규범이기 때문에 규제의 수용성과 준수도가 높다. 회원사들은 정책결정 내용을 약관이나 서비스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정책결정이 자율규제활동의 실천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과 규범 형성에 참여한 회원사 또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준수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3. 심의결정

정책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심의결정이다. 심의결정은 내용규제 영역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심의결정은 헌법 및 현행 규제법률에 대한 엄격한 검토, 게시물이 담고 있는 맥락, 권리침해의 특성과 피해구제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책위원회의 심의결정은 결정문을 통해서 심의결정의 근거를 법률 및 선행 판례로 제시하고, 게시자와 신청인의 양가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왔다는 점에서 내용규제의 중요한 규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내용규제 영역을 넓힌 점도 특징적이다. 초기에는 블로그나 댓글 등 이용자의 게시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후 연관검색어와 같이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표현물로도 확장했다. 연관검색어는 이용자의 검색활동의 누적된 결과가 데이터로 나타난 것이지만, 이용자 피해구제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자 구제에 많은 선례를 남겼다. 이처럼 심의결정은 내용과 형식 모든 요소에서 행정적 규제가 수행하지 못한 영역을 확장하고 보완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절 게시물·검색어

1. 게시물·검색어 정책[7]

가. 개요

게시물·검색어정책소위원회는 3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2021년 2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KISO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근거). 인터넷 규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시물과 검색어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위원회가 심의결정을 하고 정책위원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이다. 최종적으로 게시물·검색어 심의가 결정되면 KISO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결정문을 공개함으로써 자율규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게시물 심의는 주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이용자 권리 침해 정보가 주요 대상이다. 검색어 심의의 경우 노출되는 검색어나 검색 결과와 결합하여 이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대상이 된다. KISO의 게시물과 검색어 심의결정에 따라 KISO 회원사들은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KISO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에 대해 이용자 보호를 하되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해서는 명백히 허위사실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임시조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KISO 정책규정 제3조). 이는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KISO 정책의 원칙이며 게시물·검색어정책소위원회도 심의결정의 중요한 가치로 적용하고 있다.

나. 주요 심의내용

1) 심의 안건 감소

우선 게시물·검색어 심의 건수가 전체적으로 많지 않고 다수의 안건이 종교단체에 의해 제기되었다. 과거에 비해 게시물·검색어 심의 건수는 확연히 줄었고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건수도 게시물 9건, 검색어 1건으로 총 10건이었다. 게시물 심의 건수는 종교단체 5건, 사립대학교 2건, 전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각 1건으로 종교단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검색어 심의 1건도 종교단체였다.

2) 종교 관련 심의 안건

종교단체 관련 심의가 많았으나 소위원회는 기존 대법원의 판결 등을 적용해 종교(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되 법원 판결이나 언론중재위원회 결정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입증된 경우 게시물을 제한할 수 있다는 KISO 정책의 기존 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종교 관련 표현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입장에서 볼 때 다소 거칠고 불쾌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종교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제시는 다소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단성을 둘러싸고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수사적·비유적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종교적 이단성에 대한 논쟁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특성상 다소 무례한 언사가 동원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

7 윤성옥 전 정책위원 집필

3) 공인 관련 심의 안건

전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사립대학교와 같은 공인의 경우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였고 명백히 허위의 사실인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가 심의 결정에서 매우 주요한 쟁점사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소명자료나 법적 결정으로 명백히 허위인 경우로 판명되는 경우 신청인의 권리를 구제하였고, 그 외 의견 표명인 경우 욕설과 오류가 일부 포함되더라도 게시물의 전체 내용상 비중이 극히 낮고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의 영역 내에서 해결 가능한 경우 등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4) 검색어 심의 안건

검색어 심의 안건은 한 건으로 종교단체명과 함께 '이단'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사안이었다. '이단'이라는 표현은 특정 종교단체 내에서의 의견 표명의 성격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8. 10.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을 참조하여 적용하였다. 아울러 종교에 대한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검색어를 유지할 때 보호되는 공익과 요청인의 피해를 비교형량하여 해당없음을 결정하였다.

다. 의의와 과제

1) 정책기준의 안정화

게시물에서 자율규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KISO가 정책 규정을 마련하고 실제 심의에 적용할 때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규정과 기준은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규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자율규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게시물·검색어 심의 안건이 감소한 것은 혼란을 겪거나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 줄어들고 있고 게시물·검색어 정책기준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공인 이외 심의 안건 개발

소위원회 심의 안건의 특징은 신청인이 종교단체가 다수이고 전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사립대학교와 같이 모두 공인이었다. 게시물에서 주로 공인 관련 심의를 하는 것은 KISO 회원사들이 이미 일반인의 권리침해는 자체적으로 적극 보호하고 있어 자율규제를 통해 심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환경에서 일반인들의 명예, 사생활, 초상 등 다양한 방식의 권리침해 양상을 고려하건대 일반인 대상 심의 안건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혐오표현 정책[8]

혐오표현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혐오표현의 공격을 받은 개인과 그 개인이 소속된 집단 구성원들의 존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혐오표현은 공격 대상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심화하고 물리적 폭력의 행사를 부추길 수도 있다.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이나 배제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혐오표현이라고 하여 모두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법적인 처벌 위주의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나 혐오적 요소가 일부 포함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더라도 무조건 그러한 표현을 차단하려고 하면 곤란하다. 혐오표현에 대한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역할의 중요성, 실행의 어려움은 이러한 딜레마에서 비롯된다.

8 이승선 정책위원 집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12월 펴낸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온라인 혐오표현'은 빠르게 확산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온라인 혐오표현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죄책감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발화하며,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유통되는 초국가적 특성을 지닌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이나 법적 규제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IT기업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 규제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보고서가 출간된 시기를 전후해 국회에는 '혐오표현 규제법'과 같은 법률 제정안을 비롯, 형법에 혐오표현죄를 신설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에 혐오표현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자율규제 연구 전문가들은 KISO가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율규제기구라고 평가해왔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혐오표현에 관한 문제만 하더라도 KISO는 이미 2013년 자율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시작했다. 2013년 4월 17일 정책결정 제19호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기존의 정책결정을 개정했다. 이 결정에서 KISO는 인터넷 공간은 다양한 지역·종교·사상·장애·인종·출신국가 등을 아우르는 소통의 영역이어야 한다며, 연관검색어 서비스에서 특정 속성을 이유로 비하하는 표현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나아가 2014년 2월 KISO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결정'을 내렸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적 표현을 제한없이 허용할 경우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의사소통,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이에 KISO는 <정책규정> 제5장에서 정한 특별 정책의 하나로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통해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의 경우' 회원사가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KISO는 어학사전 서비스 정책을 통해 국어사전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평정 보고서를 펴내고 차별표현 바로 알기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세월호 참사, 대통령 탄핵 국면, 흉포화한 길거리 폭력과 범죄, 코로나19 창궐 등을 겪으며 한국 사회는 혐오표현으로 인한 개인적·집단적 피해 확산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 처했다. 2022년 KISO는 기존의 연관검색어, 차별적 표현 완화, 어학사전 서비스 정책을 넘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시민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인지 수준과 감수성이 높아지고,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간단없이 전개된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되었다.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2022년 8월 3일 첫 번째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KISO가 성공적인 자율규제 모델로 평가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외부의 전문가 인력을 초빙해 인력의 전문성과 기구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한다. 정책위원 중에서 김민호(성균관대, 법학), 김현경(서울과기대, 법학), 이승선(충남대, 언론학) 위원이 참여하고 외부위원으로 유현경(연세대, 국어학), 윤성옥(경기대, 언론학), 정필운(교원대, 법학), 최항섭(국민대, 사회학) 위원이 참여했다. 회원사에서는 김대기 수석(카카오), 김정윤 대리(네이버), 김훈건 팀장(SK커뮤니케이션즈), 이상식 리더(네이버), 제아름 과장(카카오)이 참여하고 KISO 사무국에서 김성덕 기획팀장, 곽기욱 책임연구원, 박연규 책임연구원, 유은재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신익준 사무처장과 박엘리 정책팀장은 '혐오표현심의위원회'가 출범하고 운영될 수 있는 물심의 기반을 제공했다. 출범 후 심의위원회는 2024년 4월까지 20차례 회의를 열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정필운·윤성옥 위원의 발제로 혐오표현의 특성과 법적 규제의 한계, 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입법 상황, 방통심의위 심의결정의 동향에 대한 자체 세미나를 개최했다. 회원사 위원인 김대기·김정윤·김훈건 위원은 각 회원사의 혐오표현 정책의 내용을 공유하며 회원사 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다. 제3차 회의에서는 트위터, 구글, 메타의 혐오표현 정책 내용과 특성을 관계사 임원과 신익준 처장이 발표, 공유했다. 제4차 회의는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세미나실에서 점심 때부터 밤늦게까지 진행되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회의가 진행되기도 하는 등(제14차 회의) 통상적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와 같이 강도 높게 진행되었고, 위원들 모두 성심을 다해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숙지하고, 쟁점에 대해 격의 없이 토론하고, 결론을 하나씩 도출해냈다. 최항섭 위원의 헌신으로 2023년 12월 심의위원회는 온라인 혐오댓글에 대한 온라인 이용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를 가이드라인 개정과 심의요청 사례의 실제 심의에 활용했다.

혐오표현심의위원회가 추구한 과업은 2개였다. 첫 번째 과업은 위원회 위원과 회원사가 동의하고 온라인 이용자들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혐오표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나 관점은 매우 다양하다.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7명의 외부위원이나 회원사 위원, 또 사무국의 연구원들마다 견해가 달랐을 수 있다. 그러나 기왕에 KISO가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세운 이상, 밤을 새우는 토론을 통해서라도 심의위원회는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온라인상의 특정한 표현이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회원사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했다. 이 작업의 1단계는 2022년 여름부터 2023년 봄까지 진행되었다. 2023년 4월 27일 정책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초안을 검토하고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2024년 2월 일부 개정되었다. 동 가이드라인은 학술적인 논의를 넘어 현실 사회의 혐오 현상의 특성도 수용했다. 혐오표현을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했는데, 속성으로는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 지정되었다.

심의위원회의 두 번째 과업은 이용자나 회원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례에 대해 가이드라인에 따른 심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심의를 요청한 종교·성별·지역·나이·장애·성적지향·국가·인종·민족 등 다양한 속성을 이유로 한 표현물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가이드라인이 각 속성별 심의 사례에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위원들은 토론을 거듭했다. 각 위원의 탁월한 전문성과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엄정한 기준을 토대로 위원들은 상호 존중하며, 격렬한 토론을 통해 심의의 결론을 도출해나갔다. 회의에서는 다수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의견서를 통해 제시된 관점에 대해서도 위원들은 공유하였다. 그러한 심의과정을 거쳐 2024년 5월 31일 종교, 출신국가 및 인종, 지역, 성별, 나이, 성적지향, 장애 및 질병 등 모두 64개 심의사례에 대한 심의결정문이 회원사와 이용자에게 전달되고 KISO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었다. 7건에 대해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44건에 대해서는 '해당없음' 결론을 내렸다. 또 9건에 대해서는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한 비하나 조롱 표현이라고 보고 각 회원사가 조치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개정, 모든 심의결정문의 작성 과정마다 유현경 위원이 문장과 자구 등을 세심하게 검토해주었다.

혐오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러 속성 대상에 대한 표현물의 혐오표현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가장 성공적인 자율규제 모델로서 독립성, 전문성, 실행력을 두루 갖춘 KISO의 전통과 역량 덕분이다. 더불어 각 학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심의위원들의 탁월한 전문성과 혐오표현 문제 해결을 위한 헌신의 결과이기도 하다. 심의위원들은 KISO 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심의를 통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면서도 혐오표현의 해악이 줄어들고, 사회적 다양성이 보장되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기를 갈구하며 이 작업에 진력했다. 또 회원사를 대표해 참여한 심의위원들의 열정과 배려가 없었더라면 이만한 결과물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무국의 연구원들을 이끌면서,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려내야 하는 어려운 심의위원회의 작업을 묵묵히 수행해온 김성덕 팀장의 특별한 노고를 이 백서에 새겨 두고자 한다.

3. 코로나 대응 게시물 정책[9]

가. 게시물 정책의 배경

2019년 11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하여 3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COVID-19) 상황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이고(WHO, 2020.1~2023. 5).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상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 관리된 미증유의 상황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 690,240,112명(한국 34,436,586명), 사망자 수 6,906,402명(한국 35,812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희생이 발생되었고(질병관리청, 2023.9.3. 기준), 그 외 사회적·경제적 피해도 컸음은 물론이다.

9 황창근 전 정책위원 집필

일반인에게 코로나19처럼 의료 분야는 생소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위협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발생원인, 증상, 백신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만연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실제 직접적으로 2차피해로 나타나기도 한다.[10] 이에 허위정보, 오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대된다. 그러나 지나친 통제는 미증유의 팬데믹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합리적 대응을 위한 정보의 필요, 즉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표현의 자유시장에서 허위정보는 사라지게 마련이지만 코로나19와 같이 개인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있는 문제에서는 마냥 자유시장의 작동에만 매달릴 수 없는 노릇이니 어느 정도의 통제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적 위기의 대응이라는 균형감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내 복지부, 문체부, 방통위, 질병청, 식약처, 경찰청 등 6개 기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가짜뉴스 모니터링부터 사실관계 확인, 심의 및 조치 등 전 과정에서 협력·대응하는 방식이다(표3-1 참조).[11]

<표3-1> 정부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추진 체계 (출처: 질병관리청)

언론 등 시민사회의 대응은 언론의 자율적인 팩트체크 시스템과 시민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을 통한 사실 확인 절차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다음 <표3-2>과 같다.[12]

<표3-2> 언론 및 시민사회의 허위조작뉴스 팩트체크 결과 (출처: 질병관리청)

백신 가짜뉴스 주요 사례		팩트체크 결과
"백신 접종 거부 시 긴급체포"	⇨	언론사 사칭 합성
"AZ 백신 효능, 65세 이상에서 8%"	⇨	독일 경제지 오보
"백신 선택권, 한국만 없다"	⇨	영국, 프랑스, 스위스도 선택 불가
"英 의학 저널 인용, 화이자 효능 0.4% 수준"	⇨	실제 저널 내용과 정반대(95% 수준)
"중국산 백신, 코벡스 통해 도입 예정"	⇨	코벡스 계약 업체 중 중국 업체 無
"국내 논문, '백신 뇌 조종'의 결정적 증거"	⇨	해당 논문은 백신 뇌 조종과 무관
"백신으로 DNA 조작, 인간을 노예화"	⇨	mRNA 백신은 세포핵 안으로 진입 X
"백신에 낙태아, 동물 성분, 중금속 함유"	⇨	해당 성분 함유하지 않음

10 예컨대 국내 교회에서 소금물을 뿌려 소독하여 집단감염이 발생되고, 가정에서 메탄올을 뿌려 일가족이 중독된 사고, 이란에서는 소독용 알코올 을 마셔 700여 명이 사망하고 90여 명이 실명한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공중보건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3판), 2022.8. 76면.
11 이상 내용은 질병관리청, 공중보건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3판), 2022.8. 77면.
12 질병관리청, 공중보건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3판), 2022.8. 77면.

KISO는 이러한 범정부 및 민간사회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마련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2021년 4월 15일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이하 '코로나19 정책'이라고 함)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나. 내용

코로나19 정책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규정이고, 허위조작정보의 삭제 등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이슈가 되는 것인 만큼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KISO 정책규정' 내에 포함하여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특별규정 형식으로 제정되었다. 사실 KISO는 코로나19 정책 이전에도 이른바 가짜뉴스에 해당되는 허위 게시물 정책을 제정·운영하고 있지만(제34조), 코로나19 게시물 정책을 이처럼 정책규정 내로 포함하지 않고 예외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아주 예외적인 점임을 고려한 것이다. 가짜뉴스 정책에서도 적용범위를 언론 형식의 가짜뉴스로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우려한 정책의 형성 연혁도 감안한 것이다.

규정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인데,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두지 않고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13] 즉 코로나19의 존재, 치료, 예방, 진단, 감염,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와 관련된 게시물로서(제1항 제1호) 세계보건기구(WHO) 또는 질병관리청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정보(제1항 제2호)로 제한하였다. 이로써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칫 허위조작정보라는 이름 하에 무분별하고 또는 광범위하게 코로나19 관련 게시물의 삭제 등의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의 경우에는 공중위생이라는 공익을 위한 게시물 제한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해당 여부를 회원사가 KISO에 심의 요청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마련하였고, 제3항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요건과 관계없이 KISO 정책규정의 제2장(게시물정책), 제3장(검색어정책)에 해당되면 동 규정에 의하여도 게시물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성과와 과제

2020년 본격적으로 시작한 코로나19에서 수많은 사람이 확진, 사망하게 되고 인포데믹(Infodemic)으로 대표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등의 혼란에서 정부와 사회는 아무런 대응이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의학적인 것은 물론이고, 행정적·법적 대응[14]도 마찬가지였다.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은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권 등 기본권 침해가 일상화되었고, 인포데믹(Infodemic)으로 대표되는 무분별한 루머는 사회의 혼란을 부채질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인터넷 이용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인터넷 서비스에서의 허위조작정보의 대응은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KISO는 코로나19 정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대응하게 되는데, 당시 공중위생이라는 공익상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코로나19 관련 게시물 중에서 질병관리청 등 공인기관이 인정한 내용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제한한 것은 내용도 적절한 것이라고 보이며, 시행 시기도 시의적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KISO는 코로나19 정책이 시행되던 기간 중 질병청 협조 요청과 KISO 종합신고센터 이용자 신고라는 두 가지 트랙에 따라 처리를 하였는데, 전자가 총 5,665건, 후자가 101건으로 대부분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2021년 2,106건, 2022년 3,297건, 2023년 363건, 총 5,766건을 처리하였는데 그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조치를 하였다. 이는 2018년에 도입한 가짜뉴스(허위 게시물) 처리 통계와 비교하면 더욱더 두드러진다고 하겠다(2018, 2019, 2022, 2023년 각 0건, 2020년 5건, 2021년 8건).

---

13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마치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과 똑같이 어렵다.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합성어로 보이지만 조작정보는 대부분 허위정보일 것이므로 허위정보와 동의어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정의가 어렵다면 굳이 허위조작정보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말고, 규정의 적용 대상 내지 범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상 실효적이라고 할 것이다.

14 코로나19 대응의 법적 근거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코로나19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도 있지만,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2024년 1월 30일까지 타법 개정 포함하여 총 42회를 개정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헌정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공중위생 위기에 대한 법적인 준비가 얼마나 미비하였던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를 통하여 KISO가 국내 유일한 인터넷자율정책기구로서 현존하고 긴급한 공중위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대응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감염병과 같은 공중위생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사익과의 균형을 찾아나갈지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KISO가 마련한 코로나19 게시물정책은 향후 도래할지도 모르는 감염병 사태 시 허위조작정보 게시물 정책의 중요한 선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제3절 서비스 운영

1. 인물정보 정책[15]

가. 인물정보 서비스의 체계와 기준 마련

2019년 6월, 그간의 인물정보 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확보하여 회원사들이 신뢰 기반 인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공개하였다.

이후 2020년, 회원사 간 직업목록을 조정·통합하였으며, 직업별 인물정보 등재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2020년 12월,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한 각종 사안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비스운영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나. 인물정보의 저변 확대 기여

종래 인물정보 서비스는 특정 소수 직업인의 인물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다양한 직업군을 발굴하고 그 직업명 및 등재기준을 꾸준히 확대하여 거의 대부분의 직업 활동자가 인물정보 서비스 등재가 가능해짐으로써 인물정보 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반면, 인물정보 서비스가 확대됨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인물정보 서비스를 홍보 또는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인물정보를 등재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인물정보 등재기준 및 검증의 중요성이 요구되었다.

다. 직업인의 자긍심 향상에 기여

인물정보 서비스의 등재 직업군이 계속 추가·확대되면서 종래 낮은 지명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직업적 정체성이 미약했던 직업군들도 정식의 직업명 및 등재기준을 마련하여 등재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직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1년 10월, 인물정보 서비스에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등 4개 직업을 신설하여 많은 농민, 어민들이 농업인, 어업인 등의 직업명으로 인물정보 서비스 등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직업 종사자들의 자긍심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언론 보도 및 평가가 있었다.

「농민이면서도 농민이라고 말할 수 없던 전국 240만 농민이 직업을 되찾는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은 자체 '인물정보' 직업란에 '농업인'을 추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 소식을 전해 들은 농부 요리사 강레오 씨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선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요리사·기업인·공예가 등 1인 다역 가운데 가장 애착을 느끼는 직업이 농민"이라면서 "수년 전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이후 포털사이트에 직업 변경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바꿔주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25일 현재 다음에서 강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기업인'과 '농업인'으로 표시돼 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농업·농민을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농민신문, 2021년 10월 27일 기사)

15 김민호 정책위원 집필

2023년 7월, 보험설계사 등 종사자에 대하여 '보험 컨설턴트' 직업명을 신설하고 등재기준을 마련하여 인물정보 서비스 등재가 가능하도록 결정하였다. 58만 9,000여 명에 달하는 직업 종사자들의 인물정보 서비스 등재가 가능해졌으며, 해당 직업 종사자들이 환영하는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라. 공익 위배행위자에 대한 인물정보 등록 또는 삭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인물정보 등록 거부 또는 삭제의 사유로서 이른바 '공익 위배행위의 발생'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반사회적 행위가 있거나 인물정보를 악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인물정보 서비스의 존재가치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공익 위배행위로 보아,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회원사가 인물정보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범죄행위'의 의미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이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실제 구체적 사안을 적용할 때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인물정보 서비스의 성격과 자기결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공익 위배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였고, 범죄행위 역시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헌법적 이념을 고려하여 형이 확정되는 등 구체적 범죄행위가 확인된 경우로 제한적 해석을 하였다. 다만 기소 상태에 있거나 범죄가 확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반인륜적·반인도적에 해당하는 중대한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등재 보류·거부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결정 사례로는 '작가 ○○의 인물정보 신규 등록의 건'을 인용한 경우 등이 있다. 하지만 '목사 ○○○ 인물정보 삭제의 건'에서처럼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인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부정적인 이슈에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인물정보 삭제 조치를 결정하였다.

한편, 범죄에 대한 형이 확정되었던 인물에 대하여 언제까지 인물정보 등재를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통상적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인물정보의 등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하지만 '전 공무원 ○○○ 신규 등록의 건'에서처럼 비록 등록 신청 시점에 불법·범죄행위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과거의 불법·범죄행위 등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때에는 신규 등록을 거부하였다.

마. 여전히 고민스러운 문제와 풀어야 할 숙제

인물정보 서비스 등재 또는 삭제 요청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계적 판단이 가능한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나, 기계적 판단이 오히려 인물정보 서비스의 원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목사 등 성직자의 경우 정통과 이단, 주류와 비주류 등을 구분하고, 특히 사이비에 대한 판단도 어렵기 때문에 '종교법인'으로 등록된 교회 소속 목사만을 인물정보 서비스의 등록을 허용하였는데, ○○대학교 교회 소속 목사의 경우 '학교법인'으로 등록된 교회 소속으로 등재기준에 합치되지 않아 지금까지 등재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비스운영소위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대학교는 종교재단, 이른바 미션 스쿨이므로 이에 소속된 교회는 '종교법인' 소속 교회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아 소속 목사들의 인물정보 서비스 등재를 허용하였다.

이처럼 인물정보 서비스는 시간이 갈수록 이용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그만큼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이슈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서비스운영소위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깊은 연구과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어학사전 서비스 정책[16]

가. 서론

포털에 공개되는 국어사전 등 어학사전은 실제 언어 현상을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표제어, 뜻풀이, 용례 등 사전 콘텐츠(내용)에 차별·비하적인 표현이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포털의 어학사전 서비스에서 양성평등, 장애인비하, 동물비하 등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문제 제기나 해당 주제를 다룬 언론 보도 등에 따라 단발적으로 사후조치를 취해 왔다. 사회적으로 차별 이슈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변화·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어학사전 내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KISO는 2021년 8월, 포털의 어학사전 서비스 내 차별·비하표현의 사회적 인식과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신설하였다. 워킹그룹은 어학사전 내 차별·비하표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학사전 서비스의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전 서비스 이용의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졌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활동한 어학사전워킹그룹은 총 11회의 회의 및 실무 연구진과의 협업을 통하여 어학사전 내의 '차별·비하적 표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과물을 도출해내었다.

1)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2) '차별표현 바로알기 캠페인' 진행
3) '국어사전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평정보고서' 발간

어학사전워킹그룹은 2022년 9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결과물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어학사전 내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사전 사용 문화의 건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나. 어학사전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어학사전워킹그룹은 첫 번째 작업으로 포털이 제공하는 어학사전 내 차별·비하표현에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 어학사전 내 차별·비하적인 표현과 관련하여 건전한 사전 서비스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과 기본적인 원칙, 필요한 조치 등이 기술되어 있다.

어학사전 내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많으나 실제 사전 서비스와 관련된 해당 규정이 제정된 것은 이번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이 국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어학사전 내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다. 국어사전의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평정보고서 발간

어학사전워킹그룹은 가이드라인 제정 후 어학사전 내 차별·비하표현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구팀과의 협업을 통하여 포털에서 서비스되는 어학사전 내 1만여 개의 표제어를 검토하는 작업을 하였다. 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한 개별 표제어 검토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6 유현경 위원 집필

<그림3-1> 어학사전워킹그룹의 개별 표제어 검토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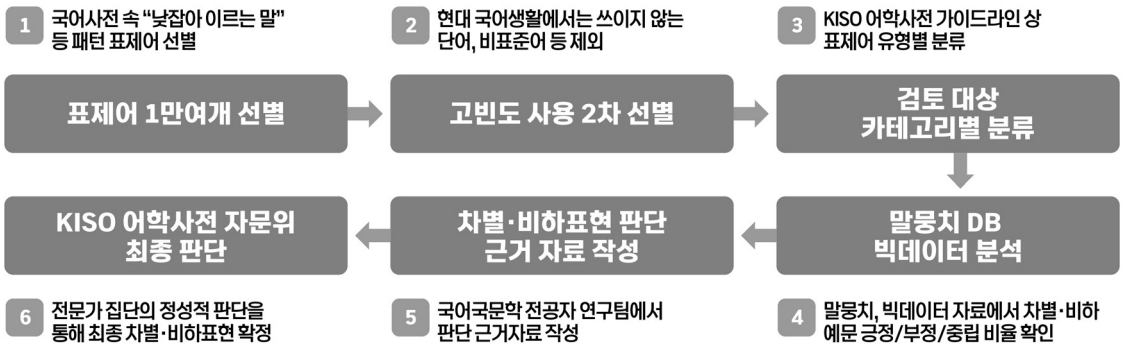

작업 결과, 1만여 개의 표제어 중 500여 개의 표제어를 차별·비하표현으로 선별하였으며 이 작업의 과정 및 결과를 담은 '국어사전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평정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선별된 500여 개 표제어에는 포털의 어학사전 이용 시 주의 알림 문구를 표기하였으며 이와 함께 '차별표현 바로알기 캠페인'을 수행하였다. '국어사전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평정보고서'는 객관적 데이터와 방법론을 토대로 어학사전 내 차별·비하표현을 확인·평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포털의 사전 서비스에 반영하고 캠페인을 수행함으로써 사전 이용자의 어학사전 내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고 이용자 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라. 결론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차별과 비하가 존재하고, 그 중 상당수가 언어를 통해 표출된다. 언어를 통해 표출되는 차별과 비하는 그 자체로 표현의 대상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학사전워킹그룹은 차별·비하표현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전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어학사전 내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학사전 서비스의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사전 서비스 이용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였으며 '차별표현 바로알기 캠페인'을 병행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학사전워킹그룹은 2022년 10월 한글날에 맞춰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회견을 가지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하였다. 이로써 어학사전워킹그룹은 소명을 다하고, 워킹그룹에서 수행하였던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연구 및 평정 작업은 KISO 내에 '혐오표현심의위원회'가 상설기구화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제4절 청소년 보호 정책[17]

1. 청소년보호검색어 관리

가. 서론

KISO는 청소년 유해물이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에 온라인청소년보호체계구축위원회(이하 '온청위')를 설립했다. 2017년 2월 KISO 정책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검색어들을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온청위가 이에 대한 세부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온청위는 2017년 3월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 양사가 구축해온 청소년유해검색어(이하 '청유어') 목록을 제공받았으며 이들 목록을 검토하여 통합된 청소년유해검색어 목록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온청위는 2018년 5월 약 6만 개의 청유어들을 각 검색어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1차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확보된 청유어 목록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청소년유해검색어 DB'이며 이는 KISO의 '자율규제DB소위원회'를 통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갱신 및 관리되고 있다.

나. 청소년보호검색어 설명

KISO의 정책규정에 의하면 '검색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 혹은 '검색어의 검색 결과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 회원사들이 이와 관련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원사들이 청소년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검색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검색어 목록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을 근거하여 진행된 작업이 온청위의 '청소년유해검색어 DB' 구축사업이었다.

과거,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는 검색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청유어들에 대한 목록을 개별적으로 관리했다. 하지만 양사는 이들 목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KISO의 온청위와 함께 이들 목록을 통합하는 작업을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9개월간 진행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중복되거나 부적절한 단어들이 제거되었으며 약 5만 단어로 이루어진 '청소년유해검색어 DB'를 확보 및 해당 청유어 목록이 관리되고 있다.

'청소년유해검색어 DB'의 단어들은 4개의 대분류('성인·음란성', '유해약물·유해물건·유해업소', '사행심 및 불법행위', '잔혹·혐오성')와 '기타' 포함 총 18가지 세부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분류는 청유어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며 특정 검색어를 청유어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 그러한 판단이 내려졌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다. 청소년보호검색어 의의

회원사들은 '청소년유해검색어 DB'를 이용하여 검색어가 특정 청유어 전체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 이용자들에게 관련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비록 청유어를 포함하는 검색어일지라도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다른 의미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에 예외를 두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유해검색어 DB'의 유지는 지속적인 관찰과 논의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특정 단어가 청유어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사

17 이재신 전 정책위원 집필

회적 상황과 맥락이 변화한다면 그 의미가 다르게 통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어를 청유어 목록에 계속 포함하는 것은 이용자의 편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여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로 활용된다면 이를 시의적절하게 청유어로 지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KISO는 현재 '자율규제DB소위원회'를 통해 청유어 지정과 해제에 대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에는 해당 소속 위원들에 더해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회원사의 운영 실무진도 함께 참여하여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DB 운영을 위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청소년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 결론

'청소년유해검색어 DB'의 구축 및 운영은 KISO가 지난 2013년 청소년 유해물이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결정 이후 얻어낸 구체적인 산물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회원사들은 청소년에게 잠재적으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검색어와 콘텐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KISO 회원사들이 국내 인터넷 서비스 환경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자율적 노력의 성과를 대변해준다.

2. KISO 이용자보호시스템(KSS)

가. 서론

그동안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들이 작성하는 글에서 수많은 욕설이나 비속어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자들은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 KISO는 지난 2023년 11월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욕설·비속어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이를 일반 단어로 치환해주는 KISO 이용자보호시스템(KSS, KISO Safeguard System)을 개발하고 이를 공개했다.

KSS는 회원사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과 댓글 등에 욕설이나 비속어가 포함돼 있으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치환이 필요한 단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KSS는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KISO는 KSS 운영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KSS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회원사 혹은 비회원사들에게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KSS는 지난 2023년에 한겨레신문이 주관한 제8회 '휴먼테크놀로지어워드 2023'에서 최고의 상인 대상에 선정되어 가장 인간친화적인 기술로 인정받은 바 있다.

나. 이용자보호시스템(KSS) 설명

그동안 KISO의 회원사이자 국내 주요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ESG)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용자들에게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욕설·비속어 관리작업을 진행해왔다. 오랫동안 서비스 과정에서 발견된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들 단어가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억제해온 것이다. KISO는 양사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확보된 단어 목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약 60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DB를 구축할 수 있었다.

KSS는 이렇게 구축된 DB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글에 욕설이나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판단한다. 이때 단순히 DB 속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ㄱ H새끼, GR하는, 등1신' 등과 같은 특수문자, 숫자 등이 포함된 혼합 형태의 단어들이 존재하는가 역시 판단 가능하다.

2022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 베타테스트에는 패션,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업체 47곳이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KSS는 약 1,080만 건의 이용자 게시글에서 약 16만 건의 욕설·비속어를 걸러내는 등 안정적인 운영을 과시했다. KSS는 2023년 12월 기준 국내 IT 스타트업, 커뮤니티, 언론사 등 19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다. 이용자보호시스템(KSS) 의의

KSS는 회원사들 스스로의 자율적 노력을 통해 KISO 회원사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의 서비스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KISO의 설립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KSS는 API의 형태로 제공되며 KSS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들은 KISO 회원사 혹은 비회원사의 자격으로 매우 저렴한 비용만을 부담하며 이용할 수 있다. KSS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KISO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 비윤리적 표현 같은 부적절한 단어를 걸러내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불만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KSS는 이용자들이 어떤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통계도 함께 제공하여 사업자들이 서비스 운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KSS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DB에 포함된 단어 목록은 포털 회원사들을 통해 제공받는 새로운 단어들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KISO는 KSS를 통해 회원사들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국내 인터넷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 결론

2023년 6월에 시작된 국내의 많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KISO가 추구하는 자율적 온라인 규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KSS는 거의 실비에 가까운 비용에 제공되고 있다. 다만 앞으로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KSS 역시 진화할 필요가 있기에 KSS의 고급화와 유지를 위한 상시적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KSS는 지속적으로 DB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 맞게 진화할 필요성도 있다. 가령 현재는 이용자들이 입력하는 단어를 KSS의 DB와 비교하고 욕설이나 비속어를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KSS의 DB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때에만 그 유용성이 유지된다. 아직 특정 단어가 DB에 등록되지 못한 상황에서 변형된 욕설 표기나 신조어가 나타났을 때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KSS에 적극 이용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5절 부동산 허위매물 검증[18]

1. 부동산 허위매물 검증을 위한 KISO의 자율규제 활동과 「공인중개사법」 개정

부동산 허위매물 검증을 위하여 KISO는 부설기구로 2012년 11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설치하였고, 2014년 4월 부동산매물검증센터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는 부동산매물검증센터가 부동산 매물 광고를 온라인에 게재하기 전 단계의 사전 확인을 거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부동산클린관리센터는 매물 광고가 진행 중인 매물에 대해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 사후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등 자율규제를 통해 관리해오고 있었다.

「공인중개사법」도 수차례 개정을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오고 있다.

2013년 「공인중개사법」 개정(법률 제11866호)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18조의2 신설).

2019년 「공인중개사법」 개정(법률 제16489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 ·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법 제18조의2 개정).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18조의3 신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7조의2 신설).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정부의 공적규제 강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공존

KISO의 허위매물 검증은 자율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 시장의 신뢰성 제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등에 일조를 하였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 새로운 제도를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매물 신고 등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매물검증센터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었던 2020년의 경우 예외가 있지만, 총 검증량은 2016년 이후 2023년까지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 관련한 강력한 조치를 도입할 경우, 공적규제의 영향으로 자율규제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한 허위매물 관련 규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를 통한 검증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

18 정경오 전 정책위원 집필

이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 소비자 보호, 시장의 신뢰성 제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 공정경쟁 유도라는 목적을 위해서 자율규제와 공적규제가 서로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서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의미한다.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KISO의 활동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공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제6절 챗봇 윤리 정책[19]

1. 추진배경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신기술소위원회는 2023년 9월 4일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인공지능, 특히 챗봇에 특화된 윤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현재 참여 회원사에 공유되어 출시 예정 신규 서비스 등에 참조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반 챗봇은 해당 기술, 목적, 산업, 대상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앞으로도 그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인간과 직접 대화하면서 불편함을 즉시 해결해줄 수 있고,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게 심리적 안정과 위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챗봇에 대한 과의존은 인간의 사회적 고립이나 사회관계의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시각이 챗봇을 통해 걸러지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사회통합 및 공동체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 서비스로 출시 직후 이용자가 40만 명 이상이었던 '이루다'가 악성 이용자들의 성희롱 발언, 이루다의 혐오 발화,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이 문제되면서 출시 3주 만에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었던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신기술소위원회는 챗봇이 초래할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챗봇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챗봇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행동 윤리, 즉 챗봇 윤리를 자율적으로 마련하였다.

2. 주요 내용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은 '챗봇'을 "이용자와 문자, 음성, 이미지 등을 통해 대화 또는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결합된 하드웨어"로 정의하였다. 또한 개발자·운영자·이용자를 정의하고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 및 권리 존중,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보안, 다양성 존중, 투명성, 책임이라는 다섯 가지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3>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본원칙	(1) 인간의 존엄성 및 권리 존중 원칙 (2)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정보보안 원칙 (3) 다양성 존중 원칙 (4) 투명성 원칙 (5) 책임 원칙
용어의 정의	챗봇 : 이용자와 문자, 음성, 이미지 등을 통해 대화 또는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결합된 하드웨어 개발자: 챗봇을 기획·설계 및 개발하여 판매 또는 이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작하는 자 운영자 : 개발된 챗봇을 이용자에게 이용가능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자 이용자 : 챗봇을 이용하는 자

[19] 김현경 정책위원 집필

개발자 준수 사항	(1) 인간의 존엄성 및 권리 존중 : 이용자의 존엄성이 훼손되거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기능이나 시스템 오류를 사전에 점검하여 피해를 최소화 (2)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정보보안 :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베이스 안전 보호 등 (3) 다양성 존중 : 편향과 차별을 줄이도록 노력,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 노력 (4) 투명성 : 이용자가 챗봇임을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기능 제공, 챗봇 서비스의 오류 가능성, 업데이트를 위한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5) 책임 : 부적절한 언어나 행위 사전 방지, 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재산 등에 해를 입히는 상황 방지, 불법 또는 유해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 등
운영자 준수 사항	- 개발자 준수사항과 이용자 준수사항을 챗봇 서비스의 기획, 운영에 반영 - 개발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을 방해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조치 - 이용자의 불복 절차 마련 - 운영정책 마련 및 공개 등
이용자 준수 사항	(1) 인간의 존엄성 및 권리 존중 : 본인 및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 (2)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정보보안 : 개인정보 보호, 정보 무단 노출 또는 공유하거나 오용 금지, 챗봇 이용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의 무단 공유 금지 등 (3) 다양성 존중 : 다른 이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편향적이거나 배척 또는 차별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 (4) 투명성 : 챗봇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활용할 때 필요한 경우 챗봇의 이용 여부를 밝히도록 노력 (5) 책임 : 챗봇의 기술적 한계와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그 서비스를 오남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이용, 챗봇의 부작용 · 기능상의 오류 등을 인지한 경우 운영자에게 신고 등

3. 향후 과제

앞으로 인공지능에 기반한 서비스는 챗봇뿐 아니라 더욱 고도화·보편화되며 인간의 삶에 스며들 것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 '범용 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은 일상적인 모든 상황에서 적응하면서 마치 공기처럼 존재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기술은 인간의 복리와 이익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인간을 위해 존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술이 미칠 영향과 위험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초기 강력한 규제는 오히려 기술의 긍정적 효과가 제대로 펼쳐지기도 전에 좌초시킬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공권력에 의한 강력한 규제가 능사만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기술의 인간지향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자율정책 및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는 자율정책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제 4 장

부록

정책규정 및 운영규정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가이드라인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리 가이드라인

심의결정문

KISO JOURNAL 전체 목차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2014. 6. 17. 제정
2014. 9. 22. 일부개정
2014. 10. 22. 일부개정
2016. 4. 20. 일부개정
2017. 1. 18. 일부개정
2017. 2. 16. 일부개정
2017. 4. 20. 일부개정
2017. 6. 22. 일부개정
2018. 3. 23. 일부개정
2022. 4.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의 회원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정보통신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검색어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각 회원사가 지켜야 할 게시물 또는 검색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소통 공간으로서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과 바람직한 인터넷문화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시물"이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로서 회원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연관검색 및 자동완성검색 서비스"란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인터넷상 관련 이슈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다수 이용자들의 검색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연관검색어"란 회원사가 이용자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한 이용에 바로 이어 입력될 확률이 높은 검색어를 화면에 자동으로 제시하는 기능에 의하여 제시되는 검색어를 말한다.
4. "자동완성검색어"란 회원사들이 이용자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이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할 때 그 입력이 끝나기 전에 입력된 문자열을 포함하는 검색어 중 자주 입력되는 완성된 형태의 검색어를 기술적으로 선별하여 검색창 주변에 목록으로 제시하는 기능에 의하여 제시되는 검색어 목록을 말한다.
5. "임시조치"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6. “후보자”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교육감의 후보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7.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교육감의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8. “후보자정보”란 후보자의 사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등의 정형화된 정보를 말한다.
9. “선기기간”이란 「공직선거법」 제33조 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의 “선거기간”을 말한다. 그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이다.
   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 지방의회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
10. “국가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을 의미한다. 소속기관 범위는 해당부서의 직제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11.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역, 기초 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함),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 면, 동, 리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 교육감, 지역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2장 게시물에 관한 정책

제1절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등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② 회원사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 등’이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2. 임시조치
   3.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등 처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창작 게시물
   2. 스크랩 게시물
   3. 딥링크 게시물(특정 게시물로 바로가기 링크한 게시물)

제4조(포괄적 임시조치 등)

① 회원사는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예상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URL 적시가 없더라도 문제가 된 화면 캡처 등 각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시조치 등 처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창작 게시물
2. 스크랩 게시물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등 결과를 통보 이후 추가적인 신고 및 처리 절차는 제3조를 따른다.

④ 제1항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제5조(처리의 제한)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수정 2014.10.22]

제5조의2(게시물 심의 요청)

회원사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율적 임시조치 등)

①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 회원사는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사이버테러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신고가 없음에도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절차는 주로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자의 보호조치라는 점을 유의한다.

제7조(처리 대상)

자율적 임시조치 등의 처리대상은 다음 각호 중에 하나로 한다.

1. 창작 게시물
2. 스크랩 게시물 (단, 언론 기사의 스크랩 게시물은 제외)

제2절 국가적 법익 침해와 관련한 게시물 처리

제8조(국가적 법익 침해 게시물 처리)

회원사는 국가기밀,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이나 외환 등과 같은 국가적 법익의 침해와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 임시조치후 게시물 심의

제9조(심의요청)

회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한 임시조치를 취한 게시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게시물 게시자가 회원사가 정한 기간 내에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을 한 경우
2. 그 밖에 회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통지의무)

① 회원사는 제9조 제1호에 따라 KISO에 심의요청을 할 경우 해당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게시물 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에 따라 KISO에 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회원사는 임시조치와 동시에 혹은 임시조치 후 제9조 제2호에 따라 KISO에 심의요청을 할 경우 해당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와 관련하여 KISO에 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본조 삭제 2014.10.22]

제3장 검색어에 관한 정책 [전면개정 2018.3.22]

제12조(원칙)

① 회원사는 자동화된 로직에 따라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 등'이라 한다)를 제시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생성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사는 이용자의 신고, 요청 등을 계기로 노출되고 있는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또는 제외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①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일반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2.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한 정보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도박 등의 불법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3.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 또는 지나치게 잔혹하거나 혐오스러운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4.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이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
5.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비속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어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경우<일부 개정, 2020.1.29>

② 회원사는 법원이 판결 등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요청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요청인이 수행한 공적업무 또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나.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요청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언론의 보도 등으로 공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만,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2.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3.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노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기업 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을 제출하거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결정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기업 등에 관한 검색에서 경쟁사 등의 상호나 상표가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것이 명백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 (따라서 어떤 기업 등의 상호나 상표에 대한 연관검색어로 경쟁사 등의 상호나 상표가 현출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음)
5.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연관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된 개인, 기관, 단체, 지역 등의 실명을 언급한 언론 보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연관검색어 등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기관, 단체, 지역에 속한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장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일부개정 2022.4.21]

제14조(목적)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보를 자유롭게 읽고, 듣고,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고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며, 인터넷은 이를 위한 중요한 소통 및 참여의 공간이다. 이 장은 선거정보가 유통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이 가지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검색 서비스의 제공)

회원사가 제공하는 선거관련 검색결과는 각사가 정보서비스를 위해 기술적으로 채택한 알고리즘에 따르며 선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후보자정보의 제공)

① 선거기간 동안 회원사가 제공하는 후보자정보는 원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한다.

② 회원사가 인물정보와 구분하여 후보자정보를 독립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후보자 이름 등을 검색어로 하는 검색결과에서 동명이인 후보자정보를 화면에 노출하는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거구가 서로 다른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선거구 아이디 순서
2. 선거구가 같은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호 순서

제17조(검색어의 처리)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이하 '후보자 등' 이라 한다)가 제13조의2에 따라 권리침해를 사유로 선거관련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하여 삭제 및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응하지 아니한다.
1.후보자
2.예비후보자
3.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4.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5.정당 내 경선 후보자 또는 그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혹은 정당 내 경선후보자 등재 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퇴시점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공직후보의 적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2.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에의 접근을 조장함으로써 명예훼손의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2.4.21.]

제18조(게시물의 처리)

① 후보자 등이 선거관련 게시물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을 하는 때에는 회원사는 후보자 등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선거기간 중 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라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요청 등을 한 때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적용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4.21]

제19조(적용범위)

이 장의 정책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 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5장 그 밖의 특별 정책

제1절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

제20조(목적)

인터넷은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어야 한다. 각 회원사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비판적 표현은

자유롭게 허용하여야 하고, 그 표현이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면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에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을 오히려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절은 회원사에게 온라인 공간에서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게시물 제한)
회원사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2장 제1절에 따른다.

제2절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제22조(목적)
본 절은 생명존중의 인터넷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3조(게시물 등 제한)
회원사는 자살과 관련된 유해 게시물이나 커뮤니티를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한다.

제24조(커뮤니티 등 제한)
회원사는 카페 등 커뮤니티 명칭에 자살·동반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방조 또는 유인하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명칭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다.

제25조(긴급한 게시물 특칙)
회원사는 신고 등을 통해 자살 시도의 긴급성과 위험성이 있는 게시물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신고한다.

제26조(검색 특칙)
회원사는 '자살' 및 '동반자살' 검색어의 검색 시 자살 예방 상담기관 등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절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 [본절신설 2014.10.22]
제27조(목적)
본 절은 인터넷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생전의 이용한 계정 및 게시물 등의 처리 방식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8조(계정)
①회원사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 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1항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계정 중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이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계정 폐쇄 요구 등)
①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소명하여 피상속인의 계정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를 요청하는 계정이 피상속인의 계정이라는 사실
2.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3. 요청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

② 사업자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백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게시물의 범위는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절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정책[본절신설 2017.3.24]

제30조(목적)

본 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정책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1조(청소년 보호 조치)

회원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검색어의 검색결과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검색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
2. 해당 검색어의 검색결과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

제32조(청소년유해검색어 관련 세부 기준)

청소년유해검색어 관련 세부 기준은 KISO 내의 특별 위원회인 온라인청소년보호체계구축위원회가 마련할 수 있다.

제5절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본절신설 2018.3.23]

제33조 (목적)

본 절에서는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기사형식을 도용 또는 사칭한 허위 게시물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4조(게시물 제한)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이 창작성과 예술성이 인정되는 패러디나 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의 경우
2.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

② 회원사는 제1항의 요건의 적용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원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규정 제2장 및 제4장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정책결정과의 관계) 이 규정의 시행으로 기존 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

2021. 4. 15. 제정
2023. 3. 31. 종료

전문

현행법상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의 처리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KISO는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을 통해 일부 허위조작정보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제정 취지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이며, 회원사는 약관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에 따른 허위 게시물 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의 유행부터 현재 백신 관련한 이슈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급증하여 인터넷 공간의 신뢰를 떨어뜨림에 따라 한시적으로 해당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허위조작정보는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또한 현재 KISO의 정책규정만으로는 언론형식이 아닌 한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심의검토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오히려 해외사업자에서 삭제된 정보가 회원사의 사이트로 유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KISO 정책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하여 특별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처리기준을 결정한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책기준을 마련하였다.

- 다 음 -

① 회원사는 코로나19에 관한 정보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이 정책은 코로나19 관련 게시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중요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코로나19의 존재, 치료, 예방 및 진단, 감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와 관련한 내용의 게시물인 경우
   2. 세계보건기구(WHO) 또는 질병관리청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② 회원사는 제1항의 요건의 적용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원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규정 제2장 및 제4장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2009. 3. 3. 제정
2009.4. 14. 일부개정
2009. 10. 1. 일부개정
2010. 2. 23. 일부개정
2012. 2. 29. 일부개정
2013. 3. 14. 일부개정
2013. 5. 27. 일부개정
2014. 10. 7. 일부개정
2018. 8. 9. 일부개정
2019. 11. 28. 일부개정
2020. 9.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하 '기구'라 한다) 정관 제32조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규정'이라 함은 회원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 등 각 회원사가 지켜야 할 심의 및 처리기준 등을 포함한 규범을 의미한다.
2. '심의결정' 이라 함은 정책위원회가 개별 게시물 등에 대한 불법 및 청소년 유해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분과'라 함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특정 영역의 자율규제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부문을 말한다.
4. '소위원회'라 함은 각 분과의 세부 분야에 속하는 정책 등에 대한 논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정책위원회의 운영

제4조(회의)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개최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1. 오프라인 회의는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책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인 이상의 정책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온라인 회의는 안건이 상정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정책위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③ 정책위원이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정책위원이 대리인 참석 또는 서면 의결권 위임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정책위원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④ 정책위원이 온라인 회의에서 정책위원장이 사전에 공지한 시한 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의결권은 정책위원장에게 위임된다.

⑤ 피해 주장자 또는 게시물 작성자 등 당사자의 요청이 있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등에 의한 방법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절차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⑥ 정책위원장은 회원에게 서면 또는 출석 등의 방법으로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위원장은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정책위원회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책규정의 제·개정
2. 분과·소위원회에서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결정
3. 소위원회 설치·폐지 및 구성
4. 정책 및 보고서 발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 및 분과장의 발의 및 안건 상정을 거쳐 게시물 등 정책을 결정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보류가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의 요청으로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장은 정책결정 안건에 대해 제4조 제6항의 방식으로 의견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최종 의결 이전에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정책 결정은 정책위원 전원 일치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심의결정의 경우 회원사 소속 정책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⑥ 정책위원회는 심의결정에 대해 정책위원 및 분과장의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을 재심의한다.

제6조(정책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책위원 중에서 호선한 뒤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정책부위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정책부위원장은 정책위원장 유고시 또는 정책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정책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결정 내용의 공개)

정책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알린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건 상정사가 결정 결과의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
2. 불법 정보나 권리침해 내용의 공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정책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정책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제8조(회의록의 작성)
정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분과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조(분과의 설치 및 구성)
①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분과를 둔다.
1. 이용자 콘텐츠 분과
2. 서비스 운영 분과
3. 온라인 광고 분과
4. 특별 분과

②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 1인을 분과장으로 선임한다.

제10조(분과장의 직무)
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책규정안의 정책위원회 상정
2. 소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안의 정책위원회 상정
3. 그 밖에 분과의 목적 범위 내에서 소위원회 지원 등 필요한 사안

제11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이사회가 의결한 분과의 설립 목적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서 위촉한 3인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사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장과 협의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기타 소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소위원회의 직무)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소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 제안
2. 안건에 대한 심의결정 및 검토, 정책위원회에 심의 요청
3. 안건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소위원회의 목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제13조(준용규정) 각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회의), 제6조(정책위원장의 직무) 제1항 및 제2항, 제7조(결정 내용의 공개), 제8조(회의록의 작성)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책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정책위원"은 "소위원회위원"으로 각각 본다.

제4장 보칙

제14조(사무처의 직무)

① 정책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구 사무처 담당 부서에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② 사무처는 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정책위원 또는 정책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정책위원회는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책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정책위원
2. 사무처직원
3. 심의 요청사 임직원

②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 · 기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부칙

부칙(2009.3.3) 이 운영규정은 200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4.14) 이 운영규정은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1) 이 운영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3) 이 운영규정은 201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9) 이 운영규정은 201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4) 이 운영규정은 201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27) 이 운영규정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7) 이 운영규정은 201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9) 이 운영규정은 2018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28) 이 운영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9.7)이 운영규정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가이드라인

KISO 자율규제 백서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

2021.03.11. 제정
2022.03.21. 일부개정
2023.06.01. 일부개정
2024.06.04. 일부개정
2024.06.04. 일부개정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취지

인물정보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동시대 국내외 주요 인물들의 프로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듯 관심 인물을 검색을 통해 탐색할 수 있는 인물정보 서비스는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네이버 및 카카오의 인물정보 서비스가 동시대 주요 인물들에 대한 프로필 정보의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 주목하여, 관련 정보의 수집을 비롯한 등재, 수정, 노출, 그리고 삭제에 이르는 서비스 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인물정보 서비스 전 과정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원칙은 인물정보 주체의 권리보호와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용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인물에 대한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합리적인 서비스 운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물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사회적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인물정보 서비스의 세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 등재와 수정, 노출, 삭제 등 전 과정에 걸쳐 합리성, 중립성, 정확성, 차별금지, 과잉수집금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등의 세부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자 했다.

본 가이드라인은 인물정보서비스자문위원회의 논의의 산물로 만들어졌다. 인물정보 주체의 권리보호와 이용자 알 권리 보장이라는 대원칙은 인물정보 서비스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관철되는 기본 전제이지만 세부 영역의 기준과 원칙은 법제도나 사회 및 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의 과정을 거쳐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I. 인물정보의 등재

1. 개요

이용자들이 많이 찾거나 찾을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그의 이름을 중심으로 그의 직업, 경력, 학력 등의 정보를 함께 편집하여 공개 가능한 상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인물정보 등재의 기본 원칙

가. 필요성 원칙

이용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많이 찾고 있거나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인물정보

에 등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인의 인물정보가 필요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등재 여부에 대하여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등재 신청이 들어온 경우 반드시 인물정보로 등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등재를 거절할 수 있다.

나. 차별금지 원칙

인물정보 등재를 신청한 사람의 성별, 인종, 국가, 종교, 사상 등을 이유로 그 등재를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중립성 원칙

인물정보 각 기재사항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어떤 정치적 견해나 사상에 대한 편견 없이 사실대로 등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자기결정 원칙

인물정보 등재 여부 및 그 유지에 관한 최종 결정은 원칙적으로 등재 당사자의 자기 결정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사자 본인은 스스로의 결정으로 인물정보 등재를 신청하거나 이미 등재된 인물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화제의 인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등재될 수 있다.

3. 등재 인물의 조건

가. 생존인물 등재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사망자라 하더라도 최근 사망으로 애도기간이 진행 중이고 반복적인 추모와 사회적인 요구가 예상되는 등 예외적으로 인물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재될 수 있다.

나. 개인별 등재

인물정보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 단위로 등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1개인 1등재 원칙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개인들이 모인 집단이라도 그 집단이 1개인처럼 인식되는 경우, 즉, 개인들이 한데 모여 그들을 대표하는 고유한 명칭을 사용하며 연예 등의 활동을 함께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그 명칭으로 등재될 수 있다.

다. 직업인 등재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직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ppendix I. 인물정보 직업의 분류" 참조)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직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TV 등 언론에서 보도 또는 소개되어 일반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등재될 수 있다.

4. 등재 정보의 요건

가. 정확성

인물정보 각 기재사항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등재된 해당 인물에 관한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인물정보 서비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므로 정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요건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Appendix Ⅱ. 인물정보 증빙자료" 참조)

나. 충분성

인물정보가 이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 중 최소한의 필수적인 항목에서 등재된 해당 인물에 관한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인 등재 원칙"에 따르면 직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직업을 보유하고 있진 않더라도 TV 등 언론에서 보도 또는 소개되어 일반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사람만 인물정보에 등재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직업 정보가 없는 경우엔 등재될 수 없다.

다. 최신성

인물정보 각 기재사항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등재된 해당 인물의 가장 최근의 동향이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재된 모든 사람의 현재 상태를 상시 추적하여 수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인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5. 인물정보 등재의 유형

가. 신청에 의한 등재

인물정보를 매개로 이용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은 사람이 직접 또는 그에 관해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통해 인물정보 등재를 신청한 경우,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신청서 및 함께 제출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2. 인물정보 등재의 기본원칙과 3. 등재 인물의 조건 및 4. 등재 정보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및 삭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등재하거나 그 등재를 거절할 수 있다.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등재 신청 거절을 계기로 그 등재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신청에 의하지 않은 등재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의 검색 추이 및 언론사의 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2. 인물정보 등재의 기본원칙과 3. 등재 인물의 조건 및 4. 등재 정보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인물정보도 등재할 수 있다.

6. 정보 수집의 조건

가. 사생활 침해 최소화

인물정보를 수집하더라도 등재되는 사람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세부 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수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수집하는 인물정보가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인 또는 담당자가 판단하기 매우 곤란하므로, 이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과잉 수집 금지

인물정보를 수집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아야 하고, 관련 법령에서 수집을 허용하는 정보는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 취지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정당한 수집 절차

인물정보 수집 절차가 관련 법령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도록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인물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마련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인물정보에 기재되는 정보

1. 개요

인물정보에 기재되는 정보에는 충분성 원칙에 따라 반드시 기재돼야 하는 직업 정보와 등재인물의 선택, 사실관계, 정보 수집 여부 등에 따라 기재되거나 기재되지 않을 수 있는 소속 및 직위 정보, 경력 정보, 학력 정보 등이 있다.

2. 직업 정보

가. 직업 정보의 의미

직업 정보란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계속하여 종사하는 직무 또는 생업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직업인 등재 원칙에 따라, 어떤 사람의 인물정보를 등재할 경우엔 원칙적으로 등재인물의 직업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직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TV 등 언론에서 보도 또는 소개되어 일반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화제 인물"로 기재할 수 있다.

나. 직업 정보의 기재

직업 정보는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의 직무 또는 생업이 해당하는 직업 분류체계의 가장 적합한 세부 항목으로 기재하되, 직접 해당하는 세부 항목이 없을 경우엔 이를 포괄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 항목의 명칭으로 기재한다.

만약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이 다른 직업 명칭 또는 새로운 직업을 신청한 경우엔 "Appendix I. 인물정보 직업의 분류"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소속 및 직위 정보

가. 소속 및 직위 정보의 의미

소속 정보는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단체나 기관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정보이고, 직위 정보는 그가 속해 있는 단체나 기관 내에서 그의 직무에 따라 부여 받은 위치 또는 위계에 관한 정보이다.

나. 소속 및 직위 정보의 기재

소속 정보는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이 현재 속해 있는 단체나 기관의 명칭을 기재하고, 직위 정보는 그 단체나 기관 내에서 부여 받은 직무상 위치의 명칭을 기재한다.

4. 경력 정보

가. 경력 정보의 의미

경력 정보란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이 과거에 거쳐온 직업과 그 소속 및 직위에 관한 이력 정보를 말한다.

나. 경력 정보의 기재

경력 정보는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에게 과거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직위를 먼저 고려하여 기재하되, 만약 경력이 없

거나 또는 경력이 있더라도 직위가 없었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엔 일정한 경력 기간을 보충적인 기준으로 삼아 기재할 수 있다.

5. 학력 정보

가. 학력 정보의 의미

학력 정보란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이 학교를 다닌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경력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나. 학력 정보의 기재

학력 정보는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의 해당 과정 이수에 관해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6. 가족 정보

가. 가족 정보의 의미

가족 정보란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에게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2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나. 가족 정보의 기재

가족 정보는 2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인물정보가 이미 등재돼 있을 경우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과 그 친족과의 관계 및 그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ex. 배우자 000).

다만,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이므로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의 가족 관계 중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7. 수상 정보

가. 수상 정보의 의미

수상 정보란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이 자신의 성과, 업적 등에 근거하여 그 우수성, 공로성 등이 인정되어 수여 받는 포상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나. 수상 정보의 기재

수상 정보는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 본인이 수상한 사실을 기재하되, 만약 등재인물이 포함된 집단에서 수상한 경우라면 그 등재인물의 대표성이 확인되어야 이를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기재 대상이 되는 수상 정보는 포상 전반의 객관성, 지속성, 요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8. 기재의 적정성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직업 정보, 소속 및 직위 정보, 경력 정보, 학력 정보 등 인물정보에 기재되는 정보의 적정한 기재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III. 인물정보의 노출

1. 개요

인물정보의 노출에는 개인별 노출, 동명이인의 노출, 특별한 경우의 노출이 있다. 개인별 노출은 개인 또는 집단처럼 노출 대

상과 관련이 있고, 동명이인의 노출은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에 대한 노출의 순서와 관련이 있으며, 특별한 노출은 공직선거나 올림픽 등 행사에 있어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인물정보로 기존 인물정보를 대체 또는 추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2. 개인별 노출

인물정보는 등재된 사람의 이름에 따라 개인 단위로 노출한다.

다만, 개인들이 모인 집단의 경우 그 집단을 대표하는 고유한 명칭으로 등재된 경우엔 예외적으로 그 명칭으로 노출하되, 그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노출할 수 있다.

3. 동명이인의 노출

같은 이름을 쓰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인물정보에 등재된 경우엔 이용자의 관심도, 각 개인의 인지도, 검색 접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출 로직에 따라 그 이름에 따라 노출되는 각 개인의 인물정보 노출 순서와 이용자 사용환경(UI) 등을 자동으로 수시 변경하며 노출할 수 있다.

4. 특별한 경우의 노출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나 올림픽 등 국가적인 행사 등이 있는 경우엔 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인물정보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체육회 등 그 행사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대체하거나 이를 추가하여 노출할 수 있다.

IV. 인물정보의 수정

1. 개요

이미 등재된 인물정보 각 기재사항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등재될 당시부터 또는 등재된 이후에 등재 정보의 조건인 정확성 또는 최신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나 혹은 등재인물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실이 포함돼 있을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인물정보 수정의 조건

가. 정확성

인물정보 각 기재사항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등재인물에 관한 정확한 사실이 아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정보는 인물정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나. 최신성

인물정보 각 기재사항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등재인물의 가장 최근의 동향이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된 경우 해당 정보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다. 본인의 신청

인물정보로 노출 중인 각 기재사항 또는 그 기재사항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등재인물이 수정을 요청한 경우, 해당 정보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3. 인물정보 수정의 절차

가. 요청에 의한 수정

등재인물 또는 그로부터 인물정보 수정에 관해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하 '등재인물 측')의 수정 요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수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충분성 원칙"에 의해 직업 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수정은 불가능하며, 다른 직업 명칭 또는 새로운 직업으로 수정해 달라는 요청은 "나. 직업 정보의 기재"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정이 제한될 수 있다.

나. 요청에 의하지 않은 수정

일반 이용자의 신고 등을 통해 정확성 또는 최신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정보가 발견된 경우에도 해당 정보는 등재인물 측이 제출한 증빙자료 또는 일반 공개된 언론사의 보도 등의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4. 수정의 적정성

등재인물 측이 수정 요청한 정보가 정확성 또는 최신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심되거나 그 사실관계의 존부 또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등재인물이 KISO 정책규정 제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하는 공인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이고, 그 등재인물 측이 수정 요청한 정보가 공적 관심사가 되어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도,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V. 인물정보의 삭제

1. 개요

삭제란 인물정보 서비스에서 등재인물이 등록의 철회 또는 삭제를 신청하거나, 검색 추이가 없는 등 기타 삭제가 필요한 경우 등록 자체를 말소하여 영구적으로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인물정보 삭제의 원칙

가. 자기결정 원칙

등재된 인물정보에 대해 등재인물이 삭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인물정보는 삭제가 가능하다.

나. 필요성 원칙

이용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많이 찾고 있거나 찾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재인물의 인물정보는 삭제가 가능하다.

다. 신속성 원칙

등재의 필요성이 소멸되거나 또는 인물정보 본인이 등재 삭제를 요청할 경우 등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삭제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3. 삭제의 조건

이에 따른 삭제의 기준은 본인 삭제 의사, 등재 필요성의 소멸, 본인의 공익위배 행위를 들 수 있다.

가. 등재 필요성의 소멸

등재 필요성의 소멸은 등재 당시부터 등재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등재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등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인이 사망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나. 공익 위배행위의 발생

본인의 공익위배행위는 본인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반사회적 행위가 있거나 인물정보를 악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인물정보 서비스의 존재가치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4. 인물정보 삭제의 절차

가. 요청에 의한 삭제

등재인물 측의 삭제 요청에 따른 해당 인물정보의 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나. 요청에 의하지 않은 삭제

특정인의 인물정보가 필요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인물정보의 삭제 여부에 대해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5. 인물정보 삭제에 따른 후속 조치

가. 개인정보 파기

인물정보 등재를 위해 수집한 등재인물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서 일정 기간 보관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재인물의 인물정보 삭제와 함께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한다.

나. 인물정보 재등재 제한

삭제된 인물정보가 등재인물의 신청에 따라 등재되었던 경우 해당 인물정보의 재등재 신청은 삭제 이후 일정기간 동안 거절할 수 있다.

Appendix I. 인물정보 직업의 분류

1. 개요

인물정보의 세부 항목 중 직업 정보는 직업인 등재 원칙에 따라 마련된 적정한 직업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등재인물의 직업이 적절히 분류되어 등재되어야 한다.

* “직업 분류체계”란 인물정보의 세부 항목 중 직업 정보에 등재될 구체적 직업과 그 명칭을 적정하게 분류하여 기재하기 위해 마련된 직업 분류표를 말한다.

2. 직업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포괄성의 원칙

인물정보 직업분류는 소분류(세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되는 소분류가 없을 경우 직근 상위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최신성의 원칙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직업이 출현하여 등재가 필요한 경우,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의 심의를 거쳐 등재에 앞서 또는 등재와 동시에 직업 분류체계가 개정되어야 한다.

다. 일관성의 원칙

직업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직업군이나 직업 항목 간의 수평 분류 또는 수직 계층 및 각 직업 항목의 정의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마련되어야 한다.

라. 상호배타성의 원칙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든 동일한 하나의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하며 여타의 직업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여지가 가능한 적어야 한다.

마.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와 이용자 편의성의 원칙

직업 분류체계에서의 각 직업 항목 명칭은 통계청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분류 명칭을 참고하되 인물정보의 활용도와 노출정도를 반영하여 정할 수 있다.

3. 분류 기준

인물정보 본인이 요청한 직업분류를 존중하도록 한다. 다만, 등재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직업의 등재요청이 있을 경우, 중립적인 명칭으로 인정할 수 있고 신규 직업의 인정은 회원사의 심의 신청에 따라 기존의 직업분류체계, 한국표준직업분류, 해당 직업의 사용관계 등을 종합한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의 결정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다.

4. 분류 절차

인물정보 본인이 신청한 직업정보에 근거하여 해당되는 직업분류체계에 따라 소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되는 분류가 없을 경우 가장 포괄적인 대분류로 분류한다.

인물정보 본인에 의하여 새로운 직업의 등재를 요청한 경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표준직업분류를 확인하여 직업예시와 소분류에 기반하여 가장 유사한 직업을 등재한다. 다만 유사한 직업의 등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립적인 직업명을 인정하되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의 결정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새로 추가된 직업은 즉시 직업분류표에 추가 및 개정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Appendix II. 인물정보 증빙자료

1. 증빙자료의 의미

“증빙자료”라 함은 인물정보 등재 상 정확성의 원칙에 의거해 등재인물 및 요청 내용에 대한 사실의 존부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의미한다.

2. 증빙자료의 종류

증빙자료는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되었거나 이미 등재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로부터 인물정보 등재, 수정 등에 관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동일성 내지 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등의 증빙자료와 인물정보에 기재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분류할 수 있다,

증빙자료에는 ① 국가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등 공공기관이 해당 사무에 관해 발급한 서류(예, 여권,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②회사, 학교, 협회 등 민간 단체에서 해당 사무에 관해 발급한 서류(예,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회원등록증명서 등), ③ 특정인이 일정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관해 작성한 서류(예, 위임장 등), ④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사의 보도 및 기타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출처를 가진 문서, 물건 등이 있다.

3. 증빙자료의 제출

증빙자료는 인물정보 등재를 신청하거나 그 인물정보에 기재되는 정보의 수정 등을 요청하는 등재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재되는 정보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재 당사자에게 그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증빙자료의 제출책임

등재 당사자의 증빙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그 정보는 등재인물의 인물정보에 등재될 수 없다.

한편, 등재 당사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일정한 사실이 인물정보에 등재된 이후 해당 증빙자료의 위·변조 또는 허위 작성이 밝혀진 경우, 해당 사실에 관한 정보는 삭제되고 이에 따른 책임은 등재 당사자가 부담한다.

5. 증빙자료의 관리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인물정보 등재 당사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각사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부칙

부칙(2021.03.11) 이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202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3.21) 이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6.01) 이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1.21) 이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6.04) 이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2024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22.02.24. 제정

제1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회원사에서 제공하는 어학사전 서비스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차별·비하적인 표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학사전 서비스의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전 서비스 이용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칙

① 이용자의 언어생활 보호

어학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는 이용자가 사전을 이용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인격 존중과 동등 대우

어학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격권과 평등권을 존중하여 사전의 표현이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어학사전 편찬 전문성 존중과 저작권 보호

어학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는 사전이 가지는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사전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사전 편찬자의 저작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조 차별·비하표현 등에 대한 조치

① 어학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는 어학사전의 표제어, 용례 등의 정보가 지역·종교·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차별·비하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현저하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사전 편찬자와 협의하여 어학사전의 내용에 '주의 알림' 등 필요한 조치(이하 '필요한 조치'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어학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는 위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해당 어학사전의 차별·비하표현 여부, 조치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2023.04.27. 제정
2024.02.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회원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에서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 등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②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혐오표현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의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과 자율적인 참여를 제고하여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KISO 회원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 중 일반에게 공개된 영역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공개 영역이라도 신고를 통하여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사의 의무)

① 회원사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앞장서야 한다.

② 회원사는 인터넷 환경 내에서 유통되는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여 이용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회원사는 이 가이드라인을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사는 혐오표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와 방안을 마련하도록 힘쓴다.
⑤ 회원사는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⑥ 회원사는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 구제를 위한 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자율규제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인터넷서비스 상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거나 전파 또는 공유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예방 조치)

① 회원사는 혐오표현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KISO는 전항의 예방적 조치를 지원하는 기술적·관리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혐오표현의 신고 등)

① 혐오표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누구든지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회원사 또는 KISO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3조의 혐오표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의 요청을 받았으나 혐오표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제10조 (적용의 제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현은 전조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인 업무 관련된 표현
2. 공직자, 언론사 등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
3.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표현
4.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기타 표현
② 전항의 제1호와 제2호는 KISO 정책규정을 따른다.

제11조 (혐오표현 에 대한 조치)

① 회원사는 혐오표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혐오표현 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조치
2.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3. 경고 문구,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4. 그 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혐오표현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 게재자의 사정으로 조치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나, 회원사별 정책에 따라 통보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이의제기 등)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조치된 정보 게재자가 회원사가 정한 이의제기 기간 내에 혐오표현이 아님을 소명하여 그 재게시를 요구하는 경우 회원사는 혐오표현 여부를 재심의하거나 제13조의 혐오표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혐오표현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혐오표현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 회원사의 요청에 따라 혐오표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서 위촉한 회원사 소속이 아닌 3인 이상의 위원과 회원사 소속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사 소속 위원은 개회와 의결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정책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2023.08.21. 제정

1. 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 기반 챗봇은 그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서 챗봇 기술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챗봇이 등장함에 따라 앞으로 챗봇의 이용과정에서 다양한 긍정적 영향과 함께 부정적 영향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챗봇은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대화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들에 비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챗봇과의 대화가 인간과의 대화와 구분되지 않는 시기가 도래할 경우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부정적인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챗봇은 인간과 직접 대화하며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거나 궁금증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다양한 서비스의 편리한 매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챗봇은 인간에게 다양한 정보와 심리적 유대를 제공하는 등 매우 유용하며 친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챗봇이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챗봇의 다양한 활용 범위를 고려할 때, 챗봇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나 잘못된 활용은 인간에게 정신적 피해를 넘어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챗봇 이용은 인간의 사회적 고립이나 단절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존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시각이 챗봇을 통해 걸러지지 못하는 경우, 사회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아직 챗봇 기술 및 서비스가 초기 발전 단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부정적 영향만을 고려한 공적 조치는 챗봇이 보여줄 수 있는 긍정적 모습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챗봇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행동윤리, 즉 챗봇 윤리를 자율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챗봇 윤리는 개발자와 서비스 운영자, 이용자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과 사회 사이에 신뢰가 구축될 수 있으며 챗봇의 이용이 우리 사회의 이익과 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KISO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및 권리 존중,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보안, 다양성 존중, 투명성, 책임이라는 다섯 가지 기본원칙에 근거한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안합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따라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 개선된 내용을 담게 될 것입니다.

2. 기본원칙

챗봇 개발자·운영자·이용자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합니다.

(1) 인간의 존엄성 및 권리 존중 원칙
- 이용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자의 권리와 윤리적 가치를 존중합니다.

(2)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정보보안 원칙
-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개인정보가 오남용되거나 부당하게 공유되지 않도록 합니다.

(3) 다양성 존중 원칙
- 모든 이용자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 불공정한 편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 아동,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4) 투명성 원칙
- 원칙적으로 대화를 개시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챗봇임을 알립니다.
- 필요한 경우 챗봇의 용도와 특성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5) 책임 원칙
- 챗봇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합니다.
- 챗봇 서비스 이용과정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및 책무성 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 챗봇과 이용자 상호 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용어의 정의

- 챗봇 : 이용자와 문자, 음성, 이미지 등을 통해 대화 또는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결합된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 개발자 : 챗봇을 기획·설계 및 개발하여 판매 또는 이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작하는 자를 말합니다.
- 운영자 : 개발된 챗봇을 이용자에게 이용가능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용자 : 챗봇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개발자 준수사항

(1) 인간의 존엄성 및 권리 존중
- 개발자는 이용자의 존엄성이 훼손되거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기능이나 시스템 오류를 사전에 점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 개발자는 챗봇도 대화의 상대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예) 이용자가 챗봇에 폭언 등을 한 경우에 경고문구를 제시하거나 일정 시간 차단하는 등의 기능 구현 등

(2)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정보보안

· 개발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 개발자는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개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다양성 존중

· 개발자는 챗봇 서비스를 개발할 때 이용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향과 차별을 줄이도록 노력합니다.
· 개발자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이용자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성 향상 방안
- 고령층: 사용자 접근 화면 단순화 및 각종 기능 추가 설명 기능, 글자 크기 조정 기능 등
- 장애인: 자막 및 음성 등을 이용한 사용안내문 및 서비스 제공 등
- 아동·청소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기능 및 주의할 점을 가이드로 제공 등

(4) 투명성

· 개발자는 이용자가 챗봇임을 알 수 있도록 대화 개시 전 이용자에게 챗봇임을 알리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챗봇 서비스의 특수성*에 따라 챗봇임을 밝히지 않는 것이 더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심리 상담, 치매 환자 안정화 등
·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챗봇 서비스의 오류 가능성, 업데이트를 위한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챗봇이 만들어 낸 결과물의 오류 가능성 및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인공지능 챗봇을 학습시키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을 고지 등
· 개발자는 이러한 정보를 왜곡 없이, 이용자 편의적으로 공개합니다.

(5) 책임

· 개발자는 부적절한 언어나 행위가 챗봇을 통해 구현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개발자는 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재산 등에 해를 입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개발자는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기능이나 이와 관련된 시스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수정 및 개선작업을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 챗봇의 목적과 기능에 무관하게 특정 제품을 옹호하거나 추천하는 발언 등의 통제
· 개발자는 챗봇 서비스에서 불법 또는 유해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인지한 경우 삭제 및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5. 운영자 준수사항

· 운영자는 개발자 준수사항과 이용자 준수사항이 챗봇 서비스의 기획, 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 운영자는 챗봇에 대한 또는 챗봇에 의한 폭언 등 개발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을 방해하는 상황(이하 “방해상황”)을 인지한 경우 경고문구 제시, 일정 시간 차단, 또는 불가피한 경우 챗봇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이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는 자발적 모니터링 또는 이용자의 신고 등에 의해 방해상황을 인지할 수 있음
· 운영자는 방해상황에 대한 일련의 대응조치에 대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합리적인 사정으로 고지 등의 안내가 곤란한 경우 회원사별 정책에 따라 그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

습니다.

· 운영자는 이용자가 챗봇의 기능을 알 수 있도록 챗봇의 목적, 주요 서비스 내용 등을 담은 운영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하도록 노력합니다. 운영정책에는 방해상황의 발생, 인지, 대응조치, 이용자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다만 영업비밀, 정보보안 등의 사유로 운영정책을 공개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는 챗봇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챗봇 기능 관리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 운영자는 이용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챗봇 서비스의 오류 가능성, 업데이트를 위한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6. 이용자 준수사항

(1) 인간의 존엄성 및 권리 존중

· 이용자는 챗봇의 용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챗봇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적절한 언행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이용자는 본인 및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챗봇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정보보안

· 이용자는 챗봇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이용자는 챗봇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정보를 무단으로 노출 또는 공유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이용자는 챗봇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얻거나 알게 된 다른 이용자와의 대화나 대화 내용의 기록, 녹음, 녹화, 촬영물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디지털공간*에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디지털공간의 예시: SNS, 메신저, 카페, 블로그, 메타버스 등

· 이용자는 챗봇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해킹, 악성 코드 배포 등 챗봇의 정보보안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다양성 존중

· 이용자는 챗봇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편향적이거나 배척 또는 차별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투명성

· 이용자는 챗봇이 만들어 낸 결과물을 활용할 때 필요한 경우 챗봇의 이용 여부를 밝히도록 노력합니다.

(5) 책임

· 이용자는 챗봇과 함께 지속 가능하고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 이용자는 챗봇의 기술적 한계와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그 서비스를 오남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합니다.

· 이용자는 챗봇의 부작용, 기능상의 오류, 그 밖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는 부당한 서비스의 결과물이나 이용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운영자에게 이를 알려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문제 해결, 서비스 개선, 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리 가이드라인

2023. 10. 24. 제정

제1조 (목적과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회원사가 제공하는 통합검색 서비스에서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검색결과의 노출을 제한하여 이용자인 청소년의 보호 및 건강한 검색서비스 이용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리"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검색결과가 노출되지 않도록 검색어와 검색결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청소년 보호 검색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검색어 및 유해한 검색결과를 노출시키는 검색어를 말합니다.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판단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참조하며, 필요에 따라 KISO 자율규제DB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청소년 보호 검색어를 지정할 때에 검색어가 갖는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당 키워드를 입력하였을 경우 노출되는 콘텐츠의 불법·유해 정도, 검색결과 내 부적합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래 정보들은 청소년 보호 검색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불법정보 검색결과 노출 검색어

청소년에게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정보,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 검색결과로 노출되는 검색어를 의미합니다.

2. 선정적 검색결과 노출 검색어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는 이미지나 동영상, 그리고 불쾌한 성적 표현이 담긴 언어표현 등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정보가 검색결과로 노출되는 검색어를 의미합니다.

3. 기타 유해 검색결과 노출 검색어

법률에 의해 이용이 금지된 정보는 아니지만,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정보 및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검색결과로 노출되는 검색어를 말합니다.

제3조 (청소년 보호 조치의 적용)

① 회원사는 성인 인증을 하지 않은 이용자가 청소년 보호 검색어를 검색하였을 때는 청소년 보호 검색어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검색결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표시의 예 : 청소년에게 노출하기 부적합한 검색결과를 제외하였습니다. 연령 확인 후 전체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② 청소년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검색어에 대한 모든 검색결과를 제한하지 않고 정보성 콘텐츠의 경우에는 검색결과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처리 절차)

① 회원사는 청소년 보호 및 성인의 알 권리에 대한 균형 잡힌 보장을 위해 청소년 보호 검색어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회원사는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지정, 예외처리 및 해제가 필요한 검색어를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회원사간 협의를 통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게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지정 등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비스에 적용하여 검색결과의 노출 제한 등의 조치한 후 회원사간 협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사간 협의로 지정된 청소년 보호 검색어는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를 통해 청소년 보호 검색어 DB에 추가됩니다. 회원사는 청소년 보호 조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청소년 보호 검색어 관련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5조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처리)

①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지정 : 청소년 보호 검색어를 지정하는 경우, 검색어의 처리 유형과 범위를 나누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예외처리 : 청소년 보호 검색어가 포함된 검색어 가운데 등록 취지와 달리 특정 회사, 브랜드 제품명 등 다른 의미의 정보로 활용되거나 검색결과에 부적합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검색어는 예외처리하여 검색결과가 정상적으로 노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③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해제 : 청소년 보호 검색어가 갖는 의미가 변하였거나 더 이상 부적합한 정보가 검색결과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정문

2016년도 공개

‘게시물 재게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30

2. 심의 결정일 : 2016.1.8

[결정]
각하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가 요청한 게시물 중 임시조치 처리 이후 재게시한 게시물이다. 요청 회원사는 해당 게시물을 재게시 요청에 의해 재게시한 이후 재게시가 적절히 이루어 졌는지를 KISO에 질의하였으며, KISO는 이에 대해 심의를 게시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정책규정 제9조는 “회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한 임시조치를 취한 게시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로 ‘1. 해당 게시물 게시자가 회원사가 정한 기간 내에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을 한 경우, 2. 그 밖에 회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정책규정 제9조는 임시조치 등의 잠정적인 처분이 이루어 진 상태에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KISO에 심의를 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을 뿐, 이미 재게시, 삭제 등 확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심의는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본 사안의 경우, 사업자가 이미 게시자의 요청에 의해 재게시를 처분하고 이후에 KISO에 상정한 건으로서,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그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지 않고, 표결절차를 거쳐 ‘각하’로 결정한다.

‘정책규정 제17조 해석’ 관련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31

2. 심의 결정일 : 2016.1.8

[결정]
정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에는 본인 또는 소속정당이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언론기관에 출마의사를 밝힌 경우 외에 SNS 등을 통해 출마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경우도 포함한다.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가 요청한 정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회원사는 SNS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어, SNS를 통해 출마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인지에 대해 심의 요청하였다.

먼저, 정책규정의 해석에 관한 심의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관 및 정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정책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하여 심의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정관 제4조 제2호는 “회원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인터넷 게시물 처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책위원회는 정책규정을 제·개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1항), 정책규정에 대한 제·개정 권한에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정책규정의 적용 방식에 대한 심의 진행이 가능하므로(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2항),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기존 정책규정에 해석에 대해 사전에 그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회원사의 심의대상이 정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정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는 본인이 직접 출마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 유권자가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출마의사는 소속 정당도 공천 등을 통해 밝힐 수 있으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이 밝힌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유권자가 출마사실을 인지하는 방법은 언론보도 등을 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본인 혹은 소속정당이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언론기관에 출마의사를 밝힌 경우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최근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SNS를 활용한 출마의사를 밝힌 경우를 살펴본다. SNS는 개인 간 사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회원사가 모든 SNS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마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출마의사의 표시를 공식적인 출마의사의 표현으로 보는 것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SNS를 통해 출마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SNS를 통해 출마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것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에는 ‘본인 또는 소속정당이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언론기관에 출마의사를 밝힌 경우 외에 본인이 SNS 등을 통해 출마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결정한다.

‘000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1

2. 심의 결정일 : 2016.2.13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 게시판의 게시물로 전자책 관련 서비스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내용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의 내용에서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부가적으로 포함되는 기기의 성능에 대한 불만이 주로 제시되어 주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서비스 제공 기간,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 마지막으로 일부 명예 훼손적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 등의 4가지 사안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임시조치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5심4, 2015심16 및 2015심25등의 사건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경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신중한 삭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이용자가 리뷰게시물 거짓 혹은 사업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에 기여하는 공익과 무관한 내용으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신청인이 제기한 첫 번째 사안을 검토해보면, 신청인이 리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관련 기기가 동시에 제공되어 이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므로 해당 제품에 대한 평가 역시 구매한 서비스와 관련된 의견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게시물은 성능이 일부 좋지 않다고 표현한 것 뿐 만 아니라 해당 기기의 제공이 장점이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신청인이 제기한 두 번째 및 세 번째 사유는 전자책의 구매방식 및 사용기간에 관한 비판으로 이는 신청인의 서비스 판매 및 운영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다. 소비자는 직접 해당 서비스 정책의 대상자가 되므로 이에 대한 비판 역시 소비자가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게시자가 일부 ‘상술’, ‘노예계약’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활용하여 판매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게시된 내용은 상기한 사항과 같이 서비스 정책 등에 대해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를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맥락에서 위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자체가 사실의 적시없이 단정적인 표현이라거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활용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술’은 장사하는 재주 또는 꾀를 일컫는 말로 간혹 상인들의 장사 방식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긴 하지만, 그 대상이 상인인 한 통상적인 언급이라는 점, ‘노예계약’은 장기간에 걸친 할부 등 쉽게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해당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일반화 되었다는 점 역시 고려하였다.

아울러 신청인이 주장한 경쟁사업자에 의해 게시물의 작성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리뷰의 작성시기가 구매직후라는 점과 관련된 주변 상황 등의 표현이 비교적 생생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업자에 의한 악의적인 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1)]

1. 심의 번호 : 2016심2

2. 심의 결정일 : 2016.3.11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13건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3건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회사의 명칭으로 검색하였을 대 연관검색어로 나타나는 16개의 검색어이다. 신청인이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한 검색어들과 관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심의 및 결정(2013심42)을 한 바 있으나, 최근 신청인회사의 명칭이 바뀌고 그 바뀐 명칭에 의한 검색결과에 기존의 검색어가 나타난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5심19, 2015심10 등에서 심의가 종료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심의가 신청될 경우, 기존 심의에서 기초로 삼았던 자료 또는 증거가 아닌 새로운 또는 당시 제출할 수 없는 증거 등을 제출할 경우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신청인회사의 변경된 명칭에 따른 검색결과에도 기존 검색어들이 연관검색어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을 한 것이므로, 변경전 명칭에 의한 검색결과와 관련된 검색어에 대하여 결정한 이전의 2013심42 사건과 동일한 안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신청인 회사의 명칭 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 등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기존 심의에서 기초로 삼았던 자료 또는 증거가 아닌 새로운 증거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재심의는 절차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정책규정은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사기업으로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검색어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없는지 여부와, 해당 검색어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알 권리보다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큰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해당 검색어는 2013년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사명을 바꾸기 전의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후 생성된 검색어로, 신청인은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명을 바꿨기 때문에 자사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년 3월 신청인의 사명이 변경되고,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은 확인되지만, 기존 대표이사 및 그 특별관계인이 총 46.5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기존의 경영진과 현재의 회사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최근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신청인의 회사가 직접적으로 실명 보도되고 있는 점, 그럼

1) 저널 제23호에서 리뷰

에도 신청인이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안이 사법의 정의라는 중대한 공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 사안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호가 신청인의 명예훼손보다 더욱 중시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검색어 중, 신청인과는 무관하지만, 피해자의 성명이 노출되는 것과 신청인과 무관한 제3자의 이름이 노출되는 것은 신청인이 아닌 해당 성명 주체의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다만, 해당 검색어에 대하여 신청인은 그 피해자가 아니므로, 피해자에 의한 신청이 없는 이상, 이들 검색어도 삭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부기해 둔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중 13개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나머지 3개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각 결정한다.

‘000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3-1 ~ 2016심3-49

2. 심의 결정일 : 2016.5.17

[결정]
2016심3-1 ~ 2016심3-45 : 해당없음
2016심3-46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2016심3-47 ~ 2016심3-49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된 49개의 게시물로,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추천되었을 당시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하여 생성된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에 대해 해당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전직 정무직 공무원으로 논문표절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신청인이 요청한 게시물은 총 49개로 이를 분류하면, 신청인의 논문 표절 의혹 혹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신청인을 비판하는 게시물, 신청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정부의 인사 실패를 일부 비속어를 사용하여 비판하는 게시물, 신청인의 발언으로 잘못 알려진 발언에 관한 게시물, 과거 정부의 행태를 만담형식으로 풍자한 게시물로 나눌 수 있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5심28 결정에서 정무직 공무원의 직무 적격성과 관련된 사항은 일반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하여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신청인 역시 정무직 공무원 재직 중 신청 대상 게시물에서 논의된 비위 의혹 때문에 낙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무직 공무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사항은 공적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공직임명이전에 발생한 공직적격성 관련 사례이므로, 정책규정 제5조 제4항의 ‘해당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업무’ 에 해당하지 않아 처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사실이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우선 신청인의 논문 표절의혹에 관하여 보면, 의혹 대상인 논문의 연구 대상이 겹친다는 점,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논문 표절 내지는 연구 가로채기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또한 대부분의 게시물은 당시의 언론기사를 전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 반론보도나 손해배상 등의 판단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청구를 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신청인 사례를 통해 정부의 인사 실패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

농지법 위반 관련 사항의 경우에도, 신청인의 소명자료에 의해서도 신청인이 이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정부에 제출한 자경확인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므로, 관련 언론 보도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심의대상 게

시물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부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에도 이러한 비속어를 신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기보다는 당시 정부의 허술한 인사 시스템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러한 비판이 앞서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정황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책규정 제5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의 발언으로 잘못 알려진 언론보도를 인용하고 있는 게시물의 경우, 해당 언론사가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해당 기사를 내렸다는 점에서 해당 사항이 비록 전체 게시물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게시물의 수정이나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이상 전체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실이 아닌 만담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만담 형식의 글'의 경우, 정치풍자에 해당하여 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점, 외부에 잘못 알려진 발언 등이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중 1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48건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4-1 ~ 2016심4-9

2. 심의 결정일 : 2016.5.17

[결정]
2016심4-1 ~ 2016심4-9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블로그 등에 게시된 9개의 게시물이며, 신청인의 공무원 폭행 사실 등을 비판한 내용의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지방의회인 구의회 의원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구의회 의원도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심의결정(2013심46)에 따르면, 신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함이 틀림없다.

다음으로 해당 사안이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적 업무와 무관한 내용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해당 게시물이 생성된 배경을 보면, 신청인이 의정 활동 중 다른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점, 더 나아가 신청인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지방의회 차원에서 신청인을 징계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신청인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사안이 신청인의 사생활이 아닌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공적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은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이고,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공적 관심사로서 주민의 알 권리 대상이 되고 신청인의 사익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에 대한 비판 및 감시기능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게시물은 정책결정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2)]

1. 심의 번호 : 2016심5-1

2. 심의 결정일 : 2016.6.9

[결정]
2016심5-1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로,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와 관련해서 신청인을 비판한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제3항에서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공직자 언론사 등의 공인의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 명백한 허위사실, 혹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사립대학교 총장으로 사회적인 역할과 영향력 및 그에 따르는 책임이 크다. 또한 대학총장의 업무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의 대상이 되는 공인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사안이 공적 업무와 무관한 내용인지 여부,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및 신청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게시물이 작성된 경위를 살펴보면, 신청인 배우자의 관리하에 있던 조직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의 배우자는 관리 책임을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 해당 게시물은 신청인 배우자에 대한 징계가 신청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약하게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신청인 배우자가 이러한 배경을 통해 정치에 입문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적시하고 있다.

우선 해당사안의 배경이 되는 사실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를 판단해본다. 신청인 배우자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해당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소명자료를 통해서도 해당 사안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게시물이 적시하고 있는 사안이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에서의 신청인의 사립대학교 총장의 공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풍문·소문을 제외한 다른 근거 없이 신청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 더 나아가 신청인의 배우자가 정치에 입문할 것이라는 점을 표현한 것을 고려하면, 신청인 및 배우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2) 저널 제24호에서 리뷰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6-1 ~ 2016심6-5

2. 심의 결정일 : 2016.6.21

[결정]
2016심6-1 ~ 2016심6-5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인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요청한 검색어 ‘헌팅’으로 특정 지역과 연관되어 있다.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해당 지역에서 청소년 탈선을 비롯한 다수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정책규정은 제13조 제1항에서 ‘회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등은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용자 검색 결과가 검색어로 생성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이용자 표현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면,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검색어의 삭제를 제한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해당 검색어 혹은 그 검색결과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선정적이거나 지나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라는 사항은 예외적 삭제 기준인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검색어 및 검색결과가 선정적인 이유 등으로 청소년 보호에 부적합한 정보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검색어인 ‘헌팅’ 은 사전적으로 ‘적절한 사람이나 장소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찾거나 고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전적 의미와 함께 일반적으로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헌팅은 ‘특정 장소에서 단순히 이성을 고르거나 즉석 만남을 신청함’ 이라는 뜻으로 그 자체가 탈선과 관련이 큰 단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심의대상 검색어의 검색결과를 보면, 그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담고 있다거나, 탈선을 부추기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검색어와 청소년의 탈선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아울러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지역에서 청소년에게 술 등을 판매하는 업소가 있다는 점이 해당 검색어를 삭제해야 하는 근거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5개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3)]

1. 심의 번호 : 2016심7-1

2. 심의 결정일 : 2016.7.19

[결정]
2016심7-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이 요청한 자신의 이름에 자동완성검색어로 노출되는 ‘오진’이다. 신청인은 심의대상 검색어(이하 ‘이 사건 검색어’라 한다)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는 않는 자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검색어의 내용이나 해당 검색결과가 위 정책규정 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이 사건 검색어가 생성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신청인은 특정 단체 협회장의 자격으로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특정한 정책적 이슈에 대하여 신청인 단체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을 시연하였다. 그러자 일각에서 이러한 시연을 비판하면서 신청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시연한 진단이 오진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 사건 검색어가 생성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검색어가 생성된 이러한 배경과 해당 검색결과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검색어와 관련된 사안은 아직도 일반 공중의 관심 속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으로서 이 사건 검색어의 내용이나 해당 검색결과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본 사안과 관련된 정책이슈는 국민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관련 단체의 협회장인 신청인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수행된 해당 시연에 관한 논란 역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검색어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끝으로, 이 사건 검색어가 노출되었을 때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논쟁은 최근까지도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검색결과를 통해 이 사건 검색어가 신청인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오진 논란이 아니라 의료기기 사용 시연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된 것임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또한 국민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보다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업을 고려할 때, 해당 검색결과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자칫 신청인이 환자에 대한 의료행

3) 저널 제24호에서 리뷰

위를 함에 있어서 오진을 한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은 위와 같이,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다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본 결정은 다수의견을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8-1 ~ 2016심8-4

2. 심의 결정일 : 2016.7.19

[결정]
2016심8-1~2016심8-4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종교단체인 신청인이 삭제 요청한 4건의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신청인과 관련되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또한 모욕이라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일관하여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에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서 종교에 대한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2010.9.9.선고 2008다84236 판결), 헌법재판소도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와 함께 특정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역시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1. 9.27. 2000헌마159).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신청인 관련 심의결정에서 신청인 종단과 관련된 TV프로그램이나 관련 언론 보도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게시물들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 등에서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5.3.21.자 2015심5 결정, 2015. 4. 6.자 2015심7 결정).

그러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심의결정례에 따르면, 종교적 비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에 대해서는 쉽게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정책규정 제5조 제5항 등에 해당하는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일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판례도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하여 같은 취지이다(대법원 2014.09.0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심의 대상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6심8-1 내지 2016심8-2 게시물은 신청인의 포교와 관련된 사안을 정리하고 이를 비판한 서적에 대한 게시물이고, 2016심8-3 게시물은 신청인과 관련된 사항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비판한 게시물이고, 2016심8-4는 신청인의 활동에 대해 뉴스를 통해 언론 보도된 동영상을 삽입하여 게시한 게시물이다.

먼저, 2016심8-1 및 2016심8-2 게시물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신청인 종교단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며 모욕성 게시물이라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다만 두 게시물 모두 현재도 판매되고 있는 서적에 관련한 사항으로 2016심8-1은 서적과 관련된 기사를 그대로 전재(全載)한 게시물이고, 2016심8-2는 해당 서적의 페이지 일부를 그대로 전재하여 작성된 게시물이다.

신청인의 소명자료 등을 살펴보면, 해당 서적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출판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이 인용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6심8-1이 전재하고 있는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되었거나 그 청구가 인용되

었다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도 없다. 또한 해당 서적에서 신청인이 지적한 '사기'와 같은 표현은 해당 게시물의 내용 등을 통해 볼 경우 '나쁜피로 남을 미혹함'이라는 의미임을 명시하는 등 세속적인 의미와는 다른 종교적인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 및 해당 게시물이 작성자의 추가 의견 등을 포함하지 않고 해당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게시물(2016심8-1과 2016심8-2)이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종교적 비판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6심8-3 게시물의 경우, 신청인의 교리를 기존 종교의 입장에서 비판하면서, 신청인을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게시물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앞서 밝힌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으로 보인다. 어느 교단이 그 산하 단체로 하여금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주장의 이단성 여부에 관해 연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책자에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 비록 그 공표 내용 중에 그 목사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그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로서 그 안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자기 교단의 교리 보호와 그 산하 지도자들 및 신자들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공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1997.08.29. 선고 97다19755 판결)에서 보듯이 해당 게시물의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2016심8-4 게시물의 경우 언론을 통해 보도된 뉴스만을 임베디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이다. 심의결정례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해당 게시물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언론중재위원회, 법원 등에서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2015심5, 2015심7 결정). 또한 해당 게시물 역시 신청인의 의견 등 추가적인 사항이 없어 단순히 보도영상만을 제공한다는 점 역시 고려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9-1 ~ 2016심9-61

2. 심의 결정일 : 2016.9.27

[결정]
2016심9-1~2016심9-49 : 해당없음
2016심9-50~2016심9-51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2016심9-51~2016심9-6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종교단체인 신청인이 삭제 요청한 게시물 1건 및 그에 연관된 댓글 60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신청인과 관련되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2015.3.21.자 2015심5호 결정 등에서 밝혔듯, 우리 대법원은 2010.9.9.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에서 일관하여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에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서, 종교에 대한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종교적 비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에 대해서는 쉽게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 판단할 수 없다. 다만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공포한 경우, 더 나아가 정책규정 제5조 제5항 등에 해당하는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일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심의 대상 게시물인 2016심9-1 게시물을 살펴보면 사진과 짧은 글로 구성된 게시물로, 버스광고물을 이용한 신청인의 포교 자체에 대해 비판하고 있을 뿐 신청인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을 적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은 종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하였다.

신청인이 추가로 삭제 요청 한 위 게시물에 연관된 댓글 60건에 대해 살펴본다. 신청인의 삭제 요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댓글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신청인의 종교단체를 특정 정당과 연관있는 것으로 표현한 댓글, 신청인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리를 받은 감금, 납치와 관련된 게시물과 관련된 댓글이 그것이다.

우선 신청인의 종교단체를 특정정당과 연관있는 것으로 표현한 댓글을 살펴보면, 단순히 신청인 종교단체의 이름과 특정 정당의 이름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 신청인 종교단체와 특정정당이 관련이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신청인이 아닌 정당 혹은 정부의 종교 관련 대응에 대한 비판을 주 요소로 삼고 있을 뿐,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댓글이라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의 종교단체에서 감금 혹은 납치를 행하였다는 내용의 댓글을 보면, 신청인이 감금 혹은 납치를 행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시물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단하였다. 이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발부한 무혐의 통지서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다. 더 나아가, 신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댓글의 경우에도 위의 감금 혹은 납치를 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로 작성된 댓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단하였다. 다만, 게시물 중 신청인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현재와 같이 건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게시물은 신청인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시물로 이는 범죄행위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명예훼손성이 없는 게시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댓글 58건에 대해 ‘해당없음’ 2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000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10-1 ~ 2016심10-2

2. 심의 결정일 : 2016.9.27

[결정]
2016심10-1~2016심10-2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이 요청한 게시물 2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신청인 단체 및 그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제3항에서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공직자 언론사 등의 공인의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 명백한 허위사실, 혹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단체의 기본적 성격상 국민의 보건 및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위의 기타 공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심의요청한 게시물의 허위 사실 여부와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신청인 혹은 그 구성원을 모욕적으로 표현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심의대상 게시물 중 첫 번째 게시물의 경우, 신청인은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인과 그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게시물 상에서 신청인의 단체 구성원에 대해 비하의 의미를 담은 호칭을 사용하여 구성원들을 폄훼하고 있으므로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먼저 신청인의 단체 구성원에 대한 호칭은 의료법상 정해진 표현은 아니지만, 욕설이나 비유를 통한 표현이 포함되지 않는 등 해당 표현자체를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해당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게시자의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내용 중 일부 표현(기존의 만평 그림을 패러디한 경우 등)이 다소간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나, 비판적 의견제시를 위한 맥락과 충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판단하였다.

다음 두 번째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여 제공한 것으로, KISO는 이러한 경우 해당 기사가 다른 적절한 수단 혹은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수정되었거나, 판결 등을 통해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바 있다(2014심10, 2014심11 등). 본 게시물의 경우에도 삭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11-1

2. 심의 결정일 : 2016.10.29

[결정]
2016심11-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이 삭제를 요청한 자사의 명칭과 연관된 검색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가 아직 명확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본 검색어로 마치 자사에게 귀책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어, 자사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당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에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제3호),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를 띠고 있는데, 그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의 검색결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검색되는 경우(제5호)에,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3호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본다. 신청인은 병원으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에 명백하므로, 해당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혹은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가 피해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해당 검색어의 생성 배경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유아에게, 진료 이후 탈모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연관검색어의 검색결과 역시 해당 사안을 중심으로 사안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이러한 것은 충분히 국민 건강, 의료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 혹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검색결과를 살펴보더라도, 해당 증세가 나타난 사항에 대해 의학적, 전문적인 공론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오로지 신청인의 귀책을 전제로 근거 없이 신청인을 비난하는 등의 심각한 명예훼손성 게시물 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중요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의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 보다 신청인의 사생활 또는 명예침해가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어느 경우에도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둘째 제5호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본다. 제5호는 연관검색어 자체가 명예나 사생활보호에 부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데 반해 그 검색결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무관한 내용만 검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연관검색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탈모 원인의 유발 또는 제공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탈모의 예방이나 치료 등 의학정보의 제공, 전문병원의 광고 등 긍정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중의적인 용어에 해당된다. 실제 검색결과를 보더라도 탈모 증상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이나 특정병원의 광고 등 탈모와 관련된 다양한 검색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연관검색어가 오로지 명예나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만을 띠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한편 검색결과에 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청인과 탈모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검색되고 있어서 그 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검색어와 무관한 검색결과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의미의 연관검색어를 전제로 한 제5호에도 해당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4)]

1. 심의 번호 : 2016심12-1 ~ 2016심12-8

2. 심의 결정일 : 2016.11.1

[결정]
2016심12-1 ~ 2016심12-8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이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제품명에 연관된 검색어 8건이다. 심의대상 검색어는 신청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에서 이른바 ‘옥시 가습기 사건’에서 논란이 된 유해 살균제 성분을 의미하는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에서 문제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2016년 8월 이후 제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검색어의 노출로 자사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당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재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인 법인으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에 명백하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우선 해당 검색어가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여부 또는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가 피해보다 적은 경우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검색어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로 인해 사망자 198명, 생존환자 572명 등 총 770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한 후, 해당 성분이 다른 화장품 등에서도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용자 및 언론이 조사하면서 형성된 검색어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논란 이후 신청인은 올해 8월부터 해당 성분을 제외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기존에 생산되어 유통된 사실과 기존 제품이 모두 수거되었다거나 현재 유통 중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이용자의 생명, 건강 및 안전 등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해당 성분이 사용된 제품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언론에 기사가 게재되는 등 현재도 공론화 되고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검색어 및 검색결과에 대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보다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

4) 저널 제25호에서 리뷰

‘000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5)]

1. 심의 번호 : 2016심13-1 ~ 2016심13-6

2. 심의 결정일 : 2016.11.14

[결정]
2016심13-1 ~ 2016심13-6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이 특정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생성된 검색어 6건이다. 신청인은 검색어 생성 배경이 된 모임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재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에 명백하므로, 우선 해당 검색어가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를 판단한 후, 해당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혹은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가 피해보다 적은 경우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해당 검색어는 특정 모임의 구성원이라고 보도되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소명자료에서 ‘근거없는 루머’와 ‘허위사실’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사의 경우 기자가 1차 자료 즉, 직접적인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아니라, 풍문 등 2차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한 기사로 보인다는 점과 진실한 사실로 믿을만한 추가적인 자료 등을 기사 등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이후 후속보도 등에서 해당사안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정황 등이 추가로 보도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해당 검색어의 단체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공공의 이익, 공적 관심사와 비록 관련이 될 수 있지만 알 권리보다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5) 저널 제26호에서 리뷰

‘000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6)]

1. 심의 번호 : 2016심14-1 ~ 2016심14-6

2. 심의 결정일 : 2016.11.23

[결정]
2016심14-1 ~ 2016심14-6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연예인인 신청인과 특정인이 같이 찍은 사진이 외부에 유출되어 생성된 연관검색어 6건이다. 신청인은 소명을 통해, 해당 검색어의 생성에 영향을 미친 사진의 존재는 사실이나 연예인이 되기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해당 사진과 결부된 검색어 및 이에 대한 다수의 왜곡된 루머로 인해 본인이 현재 겪고 있는 피해를 주장하며 관련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에 명백하므로, 우선 해당 검색어가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를 판단한 후, 해당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혹은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가 피해보다 적은 경우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을 보면, 최근 논란이 되는 인물과 신청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양자 간에 친분 관계에 대한 소문 또한 다수의 기사를 통해 보도되어 연관검색어의 생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판단에 있어 우선 해당 검색어의 명백한 허위 여부를 고려하였는데, 신청인 측이 과거 사진을 찍은 사실 자체는 인정함에 따라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함께 사진을 찍은 인물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기에 검색어 및 검색 결과는 공적 관심사의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사진의 내용 등을 볼 때 사진이 찍힌 시점은 14년전으로 최근의 공적 관심 이슈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소명사항 등에서 나타난 바 현재까지 양자 간에 특정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마지막으로 양자 간의 관계 정도에 비해 해당 검색어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대해 고려한 결과,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신청인의 피해가 큰 사안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

6) 저널 제26호에서 리뷰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16-1 ~ 2016심16-6

2. 심의 결정일 : 2016.12.20

[결정]
2016심16-1 ~ 2016심16-6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국회의원인 신청인과 특정인이 포함된 검색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가 루머에 불과하여 사실이 아니라는 사안 등을 밝혀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므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이 있다. 즉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사생활이 침해 되었는지 살펴보건대, 이 사건 검색어의 생성 배경을 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인이 특정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하였는지, 만일 개입하였다면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정당과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는 해당이 없다.

다음,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정정보도 완료된 기사’에 의하면 신청인의 이름이 ‘해당 A의원’ 또는 ‘특정 의원’으로 표시됨으로써 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로써 신청인에 대한 보도사실이 허위사실임이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연관검색어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일부 언론에 신청인의 이름이 노출된 기사가 여전히 검색되고 있지만 동 기사들은 위의 정정되기 전의 기사를 근거로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허위사실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2017년도 공개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7]

1. 심의 번호 : 2016심17-1

2. 심의 결정일 : 2017.1.9

[결정]
2016심17-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특정 상호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삭제를 요청한 연관검색어 ‘○○’이다. 신청인은 경쟁사인 ‘○○’의 상호를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이유로 법원에 제소하였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은 제출한 소명자료인 조정조서를 근거로 신청인의 상호 검색 시 본 건 심의대상 연관검색어인 ‘○○’가 표출되는 것 자체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자사 상호 및 상표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중 제6호와 제8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제6호), “법원이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제8호)에는 해당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명자료인 조정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 제품화한 캐릭터가 신청인의 캐릭터와 유사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캐릭터와 유사한 캐릭터가 포함된 제품의 판매금지, 남은 제품의 폐기, 웹페이지의 유사 캐릭터가 포함된 게시물 삭제, 경고문구 게시, 신청인의 표지사용금지, 위반행위 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유사한 표지를 검색하고 다양한 제품을 비교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므로, 신청인의 표지 검색 시 연관검색어로 경쟁사의 표지가 생성된 것은 이용자의 검색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검색어를 통해 우선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및 법원의 조정을 위반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조정조서의 내용은 상호의 유사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캐릭터의 유사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신청인의 상호와 경쟁사의 상호는 그 자체만으로 용어의 유사성 및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 진다. 또한 검색결과를 보더라도 신청인의 상호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경쟁사의 상호에 관한 내용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색결과 역시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해당 검색어가 법원에 명령에 의해 삭제의 대상이 되는 검색어인지를 검토하였다. 해당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성립의 결과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해당 조정조서의 내용 혹은 해석상 해당 검색어가 삭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우선 조정조서에서는 검색어의 삭제의무 혹은 검색어 삭제와 관련하여 협조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명시적으로 검

7) 저널 제27호에서 리뷰

색어 삭제는 조정조서에 포함된 사항이 아님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해석상 경쟁사인 '○○'는 부정경쟁의 해소의무가 부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바탕으로 해당 검색어가 삭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조정조서의 내용이 상호의 유사성이 아닌 캐릭터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본 건 검색어인 해당 상호로 인한 신청인의 상호와의 혼동이나 오인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쟁사의 상호 검색 시 다른 경쟁사의 상호가 검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정조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상호를 배제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제한하고, 경쟁사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소수 의견으로, 경쟁사의 상호가 동시에 검색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본 건 심의는 부정경쟁행위가 발생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생성행위 여부보다 연관검색어 자체의 권리침해 여부가 중요한 경우이므로 해당 검색어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침해가 인정된다는 점, 조정조서의 내용으로 비추어보아 신청인의 상호 검색 시 경쟁사 상호인 '○○'가 동시 현출되는 경우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에 대한 방문 및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청인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피해회복을 위한 검색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삭제의견이 있었음을 부기해 둔다.

‘000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1-1 ~ 2017심1-3

2. 심의 결정일 : 2017.1.16

[결정]
2017심1-1~2017심1-3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이용자가 작성한 의료분쟁 관련 게시물 3건이다. 신청인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근거로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혹은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심의 대상 게시물을 살펴보면,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의료 분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쪽지로 연락을 줄 경우 이에 대해 회신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이며, 두 번째 유형은, 의료분쟁 이후 처리절차를 담은 게시물로 나누어진다. 다만, 두 유형의 게시물 모두 분쟁의 대상이 된 병원의 명칭 등을 밝히지 않고 글을 작성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3조 제1항은 임시조치의 신청 요건 중에서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이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의해 금지되는 게시물인지, 혹은 명예훼손 사유가 소명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법원의 가처분 명령서를 보면, 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포함한 각종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의료인에 과실이 있다는 내용 혹은 직원 교육을 잘 시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첫 번째 유형의 게시물을 살펴보면,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어 신청인의 명예훼손 사유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것과 더불어, 게시물 내에서 신청인의 과실이 있다거나 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위반되는 게시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쪽지 문답을 통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해당 게시물이 아닌 쪽지를 통해 권리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이 법원에 가처분에서 금지한 게시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두 번째 유형의 게시물의 경우, 글의 작성동기가 신청인에 대한 과실 여부를 전파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과실이 있다고 작성된 글이 아니며, 이용자의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내용의 게시물이라는 점, 마찬가지로 신청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어 다수 공중에게는 그 행위의 주체가 인식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글 명예훼손에 관한 소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졌거나, 법원에서 게시 금지를 명령한 게시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로 결정한다.

‘000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2-1 ~ 2017심2-3

2. 심의 결정일 : 2017.2.3

[결정]
2017심2-1~2017심2-3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게시판에 게재된 게시물로, 신청인 아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명백한 허위에 해당하는 게시물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 요청 게시물의 내용은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것이지만, 게시물 작성의 주된 목적은 대통령 후보로 논의되고 있는 신청인을 검증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은 주요 정당의 고위 보직자로서, 그 역할 및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정무직 공무원에 준한다고 볼 수 있으며(2012.09.04. 2012심8 등 참고), 따라서 판단의 주요 기준은 해당 게시물 내용의 명백한 허위 여부라 판단된다.

심의대상 게시물 세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신청인의 아들이 특정 기업에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청인은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로 해당 기업에 대해 이루어진 감사원의 특별감사자료를 제출하였다.

소명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해당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은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그 내용중 채용과 관련한 감사 결과에는 해당 기업의 채용 관련 특혜 사례 및 인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신청인 아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파악할 수 없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심의 대상 게시물이 제기하는 ‘채용 비리 관련자료의 폐기’에 대한 의혹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제공한 소명 자료는 정황적 판단을 위한 자료가 될 뿐, 신청인 아들의 채용 특혜가 명백한 허위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일부 표현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인물에 대한 언급과 비유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사실적시라기 보다는 의견 표명에 가깝고 내용의 맥락상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본 건에 대해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인 3건의 게시물을 ‘해당없음’으로 결정하였다.

‘000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3-1 ~ 2017심3-9

2. 심의 결정일 : 2017.2.16

[결정]
2017심3-1~2017심3-9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게시판에 게재된 게시물로, 신청인이 금융사기사건에 연류 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후보로서, 사회적 관심도와 그에 따르는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정무직 공무원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2012.09.04. 2012심8 등 참고) 따라서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첫째, 신청인이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해당 금융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 둘째, 금융감독원에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 셋째 신청인 및 신청인 소속의 법무법인이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 그것이다. 해당사안이 각각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우선, 신청인이 청와대 수석당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해당 금융사기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검토한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중요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점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적시라기보다는 업무 처리에 대한 의견에 표명에 보다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로, 금융감독원에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없으며, 해당 사안은 검찰에 의해 수사되었으나 무혐의 종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불기소처분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어떠한 점을 근거로 신청인이 무혐의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 신청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사안이 명백한 허위의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로, 신청인과 신청인 소속의 법무법인이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에 대해 살펴본다. 신청인이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이후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였고, 법무법인에 복귀한 이후 법무법인이 받은 수임료는 그 이전 계약에 따라 지급 받은 것으로 신청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도 무혐의결정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고발사실과 불기소처분이유를 알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국장과 전화 통화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이 집중되고 있는 점, 을 고려할 때 해당사안 역시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게시글의 전체 취지를 보면 신청인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태와 관련하여 최고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

였고, 오히려 신청인과 관련 있는 법무법인이 거액의 소송사건을 유치하여 수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 역시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로 결정한다.

‘000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4-1 ~ 2017심4-5

2. 심의 결정일 : 2017.2.16

[결정]
2017심4-1~2017심4-5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게시판에 게재된 게시물로, 신청인이 최근 발생한 정치적 사건의 배후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책규정 제5조 제5항은 “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자로서 국민들의 관심도와 그에 따르는 정치적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2012.09.04. 2012심8 등 참고) 다음으로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또는 신청인에 대한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심의 대상 게시물은 주로 신청인이 아닌 제3자를 비판하기 위해 작성된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증거품을 주요 비판대상이 되는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신청인이 제3자의 비판 과정에서 일부 기술되고 있어 전체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게시물 일부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로 인해 게시물 전부를 삭제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 일부 불법도 불법이므로 일부 불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고, 불법을 방조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일부 불법에 따른 피해 구제 역시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비판대상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해당 사안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 한 이는 임시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사안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심의대상 게시물은 신청인이 증거품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제3자가 이를 언론사에 제출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입수 경위 등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언론사에서 밝힌 바가 있다는 점, 검찰에서도 그 태블릿PC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발표한 바 있고, 그 입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에도 신청인과 연관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허위의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게시물의 경우 신청인을 지역적 차별성이 있는 단어를 통해 묘사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 없이 신청인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표현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책규정 제5조 제5항의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000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5-1 ~ 2017심5-5

2. 심의 결정일 : 2017.2.16

[결정]
2017심5-1~2017심5-5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게시판에 게재된 게시물로, 신청인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신청인을 비판하는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후보로서, 사회적 관심도와 그에 따르는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정무직 공무원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2012.09.04. 2012심8 등 참고) 따라서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심의 대상 게시물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발언한 경제적 공약과 관련하여 비판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특정 세력과 관련이 있는자 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러한 비판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신청인이 공약으로 발언한 사항은 널리 언론을 통해 확인되는 사항으로 신청인 역시 해당사안의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신청인의 해당 공약은 불확정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신청인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개념의 일부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신청인을 비판하면서, 일부 과도한 표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신청인이 특정 세력과 관련이 있는 자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은 아니며, 더 나아가 해당사안의 본질은 신청인의 공약에 대한 비판으로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어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6-1 ~ 2017심6-11

2. 심의 결정일 : 2017.2.16

[결정]
2017심6-1~2017심6-1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게시판에 게재된 게시물로, 특정한 시점에서 신청인의 행적에 대한 비판을 내용으로 한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물 삭제 혹은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에 적시된 내용의 시점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므로 판단에 있어 해당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심의 대상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 및 신청인 정당에서 특정 사고의 시점 당시 전(前) 장관 1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일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근거로 파악한 결과 신청인 또한 그 정도에 있어 이보다 과한 부적절한 행동을 취했음에 대해 제시하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신청인은 해당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지만 과도한 추측과 과장, 모욕적이 표현 및 사실이 아닌 사항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소명하였다.

대상 게시물과 신청인의 소명 내용을 통해 볼 때, 정치자금의 사용과 관련된 내역은 신청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공적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여진다. 관련하여 일부 대상 게시물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내용 및 맥락상 공인인 신청인을 비판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고, 이를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금액의 지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측면과 함께 신청인의 소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또한 판단에 있어 고려하였다.

다만 게시물이 밝히고 있는 식사 금액을 고려할 때 일부 과도한 주장이라 보여지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해당 사안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7-1 ~ 2017심7-3

2. 심의 결정일 : 2017.3.15

[결정]
2017심7-1 ~ 2017심7-3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의 제품 브랜드의 연관검색어 3건이다. 신청인은, 그 중 2건의 검색어는 검색어가 허위의 사실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1건의 검색어는 자사와 무관한 사업자의 브랜드라는 이유로 각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호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사업자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혹은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명예훼손의 정도가 보다 큰 경우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또한 자사와 무관한 검색어라는 것을 이유로 삭제 요청의 경우 위 제6호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하였다.

먼저,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한 검색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자사 제품과 관련하여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러한 취지를 나타내는 본건 검색어들이나 그 검색결과가 신청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사항은 다수 이용자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사항의 경우 언론 보도가 비교적 최근까지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되지 않아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해당 검색어 등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가 보다 중시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신청인 회사의 제품 브랜드명의 연관검색어로 자사와 무관한 브랜드명이 제시된 것을 이유로 그 부분 삭제를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 상품의 브랜드명을 검색할 때 그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 상품의 브랜드명이 연관검색어로 현출되는 것은, 이용자가 경쟁관계의 제품들을 순차 검색하여 비교해 본 후 구매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보인다. 본 건의 경우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해당 검색어의 현출이 신청인의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8)]

1. 심의 번호 : 2017심8-1

2. 심의 결정일 : 2017.4.20

[결정]
2017심8-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 회사명의 연관검색어 ‘성매매’이다. 신청인은 심의 대상 연관검색어가 허위의 사실에 가까운 내용으로, 일반 이용자에게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5호는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를 띠고 있는데, 그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의 검색결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검색되는 경우’, 제7호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사업자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에 명백하므로, 우선 제3호 해당하여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혹은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피해가 적은 경우인지를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제5호에 따라 검색어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임에 분명하므로, 해당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지 여부, 마지막으로 제7호에 해당하여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지 검토한다.

우선, 제3호의 요건에 대해 검토하면, 신청인은 숙박업 예약서비스 사업을 하는 자로서, 가맹점 숙박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됨에 방조 의혹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위와 같은 연관검색어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연관검색어는 공공의 이익 내지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고 또한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론화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 보다 신청인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제5호에 해당하여 부정적인 검색어임에도 그 검색결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관한 내용이 검색되는지를 살펴본다. 해당 조항의 취지는 검색어 자체의 부정적인 의미가 강함에 비하여 검색결과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 검색어로 현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정책규정 해설서, 54쪽). 그런데 이 사건 연관검색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검색결과를 보면 언론의 관련사실 보도가 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연관검색어대로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어서 연관검색어와 검색결과 사이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제5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8) 저널 제28호에서 리뷰

마지막으로, 제7호에 해당하여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해당 조항의 취지는 연관검색어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그와 같은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단순 노출까지 삭제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언론이 범죄사실이나 불법사실에 대한 보도까지 삭제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해당 사안에서 보면 '성매매'는 이를 조장할 경우에는 불법정보(성매매 금지 관련법 위반정보)로서 연관검색어 등으로 금지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언론에서 성매매 관련 사실을 적발하거나 고발하는 뉴스를 보도할 경우 이를 허용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심의대상 검색어는 외관상 불법정보의 내용을 가진 연관검색어로 보이지만, 그 검색결과를 보면 관련 사실을 고발하는 보도내용으로서 이런 사실까지 삭제하여야 할 불법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제7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9]

1. 심의 번호 : 2017심9-1~2017심9-6

2. 심의 결정일 : 2017.6.22

[결정]
2017심9-1~2017심9-2 : 해당없음
2017심9-3~2017심9-6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신청인에 대한 6개의 연관검색어이다. 신청인은 각 심의대상 연관검색어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건에서는 신청인이 방송인으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이 명백하므로 제3호의 요건 중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혹은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피해가 적은 경우인지가 쟁점이다.

먼저, 신청인의 사진과 관련되어 생성된 검색어에 대해 살펴본다. 해당 검색어는 신청인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게재한 사진이 이후 보정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생성된 검색어로 보인다. 다만, 그러한 논란이 단순히 게시판 등에 게시된 것뿐만 아니라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신청인 역시 일부 보정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연관검색어는 공공의 이익 내지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특정 병명의 연관검색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해당 병명의 경우 자신의 거짓말을 믿거나 거짓말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병리적 용어이다.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특정 정부기관의 홍보대사로 임명되었다는 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부기관의 하부기관에서의 홍보대사를 한 것은 사실인 점, 일반인은 오인하기 쉬운 용어에 대한 무지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단순 실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표현이 연관검색어로 제시될 경우 대중을 상대로 활동을 하는 방송인에게는 방송활동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 권리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해당 단어의 성격상 질병을 지칭하는 외에도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하거나 강조한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연관검색어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신청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

9) 저널 제29호에서 리뷰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중 2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4건에 대하여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10-1

2. 심의 결정일 : 2017.6.22

[결정]
2017심10-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 회사명과 함께 재현되는 자동완성검색어 ‘불매운동’이다. 신청인은 심의 대상 연관검색어가 신청인 회사와 무관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보다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사업자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지 않는자임에 명백하므로, 우선 제3호 해당하여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혹은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피해가 적은 경우인지를 판단하였다.

우선,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주된 원인의 하나는 신청인의 주장과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특정 인물의 배경에 관해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에 의해서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 신청인이 판매한 제품이 과거 발생했던 사회적 재난을 연상시킨다며 불매운동을 언급한 게시물 및 언론보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신청인 회사명과 불매운동의 검색어 조합의 생성 원인이 복합적이고 이와 관련한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는 등 공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11-1

2. 심의 결정일 : 2017.6.22

[결정]
2017심11-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인 국회의원의 자동완성검색어 ‘갑질’이다. 신청인은 심의 대상 검색어가 허위의 사실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2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국회의원으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는 자임에 명백하므로, 우선 제2호에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인지와, 해당 사안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지를 판단하였다.

우선, 검색어가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참석한 공식행사에서, 신청인을 공식적으로 소개하지 않자, 이에 대해 주최측에 항의하였고, 이 사건이 노출되어 생성된 검색어로 보인다.

해당 행사의 경우, 국회의원인 신청인도 인정하듯이, 개인자격이 아닌 지역구와 당원을 대표하여 참석하였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이 아님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해당 단어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신청인에 주장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이 행사 주최측에 항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사안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검색어가 일부 비속적인 표현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검색어라는 점과, 검색결과를 살펴보면 신청인에 대해 이러한 논란이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신청인의 입장도 기사에 게시되어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12-1~2017심12-5

2. 심의 결정일 : 2017.6.28

[결정]
2017심12-1 ~ 2017심12-2 : 해당없음
2017심12-3~2017심12-5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인 국회의원의 성명의 자동완성검색어 5건이다. 신청인은 심의 대상 자동완성검색어가 허위의 사실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2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 해당 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국회의원으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는 자임에 명백하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검색어 또는 그 검색결과로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심의대상 검색어 중 ‘폭탄주’ 관련 검색어에 대해 살펴본다. 폭탄주의 일반적 의미는 맥주에 양주 또는 다른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시는 음주방식을 말하는 것일 뿐, 달리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검색어 자체의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이러한 검색어 자체만으로는 위법적이라거나 권리침해적인 요소를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색어 자체의 권리침해성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인과 검색어로 결합하여 자동완성검색어가 된 경우에는 그 검색결과는 원래 검색어와 달리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위 검색어와 신청인을 결합하여 자동완성검색어로 검색한 결과에 의하면 단순히 폭탄주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신청인과 연관된 폭탄주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는데, 이는 정책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하여 삭제하였던 사안과 검색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2013.3.21. 2013심18,19). 당시 심의결정에서는 단어자체의 청소년 유해성을 근거로 삭제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검색어에 대해서는 검색결과가 청소년 유해성이 있다는 이유로 삭제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폭탄주’ 관련 검색어 또한 동일한 이유에서, 검색어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검색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성추행’ 관련 검색어를 살펴본다. 위 검색어를 검색하며 보면 정작 신청인과 관련하여 적시된 성추행 사실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당 정책위원회에서 기심의하여 삭제한 연관검색어(2013.3.21. 2013심18,19)가 검색결과에서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추행’이라는 특정단어의 의미보다는 위와 같은 이전에 심의하여 허위의 사실로 판단된 검색어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당 검색어는 신청인의 성추행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특정인에 대한 권리침해성이 매우 강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추행 사실에 대한 아무런 적시가 없는 이 검색결과를 보면 특정인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인데, 달리 이 자동완성검색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거나 아니면 상당한 근거를 갖춘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과거' 검색어를 살펴본다. 특정인의 과거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검색어로서 '과거'는 그 자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특정인의 부정적인 내용만 검색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검색결과의 권리침해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자동완성검색어의 검색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노출되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청인이 정치인으로서 살아온 과거가 다양하게 보도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권리침해성 자동완성검색결과로만 보기도 어렵다. 또한 국회의원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과거'에 대한 검색은 공인의 행적에 대한 관심사에 대한 표현으로서 공익적 필요가 매우 강한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검색 조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부정적인 과거 행적의 노출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리' 검색어를 살펴본다. 해당 검색어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자동완성검색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확정적인 비리 사실 뿐만 아니라 비리의 '의혹' 제기라는 비판적 언론 기능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비리'라는 검색어 자체로서 해당 신청인에게 비리 사실과 연관되어 있음을 오해케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를 보면 신청인에 대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관련 의혹의 제기는 물론이고, 최근 장관후보자 청문과정에서 해당 후보자들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비리' 관련 사실 등도 검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이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하게 되면 이처럼 특정한 비리사실 또는 그 의혹제기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비리' 관련 정치적 행위도 함께 삭제되는 것이 되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하여는 해당없음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3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2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13-1~2017심13-2

2. 심의 결정일 : 2017.6.28

[결정]
2017심13-1 ~ 2017심13-2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인 주식회사에 대한 연관검색어로 나타나는 경쟁회사 및 경쟁회사의 연관검색어인 신청인 회사명이다. 신청인은 심의 대상 연관검색어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11호 본문은 ‘기업 등이 상표권 침해 또는 영업주체 등 혼동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을 제출하거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결정 등을 제출하여 명백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단서에서는 ’다만, 어떤 기업 등의 상호나 상표에 대한 연관검색어로 경쟁사 등의 상호나 상표가 현출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단순히 경쟁사업자의 상호가 노출되는 것으로는 삭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인은 주식회사로 기업에 해당하므로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검색어가 명백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소명자료에서 ‘경쟁회사와 연관이 없는 회사이며 경쟁회사의 직원 및 대표가 신청인의 직원이었지만 새롭게 회사를 설립하며 운영하고 그에 따른 신청인의 계열사인 것처럼 포장하며 이전의 고객 및 기존의 고객의 연락리스트를 이용 신청인의 고객들에게 연락을 취한 점’을 근거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인은 계열사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기존 고객리스트를 통해 연락을 취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의 계열사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허위·기만광고로써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거나 기존 고객리스트를 통한 불법영업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인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신청인의 소명이 전혀 없이 단순 경쟁업체의 상호가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13조 제1항 제11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14

2. 심의 결정일 : 2017.7.7

[결정]
2017심14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홍보 게시판’에서 신청인이 광고한 물품 에 대하여 구매 및 문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안과 관련, 회원사의 ‘사용기’ 게시판에 작성한 게시물 1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5심4, 2015심16, 2015심25, 2016심1 등의 결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경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신중한 삭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 등에 따르면, 게시물을 통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게시물일 경우에도 근거 없는 모욕적 표현, 고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건과 관련하여 해당 게시물이 신청인의 소명자료 등에 비추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근거 없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넘어 고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우선 살펴보면, 게시자는 동일 상품에 대해 회원사의 홍보 게시판의 가격과 업체 홈페이지의 가격이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여, 신청인에게 가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메신저를 통해 문의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해당 내용 확인 후 회신하겠다고 하였으나, 장기간 응답이 없었고, 게시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재차 문의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게시자에게 가격이 상이한 이유를 설명하고 게시자의 의사에 따라 구매 물품을 환불해 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품 구매자인 게시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늦어진 응답에 대한 사과 등의 조치없이 환불만을 약속했다는 것이 소비자인 게시자의 주장이다. 아울러 게시자는 신청인과의 이러한 과정 전반을 메신저상에서 캡쳐된 양자간 대화를 기반으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우선 게시물의 내용이 첨부된 메신저 화면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그리고 신청인이 해당 사안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별도의 소명이나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해당 사안은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은 상품 정보 게시 오류에 대해 인정하고, 기 구매된 상품에 대해 환불하고 사과하는 등의 내용 역시 게시물에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게시자가 고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은 신청인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적 표현 등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게시물은 다른 소비자의 상품구매와 의사결정에 있어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게시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15-1~2017심15-2

2. 심의 결정일 : 2017.7.12

[결정]
2017심15-1 ~ 2017심15-2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신청인 성명과 특정단어가 조합된 검색어를 검색하였을 때 노출되는 연관검색어 ‘거짓말’이다. 신청인은 각 심의대상 연관검색어가 허위 사실 적시 비방에 해당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건에서는 신청인이 방송인으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이 명백하므로 제3호의 요건 중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혹은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피해가 적은 경우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과거 게재한 사진이 논란을 일으키고 이에 대해 해명한 사항 역시 논란을 일으켜, 신문과 방송 보도 및 연예 프로그램 등에 보도됨으로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방송 등 다수에게 공표된 내용을 근거로 생성된 검색어라는 점에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논란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고 보도된 사안으로, 최근까지 공론화 되었으며, 이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해당 검색어가 재현하는 의미가 부정적이거나 심각한 낙인효과가 있어,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명예훼손이 강한 검색어인지를 검토하였다. 다만 심의대상 검색어는 신청인 성명을 검색하였을 때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 성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검색어를 검색하였을 경우에만 노출되고 있다. 이 같이 조합된 검색어의 연관검색어는 이미 이용자의 검색 동기와 맥락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명에 연결되어 노출되는 검색어보다 그 낙인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심의대상 연관검색어인 ‘거짓말’ 은 그 자체가 부정적 뜻을 담고 있지만, 비하나 모욕적인 용어는 아니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16-1

2. 심의 결정일 : 2017.8.7

[결정]
2017심16-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신청인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제시되는 자동완성검색어 ‘구설수’이다. 신청인은 심의대상 검색어가 생성되게 된 배경이 신청인에 대한 억측과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건에서는 신청인이 방송인으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이 명백하므로 제3호의 요건 중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혹은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피해가 적은 경우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심의대상 검색어인 ‘구설수’란 “말을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말하는데, 신청인의 언행에서 그와 같은 구설수가 생길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검색결과를 보더라도 각종 언론의 보도내용도 ‘구설수’라는 용어를 그대로 노출하거나 그 보도내용 자체가 구설수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억측을 통해 생성된 허위의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구설수’라는 연관검색어 자체 또는 그 검색결과는 언론 보도를 통하여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써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17-1~2

2. 심의 결정일 : 2017.8.23

[결정]
2017심17-1~2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의 이름으로 검색할 때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로 신청인의 성명과 함께 노출되는 특정 상품의 이름이다. 신청인은 해당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이하 ‘이 사건 검색어’라 한다)가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6호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에, 그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각 해당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검색어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신청인의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창작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사람의 성명만으로는 그러한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검색어는 저작권의 침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검색 결과를 살펴보아도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검색어는 위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6호의 삭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신청인이 주장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사건 검색어가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지에 대해 보충적으로 살펴본다. 신청인은 작년까지는 해당 상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검색어에 의한 검색결과 역시 대부분 해당 광고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검색어는 위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삭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18-1

2. 심의 결정일 : 2017.9.21

[결정]
2017심18-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신청인의 브랜드에 대한 연관검색어 ‘갑질’ 이다. 신청인은 특정 가맹점주와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연관검색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자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취지로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법인 사업자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큰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신청인이 요청한 심의대상은 브랜드 명에 대한 것으로 이것이 신청인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였다. 권리침해 중 명예훼손은 사람(자연인 혹은 법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일반의 평가로서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발생한다. 따라서 브랜드는 그 자체로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개인의 아명과 같이 브랜드가 특정법인을 상징하거나 표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브랜드의 훼손이 그 특정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청인은 현재 심의대상 브랜드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러한 점에서 심의대상 브랜드는 외부에서 신청인을 상징하거나 표지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한 명예훼손이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심의대상 검색어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없는지,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였다. 프랜차이즈업계의 횡포문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공공의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안이다. 더 나아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의 언론이 비교적 최근까지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검색어가 공론화 되지 않거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19-1

2. 심의 결정일 : 2017.10.21

[결정]
2017심19-1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 성명을 검색시 노출되는 연관검색어로, 신청인의 가족의 성명이다.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가 신청인과 가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1호는 제1호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검색어에 심의에 있어서는 우선 해당 검색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정인의 가족의 성명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사진 등을 공개하였고 이것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어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연관검색어 심의의 추가적인 기준으로서 신청인의 자발적 표현행위의 책임범위,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의 관련성, 이를 공개할 때의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가 신청인의 피해보다 큰지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우선 신청인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을 노출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개인적인 것이고 자동화된 기술을 매개로 하는 연관검색어로 현출 될 것을 기대하였거나 이에 동의하였다고 전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해당 검색어의 삭제를 구하고 있는 이상 개인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검색어 등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있어 이를 공개할 때의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가 신청인의 피해보다 큰지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5.4.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에서 공적 관심사를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 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해당 언론기사 등을 통해 보도된 사안은 단순히 특정 가족에 대한 가십을 보도한 사안으로 이러한 점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검색어의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신청인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000의 게시물 임시조치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20-1 ~ 2017심20-2

2. 심의 결정일 : 2017.11.06

[결정]
2017심20-1~2017심20-2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인 주식회사의 게시물 삭제 요청 건과 회원사가 요청한 관련 검색어 각 1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차단을 요청하였다.

심의 대상 게시물의 내용과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에 대해 우선 살펴본다.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요 자산이 친일파와 관련이 있고, 그 재산이 후대에 상속되어 해당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신청인 회사 또는 그 특정재산이 친일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고, 이를 통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고 신청인은 이에 대해 정정보도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그 조정이 성립된 바 있다.

심의 대상 게시물의 내용과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에 대해 우선 살펴본다. 심의대상 게시물과 검색어는 신청인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요 자산이 친일파인 회사 창업자의 조상의 재산이 후대에 상속되어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친일파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고 신청인은 이에 대해 정정보도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그 조정이 성립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우선 먼저, 게시물에 대해 판단해본다.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하여 조정이 성립된 조정조서에 따르면, 신청인 회사의 창립자는 친일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게시물의 내용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임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게시물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검색어에 관해 검토한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정조서의 내용으로 볼 때 신청인의 창업주가 친일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신청인의 재산이 친일과 관련이 있다고 볼 근거가 적다는 점에서 해당 검색어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명예훼손 정도가 알 권리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해당 검색어가 단정적 표현으로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 또한 고려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및 검색어 각 1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000의 게시물 임시조치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10)]

1. 심의 번호 : 2017심21-1 ~ 2017심21-4

2. 심의 결정일 : 2017.11.29

[결정]
2017심21-1~2017심21-4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게시판에 작성된 게시물 4건으로 신청인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신청인을 조롱하는 게시물 4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닉네임의 사용자가 본인이라고 밝히고 해당 게시물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3조(임시조치 등) 제1항은 임시조치의 요건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한다.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에 의한 해당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이 위 제3조의 임시조치 대상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닉네임은 그 자체로 특정한 개인을 특정한다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닉네임을 언급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더 나아가 신청인이 이미 해당 커뮤니티에서 탈퇴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정체성의 하나인 닉네임을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점, 또한 임시조치를 요청한 표현물에서 욕설 등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0) 저널 제30호에서 리뷰

‘000의 게시물 임시조치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22-1 ~ 2017심22-3

2. 심의 결정일 : 2017.11.29

[결정]
2017심22-1~2017심22-2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2017심22-3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게시판에 작성된 게시물 3건으로 신청인을 종교 집단이라고 묘사한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심의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3조(임시조치 등) 제1항은 임시조치의 요건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한다.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게시물에서 언급되고 있는 OOO명칭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게시물의 URL 또한 적시하여 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당사자인지 여부와 해당 게시물의 URL 적시라는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명예훼손 사유의 소명은 결국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외적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된다. 판례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라고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위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하고 있지만,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제33장)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충적으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점에서 정책규정 제3조제1항의 명예훼손에는 모욕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이 임시조치를 요청한 게시물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기업인 신청인을 ‘사이비’,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또한 ‘사이비’는 모욕에 해당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신청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신청인을 △△△종교단체로 묘사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내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건 심의에서도 신청인을 △△△종교 단체로 묘사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URL을 적시해 요청한 심의대상 게시물 1과 심의대상 게시물 2는 신청인을 특정하여 △△△종교단체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에 대해서는 임시조치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게시물 3의 경우 게시물 자체에는 신청인을 △△△종교단체로 지칭한다거나 신청인을 추측할 수 있는 단어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가 무섭다는 내용을 적은 것에 불과하여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할 수 없다. 댓글에는 일부 신청인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그 표현을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댓글을 별도로 임시조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게시물 3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중 2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1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23-1

2. 심의 결정일 : 2017.12.14

[결정]
2017심23-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신청인이 자신의 성명을 검색했을때 함께 노출되는 연관검색어 ‘사건’이다. 신청인은 심의대상 연관검색어가 자극적이며, 이와 관련된 검색결과가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건에서는 신청인이 방송인으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이 명백하므로 제3호의 요건 중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혹은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피해가 적은 경우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과거 자신의 SNS에 게재한 사진이 사회적 논란을 가져왔고, 이에 대해 해명한 내용 역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져,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됨에 따라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검색어인 ‘사건’ 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이다. 사전적 의미의 사건은 비록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과거 신청인과 관련된 논란을 고려할 때 해당 검색어 자체의 표현 정도나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내용을 허위의 사실이나 과도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최근 다른 연예인의 유사 사례가 보도되며 관련 기사 내에서 신청인의 사례도 함께 언급되는 등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2018년도 공개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1-1

2. 심의 결정일 : 2018.1.16

[결정]
2018심1-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특정인의 이름을 변형한 자동완성검색어 ○△△이다. 이러한 검색어에 대해 제3자인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가 오타,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9호는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의대상 자동완성검색어 중 △△가 오타, 욕설, 비속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먼저 △△는 객관적인 상태를 일컫는 명사로서 국어사전에 등재된 표준어로 오타에 해당되지 않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다음으로 욕설이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남을 저주하는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뜻하는데 △△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뿐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비속어란 ‘격이 낮고 속된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하는데 △△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자동완성검색어는 오타, 욕설, 비속어로서는 물론이고 달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2-1

2. 심의 결정일 : 2018.1.16

[결정]
2018심2-1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국회의원인 신청인의 성명을 검색할 경우 ‘구속’이라는 단어가 추가된 연관검색어이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2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명백하다. 또한, 신청인의 구속 등의 여부는 사생활의 영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타의원과 함께 신청인이 구속기소 되었다는 언론기사가 작성되어 생성된 검색어로 보인다. 하지만 신청인의 소명자료와 같이 신청인은 해당 일에 구속기소 되지 않았으며 해당 언론사 및 기자도 착오를 시인하여 기사의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로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구속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불구속이 유지되는 것 이외에 중간의 영역이 없는 단어로 볼 수 있다. 물론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대해 ‘구속 여부’ 등에 대해 이용자가 검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색어가 생성되는 등 다른 사유로 검색어가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신청인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가 확정되었고, 구속과 불구속의 법적 효과가 주는 차이점을 고려한다면, 명백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며,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영향 및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000의 게시물 임시조치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3-1

2. 심의 결정일 : 2018.1.26

[결정]
2018심3-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이용자가 작성하여 게시판에 등록한 노동 관련 분쟁에 관한 게시물로서,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사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3조(임시조치 등) 제1항은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가 회원사에게 삭제,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려면 ①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임을 밝힐 것, ②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할 것, ③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할 것 등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신청인에 의한 본 건 게시물 삭제 요청이 위 ②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용자 본인이 회사 측과 사이에 진행 중인 분쟁 관련 사항,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한 링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회사 측의 조치를 비판하는 취지의 게시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먼저 해당 게시물에 나타난 내용이 신청인에 대한 것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보면, 회사이름과 직원이름 등이 명시되지 않고 단지 ‘스타트업 기업’으로만 언급되고 있다. 또한 게시물에 제시된 링크로 연결된 언론기사들에서도 해당 회사의 소재지에 대하여 비교적 범위가 넓은 ‘구’로만 특정하고 있고 회사명은 익명처리하고 있으므로 그 보도내용만으로는 기사에 언급된 회사가 신청인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본건 게시물만으로는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적으로 해당 게시물에 대한 댓글에서 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언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댓글에 대한 개별적인 조치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일 뿐, 심의 대상 게시물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4-1~13

2. 심의 결정일 : 2018.2.21

[결정]
2018심4-1 ~ 13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공기업 이사장인 신청인의 성명과 해당기관명을 같이 검색할 경우 신청인의 이름과 ‘봉침’등의 단어가 추가된 연관검색어 총 13건 이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2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공기업 이사장으로서 사회적 관심도와 그에 따르는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정무직 공무원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2012.09.04. 2012심8 등 참고) 이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검색어 또는 그 검색결과로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복지시설 횡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 대해 조사하던 중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가 유력 정치인에게 봉침을 시술하였다는 언론사의 보도가 있어 생성된 검색어로 보인다. 이는 신청인의 이사장 내정 시, 해당 사안과의 연관성을 근거로 신청인의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타나는 것 역시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기업 이사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안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안이 허위의 사실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신청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또한 언론 등을 통해 다수 해당 사실이 공표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또는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 등의 조치가 없는 가운데 검색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 점 역시 고려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5-1,6-1 병합

2. 심의 결정일 : 2018.3.22

[결정]
2018심5-1,6-1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국회의원인 신청인의 성명을 검색할 경우 신청인의 이름과 함께 ‘동성애’, ‘동성애 반대’ 등의 단어가 추가된 연관검색어다.

최근 전면개정으로 신설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제2항 제1호 마목의 경우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색어 삭제와 관련하여 정책규정 제13조의2의 내용 중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는 내용이 있고,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만, 본 건 관련 조항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가능하다.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란 정치인이 국회에서 타인의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항이 마치 본인의 사실인 것처럼 노출되는 경우(2013심50)나, 특정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의 적용 당사자로 오인되는 경우 등에 직접적용 가능한 규정에 해당한다.

본 건의 판단에 있어 우선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발의 했던 법안 내용 중 ‘성별, 장애, 병력 등의 특성’이나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내용 속에 성소수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여 해당 법안이 성소수자를 옹호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성명에 심의 대상 연관검색어가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의 주장대로 해당 법안에 성소수자에 대한 사항이 직접 적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연관검색어의 노출이 해당 내용에 대한 오해 혹은 옹호여부 등이 오인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11)]

1. 심의 번호 : 2018심7-1~9

2. 심의 결정일 : 2018.4.27

[결정]
2018심7-1~9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금연보조제품명에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궐련형 전자담배명 및 이를 포함한 검색어이다. 신청인은 금연보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해당 검색어가 자사의 제품을 오인시켜 자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제2항 제1호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마목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및 사목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4호는 ‘ 기업 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을 제출하거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결정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기업 등에 관한 검색에서 경쟁사 등의 상호나 상표가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것이 명백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 (따라서 어떤 기업 등의 상호나 상표에 대한 연관검색어로 경쟁사 등의 상호나 상표가 현출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음)’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심의대상 검색어가 표시하는 금연보조제품은 담배가 아니며, 연관검색어로 담배의 일종인 궐련형 전자담배가 노출되는 것은 자사의 제품을 오인시킨다고 주장하므로, 마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신청인의 제품은 약사법 제31조 및 약사법 제42조 등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관검색어로 등장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담배사업법 제2조상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다. 그러나, 양자의 외형이 유사하고, 신청인의 제품이 금연보조의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가 보다 덜 유해한 제품을 이용할 목적에서 각각 일반 담배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양 제품은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연관검색어로 노출된다고 하여 바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신청인의 제품명과 연관검색어에 제시되는 검색어 모두 단순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품명이나 이에 이어진 중립적인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신청인의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담배와 의약외품은 그 성질이 전혀 다르므로, 잘못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노출한다는 점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또한 신청인이 제13조의2 제2항 제4호상의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신청인의 제품과 혼동관계에 있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해, 명백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1) 저널 제32호에서 리뷰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8-1

2. 심의 결정일 : 2018.4.22

[결정]
2018심8-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광역자치단체장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신청인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과거의 소속기관과 관련된 검색어이다. 신청인은 해당 기관에 근무한 바 있으나, 검색결과가 선거에 의도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색어를 삭제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은 선거기간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색어 처리에 대해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제17조(검색어의 처리) 제2항은 ‘제1항의 적용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혹은 정당 내 경선후보자 등재 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퇴시점까지’ 제3항에 의한 경우, 즉 ‘공직후보의 적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에의 접근을 조장함으로써 명예훼손의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색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이후 정당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장 출마를 공식선언한바 있으므로, 제17조 제2항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의 소명에 의하더라도 심의대상 검색어는 신청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명백히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과거 경력과 이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선거를 함에 있어 중요한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오로지 사생활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검색결과를 보면 특정인의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 경험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자서전 내용 등 관련 해명 자료도 동시에 게재되어 있는 등 양쪽의 주장을 균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12)]

1. 심의 번호 : 2018심9-1~4

2. 심의 결정일 : 2018.4.27

[결정]
2018심9-1~4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소비자들이 특정 제조방식에 따라 생산된 식품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서술하고, 그 중 특정 제조방식의 제품에 대해 비판한 게시물 4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협동조합으로,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과학적이지 않은 실험을 바탕으로 하여 허위의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3조 제1항은 임시조치의 신청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요건은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이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이 관련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임시조치의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이외의 제3자가 이를 요청할 수는 없다.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특정 업체의 상품에 대한 의견 또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 일반의 제조방식에 대한 의견 또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방식으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 뿐 만 아니라, 관련 제품 일반을 생산하는 업계의 대표 기관 등의 명예 역시 훼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신청은 적격한 신청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5심17 등의 결정 등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경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신중한 삭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해당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 그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실험 내용이 일반인들에 의해 다소간 비과학적으로 수행되었으나, 그 결과 자체를 허위라고 할 만한 근거 또한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해당 게시물이 노출된 블로그나 카페에서 단순히 악의적인 표현 등을 통해 해당 방식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함께, 해당 게시물로 인해 구체적인 명예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소명 역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로 결정한다.

12) 저널 제35호에서 리뷰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10-1

2. 심의 결정일 : 2018.6.13

[결정]
2018심10-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인 법인의 명칭에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사망’ 검색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제2항 제1호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마목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및 사목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을 살펴본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신입사원이 워크숍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검색어가 생성되었다. 사망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고 사법적으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다수의 언론은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신입사원 워크숍 사망 소식을 보도하였다. 언론 보도들은 신청인에게 사망사고의 귀책이 있다고 단정짓는 내용보다는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라는 중립적인 내용이 많다. 신청인의 신입사원이 사망한 사건은 사실이라는 점, 검색어 ‘사망’이 비교적 중립적인 단어라는 점, 검색결과 나타나는 내용이 반드시 신청인의 귀책이 있다고 전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명예훼손의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를 살펴본다. 신청인의 회사는 종업원 수가 천여 명에 이르고 매출규모 역시 연간 수조 원 이상의 기업이다. 신청인과 같은 큰 규모의 회사에서 발생한 신입사원 워크숍 사망사건과 그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사이자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사안으로 허위임이 명백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13)]

1. 심의 번호 : 2018심11-1~2

2. 심의 결정일 : 2018.5.24

[결정]
2018심11-1~2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연예인인 신청인의 활동명에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폭행’ 및 ‘로리타’ 연관검색어 이다. 신청인은 해당사안이 마치 신청인이 이러한 활동을 한 것으로 오해되어,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킨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제2항 제1호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마목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및 사목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을 살펴본다. 우선 ‘폭행’ 검색어의 경우, 신청인이 출연한 TV프로그램에서 해당 장면이 나타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리타’ 검색어의 경우 신청인의 과거 작품 활동과 관련하여 생성된 검색어로 보인다. 이처럼 신청인의 TV프로그램, 신청인의 과거 작품 활동이 검색어 생성에 관련이 있다.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1호 마목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른 사유와 달리 검색결과 보다는 검색어 자체의 침해성을 주목하여 일반의 알 권리보다는 피해자의 구제에 더 중점을 두는 취지가 고려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폭행’이나 ‘로리타’로 인한 연관검색어 등 그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킬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설사 그 검색결과가 그 오인을 완화시키거나 배제시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연관검색어 등의 검색결과를 무시할 경우 자칫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검색결과가 명백하게 사실오인성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경우에는 그 적용을 자제하여야 하는바, 그에 따르면 이건 연관검색어 등의 검색결과를 보면 명백히 사실오인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또한, 해당검색어만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폭행’의 경우 어휘 자체로 해당 연예인이 연루되었다는 오인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의 출연 작품 속의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작품에 대한 홍보효과도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폭행이라는 사실관계로 현저히 오인시킨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으로 결정한다.

13) 저널 제33호에서 리뷰

‘000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12-1

2. 심의 결정일 : 2018.5.24

[결정]
2018심12-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질의 응답 게시물에 답변으로 작성된 특정 정당이 이른바 ‘SNS부대’ 가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정당으로서 해당 게시물이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라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는 “① 선거관련 게시물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의 처리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른다.” 그리고 “2. 정당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은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해당 게시물이 제18조 제1항의 ‘선거관련 게시물’ 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책규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선거관련 게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이 제5조 제2항상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는지, 또한 해당 사안이 명백히 허위사실인지를 검토하였다.

정책규정 제18조 제1항의 ‘선거관련 게시물’은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물을 의미하고, 또한 후보자 예비등록 개시일부터 해당 정책이 적용된다(정책규정 제18조 제3항). 신청인은 6월 13일 개최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시·도의회 의원과 구·시·군 의회의원의 비례대표를 제출하여 정당에 득표를 받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신청인에 관련된 게시물은 그 자체가 후보자에 관한 게시물은 아니지만,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관련 게시물’ 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정당은 정책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삭제 요청 등을 받지 않는 이상 그 게시물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게시물 삭제 요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2013심40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당은 대의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익을 대변하여 입법부나 행정부를 통한 제도적 의사결정으로 구현 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법적 결사체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의 뚜렷한 공적 성격, 그 강령 및 활동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로운 비판이 최대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은 위 정책결정 상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 역시 고려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13-1

2. 심의 결정일 : 2018.6.7

[결정]
2018심13-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질의응답 게시물에 야당 대표와 관련된 질문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사안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 2항은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원내 정당의 대표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게시물이 명백히 허위 사실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판단하였다.

우선 해당 게시물은 신청인을 ‘국가반역자’ 라고 표현하고 있다. 반역자에서 반역은 사전적 의미로 “①나라와 겨레를 배반함 ②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반역자란 법적인 의미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청인의 정치활동이 나라와 겨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판과 의견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에 해당 사안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BBK공범’이라는 태그가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신청인이 2018년 3월경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BBK 사건 방어팀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게 했습니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관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로서는 이를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 외 범죄, 만행, 사형, 응징, 처단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우선 범죄와 만행의 경우 그것을 밝혀달라는 질문형식을 취함으로써 게시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질문형식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와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도 있겠으나 본 사안의 경우 제1야당 대표로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신청인에 대한 의혹제기 정도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만행, 응징, 처단 등 다소 거친 표현이 있으나 역시 신청인이 일반인이 아닌 공인으로 항상 국민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감내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반역자’라는 표현이 반역이라는 행위를 특정함으로써 구체적 사실관계를 의미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소수의견은 이러한 표현이 건전한 정치 문화 등을 해하는 요소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로 결정한다.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14-1

2. 심의 결정일 : 2018.6.7

[결정]
2018심14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성명 일부를 입력할 때 나타나는 검색어 ‘내연녀’이다. 선출직 공직 후보자인 신청인은 선거기간 중에 해당 검색어가 허위의 사실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7조(검색어의 처리) 제3항은 선거기간 중 검색어의 삭제사유로 ‘1. 공직후보의 적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와 ‘2.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에의 접근을 조장함으로써 명예훼손의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정책규정 제17조 적용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검색어가 ‘공직후보자의 적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나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에의 접근을 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심의 대상 검색어인 ‘내연녀’는 부정적인 성격의 단어라는 점에서 신청인의 이름과 함께 노출되었을 때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 중 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등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연관검색어 상 나타나는 내용은 ‘공직 후보의 적격성 판단에 관계없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증명된 게시물 등에의 접근을 조장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여부이다. 검색어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안은 사실 여부의 판단에 있어 이른바 소극적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소극적 사실에 대한 증명은 관련 사항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적극적 사실에 대한 증명 즉 해당 사항을 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특성을 갖는다. 이에 해당 사항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청인의 소명사항과 더불어 언론의 보도 내용 및 검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검토를 통해 볼 때, 언론에서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해당 사항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신청인의 내연 혹은 불륜 관련 사항을 특정하여 보도한 바가 없고, 관련한 게시물 등에도 해당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언론 기사 등에서 해당 후보를 특정하고 불륜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다면 선거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의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이 소극적 사실임을 고려할 때 사실로 판단할 객관적 근거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해당 키워드가 함께 노출되었을 때 얻게 되는 정보의 효용과 요청인의 명예훼손을 함께 비교형량 했을 때 명예훼손의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해당 검색어가 형성된 회원사의 경우, 선거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후보자명에 대한 자동완성검색어를 노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15-1~6

2. 심의 결정일 : 2018.7.18

[결정]
2018심15-1~6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인 유명 걸그룹 멤버인 여자 연예인의 이름을 입력할 때 자동완성검색어 및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검색어 ‘가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 또는 지나치게 잔혹하거나 혐오스러운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의2 제2항 제1호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목에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및 사목에서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검색어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을 살펴보면, 걸그룹인 신청인의 활동과정에서 신체 부위인 가슴이 부각되어 표현된 사진, 동영상 등이 유포되고 그러한 사진,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생성된 검색어로 보인다. 또한 검색결과를 볼 때 이른바 팬픽으로 불리는 선정성이 높은 콘텐츠(소설)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성명에 연관검색어 등으로 노출되는 ‘가슴’ 검색어가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마목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인지를 살펴보면, 특정한 성적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가슴이 어린 여성 연예인의 이름과 결합 또는 연관될 때에는 다소 선정적이고 성희롱적인 의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달리 보면 가슴이라는 용어는 신체의 일부분을 지칭할 뿐 그 자체만으로 선정적이거나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목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보면 해당 검색결과 중에는 청소년 유해물인 게시물(이른바 팬픽)이 일부 발견되지만, 이는 게시물 자체에서 해당 인물과는 관련이 없는 허구창작물임을 밝히고 있는 점에서 해당 인물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검색어가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먼저 해당 검색어 자체만으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당 검색결과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인지에 대하여 보면, 걸그룹의 멤버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성적인 행위를 소재로 삼는 이른바 팬픽이 검색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에 해당된다는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다만 제13조는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당사자의 구제 신청이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건과 같이 당사자가 제13조의2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적용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다만 검색결과 중에서 이른바 팬픽은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상당부분은 해당 걸그룹 또는 그 맴버의 연예활동을 희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콘텐츠이며, 또한 그 팬픽이라는 것도 게시물간에 표현의 정도나 내용이 달라서 모든 팬픽 게시물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색결과 전체 또는 대부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건 연관검색어 등을 전부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해당없음이 보다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되었다.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16-1

2. 심의 결정일 : 2018.9.17

[결정]
2018심16-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신청인은 자사의 브랜드명을 검색할 때 노출되는 ‘브랜드명 + 부작용’이라는 연관검색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신청인은 지상파방송 뉴스 프로그램(2018년 5월 4일)에서 보도된 후 자사 브랜드를 검색할 경우 ‘부작용’이라는 연관검색어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방송의 편파보도, 부작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자사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 부작용이라는 검색어가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인지
○ 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검색행위에 의한 결과로 형성된다. 이용자들은 관심있는 제품이나 상품을 검색하는 경우 효과, 부작용, 장점, 단점 등 다양하게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연관검색어에서 포털사업자가 긍정적으로 효과, 장점만을 유지하고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적인 단어를 삭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정보 유통의 불균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특히 ‘효과’라는 검색어가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검색결과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부작용 역시 연관검색어로 제시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이용자의 검색결과로 형성된 연관검색어로서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인지
○ 앞서 살펴본 대로 연관검색어 ‘브랜드명 + 부작용’이 곧 ‘부작용이 있다거나 없다’는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판단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3) 그 외
○ 지상파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의 편파성 여부,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범위와 의도 등은 본 위원회의 판단대상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방송보도로 인한 피해와 중소기업으로서 어려운 사정 등이 있다면 신청인이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 언론 피해에 의한 구제절차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14)]

1. 심의 번호 : 2018심17-1

2. 심의 결정일 : 2018.9.17

[결정]
2018심17-1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본 건 심의대상은 기업인 신청인의 기업명을 검색할 때, 함께 노출되는 이물질 관련 연관검색어다. 신청인은 허위 사실인 해당 연관검색어의 노출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연관검색어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1호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호 다목에서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마목에서는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검색어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검색어는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품 브랜드의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며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언론 보도 이후 이물질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 업체의 검사 등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해당 사안이 이물질이 아니라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다. 다만 검사의뢰한 국가기관인 식약처의 최종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먹거리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한 알 권리의 존중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관련 사항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아직 식약처의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신청인이 외부 전문 업체에 검사 의뢰 후 해당 결과가 언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허위의 소명이 일정 정도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고, 아울러 식품 브랜드명과 해당 연관검색어가 함께 노출됨으로써 사실 관계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14) 저널 제33호에서 리뷰

‘000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18-1~2

2. 심의 결정일 : 2018.9.18

[결정]
2018심18-1~2 : 해당없음

[결정 이유]
신청인은 중앙당의 부대변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선관위’라 함)에서 이미 해당 사항에 대해 판단하였음을 근거로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1) 정당의 부대변인이 제5조 제3항의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당은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이슈 등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정책을 지지·비판하는 등 정치적 여론형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주요 정당의 중앙당 부대변인은 정당을 대표하여 정치적 여론형성의 기능과 역할을 실제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민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KISO 심의결정례(2015심1)에 따르면 청년 부대변인에 대해 제5조 제3항의 공인으로 인정한 결정례가 존재한다.
○ 따라서 신청인은 정당의 중앙당 부대변인으로서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의 공인에 해당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이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허위사실인지 여부
○ 두 개의 게시물 모두 정당의 주요 선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정치인, 정당인으로서 신청인의 공적업무에 해당한다.
○ 더 나아가, 해당 게시물은 신청인이 이미 한 말에 대한 비판적 댓글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3) 기타
○ 신청인은 해당 사안이 이미 대구선관위에서 종결되었고, KISO로 하여금 대구선관위에 처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것을 주장하지만, KISO는 신청인의 요청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신청인을 대신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고, 대구선관위에서 종결된 결정문을 제출할 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받게 될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의 건[15)]

1. 심의 번호 : 2018심19-1~30

2. 심의 결정일 : 2018.11.16

[결정]
2018심19-1~29 : 해당없음
2018심19-30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요청인은 심의대상 30건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서, 해당 게시물이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내용 혹은 신도와 단체에 대한 악의적인 목적의 내용이 포함되어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삭제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1) 적용 조문
해당 게시물을 삭제함에 있어서 정책규정 제3조(임시조치등)와 제5조(처리의 제한) 중 종교단체인 요청인에 대하여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는바, 제5조가 임시조치의 처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근거라는 점에서 동 조문에서 그 적용이 명백하게 규정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 제3조를 근거로 이 사건을 해석하기로 하였다. 다만 규모가 큰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공인에 해당되므로 제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2) 종교 관련 게시물에서의 판단기준
판례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종교적 목적의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며,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19253 판결)고 판시하여 종교적 비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에서도 이에 따라 종교와 관련된 경험담 게시물 역시 종교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고(2015.4.6. 2015심7), 나아가 종교 관련 사항에 대한 비판은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2014.10.21. 2014심19 등 다수).

3) 명예훼손의 소명 정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제1항 및 정책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요청인이 명예훼손의 사유를 소명토록 하고 있을 뿐 소명방법이나 그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소명은 권리침해 여부가 해당 정보의 내용에 달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권리침해 주장자와 권리주체가 동일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워 권리침해 주장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권리의 내용과 주체, 해당 정보와 권리침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어느 정도 납득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88 결정). 따라서 명예훼손 사유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요청인이 해당 게시물의 정보 속의 피해자와 요청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 준 이상 소명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이다.

15) 저널 제34호에서 리뷰

4)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

따라서 게시물 30건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하여 보면, 아래 1건을 제외하고는 종교적인 논쟁이나 종교활동의 비판으로서 종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거나 또는 게시물 자체에서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없음'으로 판단하였다.

나머지 1건에 대하여는 관련한 언론 보도 기사 등 자료와 비교하여 볼 때 게시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이 상이한데 이는 동 게시물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인바 이건 게시물은 전체적으로 왜곡과 과장이 상당한 허위의 사실로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아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29건에 대해 '해당없음', 1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000의 명예훼손 사유 자동완성검색어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16)]

1. 심의 번호 : 2018심20-1~3

2. 심의 결정일 : 2018.12.18

[결정]
2018심20-1~3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요청인은 심의대상 연관검색어 2건 및 자동완성검색어 1건의 삭제를 요청하면서, 해당 검색어와 관련된 내용은 2018년 5월 이미 완료된 사안임에도, 소비자에게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 및 명예 등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그 삭제 요청 사유를 밝혔다.

1) 검색어의 생성배경
요청인은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올해 초 제품 중 일부에 이물질이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발적 리콜을 한 바 있다. 심의대상 검색어는 혼입된 물질명, 리콜 관련 검색어로 해당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요청인은 이후 문제가 된 사항을 해결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시험검사를 받아 생산을 재개하였으며, 이에 주무관청의 관련 서류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2)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의 다목의 "허위사실" 여부
이러한 발생 배경을 고려할 때, 요청인이 제조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혼입되었고, 이로 인해 리콜을 실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이에 검색어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소수의견으로는 주무관청에서 이후 혼입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3)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의 라목의 "공적 관심사" 해당 여부
해당 자발적 리콜이 실시된 지 7개월 가량 경과되었고, 관련 보도가 지난 5월 이후에 작성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일반 소비자도 7월 이후에 게시물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검색어 관련 사건이 현재 공적 관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의 라목을 적용하여 삭제 대상이라 판단하였다. 다만, 검색어가 표상하는 사건이 국민의 건강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점, '7개월'이라는 기간이 상당한 시간의 경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삭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4)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검색어" 여부
또한 7개월이 지난 과거의 사실임에도 심의대상 검색어가 노출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에게 현재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오인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에 대해 검색결과 등을 볼 때 현재 이러한 사안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해당 사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점에서 사실관계의 오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5) 별개의견
소비자 이익의 관점에서 검색어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해당사례는 요청자 측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신속히 문제해결을 위해 대처한 사안임에도, 허위사실 여부만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 검색어를 유지함으로써 그 결과 기업이 피해를

16) 저널 제34호에서 리뷰

보게 된다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시 기업이 적극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별개 의견이 있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3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2019년도 공개

‘제품의 이물질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9심1-1~2

2. 심의 결정일 : 2019.1.4.

[결정]
2019심1-1~2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요청인은 심의대상 ‘○○○ 코딱지’ 연관검색어가 검증되지 않은 루머로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1) 검색어의 생성배경
일부 인터넷 카페에서 요청인이 제조하는 일부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글이 퍼지면서 2018년 10월 다수의 언론에서 기사화 되었다.

기사내용에 따르면 소비자가 동 제품을 구매해 개봉하자마자 정체모를 이물질을 발견하여 요청인의 고객센터에 항의하였고, 요청인 측은 ‘검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털이 묻은 코딱지’라고 인정하였으나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것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였다.

이후 인터넷 카페에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다수의 의견이 올라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제조과정에서 이물질 혼입은 절대 불가능하며 반드시 증명하겠다는 요청인의 반박보도가 있었다. 심의대상은 ‘○○○ 코딱지’라는 연관검색어이다.

2) “허위사실이 소명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은 “허위사실이 소명된 경우”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청인은 이물질이 없다는 소명자료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전문회사의 진단보고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는 2018년 8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 사건이 발생한 2018년 10월 시점의 소명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전문회사의 진단보고서가 동일한 제조라인 현장의 이물제어 시스템에 대한 진단결과이기는 하나 이 근거만으로 이 사건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이물질 유입은 완전히 허위사실로 소명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허위사실이 소명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제13조2의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없음’으로 판단하였다.

3)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은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품의 위생과 관련한 문제는 국민보건이나 건강과 직결된 사안 중에서도 가장 중대하므로 본 건은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입장'과 제조과정에서 이물질 유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기업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추후 조사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며 결론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요청인의 제품이 위생이나 청결이 매우 중대함에도 '코딱지'라는 비위생적 단어와 함께 연관검색어로 제시된다면 이용자 다수는 코딱지와 같은 이물질이 제품에서 발견되었다고 믿거나 최소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할 것이므로 이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기업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공적인 관심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진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연관검색어인 '코딱지'라는 부정적인 단어는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소수의견
소비자의 주장과 요청인인 기업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상황에서 신고 된 검색어를 클릭하면 다수의 관련 기사들을 통해 각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사실 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기보다는 이용자의 알 권리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9심2-1~3

2. 심의 결정일 : 2019.2.22.

[결정]
2019심2-1~3 : 각하

[결정 이유]
요청인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소속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위 사실 및 그 결과 나타난 결과에 대해 기관 이미지의 훼손 등을 이유로 검색어 삭제를 요청하였다.

1) 게시물에 대한 요청 주체 제한의 검색어에 대한 적용 여부
게시물의 경우 정책규정 제2장 제5조(처리의 제한)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요청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검색어에 관하여는 정책규정 제3장에서 요청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검색어도 게시물의 일종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은 게시물뿐만 아니라 검색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게시물에 대한 요청 주체에 대한 제한은 검색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요청인 적격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례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정책규정 제5조제1항은 국가기관을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의 요청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국가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관도 명예훼손의 피해자 및 명예훼손 관련 게시물이나 검색어의 삭제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규정 제5조제1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고, 게시물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는 게시물뿐만 아니라 검색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정책규정 간 규범조화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명예훼손 관련 검색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은 적법한 요청인에 의한 요청을 볼 수 없고, 이는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3항 제3호의 ‘기타 위원회가 심의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기 전에 요청인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모든 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각하’로 결정한다.

‘000의 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9심4-1~15

2. 심의 결정일 : 2019.5.9.

[결정]
2019심4-1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2019심4-2~15 : 해당없음

[결정 이유]
요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요청인을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특정인물의 성명 등 연관검색어 16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요청인은 검색어에 나타난 자와 본인은 관계가 없으며, 해당 검색어의 검색결과 등이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여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

1) 검색어의 생성배경 등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을 보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요청인이 가해자로 의심 받으며 언급된 내용 등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삭제 요청 검색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그리고 동일사건에서 가해자로 의심받는 다른 사람의 성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색결과 등을 통해 볼 때, 요청인의 성명을 포함한 가해자의 성명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 언급된 바는 있었다. 다만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내용이 언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도된 바는 없으며, 관련 사건에 대한 뉴스 기사 2건이 존재했다는 흔적은 발견이 되지만, 요청인의 요청에 의해 삭제된 상태로 판단된다.

2)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 검색어가 내포하고 있는 사건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또한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수사 등을 통해 사실을 밝혀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해당사안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라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 검색어의 사건은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도 사건 관련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라목 및 바목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의대상 검색어는 대부분 성명이다. 또한 요청인과 직업이 유사한 자로서, 검색어만으로 특정 사실관계를 내포하지 않으므로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심의대상 검색어 중 피해자 성명의 경우 해당사건에 대해 검색 결과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요청인이 피해자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많아, 해당 검색어는 마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5)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사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청인의 요청으로 관련 기사 삭제 등의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점과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요청인이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는 부족한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금번 심의대상 검색어 중 피해자 성명이 연관검색어로 노출이 되

는 경우, 가해자로 오인되어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심의 과정에서 소수 의견으로는 심의대상 검색어 중 피해자의 성명 뿐 만 아니라 모든 해당 검색어가 검색결과를 통해 피해자와 요청인을 연관지을 수 있으므로 처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검토와 판단을 거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을 실시하여 심의대상 검색어 1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이 외 15건은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000의 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17]

1. 심의 번호 : 2019심5-1~10

2. 심의 결정일 : 2019.7.22.

[결정]
2019심5-1 ~ 7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요청인은 특정 종교의 연합회이다. 요청인은 회원사의 서비스를 통해 작성·공개된 10개의 게시물에 대해 정책규정 제21조 위반을 이유로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1) 정책규정 제21조에 적용되는지 여부
정책규정 제21조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활용하여, “그 구성원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할”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조항으로 단순히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인 경우 손쉽게 적용해서는 아니되고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의 심의결정 사례를 비추어 종교와 관련하여 의견이나 논평이 폭넓게 보장되어온 점을 감안한다면 신청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2) 정책규정 제3조 적용에 대한 판단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2015.3.13. 결정 2015심5 심의 및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에 따르면, 종교 표현의 자유는 일반 표현의 자유보다 폭넓게 보호되어야 하며, 종교 표현의 자유에는 특정종교를 비판하는 자유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종교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하다고 본다.

아울러 기독교나 유대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가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집단이 곧 이 사건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주체로 보기에도 어렵다.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7) 저널 제36호에서 리뷰

‘000의 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9심6-1~7

2. 심의 결정일 : 2019.7.22.

[결정]
2019심6-1 ~ 7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은 학교 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사립대학교이고, 학교 법인 ○○학원의 채권자는 법원에 ○○학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이로 인해 요청인의 명칭 등을 검색할 때 제시되는 ‘파산신청’, ‘파산’, ‘폐교’ 등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하여 요청인은 그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1) 심의 대상 검색어의 생성 배경
심의대상 검색어는 학교 법인 ○○학원이 재정적 문제로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받았고, 운영자인 학교법인 ○○학원이 파산할 경우 요청인 역시 파산 혹은 폐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심의에서는 요청인과 운영자인 학교법인 ○○학원을 동일한 존재로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2) 요청인과 그 운영자인 학교법인을 동일한 존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인들은 학교법인과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만, 학교법인과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 법적 성질에 있어 재단법인과 그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영조물이라는 점, 현행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상 학교법인과 학교는 별도의 예산·회계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학교법인과 학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하더라도, 검색어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령 등 객관적인 제도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학교법인과 학교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영조물인 요청인과 별개의 존재인 학교법인에 대한 파산신청으로 인해 요청인의 명칭과 함께 검색되는 파산신청, 파산, 폐교 등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이에 대하여 소수견해로 파산, 파산 신청, 폐교가 포함된 연관검색어 모두 이용자가 검색결과를 확인하면 학교법인과 영조물인 사립대학교의 현재 상황에 쉽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없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정무직 공무원 가족의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의 건[18)]

1. 심의 번호 : 2019심7-1~6

2. 심의 결정일 : 2019.9.16.

[결정]
2019심7-2 ~ 5 : 해당없음
2019심7-1, 2019심7-6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요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가족이다. 요청인은 본인에 대한 특혜 취업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동 의혹에 대하여 공직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및 관련 의혹을 폭로한 특정 정당 소속 정당인 등에 대한 형벌 확정으로 인하여 동 의혹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심의대상 게시물 6건(이하 이건 게시물이라 함)이 여전히 게시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동 게시물 전체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였다.

1) 정책규정 제5조 적용 여부
이건 게시물의 처리의 근거 규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게시물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차원에서 게시가 시작된 점, 공직 선거 이후에도 여전히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검증 등 공적 관심사로 유통되고 있는 점 등 위 게시물의 게시 경위나 게시 내용을 보면 위 게시물은 요청인 본인이 아니라 주로 공인인 요청인의 가족에 대한 공적 관심사가 표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의 처리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건 게시물은 요청인 본인을 중심으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소수의견도 제시되었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건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명백한 허위 사실의 판단
위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요청인은 다음과 같이 2가지 사실을 소명하고 있는데 이는 인정할 수 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3.경 요청인에 대한 ‘OO공무원 특채’ 또는 ‘OO채용’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 이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게시물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요청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특정 정당 소속 정당원 등의 기자회견 관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 게시물이 위 소명된 허위사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게시물 1번의 경우, 재판 등을 통해 유죄로 확정된 사실이 포함된 게시물로서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또한 게시물 6번의 경우, 일부 내용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사실로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게시물 1번 및 6번을 제외한 나머지 게시물의 경우에는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2건(게시물 1번 및 6번)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심의대상 게시물 4건(게시물 2번 내지 5번)에 대해 ‘해당없음’ 으로 결정한다.

18) 저널 제36호에서 리뷰

‘데이터 복구업체 이용후기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9심8-1

2. 심의 결정일 : 2019.9.19.

[결정]
2019심8-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요청인은 하드디스크 SSD/메모리 원격복구 전문업체이다. 요청인은 커뮤니티 게시글을 작성한 게시자에게 원격복구 절차를 문자로 안내하였음에도 마치 사기를 당한 것처럼 비방글을 올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게시글과 댓글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1) 사실관계
데이터 원격복구 업체인 ○○○○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작성한 게시자(이하 게시자)에게 원격복구 절차를 문자로 안내하고 두 차례 복구를 수행했으나 파일을 복구하지 못하였다.

게시자는 파일을 복구하지 못했으므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문자로 안내한 원격복구 절차에 2회 복구 시 환불불가 예외적용을 적용하여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요청인 업체의 원격복구 절차 안내에는 환불 예외사항으로 ‘복구 두 번을 다 완전히 실패했을 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추가비용 없이 복구를 두 차례나 했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게시자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문자안내로 보내준 원격복구 절차가 계약서의 역할을 하는데 자신은 실행방법인 줄 알았다’며 ‘제가 너무 순진했네요’라는 내용과 함께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고 원격복구 경험담을 소개하며 ‘데이터 복구실패시 환불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게시글 아래에는 ‘복구가 안되더라도 작업이 진행된 경우 일정의 작업비를 받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에 관련사항이 있어서 서명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 비용없이 복구를 두차례나 했다고 안준다는 것이 웃긴다’는 업체에 대해 비난, 환불사항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문자로 보내준 것에 대한 불만 등의 댓글이 달려있다.

이에 요청인은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인데, OOOO에서는 복구비용을 입금 받기 전에 고객에게 안내한 원격복구 절차를 100% 따라 수행한 것인 뿐이므로,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게시자가 OOOO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2) 판단
우선 게시글 삭제조치가 필요하다면 요청인의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게시자가 요청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게시글에서 게시자는 ‘사기를 당했다’고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요청인 업체가 제공한 안내문자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어리석음과 함께 ‘사기를 당한 느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요청인의 행위가 사기’라는 사실적 내용을 담았다기보다는 느낌이나 의견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게시글의 제목도 ‘데이터 복구실패시 환불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의 형태로 정보를 구하고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요청인 업체에 대한 비난만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댓글의 내용도 요청인 업체의 환불사항에 대한 소개(환불 예외사항), 일반적인 복구업체의 관행(복구가 어렵다거나 환불이 안된

다거나 하는 내용),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사전에 환불내용 확인), 업체에 대한 불만(문자안내의 한계) 등을 담고 있으므로 사실적시에 따른 요청인의 명예훼손적 내용이라고만 보기도 힘들다.

요청인은 정상적인 업무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불조항에 맞게 적용하였음에도 일반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어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원격복구 업체의 문자안내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소비자 피해방지 및 향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라는 측면에서 명백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닌 한 일반 국민을 대상하는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게시글이 현저히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면 소비자 정보나 국민의 알 권리보다 신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에게 끼칠 중대한 피해를 고려하여 기업을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요청인의 주장만으로는 게시글에서 특별히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근거를 찾기 힘들다.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공직 후보자 자녀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침해 관련 연관검색어 등 삭제 요청’ 심의의 건[19]

1. 심의 번호 : 2019심9-1~3

2. 심의 결정일 : 2019.9.19.

[결정]
2019심9-1~3: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요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공직 후보자의 자녀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임명 과정에서 생성된 검색어인 본인의 공직후보자 성명에 연관검색어 등으로 제시되는 요청인의 성명 및 공직후보자와 가족관계임을 의미하는 단어에 연관검색어로 제시되는 특정 상표명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였다.

1) 성명이 노출되는 검색어
우선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공직 후보자의 성명에 연관검색어로 나타나는 요청인의 성명 검색어가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다수의 의견은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개인정보는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에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공개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삭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성명 그 자체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제13조의2 제2항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다수 의견은 요청인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공직 후보자 자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인이 노출되길 원하는 사생활의 영역을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요청인의 실명을 굳이 공개하지 않고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에 대해 소수 의견은 성명 그 자체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사생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이름이 공개되고, 요청인의 행적이 공적 관심사가 된 점을 고려할 때 이름 자체만으로 사생활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특정 상표명이 노출되는 검색어
요청인이 특정 상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언론에서 의혹으로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또한 이러한 물건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소극적 사실의 증명에 해당하여, 요청인에게 명확한 소명을 요청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요청인이 해당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유포한자를 고소한 점은 형사 고소가 허위일 경우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소명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는 점, 해당 사안을 보도한 기사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소문 내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이 허위 사실이 소명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19) 저널 제38호에서 리뷰

‘병원 의료사고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9심10-1

2. 심의 결정일 : 2019.9.19.

[결정]
2019심10-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요청인인 병원에서 2년전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동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기소된 의료진 모두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동 사고가 발생된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요청인인 병원에 연관검색어로 제시되는 ‘사망’ 관련된 검색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였다.

1) 검색어의 생성 배경
검색어는 요청인의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요청인은 위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를 발표하였고, 요청인의 주장과 같이 위 사고와 관련된 의료인 7인이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최근 1심법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다. 판결 이유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2) 판단
우선 해당 검색어가 명백히 허위사실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요청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사망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 1심 무죄판결은 사망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무죄판결만으로는 유의미한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동 1심판결은 확정판결조차 아니다). 따라서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사안은 사고 발생이후 2년여의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여전히 그 사고의 원인 및 책임과 관련되어 언론보도가 지속되고 있는 등 공적 관심사로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보다 큰 사안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의 라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이용자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9심11-1~4

2. 심의 결정일 : 2019.10.23

[결정]
2019심11-1, 4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2019심11-2 : 해당없음

[결정 이유]
심의대상 게시물 3건(삭제를 요청한 게시물 4건중 1건(3번)은 기 삭제되어 심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은 요청인이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발언한 것 등을 바탕으로 요청인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청인은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자신의 발언 취지 등과 무관하게,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면서 삭제를 요청하였다.

1) 사실관계
요청인은 국회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 지역민의 자격으로 다른 지역민들과 함께 참여하여 발언하였다. 요청인이 처음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이라고 소개되었으나, 기자회견 후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참석한 지역민들 중 1인이 당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기사화되어 당원이었던 요청인에 대한 비판적인 게시물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신청인이 정책규정 제5조 제3항 상의 공인인지 여부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의 공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정당은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이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정책을 지지·비판하는 등 정치적 여론형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요청인은 정당의 당원이었으며 일정 당직도 맡고 있었다. 더 나아가 요청인은 자신의 의사를 국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요청인이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 게시물에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존재하는가를 위주로 검토하였다.

3) 게시물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의 여부
심의대상 게시물 중 1번 및 4번 게시물은 요청인의 기자회견 발언 및 기자회견 시 당원 여부를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하면서 해당 정당은 여성을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신세라는 것에 대한 비하/속어)으로 취급할 것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다수의 의견은 해당 표현이 비록 요청인에게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성인 요청인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악의적이고 과도한 공격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해당 표현이 공적관심사와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에 대한 소수의견은 해당 표현이 직접적으로 요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여성에게 더 모멸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심의대상 게시물 중 2번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물에 일부 비속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이를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위원들의 일치된 판단이 내려졌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1번 및 4번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심의대상 게시물 2번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2020년도 공개

‘기업의 명예훼손 관련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20심1-1~2

2. 심의 결정일 : 2020.3.3

[결정]
2020심1-1~2 : 해당없음

[결정 이유]
요청인은 식품업체로, 자사의 브랜드인 ‘○○○○’을 검색시 노출되는 자동완성검색어 ‘○○○○ ○○원전’과 연관검색어 ‘○○원전’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요청인은 이들 자동완성검색어와 연관검색어가 경쟁사의 비방에 따라 형성되었으며, ‘원전’이란 부정적 이미지로 경영상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근거없는 루머의 확산으로 오용되고 있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1) 주요 사실관계
2019년 5월경부터 ○○원전 격납건물에서 공극이 다량 존재한다,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여 수동중단했다는 보도 등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OO원전 근처에 요청인 소유의 목장이 위치한다는 점이 보도되면서 소비자 우려가 잇따랐다.

요청인은 자사 브랜드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신아일보 기사에 실린 정정 및 반론보도문, 방사능 검색결과(방사능 물질 불검출)를 제출하였다.

2) “허위사실이 소명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의 다목은 “허위사실이 소명된 경우”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청인이 제출한 신아일보의 정정 및 반론보도에 따르면 “○○원전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월 1회 제품의 오염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매년 개최하는 주민설명회 또는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요청인과 지역농가는 “브랜드 목장의 토양, 물, 원유 채취 검사 결과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없음이 확인되는 등 특별히 ○○목장이 ○○원전으로부터 배출되는 방사능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반론문이 실렸다. 이는 요청인이 제출한 방사능 검색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다만 ○○원전으로부터 요청인의 브랜드 목장이 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정정이나 반론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유의 오염검사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고, 방사능물질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문이 실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전으로부터 ○○목장이 인접해 있다는 부분만큼은 ‘허위사실이 소명된 경우’로 볼 수 없다.

3)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은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원전’이 요청인의 입장에서 경영상 불리한 검색어 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방사능, 방사능 오염 등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목장이 ○○원전과 인접해있다는 점이 객관적 사실로 존재한다면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검색결과를 통해 해당 목장이 ○○원전 근처에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해당 목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전술한 시험검사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의료기관의 명예훼손 관련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20]

1. 심의 번호 : 2020심2-1~2

2. 심의 결정일 : 2020.3.3

[결정]
2020심2-1~2 : 해당없음

[결정 이유]
요청인은 의료기관으로 요청인의 상호 ‘○○○○○○○’를 검색할 때 연관검색어로 제시되는 ‘유령수술’ 검색어와, ‘유령수술’을 검색할 때 연관검색어로 제시되는 요청인의 상호 ‘○○○○○○○’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요청인은 과거 문제가 있었던 ‘○○○○○○○병원’과 ‘○○○○○○○의원’은 서로 다른 의료기관이고, 개설자 및 구성원도 서로 다르므로 현저히 사실을 오인시킨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1) 요청인 주장의 요지
요청인은 2019. 2.28. ‘○○○○○○○의원’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기존에 동일한 장소에 있던 ‘○○○○○○○병원’과는 다른 의료기관임이 분명하고, 연관검색어로 제시되는 ‘유령수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2) 요청인의 연관검색어 삭제 신청 적격에 관하여
2016.4. ‘○○○○○○○병원’의 원장이 사기죄, 의료법위반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한편 2017. 8.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의 원장 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 연관검색어가 노출된 것은 2016. 4. 기소되어 4년째 재판 중인 ‘○○○○○○○병원’ 원장에 대한 20번째 공판이 2019. 12.12. 열린 것이 원인이며, 이를 계기로 2019. 12.14. KBS에서 유령수술에 대한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되어 송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연관검색어 중 ‘○○○○○○○’는 ‘○○○○○○○병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요청인은 “연관검색어 삭제 신청서”에서 ‘○○○○○○○의원’은 그 개설자 및 구성원이 ‘○○○○○○○병원’의 개설자 및 구성원과 전혀 달라 두 의료기관은 서로 다른 별개의 의료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연관검색어 ‘○○○○○○○’는 ‘○○○○○○○병원’을 의미하고, 요청인을 지칭하는 ‘○○○○○○○의원’은 아니므로, 이 사건 연관검색어의 당사자가 아닌 요청인은 이 사건 연관검색어의 삭제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요청인의 연관검색어 삭제 신청 적격을 인정할 경우
이미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관검색어에 나오는 ‘○○○○○○○’는 요청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만약 ‘○○○○○○○’를 요청인으로 보아 요청인에게 신청 적격을 인정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요청인의 삭제 신청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 상호 사용에 따른 불이익 감수 여부

20) 저널 제39호에서 리뷰

의료법의 취지상 의료기관의 양수도는 인정되지 않아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요청인의 주장과 같이 '○○○○○○○병원'과 '○○○○○○○의원'은 동일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양 의료기관의 명칭 중 '병원'과 '의원'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일하고, 요청인은 의원을 개설할 때 '○○○○○○○'이라는 명성을 이용할 의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라는 표현을 의료기관의 상호로 사용할 당시 '○○○○○○○병원'이 의료사고 및 의료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소가 제기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을 상호로 사용함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도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정책규정 해당 여부
(1) 정책규정 제13조의2제2항제1호라목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또는 그 검색결과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언론의 보도 등으로 공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면 요청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이 사건 검색어와 관련된 '○○○○○○○병원'에 관한 언론보도 상황을 살펴보면, 2015. 12.22. JTBC, 2016. 4.4. 뉴시스, 2017. 8.4. 의학신문 등에서 '○○○○○○○병원'의 의사 바꿔치기(이른바 유령수술),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사건 및 원장 및 집도의에 대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한편, 2017. 8. '○○○○○○○병원' 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된 제1심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으나, 원장 등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고, 2016. 4. 사기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된 '○○○○○○○병원' 원장에 대한 20번째 공판이 2019. 12.12. 열렸는 바,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민사 및 형사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곤란하고, 여전히 언론보도에서도 다루고 있는 점을 볼 때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4 내지 2015년으로 현재 기준으로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일응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해 현재 민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언론 등을 통해 재판 결과가 보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에도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정책규정 제13조의2제2항제1호마목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또는 그 검색결과가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면 요청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요청인은 연관검색어 '○○○○○○○'이 요청인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존 '○○○○○○○병원'과 현재의 '○○○○○○○의원'과의 동일성에 대한 혼동이나 착오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책규정 제13조의2제2항제1호 마목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는 '○○○○○○○병원'이 해당 의료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전문성, 경력 및 실적에서 나오는 상징적 표현으로서 '○○○○○○○병원'을 지칭하는 것이며, 2019. 2.28. 개설되어 해당 의료분야에서 전문성, 경력 및 실적이 낮은 신생 의료기관인 '○○○○○○○의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는 '○○○○○○○병원'을 의미하고, '○○○○○○○의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요청인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은 '○○○○○○○병원'

의 명성을 활용하여 더 많은 환자 유치라는 반사적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는 '○○○○○○○병원'을 의미하고, '○○○○○○○의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저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정책규정 제13조의2제2항제1호사목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또는 그 검색결과가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면 요청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요청인은 '○○○○○○○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자연인에 관련되는 사생활 침해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한편, 명예훼손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는 '○○○○○○○병원'을 의미하고, '○○○○○○○의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연관검색어로 인해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것은 '○○○○○○○병원'이지 '○○○○○○○의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와 관련하여 '○○○○○○○의원'에 재산적 손해 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병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부터 유래하는 반사적 효과이지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명예훼손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과 관련된 연관검색어로 인해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것은 '○○○○○○○병원'이고, '○○○○○○○의원'이 받은 재산상 불이익은 '○○○○○○○병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부터 유래하는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해당없음" 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연관검색어 '○○○○○○○'의 경우 요청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 요청인에게 이 사건 연관검색어에 대한 삭제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정책위원회 운영세칙상 요청인의 신청 부적격 사유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서 각하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었다.

따라서 요청인의 신청 부적격으로 인한 "각하" 결정과 "해당없음" 결정은 요청인의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하여 "해당없음"으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언론기관 대표의 명예훼손에 의한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의 건[21]

1. 심의 번호 : 2020심3-1~3

2. 심의 결정일 : 2020.4.21

[결정]
2020심3-1~3 : 해당없음

[결정 이유]
요청인은 언론기관의 대표이다. 요청인은 심의대상 게시물 3건이 단순한 루머성 게시물로 본인과 무관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음.

1) 공적 관심사 해당 여부
정책규정 제5조제3항은 언론인이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으로 정하여져 있고, 예외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또는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먼저 이 게시물이 언론인의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는지 보면, 전체적으로 게시물은 언론기관의 대표로서 언론인에 해당하는 요청인의 직무행위나 언행, 도덕성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주된 것으로서 공적인 존재로서 언론기관의 대표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견지에서 널리 언론인의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다만 ‘게시물3’의 내용 중에는 일부 언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부족한 사생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나 게시물 전체의 취지상 언론기관 대표의 언행이나 도덕성을 감시 및 비판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언론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2) 명백히 허위사실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명백히 허위사실이 소명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게시물이 언급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어렵고 특히 판결 등 공적인 확인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지만, 허위사실에 대한 소송제기나 형사고소, 언론중재 또는 조정 신청 등의 부존재를 소명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최소한의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며, 단지 이건 요청에서와 같이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그 자체만으로는 명백히 허위사실을 소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3)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인에 대하여는 그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또한 정치인에 대한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표명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게시물에는 요청인에 대하여 ‘좌파이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다’, ‘△△△과 연관되었다’, ‘○○○와 친구다’라는 표현이 있어 이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되는지 보면, 이는 공적인 존재인 언론기관의 대표에 대한 직무활동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적 관심사가 표현된 것일뿐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

21) 저널 제39호에서 리뷰

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이건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정책규정 제5조제3항 본문 요건을 충족하고 반면에 각호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결국 임시조치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종교단체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20심4-1~2

2. 심의 결정일 : 2020.4.23

[결정]
2020심4-1~2 : 해당없음

[결정 이유]
요청인은 종교 단체이다. 요청인의 단체명 ‘ABCD’로 검색할 때,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로 나타나는 “ABCD 이단” 및 자신의 단체와 무관한 다른 종교단체의 이름이 함께 제시되는 “ABCD WXYZ”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 사실관계의 현저한 오인과 명백한 명예훼손의 여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도1220판결 등)에 따르면 ‘이단’이라는 표현은 특정 종교체제 내에서의 의견표명의 성격을 가진다. 즉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의 여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더해, 종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알 권리가 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판례 2010.9.9.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이단’ 검색어는 종교 비판의 권리 내에 포함되는 검색어로 보인다. 따라서 종교체제 밖에 있는 당 기구가 이에 대한 사실관계 오인이나 명예훼손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른 종교단체 검색어의 경우, 이에 대한 검색결과는 요청인이 다른 종교단체와는 구분되는, 서로 다른 별개의 단체인 것으로 명시한 언론 기사들이 주를 이룬다. 그 외 검색 결과들도 요청인과 다른 종교단체를 유사한 것으로 서술하는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두 단체가 다름을 언급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용자들이 요청인과 타 종교단체와의 관계를 현저하게 오인하거나 이를 통해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정도 역시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와 요청인의 불이익 비교
종교단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2010.9.9.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이나 기존의 KISO 심의결정 사례(2014심19)를 살펴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는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 등에서 추출한 단어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는 다수 이용자들의 공개적 표현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다수 이용자의 관심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알려주어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 검색어로 인한 요청인의 불이익은 해당 검색어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일반 이용자의 편익을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기업의 명예훼손 관련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재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20심5

2. 심의 결정일 : 2020.6.25

[결정]
2020심5 : 해당없음

[결정 이유]
요청인의 재심의 요청의 요지는 당 정책위원회가 2020. 3. 3.자로 한 자동완성검색어와 연관검색어의 삭제 요청에 대한 해당없음 결정(2020심1 결정, 이하 “원심의결정”이라 함)에 대하여 위 결정 이후 나타난 새로운 사정을 소명하며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1) 요청인이 추가로 소명한 사실과 쟁점
1) 추가 소명한 사실
요청인은 재심을 요청하면서 언론보도내용을 소명사실로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요청인의 경쟁사업자는 직원들 및 홍보대행사를 이용하여 요청인의 브랜드가 ‘OO원전’에 인접하여 소재하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물, 댓글 등을 육아정보 카페 등에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요청인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혐의로 경찰이 입건 수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의결정(2020심1)의 주요 내용
먼저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의 다목 소정의 “허위사실이 소명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우유의 오염검사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방사능물질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문이 실린 상황은 인정되지만, OO원전으로부터 OO목장이 인접해 있다는 부분은 사실인만큼 허위사실이 소명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 소정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검색어 자체가 방사능, 방사능오염 등의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고 OO목장이 OO원전과 인접해 있는 사실이나 검색결과를 통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쟁점
그렇다면 이건 재심의는 제출한 소명사실에 의하여 해당없음의 원심의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써 소명사실이 위와 같이 연관검색어 등이 경쟁사업자의 불법적인 개입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는 취지이므로, 첫째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연관검색어등의 생성이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남용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둘째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허위사실이 소명된 경우) 또는 마목(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이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조작의 이른바 어뷰징을 말하는데 이는 검색어의 생성이 이용자가 해당 검색어를 검색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고 달리 이용자들의 동향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색어가 생성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어뷰징의 유무는 기술적인 방식 등을 통해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에 관여하였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소명사실만으로는 해당 경쟁사업자가 위와 같이 기술적인 방식 등으로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은 이유 없다.

(3)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소명사실은 언론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달리 허위사실임을 소명할 정도로는 부족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마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요청인이 제공한 추가 소명자료만으로는 원심의결정을 변경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특정 직업의 비하 관련 자동완성검색어 및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의 건[22)]

1. 심의 번호 : 2020심6-1~6

2. 심의 결정일 : 2020.11.19

[결정]
2020심6-1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2020심6-2~6 : 해당없음

[결정 이유]
요청인 ○○○○○협회는 ○○○을 △△△에 비유하는 검색어, 게시물 삭제 요청을 요구하고 있다.

1) 검색어 삭제 요청
요청인은 특정 직업명 ‘○○○’ 검색 시 자동완성검색어로 노출되는 차별 비하적 표현 ‘△△△’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자동완성검색어는 이용자의 관심을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증대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특정인, 특정 기업, 특정 제품 등에 부정적 단어가 자동완성검색어로 결합되는 경우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우려도 있다.

아울러 KISO의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3호에서는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노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책규정 제5장에서는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특별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는 일부 차별적 표현인 경우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 규정을 통해 특정 직업명 ‘○○○’ 노출 시 차별 비하적인 표현인 자동완성검색어 ‘△△△’의 적법성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본 심의대상인 자동완성검색어 △△△은 특정직업인(○○○)이 의료인으로서 비과학적이거나 전문성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차별 비하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의료인으로서 비과학적이거나 전문성이 없다는 의미는 나아가 차별받아야 하거나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마저 있다. 둘째, 차별 비하적인 표현의 목표가 되는 특정 집단이 다수가 아닌 소수인 경우 표현이 제한되고 소수집단을 더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본 심의대상의 특정 직업인은 의료업계에서 다수집단이라기보다는 소수집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검색을 추천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본 심의대상인 자동완성검색어는 특정직업인에 대한 차별 비하적 표현으로 그러한 단어를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사회 전반으로 차별 비하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자동완성검색어 ‘삭제’를 결정한다.

2) 게시물 삭제 요청
게시글 삭제의 주요 판단대상은 ‘○○○은 △△△이다’이라는 내용이다. 해당 표현이 특정직업인에 대한 차별 비하적 표현으로 직업을 가진 당사자나 관련 단체로서는 명예훼손이나 불쾌감 등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22) 저널 제42호에서 리뷰

그러나 본 사안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특정직업인 ○○○의 수를 고려하건대 집단의 규모가 크고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단체의 명예훼손으로 보기도 어렵다. 유사하게 '아나운서란' '우리나라 의사들이란' 등의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국내 법원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대법원 2014.3.27.선고 2011도15631판결 등).

심의대상 각 게시물을 보면 요청인이 제기하는 일부 문제의 용어 △△△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게시물의 전체 취지는 의료업계의 갈등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 상생방법 등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게시물은 요청인 및 관련 집단에게 불쾌감을 초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것만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의대상 각 게시물은 제21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을 결정한다.

3) 소수의견

검색어 삭제의 근거가 되는 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3호는 인터넷 역기능의 한 단면으로서 다수에 의한 소수자의 위축효과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되었다(2018 KISO 정책규정 해설서 139면). 따라서 다수의견은 특정직업인(○○○)이 '소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은 의료인이라는 직업군(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중 의사에 비하여 숫자상 소수인 것이지 ○○○이라는 '직업'자체가 사회적으로 차별과 비하의 대상이 되는 '소수'라고 볼 수 있는지에는 의문이 있다. 오히려 이 사안은 소수에 대한 차별, 비하라기보다는 우리사회에서 권역간 갈등이 있는 직업군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 소송대리권을 둘러싼 변호사와 변리사간의 갈등 등 유사 직역(職域) 간 갈등의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상호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에 대한 차별 비하로 취급하여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한다면 이는 결국 게시판을 통한 자유로운 토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자동완성검색어로 인해 직역(職域)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자동완성검색어 역시 게시판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결과가 발현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의 영역이므로 그 제한은 '과도한 사회적 갈등의 우려'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이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2021년도 공개

‘정당의 허위사실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의 건[23)]

1. 심의 번호 : 2020심7-1

2. 심의 결정일 : 2021.1.22

[결정]
2020심7-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요청인인 정당 ○○○○은 회원사의 서비스에 게시된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요청인은 정당이다. 현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익을 대변하여 입법부나 행정부를 통한 제도적 의사결정으로 구현 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법적 결사체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뚜렷한 공적 성격이 있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강령 및 활동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로운 비판이 최대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범위에 정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013.6.18. 결정 2013심40) 따라서 본 사안은 명백히 허위사실이거나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검토하였다.

(1) 허위사실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1) “○○○○ 온라인 카페에 들어가면 괜찮은 여성의제들이 많은데, △△△△△(특정 성소수자) 이슈도 몇 가지 있음. 대부분이 △△△△△ 배제를 원하는 논조를 가지고 이야기함” 관련 소명내용을 살펴본다.

“게시글 총 97개 중 △△△△△을 제목/주제로 한 게시글은 2건이며, 이 마저도 △△△△△의 행정적 처분 관련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고찰, 행사 부근 있었던 △△△△△ 관련 사건 당사자 개인에 대한 추측성 내용과 정정”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다만, 97개의 게시물 중 실제 제목은 △△△△△를 명확히 표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서 △△△△△와 관련된 이슈가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2개의 게시물의 내용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추측하고 있을 뿐 명백히 △△△△△에 대한 게시글과 다른 내용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게시글이 명백히 허위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창당 준비 워크숍을 다녀온 분이 △△△△△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트윗에 적기도 했고.” “△△△△△ 혐오를 외치는 몇몇 페미니스트들은 ‘△△△△△ 배제라니 안심하고 입당할 수 있다’면서 결집하겠다는 뜻을 나타냄.” 관련한 소명내용을 살펴본다.

요청인은 “발언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억측이다”, “명백히 드러난 바 없다”라고 소명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소명만으로는 실제 게시물에 적시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 판단할 수 없다.

3) 그 밖에 요청인의 삭제 요청을 검토한다.
그 외의 대부분 게시글의 내용은 사실의 적시보다는 위 1)과2)를 전제로 한 주관적 의견표명이 주된 내용이다.

---

23) 저널 제42호에서 리뷰

일례로 “정책 토론회에서 상대방이 ‘△△△△△도 국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데 ‘아니다’고 말하는 정당에 부동층이 표를 던질 것 같나.”라는 내용은 게시자가 △△△△△에 대한 ○○○○의 입장이 1)과 2)라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본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또한 요청인의 소명 역시 전체적으로 명확한 허위사실의 입증보다는, ‘억측이다’, ‘사실이 아니다’는 의견표명에 그치고 있다. 게시물이 언급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 하여야 하며 단지 주장만으로 소명을 다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밖에 ○○○○이 제출한 소명자료(10대정책, 당헌, 당규)를 살펴본다.
10대 정책에서는 여성의 안전, 건설, 복지, 노동,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의제를 다루고 있으며, △△△△△에 대한 정책의제는 없고 당헌/당규 역시 당원의 자격, 당의 조직, 예산/재정 등 당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나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바, 게시글이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입증할만한 자료라고 볼 수 없다.

(2) 게시물이 요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인지 여부
게시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의 창당 준비 모임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므로, 어떠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 배제를 원하는 논조를 가지고 이야기 하였다”든지, “결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나는 △△△△△ 배제 입장을 취하면 ○○○○의 정치적 입지가 불리해진다고 생각함”, “△△△△△도 국민이기에 어쨌든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너희는 제대로 된 국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옳지도 않을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음” 등 주로 ○○○○이 창당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를 배제하는 정책을 취하는 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 및 비판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2021심게-1

2. 심의 결정일 : 2021.2.26

[결정]
2020심게-1-1~39 : 해당없음

[결정 이유]
요청인은 심의대상 39건의 게시물이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신도와 단체에 대한 악의적인 목적의 내용을 포함하여 요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심의대상 39건에 대하여 삭제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가. 종교 관련 게시물의 임시조치 여부 판단 기준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KISO 정책위원회는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종교와 관련된 경험담 게시물 역시 종교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고(2015. 4. 6. 2015심7 의결), 나아가 종교 관련 사항에 대한 비판은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2014. 10. 21. 2014심19 의결 등 다수).

나. 심의대상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 판단
심의대상 게시물은 요청인(OO교회) 내부에서 있었던 종교 관련 논의를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과, 요청인 교회 관련 언론에서 보도된 비리의혹에 대한 게시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종교교리에 대한 의견 및 비판이라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 표현의 자유의 대상으로 보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임시조치 대상이라 볼 수 없고 판단된다.

후자의 경우, 문제된 게시물들은 이미 언론 등에서 다수 보도된 사안을 바탕으로 하여 사실을 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요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요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나 반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책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시조치 요건(명예훼손 사유의 소명)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의대상 게시글 중 일부에는 요청인을 비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일부 표현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해당 표현의 수준으로는 사회통념상 요청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표현은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라기 보다는 요청인이 속한 종교에 대한 비판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책규정 제5조 제5항에 따른 임시조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소위원회는 게시물 39건에 대해 관여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해당없음’으로 판단한다.

‘종교단체가 허위등을 이유로 삭제 요청한 게시물’ 심의의 건[24)]

1. 심의 번호 :2021심게-2

2. 심의 결정일 : 2021.2.26

[결정]
2020심게-2-1~37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2020심게-2-38~294 : 해당없음

[결정 이유]
요청인은 심의대상 294건의 게시물이 허위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거나, 신도와 단체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가. 적용 조문
KISO 정책위원회는 2018.11.16. 결정 2018심19-1~30 심의에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자가 종교단체인 경우 정책규정 제3조(임시조치 등)에 근거해 해당 사건을 해석하였다. 본 건 심의에도 정책규정 제3조(임시조치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나. 종교 관련 게시물에서의 판단기준
판례에 의하면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KISO 정책위원회에서도 이에 따라 종교와 관련된 경험담 게시물 역시 종교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고(2015.4.6. 2015심7), 나아가 종교 관련 사항에 대한 비판은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2014.10.21. 2014심19 등 다수).

다.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나 KISO 정책위원회의 결정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종교 단체인 요청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교에 대한 의견의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 표현의 경우에도 삭제를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 사실임이 소명된다면, 그것은 종교적 표현 자유의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015.11.24. 결정 2015심26 심의 등의 사례를 볼 때, 법원 판결에 의해 정정보도가 확정된 경우나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언론이 스스로 정정보도를 한 경우, 허위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해왔다.

해당 사안의 경우 언론사들이 요청인과의 합의를 통해 ‘정정보도’(예, 확인되었다), ‘반론보도’(예, 알려왔다), ‘반론 및 정정보도’를 한 사례들이 포함돼 있다. 이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정정보도’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사안을 토대로 작성된 게시물의 경우에는 ‘명백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따라서 임시조치 등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4) 저널 제43호에서 리뷰

본 소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정정보도가 이루어진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경우)인 37건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 '해당 없음' 결정한다.

‘전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21심게-3-1~43

2. 심의 결정일 : 2021.5.31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1항
제1호 해당없음 10건
제2호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33건

[결정 이유]
요청인은 회원사의 게시판 등에 게시된 심의대상 43건의 게시물이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요청인에 대한 욕설을 포함하여 요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요청인은 심의대상 게시물에 포함된 요청인의 배우자,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을 소명하였다.

가. 서언
요청인은 전직 고위 법조인으로 해당 직을 수행할 때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요청인이 삭제 요청한 심의대상 게시물 43건을 살펴보면, 요청인이 해당 공적 지위에 있을 때의 업무처리를 비판하는 게시물로, 정책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정책규정 제5조 제5항에 따라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가 아닌 한,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요청인이 삭제 요청한 게시물 43건을 다시 나누어 보면 1. 요청인이 허위 소명한 요청인의 배우자 또는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2. 요청인에 대한 단순 욕설이 활용된 경우 마지막으로 3. 요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비판하면서, 편향적인 단어를 활용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각각에 대해 해당 사안이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나. 유형별 판단
1) 허위 소명이 있는 게시물
해당 게시물 역시 요청인이 공인에 있을 때의 공적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정책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요청인은 게시물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안 중 요청인의 배우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소명하였다. 게시물의 내용을 고려할 때 요청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요청인의 배우자에 관련된 사안은 여러 근거 중에 하나로 사용되었으나, 해당 사안이 명백히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게시물의 수정이나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이상 전체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2016. 5. 17. 결정 2016심3등에서와 마찬가지 취지이다.

따라서, 요청인의 배우자에 대한 사안이 명백히 허위인 이상 나머지 요청인이 소명한 사안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 소명되었는지는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욕설이 사용된 게시물
정책규정 제5조 제5항은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의 경우 ‘OO년’ 등 욕설이 일부 포함된 경우라도 게시물의 전체 내용상 욕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욕설을 이유로 게시물 전체를 임시조치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

지가 있으므로,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는 제5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공적업무에 대한 비평적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요청인의 공적업무 처리를 주로 비판하면서, '무당', '역적' 등의 표현이 활용한 경우에 이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의견표명이거나 주장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본 소위원회는 게시물 33건에 대해 관여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게시물 10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판단한다.

‘종교단체의 종교 관련 비방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의 건

1. 심의번호 : 2021심게-4-1~8

2. 심의 결정일 : 2021.10.13

[결정]
2021심게-4-1~8 : 해당없음

[결정 이유]
심의 대상 8건의 게시물은 특정 종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므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1)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판단
요청인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적·혐오적 표현으로 특정 종교의 구성원 전체에게 심한 모욕감·굴욕감만을 주는 것’이라며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정책규정 제3조 및 제5조 제5항의 적용에 관련하여, 심의 대상 게시물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이용자의 의견이나 평가를 표명한 것으로서 임시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사 일부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 사실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청인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요청인이 속한 종교에 대한 비판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정책규정 제3조, 제5조 제5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차별적 표현’ 게시물에 대한 판단
정책규정 제21조는 ‘특별정책’으로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비판적 표현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고 그 표현이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면이 있더라도 무조건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인터넷은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소통 공간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KISO는 종교 표현의 자유가 일반 표현의 자유보다 더 폭넓게 보호를 받아야 하고 종교 표현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자유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 이는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최대한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지속적인 판결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바로 해당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종교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해당 종교의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면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9.6. 96다19246등, 대법원 2007.4.26. 2006다87903, 대법원 2010.9.9. 2008다84236, 대법원 2014.9.4. 2012도13718).

정책규정 제21조의 제정 취지, 기존의 심의 결정의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의대상 게시물은 제21조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소위원회는 표결 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종교 단체의 명예훼손에 의한 게시물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번호 : 2021심-게-5-1~14

2. 심의 결정일 : 2021. 12. 15.

[결정]
2021심게-5-1~14 : 해당없음

[결정 이유]
요청인은 회원사의 게시판 등에 게시된 심의대상 14건의 게시물 및 댓글이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요청인을 비방하는 표현이어서 요청인의 이미지를 실추한다며 임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 서론
정책규정 제3조 제1항에서의 ‘명예훼손’은 2015. 11. 05. 2015심25 결정에서 밝혔듯이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공연히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므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한편 정책규정 제5조 제5항의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심의대상 게시물 및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정책규정 제3조 제1항) 또는 모욕(정책규정 제5조 제5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나. 언론보도를 그대로 전재(轉載)한 게시물의 경우
요청인이 삭제 요청한 게시물 중 4건은 요청인의 대법원 판결 등을 다룬 언론보도를 전재한 것이다. KISO는 이러한 경우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사가 다른 적절한 수단 혹은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수정되었거나, 판결 등을 통해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바 있다(2014. 6. 2. 2014심10 결정, 2014. 6. 2. 2014심11 결정 등 각 참조). 이러한 원칙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위 게시물은 임시조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 외 게시물의 경우
1) 명예훼손 해당 여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게시물의 상당수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종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측면까지 감안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8.15 집회 주최와 관련된 게시물(댓글)에는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오류의 내용은 요청인과 유사한 종교단체의

이름을 혼동한 것으로서 해당 게시물의 중심내용 및 맥락을 고려할 때 부수적인 오류로 판단되며,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표현 공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의 영역 내에서 소화 가능한 것으로 임시조치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2) 모욕 해당 여부
요청인은 삭제 요청 게시물(댓글) 중 '사유재산(토지)도 훔치고' 등의 표현을 모욕이라고 주장하나, 그 표현의 수준이나 요청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준의 표현이 다소 무례할 수는 있어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요청인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임시조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소위원회는 게시물 및 댓글 14건에 대해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해당없음'으로 판단한다.

2022년도 공개

‘사립대학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의 건[25)]

1. 심의번호 : 2022심-게-1

2.심의결정일 : 2022. 1. 13.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1항
제1호 해당없음

[결정 이유]
심의 대상 게시물은 학교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으므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KISO 심의결정(심의번호: 2013심46)」

교육부에서 선정한 ‘재정지원제한대학’ 목록 및 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결정에서 사립대학인 신청인의 지위를 판단한 바, 사립학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사립대학교는 교육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교육체제에 속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해 여러 방면에서 공립대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KISO 정책결정 상의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 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게시물에서 이야기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관한 이슈는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의 장학금, 학교 등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 제공의 기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적 관심사 및 공적 업무의 영역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해당 게시글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를 심의결정의 주된 쟁점이다.

1) 요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요청인은 대법원 판례 2개를 근거로 사립대학을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KISO 정책규정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하지만, 요청인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99도5407판결과 2009도3696판결)는 집단표시 명예훼손에서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시 고려할 요소(99도5407판결에서는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판단), 종교단체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2009도3696판결)일 뿐 사립대학교를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지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입시나 학교 재정(장학금 등 포함) 등과 관련한 사립대학교의 공공성, 공공기관으로서 법적지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는 바, 사립대학교는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립대학교의 공공적인 성격과 관련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5) 저널 제46호에서 리뷰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 살피면, 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적 관심사 및 공적 업무의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 KISO심의결정(2013심46)의 정책방향을 변경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이에 본 심의의 핵심 쟁점은 해당 게시글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에 있다.

2) 명백한 허위사실 및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
해당 게시글은 요청인의 신입생 추가모집 공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후 코멘트 2줄을 덧붙인 것인데, 신입생 추가모집 공지에는 '수능 미응시자 지원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요청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입시결과만을 기준으로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 정원 미달로 지원자 전원이 합격했으므로, 만약 수능9 등급이나 수능 미응시자가 지원했다면 합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신입생 추가모집 공지에는 '50만원 장학금 학생계좌로 지급'이라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게시글 본문에 포함된 "수능 9등급, 수능날 시험장에서 도망한 사람도 합격시켜 주고 장학금 50만원도 줌"이라는 서술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

아울러 요청인의 요청내용 이외에도 제목의 '대한민국 꼴등 대학교'라는 표현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구체적이고 특정한 서열평가에서 꼴찌를 했다라는 표현이라면 '허위 사실 적시'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게시물과 같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서열 평가에서 '꼴등'이 아니라 단순히 '대한민국 꼴등 대학교'라고 표현했다면 이는 단순 '의견' 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해당 게시물은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2023년도 공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의 건[26)]

1.심의번호 : 2023심-게-1

2.심의결정일 : 2023. 2. 20.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1항
제1호 해당없음

[결정 이유]
요청인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다. 요청인은 회원사의 서비스를 통해 작성·공개된 게시물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요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요청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며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1) 적용 조문
KISO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또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요청인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공인에 해당하고 임시조치 등을 요청한 내용은 공관 공사에 관한 것으로 공적 업무 혹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요청 대상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KISO 정책규정 제5조 제2항과 제5조 제5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2)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의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청인은 게시물 중 “OO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는 표현, “처음부터 공관 입주를 염두에 두고 2022년 가을부터 10억 원의 공사비용을 집행했다”는 표현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청대상 게시물은 공관의 리모델링과 건물 신축, 비용, 입주기업 등을 다룬 한 언론사 보도를 전제로 하며 게시물의 주된 내용도 공관(사택)에 관한 것이다. 게시물에는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는 표현이 있을 뿐 요청인이 주장한 ‘OO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는 표현 내용이 없다. 또 뉴스를 전제한 게시물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등을 통해 그 내용이 허위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게시물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본 심의대상 게시물은 ‘임시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정책규정 제5조 제5항 ‘구체적 정황 없는 단정적·모욕적 표현’인지 여부
요청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기업들을 내쫓음”, “애들 점심 안먹이겠다고 땡깡부리고 뛰쳐 나간 인간”, “핑계”, “잔머리” 등의 표현이 요청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거나 왜곡된 표현이라 주장하고 있다.

게시물이 기본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포함하면서 이를 기초로 삼는 경우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2015.12.22.결정 2015심28), 게시물의 내용이 다소 거친 표현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신청인이 일반인이 아닌 공인일 경우 그와 같은 표현에 대해 공인은 항상 국민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26) 저널 제51호에서 리뷰

측면에서 일정부분 감내해야 한다(2018.6.7.결정 2018심13-1). 한편 어떤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대법원 2018.11.29.선고 2017도2661판결 등)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8.31.선고 2019도7370판결). 또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며,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19도14421판결).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보도를 전제로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또 일부 표현이 요청인에게 다소 불쾌하거나 무례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이는 공인의 공적인 업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의 표현으로서 공인이 감내해야 할 범위에 있다.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정책규정 제5조 제5항의 '임시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종교 단체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1.심의번호 : 2023심-검-1

2.심의결정일 : 2023. 7. 31.

[결정]
2023심-검-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요청인인 종교단체의 이름을 검색할 때, 연관검색어(이하 ‘검색어’라 한다)로 등장하는 ‘○○○○○ 이단’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였다.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의 여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도1220판결 등)에 따르면 ‘이단’이라는 표현은 특정 종교체제 내에서의 의견표명의 성격을 가진다. 즉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의 여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2010.9.9.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에서 일관하여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서, 종교에 대한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체제 밖에 있는 당 기구가 이에 대한 사실관계 오인등의 이유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와 요청인의 불이익 비교
종교단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2010.9.9.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이나 기존의 KISO 심의결정 사례(2014심19, 2015심7 등)를 살펴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심의대상 검색어의 삭제는 종교 비판의 권리를 일부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당 검색어를 유지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요청인의 피해보다 작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소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판단한다.

KISO JOURNAL
전체 목차

KISO 자율규제 백서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KISO JOURNAL 전체목차

구분	섹션	제목	저자
제22호 ('16.03.)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소위 '◇◇◇ 사건'의 심의 결과 리뷰	이재진
		선거기간 중 후보자 범위 관련 정책결정 해석 리뷰	류정호
	기획동향	소프트 테러위험의 증가와 테러정보의 수집 · 공유	이창범
	법제동향	온라인에서 전쟁 · 재난 관련 허위사실 유통 처벌안에 대한 단상	정필운, 양지훈
	국내외 주요소식	소라넷… 해결책은 없는가?	심재웅
	이용자 섹션	여성 혐오에 대한 미러링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영주
		SNS상의 감정전달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와 전망	배운철
	해외 자율규제 기구 소개	일본 인터넷 협회, IAjapan(Internet Association Japan)	KISO
	편집위원 칼럼	로봇에 대한 윤리와 법제의 대응이 필요하다	황창근
	문화시평	〈서평〉 구본권 저, 『로봇시대, 인간의 일』	오세욱
	KISO 뉴스	KISO, 공정 선거 개최를 위한 인터넷 자율규제 수행	KISO
		2016년 KISO 워크숍 개최	KISO
제23호 ('16.06.)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황성기
	기획동향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관한 일고찰	전응준
		인터넷방송 플랫폼 서비스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 사업자 · 기업 · BJ의 사회적 책무 등 현황 및 개선방안	강장묵
	법제동향	회피연아 사건에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재검토(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다105482)	손형섭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의 관심과 그 지향점에 관한 일고 – 미국의 인공지능과 법에 관한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윤혜선
		유럽연합(EU)의 로봇법(RoboLaw) 프로젝트	이원태
	국내외 주요소식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승인의 의미와 전망	최승재
		포털사이트의 20대 총선 특집 서비스 특징	장우영
	이용자 섹션	인터넷, 20대 국회에 바란다	김익현
	해외 자율규제 기구 소개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의 동향 및 시사점	김유향
	문화시평	브루스 슈나이어 저,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데이터와 골리앗	김민정
	KISO 뉴스	'KISO 자율규제 백서 Vol.2 발간' 등	KISO
제24호 ('16.09.)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사립대학 총장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결정 리뷰	장철준
		○○○협회장의 자동완성검색어 '오진'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김학웅
	기획동향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율에 관한 유럽의 행동기준 및 KISO 정책규정에 대하여	이정념
	법제동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 5 : 온라인 음란물 유통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	박아란
		게임SW산업의 진흥과 자율규제 –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의 규제 개선	김윤명
	국내외 주요소식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부 가이드라인 수립 – 미국 등 주요국 가이드라인 비교	염흥열
	이용자 섹션	구글 국내지도 국외반출 요청 이슈와 정책 시사점	채반석

	문화시평	〈도서〉 평화로운 기술 : 미담 그리고 미화	김예란
	KISO 뉴스	공정거래위원장-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간담회 개최	KISO
제25호 ('16.12.)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기업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결정 리뷰	김보라미
	기획동향	〈기획특집①〉 검색엔진 알고리즘의 변천의 역사	박세용
		〈기획특집②〉 검색 알고리즘과 권리침해 :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명과 암	김익현
	법제동향	〈청소년보호특집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청소년 음란물 차단 책임' 위헌 심판 제청결정	박규홍
		〈청소년보호특집②〉 커뮤니티 상의 적의적(차별/비하) 발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논란	조소영
	국내외 주요소식	클라우드 시대의 프라이버시 – 기업과 국가, 개인의 접점	한세희
		SNS상의 미성년자 초상권 보호를 위한 프랑스의 법적 조치	진민정
	이용자 섹션	소셜 미디어의 자율규제 현황과 개선 과제	최진응
	해외 자율규제 기구 소개	미국 NCMEC의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	KISO
	문화시평	〈도서〉 인류의 미래는 괜찮아 vs 아니 계속 우울할거야	정혜승
	KISO 뉴스	'2016년 KISO 사업자 실무 세미나' 개최	KISO
제26호 ('17.03.)	정책 및 심의 결정리뷰	'연예인 ○○○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의 건' 및 '○○ 그룹 회장 아내 검색어 삭제 요청의 건' 심의결정 리뷰	윤수정
	기획동향	한국 온라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와 영향력	조희정
		– 일상의 촛불집회, 온라인 참여	
	법제동향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란의 시시비비	김도승
		〈원문〉 Bill for a Digital Republic : a surprising name for an ambitious law	Pierre-Jean Benghozi
		〈번역〉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 : 야심만만한 법률을 위한 놀라운 이름	윤혜선
	국내외 주요소식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인터넷 정책의 향배	김민정
	이용자 섹션	〈온라인광고 특집①〉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쟁점	이시훈
		〈온라인광고 특집②투명성 제고를 위한 네이티브 광고 규제정책 : 미국 FTC 사례	김선호
	해외 자율규제 기구 소개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KISO
	편집위원 칼럼	탈 진실(Post Truth) 시대의 도래와 소셜 미디어의 역할	김유향
	문화시평	〈도서〉 정보사회의 통제에 대한 용기 있는 물음 – 올리버 스톤 감독의 〈스노든〉	강성률
	KISO 뉴스	'KISO, 「페이크 뉴스와 인터넷」 토론회 개최	KISO
		KISO-선관위-사업자, 공정 선거를 위한 실무 세미나 개최	KISO
제27호 ('17.06.)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주식회사 ○○○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의 심의결정 리뷰	조정욱
	기획동향	2017년 '인터넷 이용 환경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나현수
	법제동향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입법 동향	정준화
		박근혜 정부가 남긴 ICT정책과 앞으로의 과제	한세희

	국내외 주요 소식	중국 미성년자 게임 셧다운제 도입 의미와 전망	안정아
	이용자 섹션	인터넷 포털의 투명성과 이용자 신뢰 – 가짜 뉴스를 중심으로	강장묵
	해외 자율규제 기구 소개	영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협회(ISPA UK)	박욱범
	편집위원 칼럼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양현서
	문화시평	〈도서〉 미래의 정체, 정말 보여준다	김연지
	KISO 뉴스	포털의 검색어 정책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KISO
		KISO, 인터넷 개인 방송인을 위한 안내 자료 제작	KISO
제28호 ('17.09.)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 성매매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윤성옥
	기획동향	인터넷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돼야 할까… '3종 세트'를 둘러싼 법 개정 논쟁	김현아
	국내외 주요소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주요 내용 및 규제 방향	강신욱
	이용자 섹션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은행, 규제와 미래 전망	신민수
	해외 자율규제 소식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국제 인터넷 포럼(GIFCT)	권오성
	문화시평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비즈니스 기회	윤은상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①	윤문용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②	김경달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③	류현정
	KISO 뉴스	KISO포럼 개최 '임시조치 제도 어떻게 바꿔야 햐는가?'	KISO
		KISO 저널, 온라인 전자서점과 콘텐츠 제휴	KISO
제29호 ('17.12.)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연예인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황성기
		비실명 보도 관련 검색어 삭제기준 정책규정 리뷰	이승환
	기획동향	온라인 혐오발언과 사회적 차별	이승현
	법제동향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최근 규제 이슈와 해외 사례	윤주호
		국내 게임 산업의 미래와 법적 규제개선 방안 –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 완화 및 웹보드 자율규제 필요성	이정훈
	국내외 주요소식	FCC의 망중립성 규정 폐지 및 국내 영향	권오성
	이용자 섹션	페이크뉴스에 대한 저널리즘적 대응과 한계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신인규
		소셜미디어 쇼핑 '카페인족' 시대의 도래	고아라
	편집위원 칼럼	포털뉴스 논쟁, 객관적 상황평가가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	황용석
	문화시평	호모 사피엔스라는 정류장을 떠나 미지의 미래로 향하는 인류 : 호모데우스	구본권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④	우지숙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⑤	강신욱
	KISO 뉴스	[KISO포럼]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재설계	KISO
제30호 ('18.03.)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온라인공간의 가상정체성과 현실공간의 실제정체성	최항섭
		닉네임 언급에 대한 게시중단요청 심의결정 리뷰	조소영
	기획동향	'뉴노멀 시대', 방송 통신 규제의 올바른 방향	이대호

	법제동향	EU GDPR의 주요 내용의 검토	이진규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동향과 입법적 검토	최진응
	해외 자율규제 주요 소식	미국의 컨텐츠 규제 한국과의 차이점은 : All Things in Moderation 2017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나현수
	이용자 섹션	눈 앞에 다가온 5G 시대, 사회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가	한세희
	문화시평	〈도서〉 다빈치에서 인터넷까지	김훈건
	KISO 뉴스	2018년 KISO 워크숍 개최	KISO
		KISO ·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 공동 토론회 개최, '인터넷 댓글에서의 정치행동 주의 : 여론공간의 규제는 필요한가?'	KISO
제31호 ('18.06.)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연관검색어 관련 정책규정 개정의 건	손지원
		가짜뉴스 관련 정책규정 개정의 건	구본권
	법제동향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자율규제 도입의 의미	김학웅
		미디어 · 콘텐츠 자율적 분쟁해결을 위한 ADR제도의 발전방향	이재진
	국내외 주요소식	EU집행위원회, 인터넷 기업에 극단주의 콘텐츠 1시간 내 삭제 권고	김익현
	이용자 섹션	이용자 참여와 규제 : 개인방송 시대의 난제	박상현
		온라인상 유전자검사 제품의 판매현황과 쟁점	유승준
	해외 자율규제 주요 소식	사이버 보안 관련 비영리단체, ISF 소개	KISO
	문화시평	세계시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인간성의 구현을 위하여	도승연
	KISO 뉴스	KISO, 검색어 검증위원회, '검색어 추천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기업의 영업의 자유는 양립 가능한가?' – 공개토론회 열어 3차 보고서 공개 전, 소비자와 전문가 시선으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KISO
		KISO 종합신고센터 오픈	KISO
제32호 ('18.09.)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심의의 건	김민정
	기획동향	북한의 통신 · 인터넷 현황과 전망	김유향
	법제동향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 데이터 주도 혁신에 대한 제한인가?	Youssef Fouad
	국내외 주요소식	가짜뉴스의 사회 심리학	구본권
	이용자 섹션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의 자율규제 현황과 정책 제언	이형찬
	해외 자율규제 주요 소식	사이버 성폭력 피해 구제 관련 시민단체, CCRI(Cyber Civil Rights Initiative) 소개	KISO
	문화시평	고독이 없는 시대에는 대화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진다	전숙경
	KISO 뉴스	이해완 정책위원장 퇴임 및 이인호 정책위원장 취임	KISO
제33호 ('18.12.)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소비자 리뷰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정경오
		연예인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김학웅
	기획동향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주소 및 향후 전망	정규환
	법제동향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법」 편입 관련 법제 동향 및 주요 쟁점	김여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와 은산분리 시사점	조대형
	국내외 주요소식	개인정보보호법 법제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	김보라미

	이용자 섹션	지능정보사회와 정보불평등	주윤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강제적 셧다운제의 의미	김병관
	해외 자율규제 주요 소식	해외 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 정책 소개	KISO
	편집위원 칼럼	인공지능 기술을 윤리적으로 탐하다 : 영국의 데이터윤리혁신센터 설치 사례	윤혜선
	문화시평	케빈 알로카, 〈유튜브 컬쳐〉	구범준
	KISO 뉴스	KISO 대학(원)생 가짜뉴스 논문 공모전 시상식	KISO
제34호 ('19.03.)	기획동향	자율규제 10년 발전 방향 모색 특별 대담	KISO
		최근 10년간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법적 환경의 변화 양상	황창근
		정책규정 제5조와 제13조에 대한 리뷰 : 그 의의와 나아갈 길	황용석
		국내 인터넷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배영
		국가는 인터넷을 어디까지 규율해야 할까… 자율규제시스템에 거는 기대	김현아
		자율규제 최전방, KISO 사무처 직원 인터뷰	KISO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정필운
		식품회사 A의 관련 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결정문에 대한 리뷰	이병준
	법제동향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에 대한 검토	홍대식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삭제의무 관련 개정	김학웅
	국내외 주요소식	미국-중국 무역분쟁과 차세대 IT 패권전쟁	김익현
		디지털 음원 관리의 세계 동향 및 향후 방향	선효정
	이용자 섹션	TaaS(Transportation as a Service) 3.0의 시대	고태봉
		온라인 허위 · 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의 실효성 강화방안	손봉현
	편집위원 칼럼	한국 인터넷과 온라인 여성주의	김유향
	문화시평	김상배, 〈4차 산업혁명과 남북관계〉	구갑우
		안드레아스 와이겐드, 〈포스트 프라이버시 경제〉	구본권
	KISO 뉴스	KISO,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 참석	KISO
		KISO,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대상 강의	KISO
제35호 ('19.06.)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KISO 정책위원회 10년, 심의 사례 10선	KISO정책팀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정필운
	기획동향	HTTPS 차단 논란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김승주
		인터넷 접속차단 정책의 문제점	윤성옥
		주요국의 OTT 규제 톺아보기	김대원, 김수원
	법제동향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권헌영
		사이버상 자살유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장영진
	국내외 주요소식	데이터 배당(Data Dividend) 도입 추진 배경과 전망	KISO기획팀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 주요 쟁점	박성호
	이용자 섹션	남성 카르텔의 관음 문화는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는가	위근우
		우리의 지갑을 노리는 해커, 사이버 사기의 진화	이동은
	해외 자율규제 소식	PCH(Packet Clearing House)	KISO기획팀

	문화시평	제러미 하이먼즈, 〈뉴파워 : 새로운 권력의 탄생〉	이희옥
	KISO 뉴스	KISO, 2019년 워크숍 개최… 미래 사업 방향성 논의	KISO
제36호 ('19.09.)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종교관련 게시물 임시조치 심의결정 리뷰	최종선
		○○학원의 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김상순
	기획동향	질병으로 규정된 게임중독	김양중
		국내 AI 정책 현황	최경준
	법제동향	방송법 전부개정안의 함의와 전망	최세경
		데이터 규제 3법 개정 전망과 과제	권헌영
	국내외 주요소식	유료방송 시장 구도 변화	황근
		'공유 전동킥보드' 국내 동향과 그 기대효과	KISO
	이용자 섹션	유아 미디어 이용 행태의 진화	김은미
	해외 자율규제 기구 소식	아이칸(ICANN, 국제인터넷주소 관리기구)	KISO
	편집위원 칼럼	인터넷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법의 문제점	황창근
	문화시평	탈진실 시대에 팩트를 논하다	김유향
	KISO 뉴스	"바람직한 민간 자율심의 체계로 'KISO' 모델 소개"	KISO
제37호 ('19.12.)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임시조치와 공인성 판단 기준 – 일반인도 공인이 될 수 있는 예외	권헌영
	기획동향	[KISO포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 것인가, 제1발제 :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의 쟁점과 이용자 인식	이상우
		제2발제 :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규제 담론의 입법학적 검토	심우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이용자가 돌아왔다 – 기자가 바라본 종합토론의 현장	윤수현
	법제동향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법적 함의와 전망	이성엽
	국내외 주요소식	위워크를 통해 본 유니콘 성장 신화의 한계점	신무경
	이용자 섹션	구매를 유도하는 유혹의 메시지, 온라인 맞춤형 광고	반옥숙
	해외 자율규제 기구 소식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ESRB)	남동희
	편집위원 칼럼	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전부개정 방향	김병일
	문화시평	지능화사회, 자동화된 불평등을 말하다	이희옥
	KISO 뉴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사업자 자율규제 필요"	KISO
		KISO, 실급검 토론회 개최... 시민단체 · 전문가 의견 수렴	
제38호 ('20.03.)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공직 후보자 아들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김진곤
	기획동향	디지털 민주주의 현재와 미래-① 국내 디지털 민주주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구본권
	법제동향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시행의 함의와 전망	이창범
	이용자 섹션	고령화 문제 해결의 해법, 디지털 에이징(DIGITAL AGEING)	고정현
	국내외 주요소식	대법, 악성프로그램 판단 기준 첫 제시	전승재
		데이터 3법 통과…의료 · AI 등 관련 산업 탄력 전망	강태욱
		DH, 배달의민족 인수에 따른 영향은	박엘리
		국내 테크핀(TECH+FIN) 업계 동향과 전망	남동희

	해외 자율규제 소식	미국 인터넷광고협회(IAB)	장세리
	편집위원 칼럼	'혐오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기업의 책임	김성환
	문화시평	고객이 기존 비즈니스를 파괴한다 – '디커플링' 서평	정혜승
제39호 ('20.06.)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언론기관 대표의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황용석
		의료기관 명칭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김학웅
	기획동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사회 디지털 대전환	박원재
		디지털 민주주의 현재와 미래-② 디지털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는가	김유향
	법제동향	'넷플릭스법' 함의와 과제	김현경
	이용자 섹션	재택근무가 알려준 '비효율성의 가치'	구본권
	문화시평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	김병일
		제이슨 셍커, 〈코로나 이후의 세계〉	김국현
	KISO 뉴스	KISO, 온라인 혐오표현 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	KISO
제40호 ('20.09.)	기획동향	유튜브 뒷광고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금준경
		뒷광고의 합리적 규제 방안	손봉현
	법제동향	n번방 방지법-① 주요 내용과 의미	윤정숙
		n번방 방지법-② 관련 쟁점 분석 및 보완점	정경오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 규제 의미와 한계	황창근
		데이터기반행정법과 데이터정책의 과제	권헌영
	국내외 주요소식	애플에 이어 구글도 인앱결제 강제…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	안희정
		국내외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비교 및 시사점	조용섭
	이용자 섹션	비대면 시대 온라인 수업 현황과 발전 방향	박혜자
	편집위원 칼럼	국가권력의 온라인 감시 정책의 위험성	황창근
	문화시평	라몬로바트 저, 〈넷플릭스 세계화의 비밀〉	황근
		마커스 드 사토이 저, 〈창조력 코드〉	김상순
	KISO 뉴스	정경오 정책위원 퇴임… 김현경 신임 정책위원 임명	KISO
		KISO-다방, 부동산 자율규제 강화 협력	KISO
제41호 ('20.12.)	기획동향	언택트공연 및 공연 영상화를 둘러싼 저작권 이슈	김병일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격차와 극복과제	성봉근
	법제동향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분석	구태언
	국내외 주요소식	'검색 앱 선탑재' 소송의 의미와 여파	구본권
		개똥녀에서 디지털교도소까지, 프로파일링과 집단적 모욕주기의 사이에서	강태욱
		소셜 미디어의 미국 선거 관련 자율규제 동향	김익현
	이용자 섹션	국내 포털의 '아동 · 청소년 보호' 자율규제 정책	박엘리
		승승장구 K-웹툰,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점은	지승현
	문화시평	표트르펠릭스그지바치 저, 〈뉴 엘리트〉	이명진
		미국 다큐멘터리, 〈소셜딜레마〉	이성엽
	KISO 뉴스	KISO, 코로나 허위정보 관련 자율규제 현황 소개	KISO
		KISO, 서비스운영소위 출범	KISO

제42호 ('21.03.)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협회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엄주희
		정당의 허위사실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윤수정
	기획동향	기계가 드러내는 편향, '이루다'만 문제였을까?	오세욱
	법제동향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해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의의와 한계	김형준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한국 기업 진출시 유의점은	이창범
	국내외 주요소식	공인인증서 시대 가고 민간 전자인증 시대 도래	김인순
		선 넘은 유튜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금준경
	이용자 섹션	이용자 관점에서 본 구독경제 현황에 대하여	조혜정
		코로나시대 이용자 트렌드 변화...'듣는 콘텐츠'의 부상	김연지
	문화시평	제임스 볼 저,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배진아
		제니 클리먼 저, 〈A.I 시대, 본능의 미래〉	도승연
	KISO 뉴스	KISO, '분과 · 소위' 체제로 구조개편 완료	KISO
		KISO-GSOK, IT산업에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토론회 열어	KISO
제43호 ('21.06.)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기준 리뷰	황용석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에 대한 리뷰	박규환
	기획동향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개정안의 문제점 : 국가규제 강화와 표현의 자유의 위축	황창근
		메타버스의 현황과 미래	이주행
	법제동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 쟁점에 대한 검토	홍대식
		2021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의 의미와 남겨진 과제들	신영수
	국내외 주요소식	4차위, 닻 올린 '데이터특위'...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기대	권헌영
		KISO 부동산매물 검증, 이렇게 달라진다	김성덕
		온라인 플랫폼 '뉴스 사용료' 글로벌 곳곳 갈등	박엘리
		바이든 행정부 디지털세 관련 현황 및 국내 영향은	남동희
	이용자 섹션	'이용자 후기'를 놓고 벌어진 '표현 자유'와 '명예훼손' 줄다리기	구본권
	편집위원 칼럼	난 네가 초등학교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의 SNS 리터러시	임소혜
	문화시평	지야 통 저, 〈리얼리티 버블〉	김지연
		가이아 빈스 저, 〈초월〉	정인경
	KISO 뉴스	KISO, 코로나19 허위 · 조작정보 대응 체계 마련	KISO
		KISO '특별분과' 출범… IT 신기술 자율규제로 외연 확대	KISO
		심심이, 레드홀릭스 등 2개사 KISO 신규 가입	KISO
제44호 ('21.09.)	기획동향	왜 다들 NFT에 주목할까	김병철
		NFT 아트와 저작권 이슈	김병일
	법제동향	EU AI 법안이 주는 시사점	김병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의미와 주요 쟁점	강형우
	국내외 주요소식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소송' 1심 패소의 의미	이성엽
		랜섬웨어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김기범

	이용자 섹션	일상이 된 전자상거래… 팬데믹 속 24시	남정미
		메타버스라는 신대륙… 소비자들은 왜 열광할까	이유진
		깊어지는 게임업계 vs 유저 갈등, '확률형 아이템' 논란 해법은	김한준
	편집위원 칼럼	'무한 정보세상'에서 점점 더 소중해지는 것은?	구본권
	문화시평	닐 스티븐슨 저, 〈스노크래쉬〉	임소혜
		구본권 저, 〈디지털 개념어 사전〉	김훈건
	KISO 뉴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의장에 이인호 중앙대 교수 선임	KISO
		KISO, '어학사전 워킹그룹' 출범	KISO
제45호 ('21.12.)	기획동향	[20대 대선후보들에게 바란다] 디지털 생태계, 두 가지 이정표를 놓치지 말기를	박성호
		[20대 대선후보들에게 바란다] 표현의 자유 :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권리	홍성수
	법제동향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시사점	이상우
		데이터산업법의 의미와 주요 쟁점	구태언
	국내외 주요소식	디즈니 플러스 국내 미디어 시장 진출과 국내 OTT 시장 변화	이상원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로 공공서비스 혁신	신설희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 : OECD/G20 성명서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	변혜정
	이용자 섹션	플랫폼 스타트업들의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최연진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그 의미와 향후 과제	황성기
	편집위원 칼럼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	김현경
	문화시평	스튜어트 러셀 저, 〈어떻게 인간과 공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	구본권
		박태웅 저, 〈눈떠보니 선진국〉	이희옥
	KISO 뉴스	KISO 저널 편집위원장에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선임	KISO
		KISO,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 조치 결과 발표	KISO
		KISO, 포털 인물정보에 '댄서' 직업군 추가… 사회 트렌드 변화 반영	KISO
		KISO,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 참여	KISO
제46호 ('22.03.)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사립대학교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황창근
	기획동향	웹 3.0 평등한 새로운 인터넷을 만들 수 있을까	김익현
		'나를 위한' 뉴스의 시대가 온다	금준경
	법제동향	EU의 디지털 시장법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김병일
		"특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도의 효과	이경원
	국내외 주요소식	'나도 강남 부동산 오너'… 가상 부동산의 유혹	원정희
		국내외 IT 기업들의 ESG 경영 소개	곽기욱
	이용자 섹션	코로나가 불붙인 원격 의료, 현재와 미래	김철중
		디지털 화폐의 현황과 미래	안용길
	편집위원 칼럼	고인이 남긴 디지털 유산은 누구의 것인가?	이해원
	문화시평	조병영 저, 〈읽는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구본권
		레이철 보츠먼 저, 〈신뢰 이동〉	김희삼
	KISO 뉴스	KISO '차별표현 바로알기 캠페인' 시작	KISO
		KISO, 사무실 확장 이전	KISO

제47호 ('22.06.)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리뷰	김민정
	기획동향	윤석열 정부의 ICT 자율규제 의미와 전망	김민호
	법제동향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개요 및 향후 과제	이해원
		민법일부개정안에 신설된 인격권 조항에 대한 검토	서종희
	국내외 주요소식	[KISO 포럼]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 지상 중계	KISO
		싸이월드 이슈로 본 데이터 복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김지원
	이용자 섹션	조각투자 전성시대... 2030 러시	김인경
		플랫폼은 사이버불링 차단의 선구자가 될 수 있을까	송창한
	편집위원 칼럼	인공지능(AI)의 윤리의식 : 우리는 AI도 훈육할 수 있을까?	임소혜
	문화시평	라이언 아벤트 저, 〈노동의 미래〉	구본권
		노리나 허츠 저, 〈고립의 시대〉	김찬호
	KISO 뉴스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 KISO포럼 성료	KISO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캐터랩' KISO 신규 가입	KISO
		2022 KISO 워크숍 개최	KISO
제48호 ('22.09.)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KISO 인물정보 서비스 정책 리뷰	황용석
	기획동향	디지털 휴먼,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정동훈
		新유통혁신 '라이브커머스'… 설익은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 · 자정 노력 존중할 시기	김현경
	법제동향	EU의 데이터법(Data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김병일
		메타버스 성범죄 입법화 논의가 잊고 있는 것	이희옥
	국내외 주요소식	'디지털 불멸'(digital immortality)의 법적 문제	이해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톺아보기	강태욱
	이용자 섹션	점점 상용화되는 NFT… 이용자는 안전한가	박경신
		위축되는 국내 공유킥보드 시장, 과도한 규제 때문일까?	신익준
	편집위원 칼럼	'디지털세대 문해력 논쟁'이 알려주는 '21세기의 능력'	구본권
	문화시평	검열관들-국가는 어떻게 출판을 통제해왔는가	김훈건
	KISO 뉴스	인공지능 스타트업 '소프트리에이아이', KISO 신규 가입	KISO
		한글날 맞아 '국어사전의 차별 · 비하표현에 대한 보고서' 발표	KISO
제49호 ('22.12.)	KISO 자율규제의 역사	자율규제 불모지에 뿌리를 내리다	이인호, 신익준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의 변화와 한국 자율규제의 미래	김유향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①	선지원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②	김도승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③	김태오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④	심우민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①[심심이]	최정회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②[스캐터랩]	하주영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③-1[네이버]	임남정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③-2[네이버]	홍태화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③-3[네이버]	김정윤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④-1[카카오]	김대기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④-1[카카오]	김성환
		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⑤[SK커뮤니케이션즈]	김훈건
	자율규제의 미래	디지털 미래사회와 자율규제	김현경
		표현의 자유와 자율규제	황창근
		인공지능(AI)과 자율규제	주윤경
		메타버스 자율규제	이승민
	KISO포럼	KISO포럼 현장 중계 – 한국형 자율규제 기구로서 KISO의 특성과 함의	이승선
	현장중계	KISO포럼 현장 중계 – '자율규제 모델, KISO에서 답을 찾다'	KISO
	KISO 뉴스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 발족	KISO
		KISO, UGC 회원사 간담회 개최	KISO
		이희옥 법학박사, '유당신진언론법상' 수상	KISO
		네이버 · 카카오 '욕설 DB' 통합… 중소 커뮤니티에 혜택	KISO
제50호 ('23.03.)	기획동향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은 근절되고 있나? – 사전조치 의무의 현황과 한계 –	조영기
		디지털 성범죄 정보 근절을 위한 제언	최종선
		관심사 커뮤니티 플랫폼의 도약과 지속가능성	이희옥
	법제동향	여성 연예인에 대한 '국민호텔녀' 댓글과 모욕죄 판단 : 대법원 2022.12.15. 선고 2017도19229판결의 의의	이승선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의 문제점	주진열
	국내외	국내외 급부상 중인 슈퍼앱 현황 및 사례와 전망	허수정
	주요소식	애플페이 국내 출시를 바라보며 : 규제와 시사점	유정한
	이용자 섹션	챗GPT 시대의 필수역량 'AI 리터러시'	구본권
		토큰 증권(Securities Token) 가이드라인 이해하기	고환경, 주성환
	KISO위원 칼럼	탈세계화 추세와 디지털 플랫폼 규제정책 ; 우리는 봉인가?	김민호
	문화시평	기술에 빼앗긴 주의(attention)의 회복을 말하다 – 제임스 윌리엄스, "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2022)에 관한 평이 아닌 설	이해원
	KISO 뉴스	서비스운영소위, 인물정보에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직업군 확대	KISO
		KISO 유은재 연구원,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유공 표창 받아	KISO
제51호 ('23.06.)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제정 의의와 몇 가지 고려사항	이정념
		'광역자치단체장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황용석
	법제동향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와 과제	김현경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의 위헌성	김민호
	국내외 주요소식	EU AI 법안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전망	이해원
		제2, 제3의 누누티비 근절할 수 있을까	금준경
	이용자 섹션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다크 마케팅' – 건강한 소비문화	유승철
		페이스북 유료 서비스 시대가 온다	임지선
	KISO 위원 칼럼	추천 시스템에 의한 선택적 노출과 편향	이재신

	문화시평	사소하고 하찮은 의심은 없다	이희옥
	KISO 뉴스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 KISO, 한국언론법학회 봄철 학술대회 참여	KISO
		유엔 대테러사무국, KISO 자율규제 사례 주목	KISO
		2023년 KISO 워크숍 개최	KISO
		KISO, 욕설 필터링 시스템 'KSS' 정식 출시	KISO
		KISO, '휴먼테크놀로지어워드2023' 대상 수상	KISO
제52호 ('23.09.)	기획동향	타다, 우리 시대 스타트업의 초상	구태언
		구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의 함의	정진주
	법제동향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안)의 검토 및 정책제안	이진규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과 콘텐츠 식별	김병일
	국내외 주요소식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현주소	안용길
		글로벌 OTT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캐나다 온라인 스트리밍법(The Online Streaming Act)을 중심으로	김현경
	이용자 섹션	코로나 엔데믹, '온라인 유료 공연' 전망은?	김현숙
		소셜미디어 기업들, 왜 경쟁적으로 '청소년 보호' 기능 도입하나	구본권
	KISO 위원 칼럼	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규제 이슈	정경오
	문화시평	오펜하이머 모멘트, 파멸의 버튼을 누가 눌렀는지 묻는 순간이 온다.	이정환
		도둑맞은 집중력	이형열
	KISO 뉴스	KISO, '화학물질 불법 · 유해정보 유통 방지' 적극 대응	KISO
		KISO,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 발표	KISO
		KISO, 'AI가 선거에 미칠 영향' 세미나 참여	KISO
제53호 ('23.12.)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리뷰	오태원
	기획동향	'리뷰'를 리뷰하다	박성순
		생성형 AI의 춘추전국시대	최연진
	법제동향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전략의 시작	이석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근거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김민호
	국내외 주요소식	SKB · 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종결… 남은 과제는	김현아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의 함의와 향후 전망	이해원
	이용자 섹션	세상 밖으로 나온 '버튜버', 급부상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은?	곽기욱
	KISO 위원 칼럼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는 왜 어려운가?	황용석
	문화시평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	권경원
		권력과 진보 : 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쟁투	김현경
	KISO 뉴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KISO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서비스 운영 회원사 세미나 개최	KISO

KISO 백서 편집위원회

황창근 위원장
김대기 위원
김훈건 위원
이상식 위원

KISO 자율규제 백서 VOL 3.

2024년 08월 27일 인쇄
2024년 08월 27일 발행
발행인 : 이인호
발행처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디자인·인쇄: (주)신원디마
출판등록 : 제2014-000131
주 소 : 0663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2층(서초동, 선인빌딩)
전 화 : 02-6959-5206
이메일 : kiso@kiso.or.kr
홈페이지 : www.kiso.or.kr
ISSN : 3058-4469

본 백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KISO 자율규제 백서」 내용임을 밝혀야 합니다.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9 773058 446007 03
ISSN 3058-4469